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농촌개발,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총4권중 제4권

2004. 12. .

농 립 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5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김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fax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

1. 배경	1
2. 주요골자	2
3. 주요변경사항	5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0
제3장 전문가위원회	11
제4장 농림사업	12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19
제6장 보칙	22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23

1. 배경	25
2. 주요골자	26
3. 주요변경사항	30
4. 해설	34

III. 농림사업실시규정 53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98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26

VI. 기타주요사항 212

참고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제2권 농업(식량작물, 원예)구조개선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222
2. 토양개량사업(자율)	276
3.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86
4.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6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97
② 저수지 준설사업	309
③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27
5. 대·중규모 용수개발(공공)	336
6.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① 지하수 자원관리	359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365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385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389
7. 농지조성(공공)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394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412

II. 농업기계화

8.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33
9. 농기계임대사업(자율)	483
10. 농기계생산지원(공공)	498
11.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514
②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526

III. 생산 및 유통개선

541

12.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지원(자율)	543
『농업(원예)구조개선』	558
I. 생산기반확충	560
13.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자율)	561
II.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615
14.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자율)	
①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617
②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629
1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①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	682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	694
③ 인삼계열화사업	718
16. 농산물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자율)	725
17. 농산물유통시설운영활성화사업(공공)	
①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737
18.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746
19.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① 농산물자조금조성	751
② 축산물자조금조성	761
20.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①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771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778
2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785
22.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789
23. 우수농산물지원(공공)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808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815
24.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공공)	846

Ⅲ.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871
25. 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자율)	873
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20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931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960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972
⑤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002
⑥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012
26.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1027
27.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1047
28. 과원폐원지원사업(자율)	1056

제3권 농업(축산)구조개선

I. 사육기반확충

I. 사육기반확충	1068
29. 사료사업지원(자율)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70
② 사료사업지원	1100
3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자율)	1108
31. 축산계열화사업(공공)	
① 가축계열화	1136
② 경주마육성	1149
32. 한우사업지원(공공)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156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1167
③ 품질고급화 장려금	1180
33. 가축개량사업(공공)	1194

II.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II.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247
34.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지원	1249

②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1262
③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	1281
④ 축산물등급판정	1289
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1296
⑥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329
⑦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1335
35.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1350
② 축산물검사	1356
③ 가축방역	1367
④ 가축공제	1389
36.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393
37. 축산업등록지원사업(공공)	1403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1411
I. 생산 및 유통개선	1413
38. 친환경농업육성(자율)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415
②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434
39.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1453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74
40.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1476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1482
③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	1493
④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1504
⑤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사업	1513
⑥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1527
41. 농림기술개발(공공)	1540

42. 지역특화시범(공공)	1549
43. 기술보급(공공)	
① 새기술보급시범	1556
② 품목별 전문교육	1563
III. 인력육성	1569
4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율)	
① 창업농지원사업(자율)	1571
45. 농업인자녀지원(공공)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08
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620
46.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23
IV. 소득보전	1661
47. 농업직접지불제(공공)	
① 경영이양직접지불	166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1700
③ 논농업직접지불	1715
④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1752
⑤ 친환경축산직불	1786
⑥ 쌀생산조정제	1827
48. 농업인재해공제(공공)	1852
49.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공공)	1859
V. 소득원개발	1877
50.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① 농촌관광휴양사업	1879
51.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1910
52.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①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1923
② 농업인경영회생지원	1930
VI. 생활환경개선	1944

53. 페미널 수거지원(자율)	194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1951
I. 경영기반 확충	1953
54.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자율)	1955
55. 영림계획(자율)	1959
56. 사방사업(공공)	1964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70
57. 임산소득증대(자율)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972
② 조정수·분재생산	1986
③ 산림복합경영	1992
④ 산림소득종합자금	1998
58. 목재이용·가공 지원(자율)	2017
59. 산림조합육성(공공)	2028
6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공공)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2033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2070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077
III. 인 력 육 성	2085
6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자율)	2087
62.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2092
② 임업기술지도	2098
③ 사유림협업경영	2102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2107
63. 식물자원 보전관리(공공)	2109
V. 산림자원조성	2115
64. 해외산림투자지원(자율)	2117
65.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2124

【농촌개발】

I . 생산 및 유통개선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정황근, 사무관 김승환)입니다.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영농규모·작목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 저투입농업을 기반으로 저농약·무농약·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업 추진목표의 단계적 향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 지원으로 파급효과 제고 및 내실화
- 친환경 쌀 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으로 농업환경 오염원 경감(축산분뇨자원화, 푸른들가꾸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추진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범사업 실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참여확대로 소비자 신뢰 제고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안)	2006이후
친환경농업육성지원		개소 1,500	568	44	33	34	42	779
사 업 비	계	621,863	171,178	16,130	15,630	12,630	16,800	389,500
	보 조	245,303	66,043	6,515	5,115	5,115	6,720	155,800
	국고용자	29,500	29,500	-	-	-	-	-
	지 방 비	220,722	41,835	6,389	4,989	4,989	6,720	155,800
	자 담	126,338	33,800	3,226	5,526	2,526	3,360	77,900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개소 1,466	552	26	33	34	42	779
사 업 비	계	617,800	169,000	15,500	15,000	12,000	16,800	389,500
	보 조	242,620	64,300	6,200	4,800	4,800	6,720	155,800
	지 방 비	219,720	41,400	6,200	4,800	4,800	6,720	155,800
	자 담	125,960	33,800	3,100	5,400	2,400	3,360	77,900
	국고용자	29,500	29,500	-	-	-	-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개소 34	16 ('99~'01)	18 ('02~'04)	-	-	-	-
사 업 비	계	4,068	2,178	630	630	630	-	-
	보 조	2,683	1,743	315	315	315		
	지 방 비	1,002	435	189	189	189		
	자 담	378	-	126	126	126		

※ 친환경시범마을사업은 지구조성사업의 규모확대를 위해 '04년으로 사업종료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상수원 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2)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농경지가 10ha 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다만, 10ha·10호미만 지역이라도 시·도가 지구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농협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벼 재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과거 대·소규모지구(종전 친환경가족농단지 포함)로 지원받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다만, 동일한 시설·장비를 해당농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 작 목
 - 벼·일반 밭작물·채소·과수·특작·축산 등 전작목 (화훼류는 제외)

(3)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작목(벼 등)은
하향 조정가능 (평균지원단가 4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① 하우스, 축사 등 개별 생산시설·장비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투자가능
 - ②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4) 지원대상사업 (사업메뉴)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 목재과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 ○ 축산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과쇄기 등 토양 관리시설·장비 ○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 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성페르몬 등) ○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 개별이용 가능 시설장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4. 친환경농업 기술 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교육용기자재(PC 등), 기타 친환경농업 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5.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5) 사업시행요령

-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앞(라)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저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토록 지원
- ③ 시·도지사는 시설과 장비 사업별 표준단가를 산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단가, 소비자가격 및 타 시·도 사업단가 등을 참작하여 표준사업비를 산출하고, 시도별 동일한 시설과 장비는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④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무농약재배 이상 친환경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
- ⑤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 ⑥ 앞(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1~3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전체 사업비의 80%이상을 투자하며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i) 앞 「(4) 지원대상사업메뉴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ii) 사업메뉴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위의 사업메뉴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가능
 - (iii) 사업메뉴 「4.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1~3"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가능

- (iv) 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사업메뉴 1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가 사업지구에 이미 갖추어진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에 투자가능
- (v) 1~3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메뉴 1항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는 초과 투자할 수 있음
- ⑦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가능
 -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하며,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⑧ 축산분뇨자원화(퇴비·액비화)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 및 퇴비(액비)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분뇨자원화(퇴비·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 실시
- ⑨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 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 ⑩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중 가공시설, 예냉시설·저온저장고 등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지원은 필요성·타당성 검증 후 지원
- ⑪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및 트럭 등 일반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⑫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됨.
- ⑬ 지원대상 사업메뉴 외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판단하에 지원이 가능함. 다만,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⑭ 지원대상 사업자 중 최근 5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함. 다만, 과거 지원 후 친환경 인증 획득성과가 있고 실천 우수지역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 설치된 공동 시설의 규모 확대·증축시는 지원이 가능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개소 42	백만원 16,800 (100%)	6,720 (40%)	6,720 (40%)	3,360 (20%)

※ 1개소 평균 4억원 지원기준임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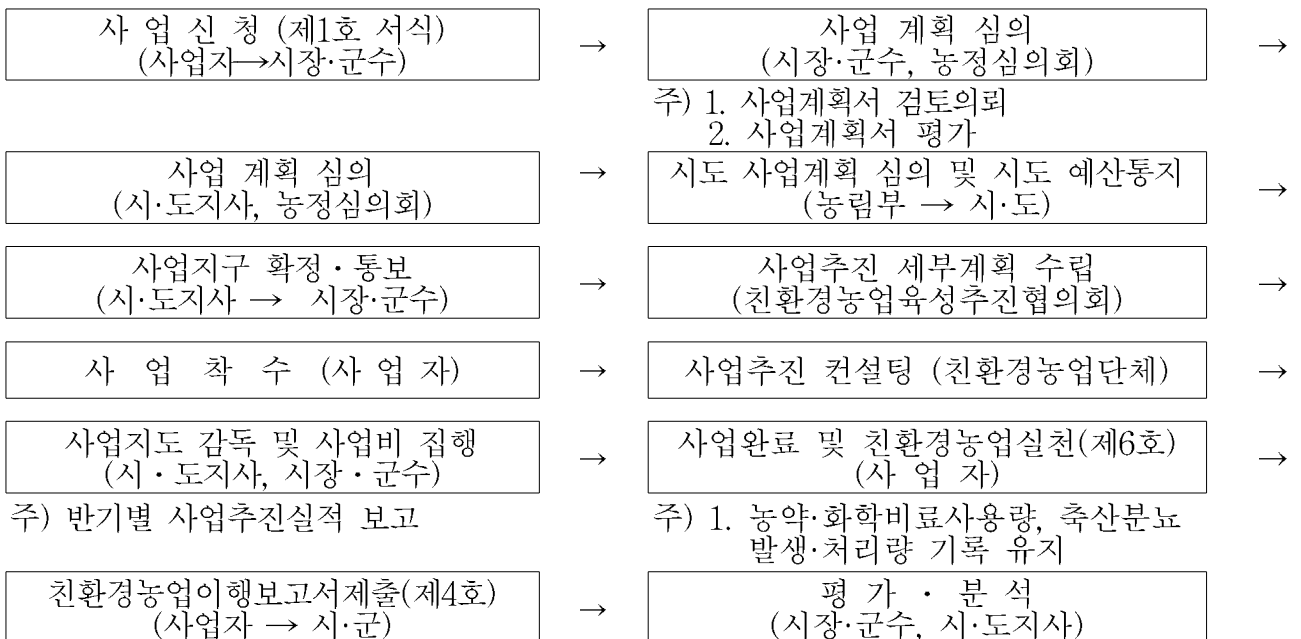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0~1)
- 시·도 : 농정담당부서 (농산과·농산유통과·농산지원과 등)
- 시·군 : 농정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산업과·농정과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주) 연1회 친환경농업 이행상황 제출(10년간)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행정·지도기관 및 농관원, 농협관계자 등 관계전문가
 - 임무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확정, 사후관리 지도 등
- 세부사업 계획 수립·승인
 - 시·도지사는 농림부로부터 타당성이 심의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예산 통지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표농가 등과 협의하여 표준사업비 적용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 관리자 및 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특히 친환경 쌀생산 관련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별지3호서식)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 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3) 친환경 쌀 생산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수립·승인시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역여건과 영농규모, 참여농가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 투자계획에 퇴비화시설 등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쌀 재배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지구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4) 유기축산물 생산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농가가 유기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시범 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세부내역을 농촌진흥청 축산 연구소에 통보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검토를 포함한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농가 교육용 지침을 작성하여 사업 시행 전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등 기술 지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될 수 있도록 함.

(5)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 시·군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분뇨 액비화시설이 가축사육두수, 살포대상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설치되도록 지도
- 특히, 액비 살포대상 농경지의 토양검정 및 살포량, 살포시기 등 사용기술 지도 적극실시

라. 기타사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부터	10년간	○ 친환경농업 이행기간 및 장비 내구연한을 감안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10년간(장비는 5년)타인에게 시설을 양도를 할 수 없음.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부터	5년간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 운영 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조성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축산분뇨의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구내 농업 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매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고 사업참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및 품질관리 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적극 지도
- 농 협
 - 지역농협장은 사업지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농협 자체유통망 이용 알선,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 이용, 위탁판매 주선, 민간 단체와 직거래 알선 등 유통·판매 지원과 판매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
 - 유기축산물생산 사업대상농가에 대해서 유기축산물 생산관리 지도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전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
 -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참여 등 지구내 참여농가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 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나. 보 고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 3.15.까지) (익년 3.30.까지)

(별지 제1호서식)

(상·하반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 :)

조직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소 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전환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사업지구 명칭) :
2. 주 민 등 록 번 호 :
3. 성 명 :
4. 사 업 변 경 내 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	금 액	시설별	금 액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 시장·군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지 구 명		위 치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 군수 귀하</p> <p>* 붙임 : 시설물공사 세부내역 1부</p>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

(농가명 :)

일자별	농 약 사 용				화 학 비 료 사 용				축 산 분 뇨			비 고
	대상 작물	면적 (ha, 평)	농 약 품목명	사 용 량 (kg)	대상 작물	면적 (ha, 평)	비 료 명	사 용 량 (kg)	축 종 (두수)	발 생 량 (톤)	처 리 이 용 량 (톤)	

※ 축산분뇨 월 발생량 : 한우(마리수) × 438kg
 젓소(“) × 1,368kg
 돼지(“) × 258kg
 닭 (“) × 3kg

※ 참여농가는 농약·화학비료 사용량과 축산분뇨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농가의 확인(반기 1회)을 받아 농가별로 비치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항 목 별	사업시행전 (A)	사업후(1년차) (B)	사업후(2년차) (C)	현재 (E)	대비 (현재/시행전)	비고
① 농약사용량	kg	kg			%	
② 화학비료 사용량	kg	kg			%	
③ 유기질비료(퇴비등)사용량	kg	kg			%	
④ 축산분뇨(처리량/발생량)	()/() 톤	()/()톤				
⑤ 친환경농업 유지·개량 (토양)	산 도 유 기 물 규 산 중 금 속	% ppm ppm	% ppm ppm			
⑥ 친환경농법	오리농업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	호 면적	호 면적			
⑦친환경인증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호 ha	호 ha			

년 월 일

OO 시장·군수 귀하

OO 친환경농업지구 대표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 대표자는 매년 사업지구 친환경농업이행 보고서를 사업시행전부터 1년차 부터 10년차 까지 조사하여 익년 1.31.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①항~④항은 농가평균사용량
- ⑤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조사한 성적표를 첨부할 것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시행지침은 2006년도에 변경·수정·보완될 수 있음.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2)항의 지원대상기준에 맞아야 함

다.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또는 지역농협)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한 다음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 (라)항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현장확인 포함)한 다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검토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붙임5)를 작성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20점)	㉠사업예정지 위치 (5점)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규제 지역 : 5 ○일반지역 : 3	○지역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사업참여농가 소유농경지의 연결·집단화 정도
	㉡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5점)	○ 30호이상, 40ha이상 : 5 ○ 20호이상, 20~40ha : 3 ○ 10호이상, 10ha이상 : 1	
	㉢사업참여 형태 (5점)	○ 지역농협 : 5 ○ 생산자단체 : 4 ○ 작목반 등 영농조직 : 2 ○ 개별농가(비조직화) : 1	
	㉣사업참여농경지 집단화 정도(5점)	○ 100% : 5 ○ 90%이상 : 4 ○ 80%이상 : 3 ○ 70%이상 : 2 ○ 70%미만 : 1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p>②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30점)</p>	<p>㉠ 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여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유기~저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p>㉡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 계획의 적정성(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농업 실천여부 ○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p>㉢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배양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여부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5, 부적합:1 ○ 적합:5, 부적합:1 ○ 실천계획수립: 2 미수립: 1 ○ 적 정: 3 부적합: 1 ○ 적정:2, 부적합:1 ○ 적정:3, 부적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족여부와 지역농업여건, 친환경 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 토양개량과 화학비료 감축 위한 자연순환 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 미생물 배양기술과 설치규모의 적정성, 친환경농자재 생산 계획 적합성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p>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시설 수립 적정성(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투자계획 ○기존 생산·유통시설 활용 여부(비닐하우스, 축사, 집하장, 예냉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5, 부적합1 ○적합:5, 부적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영농여건, 영농면적, 작목등을 감안 객관적으로 평가 ○ 기존생산·유통시설은 정부지원 또는 자체자금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장비류
<p>③사업 수행능력 (50점)</p>	<p>㉕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4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직거래 등) 여부 ○참여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저농약~유기) 면적 <p>㉖ 사업수행 관련사항(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 (부지사용 승락 포함) ○자부담금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보:5, 미확보:1 ○30ha이상 : 40 ○20ha이상 : 30 ○10ha이상 : 20 ○5ha 이상 : 10 ○5ha 미만 : 5 ○확보:2, 미확보:1 ○확보:3, 미확보: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단체·소비자 단체등과 직거래 계약 여부 ○ 지구별 사업참여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와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붙임6)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05.2.28한)하고 시·도는 농림부에 보고(2005.3.30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선 순위를 부여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2005.8.31한)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의 시·도별 사업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통지(안)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지구 선정

라.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1)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2)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3)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4)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1. 현황

가. 기본현황

- 위치 : 사업대상지역 등
- 인구 : 세대수, 농가수, 인구수(남, 여)
- 농가현황 : 노동력, 경지면적, 영농규모, 농법 등
 - 농가수 : 전체 호 (참여농가 : 호)
 - 경지면적 : 전체 ha (논 밭)
 참여 ha (논 밭)
- ※ 품목별 참여면적 :
 - 영농규모 : 경종, 축산, 비닐하우스
 - 농 법 : 일반농법농가수 ha, 친환경농업실천농가수 ha
 - 친환경인증 농가·면적 :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구분)

나. 조직현황

- 대표자(지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 학력, 경력 등 상세히 기록
- 조직 : 조직명, 설립년월일, 회원수, 사업내용 등 상세히 기록

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 :
- 총투자금액 : 백만원 (자부담금액)
- 본 사업과 연계가능여부 및 활용계획

2. 지구의 특징

-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 나. 지역농업여건

3.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 다. 친환경 쌀 생산·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 관련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000외 명으로 기재)

-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 사. 투자 예상효과
-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2.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붙임2)
3.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4.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에서 작성)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2)

참여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경작 규모	친환경인증 취득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여	부	벼	축산	채소	기타	직거래	시중 판매
		ha								

* 작목입식 현황은 주소득 기준으로 분류

(붙임 3)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ha
- 사업대표자 : 의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4)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m^2 (평)중 m^2 (평)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시장·군 수 귀하

(붙임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붙임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 작성 → 시·도 제출용)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20점)	㉠사업예정지 위치 (5점)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규제 지역 : 5 ○일반지역 : 3	
	㉡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5점)	○30호이상, 40ha이상 : 5 ○20호이상, 20~40ha : 3 ○10호이상, 10ha이상 : 1	
	㉢사업참여 형태 (5점)	○ 지역농협 : 5 ○ 생산자단체 : 4 ○ 작목반 등 영농조직 : 2 ○ 개별농가(비조직화) : 1	○지역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참여농경지 집단화 정도(5점)	○100% : 5 ○90%이상 : 4 ○80%이상 : 3 ○70%이상 : 2 ○70%미만 : 1	○ 사업참여농가 소유 농경지의 연결·집단화 정도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p>②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30점)</p>	<p>㉠ 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여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유기~저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p>㉡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 계획의 적정성(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농업 실천여부 ○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p>㉢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배양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여부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5, 부적합:1 ○ 적합:5, 부적합:1 ○ 실천계획수립: 2 미수립: 1 ○ 적 정: 3 부적합: 1 ○ 적정:2, 부적합:1 ○ 적정:3, 부적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족여부와 지역농업여건, 친환경 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 토양개량과 화학비료 감축 위한 자연순환 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 미생물 배양기술과 설치규모의 적정성, 친환경농자재 생산 계획 적합성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p>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시설 수립 적정성(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투자계획 ○ 기존 생산·유통시설 활용 여부(비닐하우스, 축사, 집하장, 예냉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5, 부적합1 ○ 적합:5, 부적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영농여건, 영농면적, 작목등을 감안 객관적으로 평가 ○ 기존생산·유통시설은 정부지원 또는 자체자금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장비류
<p>③사업 수행능력 (50점)</p>	<p>㉕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4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직거래 등) 여부 ○ 참여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저농약~유기) 면적 <p>㉖ 사업수행 관련사항(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 (부지사용 승락 포함) ○ 자부담금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5, 미확보:1 ○ 30ha이상 : 40 ○ 20ha이상 : 30 ○ 10ha이상 : 20 ○ 5ha 이상 : 10 ○ 5ha 미만 : 5 ○ 확보:2, 미확보:1 ○ 확보:3, 미확보: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단체·소비자 단체등과 직거래 계약 여부 ○ 지구별 사업참여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붙임 7)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도 → 농림부 제출용 >

순위	지구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100 점)	①지역영농 여건 등 (20)	②사업계획 수립적정성 (30)	

②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정황근, 사무관 김승환)입니다.

1. 목 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충족,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13년까지 전체 시설원예재배면적의 20%(20,000ha)를 천적방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에 천적구입비 지원
- 오이·토마토·파프리카 등 수출유망종목과 작물특성상 껍질째 먹는 딸기·고추 등 소비자가 농약안전성에 관심이 많은 작물위주로 지원
- 천적방제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과채류, 버섯, 포도 등 천적방제효과가 큰 작물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
- 2005년도에는 딸기·토마토·파프리카·고추 등 4개작물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 평가와 예산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작목과 지원규모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면적	2005 (예산안)	2006이후
사업량 (ha)		20,000	300	19,700
사 업 비	계	146,000	2,190	143,810
	보 조	73,000	1,095	71,905
	지 방 비	43,800	657	43,143
	자 담	29,200	438	28,762

※ 2006년 부터는 2,000ha 수준, 예산확보 추진 방침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유럽 등 농업선진국에서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수단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를 국내 농업에 도입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천적연구실을 설치하고 천적연구와 시험포운영 등을 통해 도입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민간역량의 신장으로 천적방제 토대 마련
-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화학비료사용량은 감소추세이나 원예작물에 대한 농약사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어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방제법 도입

(2)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딸기 · 토마토 · 파프리카 · 고추

* 2006년도에는 오이 · 포도 · 버섯류 등으로 대상작목 확대 예정

○ 대상농가 : 지원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1,000평 이상의 시설원예재배 농가 중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만, 작목반 등으로 집단화된 원예단지 1,000평 미만의 농가도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작목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 · 보급되는 천적구입비

(4)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지원단가 : 1ha당 7,000,000원

- 작목별 1ha당 신청할 수 있는 기준단가 예시

- 딸기 6,000,000원, 토마토 7,000,000원, 고추 7,000,000원, 파프리카 16,000,000원(7,000,000원까지만 신청 가능)

* 천적방제대상 작물의 ha당 실제 방제비용이 7,000,000원 미만일 경우는 실제방제비용을 적용하여 1ha당 단가를 산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 천적방제대상 작물의 ha당 실제 방제비용이 7,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0,000원까지만 보조금을 산출하여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농가가 부담한다.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300ha	2,190	1,095	657	438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2005년도 사업신청요령

(1) 신청서 제출기관 : 농가 → 시·군·구 → 시·도 → 농림부

(2) 신청자격

- 대상작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 대상농가 : 지원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1,000평이상의 시설원예재배 농가 중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만, 작목반 등으로 집단화된 원예단지 1,000평 미만의 농가도 지원 가능
- 시군구 신청요건 : 교육·컨설팅 등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시·군·구별 총 신청면적이 최소 3ha이상일 경우만 신청가능

(3) 신청절차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거주하는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대상자 평가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받은 사업신청서와 사업대상자 평가 집계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대상자 평가집계표(별지 제3호서식)를 농림부에 제출
- 신청기한 : 2004년 10월 22일까지

(4) 제출서류

- 농가 →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구 → 시·도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 농림부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작물재배 온실의 환경제어가 가능하여 천적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 ① 수출원예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 ② 원예재배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
- ③ 개별 원예수출 농가 → ④ 개별 원예재배 농가

* 사업대상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했을 경우 자발적 방제확산을 위해 추가방제면적에 대해 익년도 선정시 시도(시군)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2006년부터)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자체 재원으로 천적방제를 추진한 경우 자체 방제면적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배정시 농림부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2006년부터)

○ 선정절차

- 농림부는 각 시·도가 신청한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시·도별 국고 예산(안) 통지(2004. 10월중)
- 각 시·도는 농림부가 통지한 예산(안)과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시·군·구별 예산(안) 통지(2004. 11월중)
- 각 시·군·구는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감안, 통지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업 기술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04. 12월중)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천적공급업체와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는 동 서식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6) 기타사항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청이 가능함을 홍보하고, 농가 및 공무원 교육 확대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시달, 시도별 예산배정·자금교부, 홍보
- 시·도지사 : 예산신청, 시·군 예산통지, 시·군 지도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접수, 사업자선정 및 지도·감독, 사업비정산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0~1811, Fax 507-2096)
- 시·도 : 농정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구 : 농정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1) 2005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농가 → 시·군·구 → 시·도 → 농림부

(2) 신청자격

- 대상작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 대상농가 : 지원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1,000평이상의 시설원예재배 농가 중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만, 작목반 등으로 집단화된 원예단지 1,000평 미만의 농가도 지원 가능
- 시군구 신청요건 : 교육·컨설팅 등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시·군·구별 총 신청면적이 최소 3ha이상일 경우만 신청가능

(3) 신청절차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거주하는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대상자 평가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받은 사업신청서와 사업대상자 평가집계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대상자 평가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농림부에 제출
 - 신청기한 : 2004년 10월 22일까지

(4) 제출서류

- 농가 →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구 → 시·도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 농림부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작물재배 온실의 환경제어가 가능하여 천적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 ① 수출원예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 ② 원예재배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 ③ 개별 원예수출 농가 → ④ 개별 원예재배 농가
- * 사업대상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했을 경우 자발적 방제확산을 위해 추가방제면적에 대해 익년도 선정시 시도(시군)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2006년부터)
-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자체 재원으로 천적방제를 추진한 경우 자체 방제면적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배정시 농림부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2006년부터 적용)

○ 선정절차

- 농림부는 각 시·도가 신청한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시·도별 국고 예산(안) 통지(2004. 10월중)
- 각 시·도는 농림부가 통지한 예산(안)과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시·군·구별 예산(안) 통지(2004. 11월중)
- 각 시·군·구는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 시군 농업특성을 감안하여 통지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04. 12월중)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천적공급업체와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는 동 서식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6)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사업변경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 시·도 : 농림부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천적방제계획 수립, 시·군에 통보

○ 시·군·구 : 시·도의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계획 수립 시행

- *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와 사정이 변경되어 선정된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함

(7)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 선정 후 시·군·구 사업대상자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시·도지사에게 연간 사업비 배정요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

○ 시·도지사

- 시·군·구 사업비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연간 사업비 배정요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신청

(나) 사업비 집행

○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가가 천적공급업체와 천적방제 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가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대상작목의 방제면적과 지원단가에 따라 사업 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천적공급자의 공급증명서와 농가확인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천적공급계약서를 취합한 후 천적공급업체별로 공급업체에 직접지급(농가에 사전 통지)
- 다만, 보조금 집행 전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부담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작목의 한 작기단위로 산출하여 지원한다.
 - 작목의 재배기간이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산출 지원
 - 또한 작목의 재배기간이 사업 전년도에 증식하여 사업년도 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그 한 작기를 1년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지원가능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예) 토마토 : 작기가 2년에 걸친(2004.10.1 정식 ~ 2005.5.31 수확완료) 작목을 재배 농가가 2005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2004.10.1~2005.5.31 까지를 한 작기로 간주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예) 토마토 : 2개작기(2004.10.1 정식~ 2005.5.31 수확완료 후 2005.10.1 정식~ 2006. 5.31 수확완료)에 걸쳐 작목을 재배한 농가가 2005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2005.1.1 ~ 5.31 재배기간과 2005.10.1 ~ 2005.12.31을 한 작기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없음

(8) 사업추진 일정

일 정	주 관	추 진 내 용
○사업전전년도 11월	농림부	○사업추진지침시달
○사업전년도 2월말까지	농 가	○시·군에 익년도 사업신청
○사업전년도 3월15일까지	시·군·구	○시·도에 익년도 사업신청
○사업전년도 3월말까지	시·도	○농림부에 익년도 사업신청
○사업전년도 10월15일까지	농림부	○사업예산 확보후 시·도예산(안)통지
○사업전년도 11월15일까지	시·도	○시·군예산(안)통지
○사업전년도 12월중	시·군·구	○사업자 선정통보 및 천적방제계약 체결 등 사업시행 요청 ○시·도에 사업선정결과 보고 및 보조금 예산배정 요구
○사업년도 1월중	시·도	○농림부에 연간 보조금예산 배정 요구
○사업년도 매분기별	농림부	○연간교부계획통보 및 매 분기별 자금교부
○사업년도 매분기별	시·도	○시·군에 분기별 사업비 송금
○사업년도 월별 또는 분기별	시·군·구 농 가	○사업추진내역 확인 및 자부담금 지급증빙 확인 후 천적공급비용 지급
○사업종료시 ○회계년도 종료시	시·군·구	○사업종료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검정 및 사업비집행 완료후 사업실적 시·도에 보고
○사업종료시 ○회계년도 종료시	시·도	○시장·군수 사업집행결과 보고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고 농림부에 정산결과 보고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가)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립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잔액을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

(나)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기간중에 계약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천적방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가 및 관련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로 천적방제 농가별, 작목별 방제현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2) 교육·컨설팅 지원 : 시·군·구, 시·군농업기술센터, 천적공급업체

- 시군구 또는 기술센터는 관내 천적방제 농가의 해충발생, 천적투입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농가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시·군·구는 교육비 등 행정지원)
- *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컨설팅트 양성교육계획 별도 시달 추진계획

- 천적공급업체는 천적 공급 후 농가가 천적방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도록 농가교육 및 컨설팅 지원 협력
- 천적공급업체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림사업) 공급업체로 지정신청하는 등 농가의 전문컨설팅을 위한 준비와 시스템 구축

(3) 사업취소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가나 천적공급업체가 천적방제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사업자 변경 또는 공급업체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농가 또는 공급업체에 관련법령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보고사항

- 시·도별 사업자 선정결과 및 분기별 사업예산 배정 요청 : 사업년도 1월31일 까지
- 시·도별 사업집행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사업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와 동일함으로 2005년 사업신청요령에 따라 신청, 다만, 신청대상작목은 아래와 같이 확대할 계획임
- 신청대상작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포도, 버섯
- * 2006년도 예산확보상황을 보아가면서 상기 작목이외에 과채류와 엽채류 등으로 방제작목 확대방침을 2005년도 중에 추가 통보 예정

[별지 제2호서식]

사업대상자 평가표

<시·군·구 작성 → 시·도 제출용>

신청농가 또는 법인명 : 0 0 0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계		
1) 온습도 등 환경제어 가능성	양호(10), 보통(8), 미흡(5)	
2) 방제대상 시설현황	유리온실(10), 비닐온실(8), 비가림시설 등(6)	
3) 방제신청면적	3,000평이상(10), 2,000평이상(8), 1,000평이상 (6)	
4) 사업지역의 단지화, 규모화 여부	수출단지(10), 원예단지(8), 개별수출농가(6), 개별원예농가(4)	
5) 친환경농산물인증여부	유기·전환기유기(10), 무·저농약(8), 품질 인증·관행(6)	
6) 기천적방제실적	3년이상(5), 2년이상(4), 1년이상(3) 3,000평이상(5), 2,000평이상(4), 1,000평이상 (3)	
7) 천적교육 이수실적	3회이상(10), 2회(8), 1회(6)	
8) 판매처	수출 (10), 국내시장 판매 (8)	
9) 천적방제기술의 수용능력과 실천의지	양호 (20), 보통 (16), 미흡 (10)	

[별지 제3호서식]

사업대상자 평가 집계표

<시·군·구 → 시·도(제출) → 농림부 제출용>

순위	신청인	평가점수	재배작물	재배면적	천적방제신청면적
1					
2					
3					
4					
:					
:					

[별지 제4호서식]

천적방제사업자 선정통지서

수신 : 사업대상자 ○ ○ ○ 귀하

발신 : ○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지원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지원 은실면적	동별 : 1동 평, 2동 평, 3동 평, 4동 평, 5동 평, 6동 평		
방제지원액	총 지원액 : 원 (보조금 : 원, 농가부담금 : 원)		
시설유형	<input type="checkbox"/> 비닐 <input type="checkbox"/> 유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증여부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전환기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저농약 <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 <input type="checkbox"/> 관행		
재배유형	<input type="checkbox"/> 토경 <input type="checkbox"/> 양액 <input type="checkbox"/> 수경 <input type="checkbox"/> 암면 <input type="checkbox"/> 베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문제해충	<input type="checkbox"/> 진딧물 <input type="checkbox"/> 응애 <input type="checkbox"/> 은실가루이 <input type="checkbox"/> 총채벌레 <input type="checkbox"/> 잎굴파리 <input type="checkbox"/> 나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존방제방식	<input type="checkbox"/> 사용농약 : <input type="checkbox"/>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평 <input type="checkbox"/>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백화점·대형할인점 <input type="checkbox"/> 전문매장 <input type="checkbox"/> 도매시장 <input type="checkbox"/> 농협 <input type="checkbox"/> 직거래 <input type="checkbox"/> 생협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기 작목의 방제지원면적에 대해 귀하를 2005년도 천적방제 사업자로 선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급업체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월 일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대상면적	총 평 (총 동수 : 동)
방제대상 온실면적	동별 : 1동 평, 2동 평, 3동 평, 4동 평, 5동 평, 6동 평		
공급가액	총 지급액 : 원 (보조금 : 원, 농가부담금 : 원)		
시설유형	<input type="checkbox"/> 비닐 <input type="checkbox"/> 유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증여부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전환기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저농약 <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 <input type="checkbox"/> 관행		
재배유형	<input type="checkbox"/> 토경 <input type="checkbox"/> 양액 <input type="checkbox"/> 수경 <input type="checkbox"/> 암면 <input type="checkbox"/> 베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문제해충	<input type="checkbox"/> 진딧물 <input type="checkbox"/> 응애 <input type="checkbox"/> 온실가루이 <input type="checkbox"/> 총채벌레 <input type="checkbox"/> 잎굴파리 <input type="checkbox"/> 나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존방제방식	<input type="checkbox"/> 사용농약 : <input type="checkbox"/>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평 <input type="checkbox"/>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백화점·대형할인점 <input type="checkbox"/> 전문매장 <input type="checkbox"/> 도매시장 <input type="checkbox"/> 농협 <input type="checkbox"/> 직거래 <input type="checkbox"/> 생협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기 작목의 방제대상면적에 대하여 천적공급계약을 “갹”과 “을”간에 체결하며, “갹”은 대금지급의무를, “을”은 천적공급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갹”과 “을”간에 천적방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회수조치 등에 응할 것을 약정합니다.

“갹” : 방제사업자(농가, 영농조합 등) ○ ○ ○ (인)
 “을” : 천적회사 대표 ○ ○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예산배정요구서

수신: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우리 시·도(시, 군, 구)의 천적방제사업자 선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단 위 : 천 원)

사업자 선정결과			ha당 단가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액			
작목	농가수	면적(ha)		계	1/4	2/4	3/4
계							

[별지 제7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보고서

수신: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천적방제사업에 대한 집행결과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 위 : 천 원)

사업집행실적			ha당 단가	사업비 정산 결과		
작목	농가수	면적(ha)		예산액(A+B)	집행액(A)	잔액(B)
계						

39 농업 종합자금 지원 (자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권제한, 사무관 최이규)입니다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 자금을 통합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 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수익성·재무구조평가 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자금대출후에는 경영실태 점검등 사후관리도 일관 담당
 - 전문적인 경영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10백만원 이상)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및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당 연도 예산중에서 각각 200억 및 30억원 한도내에서만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2조(후계농업인육성), 제13조(전업농업인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2항
- 농어촌정비법 제66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 종자산업법 제165조

4. 2005년도 지원계획

	2004 사업비			2005 사업비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백만원 778,900	115,800	663,100	백만원 851,100	170,220	680,880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과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원)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촌가공사업자 및 농기계생산업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05년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 '05년도 후계농업인은 대출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사업 및 지원규모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한 범위내에서 종합자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

※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의 배정기준(업체규모별, 농기계종류별)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원예특작, 축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시설·개보수·운영자금과 농기계자금 지원
-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에 한하여 지원
- 농촌가공산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협동조합),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법인,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 지원

*** 지원 제외**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다만, 인삼분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신청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투자·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저장업자·관광농원사업자·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5억 원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조합원 5인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등록(제재) 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수산업, 임업(표고버섯 포함)종사자

2) 지원조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①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개보수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객토자금,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②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③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①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기계생산지원,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지원 (다만, 부지구입비는 제외)

②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사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농기계 개발보급 등 우량농기계 생산지원

③ 《농촌가공산업육성》

- 우리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농가소득증대와 고유식생활문화 계승발전 및 특산품생산단지 조성·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업(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 개보수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 자금

- 2년 이내 상환(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거치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1년이내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자금용도 : 상세한 것은 「6. 세부사업내용」 참조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시설, 토지매입,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지원 등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시]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존 시설물 구입시 지원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세부사항은 부록 :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지침 참고)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 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고)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경작중인 농지이외의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 (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 노지 300평미만, 시설부지 100평미만 지원제외
-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객토(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

* 번식용 한우암소(한우, 암송아지, 육성우만 해당)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구매)소요액은 지원제외)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시에는 지원 가능

*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원자재구입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사용 가능(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가능

*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 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상 시가가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나. 사업추진체계

1)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 “취급사무소”)**

○ 농협 시·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

*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업무를 취급함

3) **자금운용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

4)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02) 500-1682~83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02) 500-1849~50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1864~5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1873~4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1896~7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02) 500-1927~9
식량생산국 농업기술지원과 (02) 500-1789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2) 500-1805~06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02) 500-1964

5) 대출기관 연락처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 (02) 397-6533~39
 - 시·도지역본부 : 정책자금 담당부서
 - 시·군지부 : 농업금융 담당부서
- 회원조합(별도 공시) : 정책자금 담당자

다. 자금지원결정

1)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사무소에 신청
 -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삼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도기관에서 자문·상담을 실시(시설자금에 한함)
 -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지도기관에도 비치·안내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 관광농원·농촌가공사업(추가시설 설치 포함)의 시설자금 신청자는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승인서를 취급사무소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자금지원결정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
 - 농·축·삼협은 사전에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시·군과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구입·생산지원자금, 객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에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
- 취급사무소는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군청에 통지(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삼협에 통지

3)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재무·경영평가 포함)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토지매입자금의 경우는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토지매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회

< 중점평가 항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가입농가
- 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품질인증 등)
 -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

- 신지식농업인, 새농민상 수상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공동마케팅조직에 참여한 회원농가
 - 원예전문생산단지 중 최우수·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
 -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농가
 - 우량품종경진대회 수상경력 농가
 - 우량종자개발사업자(업체별 전문작물 및 채소, 화훼류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 취급대상 사업자)
 - 방역차원에서 종돈시설과 정액시설을 분리 또는 이전하는 축산경영체에 대한 지원
 -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주관하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종돈장을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이전지원 포함) 및 회계관련자격증 보유자
 - 품질개선노력 : 규격돈생산, 거세축생산, 종축등록생산, 우수축출하, 1등급 월유생산 등
 - 기타 :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객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 농업경영정보제공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축종)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삼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 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축·삼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
-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
-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지도계통 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

-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민간컨설팅, 농림부·9개도 주관)
-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개인·기관·회사별로 전문분야, 컨설팅실적, 주요 경력 등

라. 자금대출

-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등 정책여신 관련 규정과 각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종합자금 회원조합 취급분의 경우, 희망조합에 한해 농협중앙회 이차보전 기준금리로 상호금융자금 사용을 허용
- 이자는 1년 후취원칙

마.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시설·개보수·농기계자금 중 용자지원금의 검정·정산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름(가축입식비의 검정·정산시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축등록을 하는 등 구입대상가축의 개체관리에 입각한 증빙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토지매입자금의 정산은 관인계약서와 토지취득관련 납세자료에 의함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시에 축협에서 한우암소에 대해 발급한 매매증명서도 검정·정산의 증빙으로 인정

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지원으로 충당한 토지·시설·설비·장비등을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때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때
 -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확인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 *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시·군청 농정담당부서에 통지·송부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농협중앙회는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지원 추진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의 감사지도부 및 농림부에 보고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축·삼협 지도업무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농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 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조력
 - 행정·지도기관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종합자금 1억원이상(금차 지원금 포함) 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가자금지원 중단
- 농협중앙회에서 승인, 지원한 경영체는 본부에서 집중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이상징후가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도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경영컨설팅을 우선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농가는 간이경영실태조사 실시
 - 경영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대출취급기관의 경영상태 분석·평가결과 자료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제공함과 동시에 동 자료를 축적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등에 활용
-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
 -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3월20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구입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 세부시행지침에 규정해야 함
 - 대출심사 완료 후 농기계를 선택토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선택권을 보장
 - 특정공급자 또는 특정제품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대출심사의 부당한 지연,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 특정공급자를 차별대우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출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아. 기 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농지법·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 정부시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6. 세부사업내용

월예·특작분야

가. 지원대상사업(예시)

- 채소·화훼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등 시설장비
 - 밭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 과 수
 - 키낮은 사과원 등 과원조성, 우량품종갱신, 단감·감귤등 밀식원 간벌
 - 관·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지주·덕시설 설치 및 개·보수자금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 특 작
 - 벼šet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또는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엽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등), 양잠산물 가공기자재(건조기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지원, 우량묘삼 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영농기반 현대화사업지원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시설은 50평 미만 규모만 지원
 - * 대형 저온저장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활용
- 기계장비 지원은 농기계분야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하우스병 예방 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온실부근에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관리실 또는 작업장 설치 권장
 -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다만, 700평이하 자동화비닐온실의 공사감리는 본 지침 적용을 배제함.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 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농기계분야 참조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 수질보전구역에는 축사등 사육시설의 신규지원 불가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은 납유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기계 분야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
 -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와 그 부속작업기, 선택품 등을 함께 구입할 때에는 일괄지원하되 기종별 용자 지원한도액, 상환조건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나. 유의사항

- 10백만원 미만인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에서 지원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이외의 기계장비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기계장비중 시설의 일부분으로 설치될 때에는 해당분야 시설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그 이외의 기계장비는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 농기계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10백만원이상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중 본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농촌가공 분야

가.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산업 : 국내산 농산물로서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품목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 :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섬유직물, 석재분야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 선정
- 지원대상자 : 사업 경영체별(개인, 법인)로 자금지원

나. 유의사항

-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촌인력 활용도가 낮은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예시) : 비닐제품, 종이상자, PP포대, 어망, 차광막, 면장갑, 타월, 건축용 석재, 타일 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육·채종시설, 장비 : 종자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첨단유전공학장비(고속원심분리기, 전기영동기 등), 종자품질관리장비(종자소독, 종자정선 및 가공기자재 등)
- 신품종 육종: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인건비,시험비 등)

나. 유의 사항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대상자는 지원 제외

7. 사업비 단가 참고자료

- 농림부 승인을 받아 농협중앙회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함

※ 기타서식은 '04년 지침과 동일

참고 : 지원대상제외토지 및 관련 법령

《 지원대상제외토지(예시)》

-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다만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부고시제1995-86호에 의한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의 토지
-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내의 토지
- 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토지
- ⑥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 간주되는 지역내의 토지(다만, 축사, 간이양축시설, 건조/보관시설, 잠실, 애누에사육장, 앞담배건조실, 농기자재보관시설 등 종합자금지원대상인 농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는 지원가능)
- ⑦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

《 관련 법령(예시)》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27조(공공시설 입지승인)
- 同法 제21조의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고시)
2. 건축법 제8조 내지 제9조(건축허가·신고)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및 제5항(공장설립승인)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사업계획 승인)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8.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 승인)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 제47조(공원계획결정 또는 변경결정)
10.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4항, 제6조(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11. 골재채취법 제23조(골재채취 허가)
12. 도로법 제25조의2의제1항 및 제2항(도로구역의 결정·변경)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2항(등록체육시설사업 계획 승인)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의제1항 및 제3항, 제45조의제1항 및 제2항(청소년 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 승인)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 제8조(과학관설립계획 승인)
1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제11조, 제13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
19.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2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21. 중소기업진흥법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2항(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2. 광업법 제47조의2의제1항 및 제2항(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2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조(송유관시설 등 공사계획 인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공사계획 승인)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제2항 및 3(가스사업실시계획 승인)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1항 및 2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18조제 1항 및 제 2항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8.수도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일반수도사업인가)
- 29.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토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0.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실시계획의 승인)
- 31.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 승인)
- 32.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 3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8조제 1항 및 제 2항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 34.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 제37조제1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 35.항공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 36.항만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항만공사 시행 및 시행허가)
- 37.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2조제 1항 및 제 2항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
- 38.농수산물가공산업육선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 5조제 4항 및 제 6항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 사업계획 승인)
- 39.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2조제 1항 및 제 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승인)
- 4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15조제 1항 및 제 2항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
- 41.농어촌정비법 제 87조제 1항 및 제 3항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 42.소하천정비법 제 5조제 3항 및 제 4항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승인 및 소하천 공사 허가)
- 4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14조제 1항 및 제 2항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
- 44.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 5조, 제 6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의 확정)
- 45.제주도개발특별법 제9조,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46.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47.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18조 및 제 33조, 제 34조 (시범도매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지정) 등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윤기호, 사무관 이대형)입니다.

1. 목적

- 기존 농업인 홈페이지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확산과 전업농과 회사 법인의 경영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경영을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홈페이지 농가의 운영활성화와 홍보 확대로 전자상거래 촉진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농가 발굴과 벤치마킹 기회 제공
- 홈페이지 농가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교육으로 운영능력 향상
-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9~'00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 업 량		306농가	500농가	500농가	200농가	200농가	3개소
사업비	계	387	324	400	340	516	489
	보 조	387	324	300	300	476	459
	응 자	-	-	-	-	-	-
	지 방 비	-	-	-	-	-	-
	자 부 담	-	-	100	40	40	30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기존 홈페이지 구축농가에 대한 운영시스템 기능 개선지원
- 농가의 신속한 운영지원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farmmoa.com 운영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홍보실시
-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 지원(농업인 정보화교육 활용)
- 우수농가에 대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원(10개소)
- 농업경영체 운영체계 분석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시범구축 지원('05 : 3개소, 50% 자부담)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경영체 정보 시스템 구축	3개소	489	459	459	-	-	3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농림부
- 사업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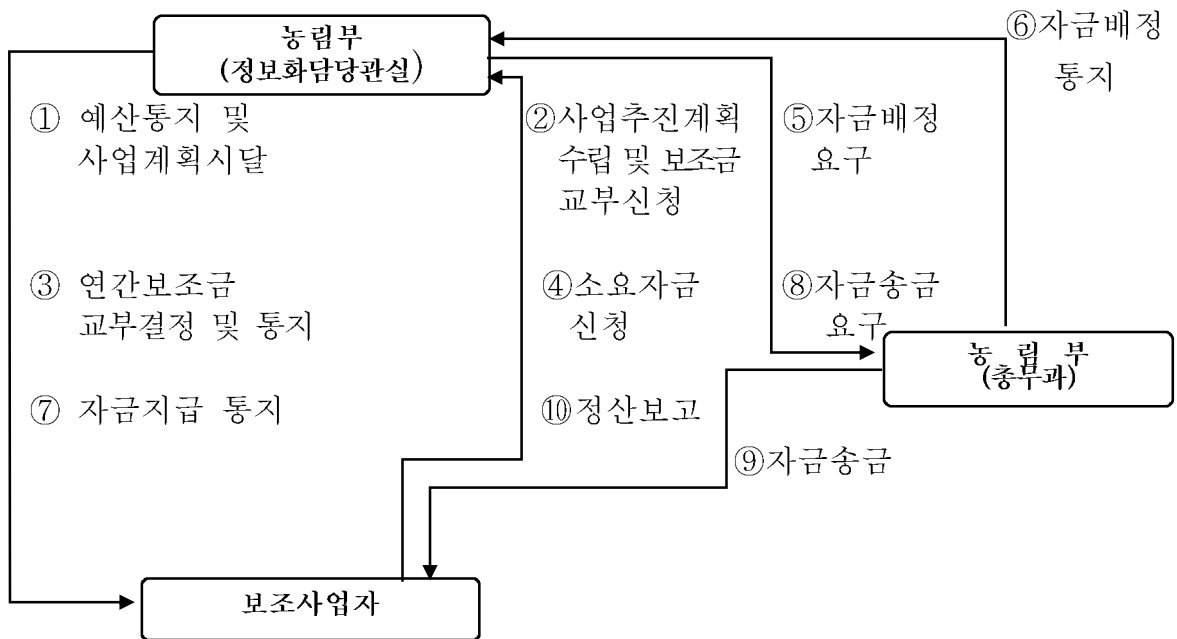
○ 기관별역할

수행기관	주요역할	비고
농림부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사업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보조사업자	- 세부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 농업인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 지도	주관기관
관련기관·단체 쇼핑몰운영업체	-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화 참여 - 농산물 통합몰과 연계 및 공동 사업 추진	

다. 사업기간 : 2005. 1. 1 ~ 2005. 12. 31까지(1년)

< 보조금 집행절차 >

가. 절차도



- ① 예산확정 즉시
- ② 사업계획시달 후 20일 이내
- ④ 분기별(1, 4, 7, 10월) 20일까지(문서도착 기준)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 및 잔액명세, 소요액 산출명세, 기타 사업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첨부
- ⑤ 매월 25일까지
- ⑩ 12.20까지

나.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농림부는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과정에 관하여 농림부 사업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때에는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 교부신청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때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운영에 투입되는 장비는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확산 등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 립 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사업 평가
- 보조사업자 : 사업시행, 운영 및 홍보
- 농업정보119대학 : 해당지역별로 홈페이지구축 농가의 유지 및 관리를 전담
 - 농가교육시 이력관리를 위한 「농가교육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학별로 농가위주의 분산 교육 실시

나. 보고 및 자료제출

- 보조사업자는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보고(4/4분기는 사업결과보고서로 대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2005. 1. 1~2005.12.20)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결과 및 정산자료를 농림부에 제출

다. 기타

-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운영체계 분석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연계하여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선정('05 : 3개소)

※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계획 수립

[별지 제1호 서식]

(/4)분기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일 : 200 . . .)

□ 사업명 :

사업책임자 :

(인)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완료여부	비 고
<input type="checkbox"/> ○			

※ 세부내역은 별첨

※ 필요시 횡으로 작성

② 농업인정보화교육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윤기호, 사무관 이대형)입니다.

1. 목적

-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해 농업·농촌정보화 촉진
- 도·농간, 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5년까지 농업인 정보화인력 40만명 육성
- 농업인의 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 제고
 - 농업인 수준과 농업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발
-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위주의 농가(마을)방문교육 확대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8-'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안)
사업량		천명 85	76	80	62	59	39
사 업 비	계	5,458	3,174	4,663	3,246	3,455	2,787
	보 조	5,458	2,849	3,700	2,700	2,909	2,553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시행기관)	-	325	962	546	546	234

* '01~'04년도 보조사업비는 정보화촉진기금임.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화교육 추진

(2) 농업인 정보화교육과정

○ 인터넷·컴퓨터 활용교육

- 읍면단위 지역농협,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초보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컴퓨터활용교육(18시간) 실시
- 18시간 중 3시간 온라인 학습(www.eduaffis.net) 배정
- 교육이수조건 : 온라인 교육사이트 에듀아피스 회원가입·설문

○ 농업정보활용교육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부 지역농협이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화교육(18시간) 실시
- 18시간 중 3시간 온라인 학습(www.eduaffis.net) 배정
- 교육이수조건 : 정보화수준(ICT)점검 2회(교육전·후)·설문

○ 농업경영정보전문교육

- 22개 농업계대학과 공모로 선정된 전문교육 기관이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이력관리, 전자상거래 마케팅, 농가경영정보관리 등 전문교육 실시(3-6개월 단기과정)
- 이론교육, 세미나, 워크샵, 현장학습 등을 병행하고, 3시간이상 온라인 학습(www.eduaffis.net) 배정
- 교육이수조건 : 정보화수준(ICT)점검 2회(교육전·후)·설문

○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 전국 농업계대학이 담당(농가방문교육)
- 홈페이지 구축 농가 및 농업용 S/W 활용농가 등 방문교육 실시

- 이동버스정보화교육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담당(마을방문교육)
 -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PC를 탑재한 버스로 신청한 마을을 방문(18시간)하여 교육 실시
- 온라인 원격교육(www.eduaffis.net)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담당
 -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수자의 반복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맞게 다양한 과정의 콘텐츠를 운영

(3) 지원내역

- 컴퓨터활용 교육기관(농협회원조합) : 교재지원 100%, 강사료 50% 지원
- 기타 교육기관 : 교재·강사료 100% 지원
- 농업인은 교육비 무료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비 합계	예 산 액(정보화촉진기금)			지방비	자부담 (시행기관)
			계	보 조	용 자		
정보화교육	39천명	2,787	2,553	2,553	-	-	23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 보조사업자
- 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협조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 및
농협중앙회(도지역본부)

- 교육집행·운영 등 교육시행기관
 - 컴퓨터활용교육 : 읍면 지역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보활용교육 : 시군 농업기술센터, 일부 지역농협
 - 농업경영정보전문교육 : 22개 농업계 대학, 공모로 선정된 전문교육기관
 - 농업정보119서비스 : 22개 농업계대학
 - 이동버스정보화교육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원격교육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2)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031-299-8911)
- 농촌진흥청 지원기획과(031-299-2668)
- 농협중앙회 여성복지실(02-397-5678)

다. 사업시행

농 립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 재원(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비 정산서 검토·확인 ○ 세부시행계획 심의·조정 ○ 사업시행결과 평가 및 교육기반조성 		
↓ 기본계획시달 및 사업지도	↑ 교육결과분석 및 사업정산서 제출	↓ 사업예산 지급
보 조 사 업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컨텐츠개발 및 교재제작·공급 -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및 교육시행상태 점검·관리 ○ 교육생확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시행결과에 따른 교육결과분석 및 사업비 정산신청 		
↓ 교육 컨텐츠 및 교재제공, 사업비 집행	↑ 교육결과제출	
교 육 시 행 기 관		
(읍면 지역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계 대학, 농업연수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및 강사 확보, 교육생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활용교육 : 읍면 지역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보활용교육 : 시군 농업기술센터, 일부 지역농협 - 농업경영정보전문교육 : 22개 농업계 대학, 공모로 선정된 전문교육기관 - 농업정보119서비스 : 22개 농업계대학 - 이동버스정보화교육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원격교육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림부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집행
 - 교육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추진일정계획을 수립,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 입력
- ※ 농업인 정보화교육 업무절차 및 방법 : [별첨1] 참조

(2)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은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시행
-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및 이동버스 교육은 분기별로 자금을 지급하고, 기초-중급-전문교육은 교육시행 건수별로 사업시행자의 교육결과보고서에 의거 지급(단, 공모를 통한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은 사업계획에 준하여 지급)

(3) 사업변경

- 교육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정보센터 등)은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농림부에 보고
 - 다만, 당초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기간 내에서 일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교육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

라.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컴퓨터활용교육, 농업정보활용교육 : 컴퓨터 초급자 또는 기초이상 능력 보유 농업인
- 농업정보전문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 보유 농업인
- 방문(119, 이동버스)교육 :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촌마을
- 온라인 원격교육 :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마. 우수기관 및 공로자에 대한 평가실시

- 정보화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우수기관 평가 실시
- 교육계획 대비 실적, 정보화교육 추진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추진

< 보조금의 집행절차 >

가. 적용원칙

- 사업시행기관(보조사업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나. 사업자금(보조금 개산금) 배정신청 및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개산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보조사업실적 등 부속서류를 갖추어 신청
 - 분기별(1, 4, 7, 10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농림부는 개산금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 및 전기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확인한 후 사업자금 지급 요청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의 계좌(정부지원금관리계좌) 확인후 자금 지급

다.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12. 10까지 완료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12. 20까지 제출
- 농림부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산(안) 검토 확정
 - * 이미 교부(송금)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시

< 행정사항 >

가. 보고사항

- 보조사업자는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보고(4/4분기는 사업결과보고서로 대체)
- 교육시행기관은 사업기간(2005. 1. 1~2005.12.20)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진산장비(중형, 소형 서버) 개발용PC(펜티엄Ⅲ 이상) 이동교육용차량	구입일로부터 5년 단, 이동교육차량 8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 불용처분 가능
S/W(DBMS, 백업 S/W, 방화벽S/W, 응용S/W)	구입일로부터 5년	○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사용금지 ○ 불법 복제 사용금지	○ 함께 운용중인 장비 폐기 시 S/W이전 설치 사용가능 (사후관리기간: 이전장비 운용기간 적용)

다. 기타사항

- 교육시행기관장은 매회 교육 실시 후 이메일주소 부여 및 설문조사 정보화 수준점검(ICT점검)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온라인 교육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 교육시행기관은 상위교육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 교육시행기관장은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119방문서비스 제외)
- 교육시행기관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 농산물 통합쇼핑몰, 농산물 출하지원 시스템, 아피스넷, 농가경영장부 등 농림부 정보화사업을 온·오프라인 병행 소개
- 보조사업자 및 전문교육 시행자는 교재작성시 교재표지에 농림부(농업인 정보화교육 주관 사업자)를 교재 표지에 명시
- 농업인 정보화교육 신청 : 인터넷 이용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전화 신청
 - 인터넷 사이트 www.eduaffis.net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4)분기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일 : 200 . . .)

□ 사업명 :

사업책임자 :

(인)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완료여부	비 고
<input type="checkbox"/> ○			

※ 세부내역은 별첨

※ 필요시 횡으로 작성

2005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보고서

[2005 . . . ~ 2005 . . .]

월 일 기준

교 육 과 정	계 획		실 적				달성도 (B/A)%	비 고
	예산 (천원)	인원(A) (회수)	예산 (천원)	인원				
				수료	진행	계(B)		
컴퓨터활용교육								
농업정보활용교육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농업정보119								
이동버스교육								
교육기반조성 및 교육관리								
총 계								

예산집행보고서

[2005 ~ 2005]

월 일 기준

예산내역	예산 승인액	당분기계획	집행액		분기계획
			당분기	누계	
합 계					
컴퓨터활용교육					
농업정보활용교육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농업정보119					
이동버스교육					
교육기반조성 및 교육관리					

※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별첨

[별첨1]

농업인 정보화 교육 업무 절차 및 방법

순서	추진업무	시행기관업무	보조사업자
1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달 (농림부)	농업인 교육수요 사전 조사	
2	시행기관별 농업인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시도 교육계획 접수·신청	교재 제작·발송
3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3.1	교육세부일정 수립		
3.1.1	교육관리대상 등록	교육세부 일정 수립 및 입력 교육세부 내용 결정 및 입력	
3.1.2	장소, 강사 확보	강사현황 입력	
3.1.3	교육홍보 및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	홍보물 제작 및 종합홍보
3.1.4	교육신청	교육신청자 확인	
3.2	교육실시	교육실시, 운영비 집행, 정보화 교육사업 홍보, 사이버 학당 안내 및 교육	관련 자료 요청 사이버학당 사용자 매뉴얼 등 시 제공
3.2.1	교육내용 조정	교육세부내용 조정 (교육생의 정보화 능력과 요청에 따라 필요시 조정)	
3.2.2	교육이수 조치	교육생 설문입력(교육생직접 교육이수생 수료증 발급 등)	
3.3	교육결과보고	교육결과 내부보고	
3.3.1	교육결과보고(전산보고)	이수확인체크, 행정사항(통장번호, 강사료·수당 집행현황 등 정산 요청금액 등) 입력	교육완료 확인 (관리시스템 입력사항 확인, 수료생에게 직접 확인)
3.3.2	정산요청	교육완료 공문발송	공문확인(공문내용, 영수증 등), 교육관리 입력 내용 및 수료생 현장 확인
3.3.3	비용수령	강사료, 수당 등 수령	정산집행결재 (내부) 및 비용집행
3.4	교육완료		
4	정보화 교육사업 및 교육생관리		
4.1	농업인 정보화 사업 홍보	정보화 교육사업 홍보	홍보물 제공
4.2	중급·전문교육 홍보 및 참여유도	상위단계 교육 안내	계획서 제공
4.3	농업인 사이버 학당 활용 교육	사이버학당 이용안내 교육 및 홍보 실시	매뉴얼 및 홍보물 제공

③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윤기호, 사무관 이대형)입니다.

1. 목 적

- Affis.net을 통해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농촌정보화를 촉진
 - 생산, 기술, 정책 등 농업정보를 농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정보제공
 - 농업인, 농업관련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활성화

2. 시책 추진방향

- 영농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농업·농촌 정보의 지속적인 개발·제공
 - 친환경, 벤처농업 등 농업관련 콘텐츠를 보유한 IP 적극 발굴
 - 품목별 종합정보 서비스 체제 내실화 등
- 농촌생활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의료·문화정보 확충
 - 자체 개발보다는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보제공 유도
- 농업인 정보공유를 위한 사이버 커뮤니티 활성화
 - 농업인, 농업관련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동호회 집중 지원·육성
 - 동호회 기능개선 등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8조 3항(농어민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 사업자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사 업 량		-	-	-	-
사업비	계	2,076	2,324	2,400	3,158
	보 조	2,076	2,324	2,400	3,158
	용 자	-	-	-	-
	지 방 비	-	-	-	-
	자 부 담	-	-	-	-

* 환경변화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음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정보이용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Affis.net 이용을 활성화
 - 인터넷 접속서비스 중단에 따른 효율적인 통신회선 및 시스템 운영
 - Affis.net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농업·농촌 콘텐츠의 내실화
 - 교육·의료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정보 제공(전문업체와 제휴)
 - 체계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내실있는 인터넷방송 운영
 - 생산자, 유통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품목중심의 동호회 육성
- 농업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류를 위한 농림전문지식검색포털시스템 구축
 - 지식검색관련 장비도입, 프로그램 개발 등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3,158	3,158	3,158			
○ 보조금		2,124	2,124	2,124	-	-	-
○ 위탁관리비		1,034	1,034	1,034	-	-	-

* 보조금 및 위탁관리비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교부되나,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사업규모 : Affis.net 운영, 농림지식검색포털시스템 구축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라. 사업기간 : 2005. 1. 1 ~ 2005. 12. 31까지(1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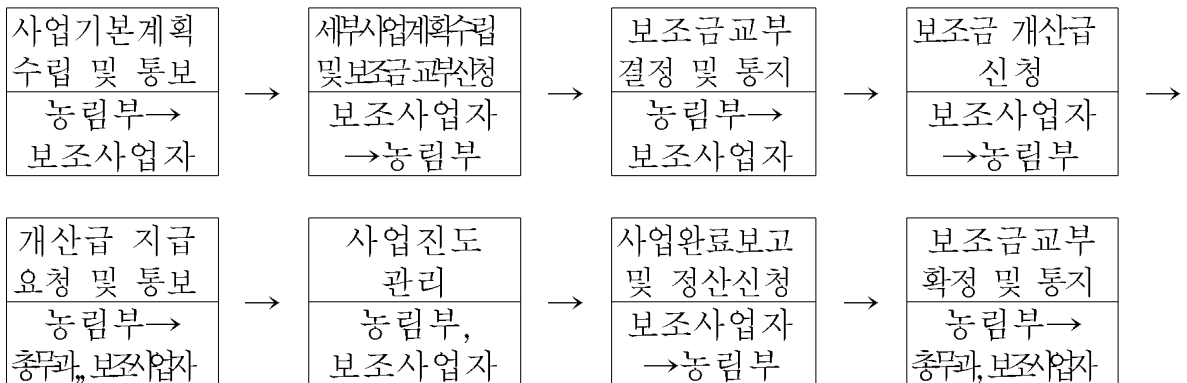
- 농림부 :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3)
- 보조사업자(Affis.net운영) : (재)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정보개발팀(031-299-8885)

* 농림전문지식검색포털시스템 구축관련 보조사업자는 추후 선정

○ 기관별 역할

기 관	주 요 역 할
농 립 부 (정보화담당관실)	- Affis.net 운영 및 농림지식검색포털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세부사업추진계획 심의·조정 및 사업추진 관리 - 예산확보, 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정산)
보조사업자	-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 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정산신청)

다. 사업시행체계



< 보조금 집행절차 >

가. 시행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림부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접수후 1개월이내에 보조금교부를 신청

- 농림부는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보조금교부조건 및 사업관리지침을 붙여 통지(붙임자료1, 2 참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정산신청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의 정산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교부를 확정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고 농림부는 사업목적,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는 전산장비 및 S/W용역개발 등 계약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나. 보조금의 개산금 신청, 예산집행과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예산을 집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개산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예산집행내역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매월 20일까지(문서도착기준) 신청
- 농림부는 개산금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개산금 지급을 통지하고, 총무과(경리)에 개산금 지급을 요청(매월 25일까지)
 - 개산금 지급 요청시 보조금 사정조서, 보조사업자 개산금 신청문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계좌입금의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12. 15일까지 정산을 신청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확인하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위반 여부,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를 확정(정산)
 - 총무과에 정산금 지급 요청시 보조금교부 확정문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사업자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제출
- * 이미 교부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초과액 반환을 통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에 투입되는 전산장비(H/W, S/W)는 동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장비관리 대장(별지 2호 서식), 정보콘텐츠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에 등록하여 성실히 관리
 - 사업추진결과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응용S/W 등) 관리와 Affis.net 이용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
- 생산자, 정책담당자, 유통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품목 동호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전산장비, 통신장비, 부대장비 등	구입일로부터 5년 단, 개발용 PC는 4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의 임의 사용금지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 농림부 사전승인후 불용처분 가능
시스템SW, 응용SW 등	구입일로부터 5년	○ 동사업목적 이외의 임의 사용 금지 ○ 불법복제 사용 금지	○ 함께 운용중인 장비 폐기시 SW는 이전 설치 사용가능

나. 보고사항

- 보조사업자는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농림부는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과정에 관하여 농림부 사업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때에는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 교부신청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때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Affis.net 운영에 투입되는 장비는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확산 등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붙임2]

Affis.net 운영 사업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05년도 Affis.net 운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진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진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의 모든 운영, 관리부문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장비공급 및 Customizing작업 등 외부업체가 담당하는 부문 또한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지도·감독한다.

제3조(외부 용역수행시 보조사업자의 역할) 외부 용역수행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부 용역관련 제안요청서 작성
2. 입찰공고 및 예가산정
3. 외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4. 진도관리
5. 검사 및 인수
6. 개발 시스템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외부 용역수행시 보조사업자는 기술평가를 위하여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3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보조사업자는 외부 용역수행시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외부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잔여예산)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에서 승인한 예산항목에 대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단,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잔여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제7조(전산장비관리등) ① 보조사업자는 Affis.net 운영사업에 투입되는 전산장비(H/W, S/W)는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장비관리대장(별지 2호 서식) 및 콘텐츠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에 등록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기관실정에 맞는 시스템, 통신망 보안대책 및 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스템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유형적발생품관리) 보조사업자는 당해 사업추진결과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응용S/W 등)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와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규정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국고보조금집행요령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4)분기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일 : 200 . . .)

□ 사업명 :

사업책임자 :

(인)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완료여부	비 고
<input type="checkbox"/> ○			

※ 세부내역은 별첨, 필요시 횡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전산장비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장 비 명	
제 작 회 사		취 득 일 자	
내 용 연 수		취 득 가 액	
주 용 도			
관 리 책 임 자		운 용 자	
장비 점검사항		장비 주요작업 및 장애사항	
점검일	점검사항	확인	작업일
			작업내용 및 장애내용

※ 서식을 장비별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콘 텐 츠 관 리 대 장

구분	콘텐츠명		주요내용	갱신정보			정보제공개시 (년월일)	자료제공유무 (중단운영전환)	중단/전환시		IP	관리책임자	
	대분류	세분류		주기	자료량	형태			사유	일자		정	부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 황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

④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윤기호, 사무관 이대형)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출하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농업인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적정가격 협상과 출하처 선택에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시책 추진방향

-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 위주로 유통관련 정보제공
 - 품목관련 정보제공 : ('03년까지)44품목 → ('04)67 → ('05)67
- 유통관련 전문가의 지속 발굴을 통해 시황·전망정보 내실화
 - 전문인력Pool : ('03까지)80명 → ('04)100 → ('05)120
- 전자경매 실황정보, 도매시장 정산정보 제공 등 운영 내실화
- 유·무선, 인터넷 등 정보제공 매체의 다양화
 - 휴대폰 문자메세지(SMS), PDA,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출하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농수산물표준코드의 지속적인 정비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사 업 량		23	44	67	67
사업비	계	1,030	1,005	968	777
	보 조	1,030	1,005	968	777
	용 자	-	-	-	-
	지 방 비	-	-	-	-
	자 부 담	-	-	-	-

* 환경변화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음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 출하지원시스템(www.chulha.net) 내실운영
 - 전문가 인력Pool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황·전망정보의 품질 제고
 - 산지, 도매시장, 소비지 등 유통관련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
 - 산지, 중도매인연합회 등 시장상황에 정통한 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 산지·시황정보 제공
 - 공영도매시장 가격정보(전자경매, 정산정보)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휴대폰 문자메세지(SMS), PDA,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내실화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보 조 사 업 비	67품목	777	777	777			

* 농림부의 기본계획,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사업규모 : 출하지원시스템 운영, 전문가인력Pool 관리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라. 사업기간 : 2005. 1. 1 ~ 2005. 12. 31까지(1년)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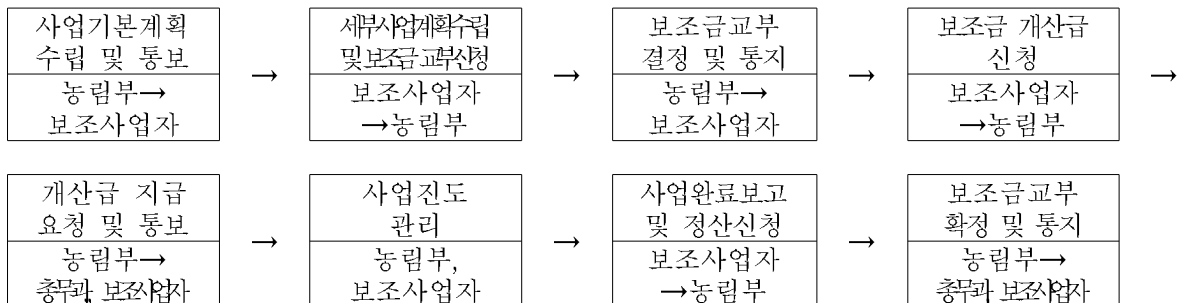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3)
- 보조사업자(Affis.net운영)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개발팀(031-299-8885)
- 기관별 역할

기 관	주 요 역 할
농 립 부 (정보화담당관실)	-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추진계획 심의·조정 및 사업추진 관리 - 예산확보, 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정산)
보조사업자	-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 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정산신청)

다. 사업시행체계



< 보조금 집행절차 >

가. 시행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림부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접수후 1개월이내에 보조금교부를 신청
- 농림부는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보조금교부조건 및 사업관리지침을 붙여 통지(붙임자료1, 2 참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정산신청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의 정산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교부를 확정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고 농림부는 사업목적,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는 전산장비 및 S/W용역개발 등 계약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나. 보조금의 개산금 신청, 예산집행과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 예산을 집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개산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예산집행내역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매월 20일까지(문서도착기준) 신청
- 농림부는 개산금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개산금 지급을 통지하고, 총무과(경리)에 개산금 지급을 요청(매월 25일까지)
 - 개산금 지급 요청시 보조금 사정조서, 보조사업자 개산금 신청문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계좌입금의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12. 15일까지 정산을 신청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확인하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위반 여부,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를 확정(정산)
 - 총무과에 정산금 지급 요청시 보조금교부 확정문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사업자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제출
- * 이미 교부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초과액 반환을 통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에 투입되는 전산장비(H/W, S/W)는 동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Affis.net 사업관리지침에 있는 서식에 등록하여 성실히 관리
 - 사업추진결과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응용S/W 등) 관리와 출하지원시스템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전산장비, 부대장비 등	구입일로부터 5년 단, 개발용 PC는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의 임의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 농림부 사전승인후 불용처분 가능
시스템SW, 응용SW 등	구입일로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업목적 이외의 임의 사용 금지 ○ 불법복제 사용 금지 	○ 함께 운용중인 장비 폐기시 SW는 이전 설치 사용가능

나. 보고사항

- 보조사업자는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농림부는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과정에 관하여 농림부 사업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때에는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 교부신청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때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출하지원시스템 운영에 투입되는 장비는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확산 등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붙임2]

출하지원시스템 운영 사업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05년도 출하지원시스템 운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진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진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의 모든 운영, 관리부문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장비공급 및 Customizing작업 등 외부업체가 담당하는 부문 또한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지도·감독한다.

제3조(외부 용역수행시 보조사업자의 역할) 외부 용역수행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부 용역관련 제안요청서 작성
2. 입찰공고 및 예가산정
3. 외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4. 진도관리
5. 검사 및 인수
6. 개발 시스템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외부 용역수행시 보조사업자는 기술평가를 위하여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3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보조사업자는 외부 용역수행시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외부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잔여예산)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에서 승인한 예산항목에 대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단,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잔여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제7조(전산장비관리등) 보조사업자는 출하지원시스템 운영사업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H/W, S/W)는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Affis.net 사업관리지침에 있는 서식에 등록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유형적발생품관리) 보조사업자는 당해 사업추진결과 취득한 유형적 발생 품(응용S/W 등)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와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규정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국고보조금집행요령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4)분기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일 : 200 . . .)

□ 사업명 :

사업책임자 :

(인)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완료여부	비 고
<input type="checkbox"/> ○			

※ 세부내역은 별첨, 필요시 횡으로 작성

⑤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윤기호, 서기관 한종현)입니다.

1. 목 적

-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인터넷이용환경, 마을 홈페이지구축)설치지원으로 농업·농촌정보화 확산 붐 조성
- 농업인의 실생활 및 영농활동과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교류촉진 도모

2. 사업 추진방향

-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추진
 - PC, 인터넷 이용도 등에서 도농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과 갈등 완화를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중점 추진
 -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을 농업·농촌 정보화 거점으로 활용
-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장밀착형 정보화사업으로 중점 육성
 - 행자부의 정보화시범마을과 차별화된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현장 밀착형 정보화사업 추진
- 디지털 위성방송 장비 설치 등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매체를 다양화
 -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센터 내에 방송을 통해 농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위성수신용 안테나 및 TV 등을 설치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정보통신기기의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국고)

□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

		2003	2004	2005예산(안)
사업량(개소)		-	20	20
사업비	계(백만원)	-	600	600
	보조	-	300	300
	용자 지방비	-	- 300	- 300

주) 1. 인터넷 이용장비 설치비 : 국고 1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2. 마을홈페이지 구축비 : 국고 1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마을단위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

(가) 배경

-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농업인의 정보이용시설 활성화를 통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

(나) 지원대상

- 정보화선도자가 있거나, 마을 정보화를 이끌어갈 인력이 있는 마을

(다) 지원조건 : 마을 1개소당 3,000만원(국고 50%, 지방비 50%)

(라)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도 및 시·군)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 마을단위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합계	국고	지방비
20개소(마을)	600	300	300

주) 1. 인터넷 이용장비 설치비 : 국고 1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2. 마을홈페이지 구축비 : 국고 1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총괄, 예산지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 디지털사랑방 예산편성
 - 신청마을 심사평가 및 승인요청
 - 디지털사랑방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리·감독
 - 마을홈페이지구축을 위한 콘텐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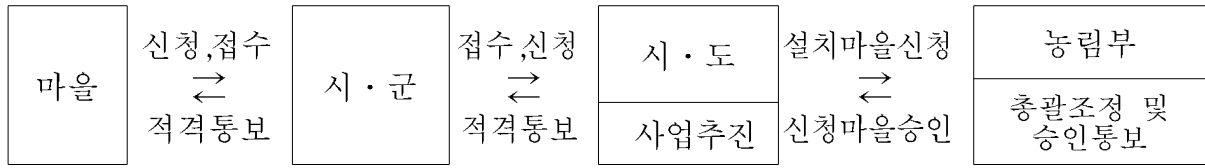
나. 사업시행기관

- 시·군
 - 디지털사랑방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인터넷 이용장비 등 시설설치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 마을홈페이지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 디지털사랑방 운영위원회(5~10명) 구성·운영
 -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설치 후 1년 이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달 및 운영
 - 마을홈페이지구축을 위한 콘텐츠 지원
 - 마을홈페이지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협조

다. 사업수행기관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공고, 홈페이지개발 용역업체 선정, 사업설명회 및 개발착수 보고회, 용역업체와 지자체 등과의 회의 개최, 용역관리 및 사후 운영담당 등
- 용역업체
 - 마을홈페이지개발, 마을입간판 설치, 사용자설명서 제작, 마을주민방문교육 및 운영자 중앙집합교육 등 담당

라. 사업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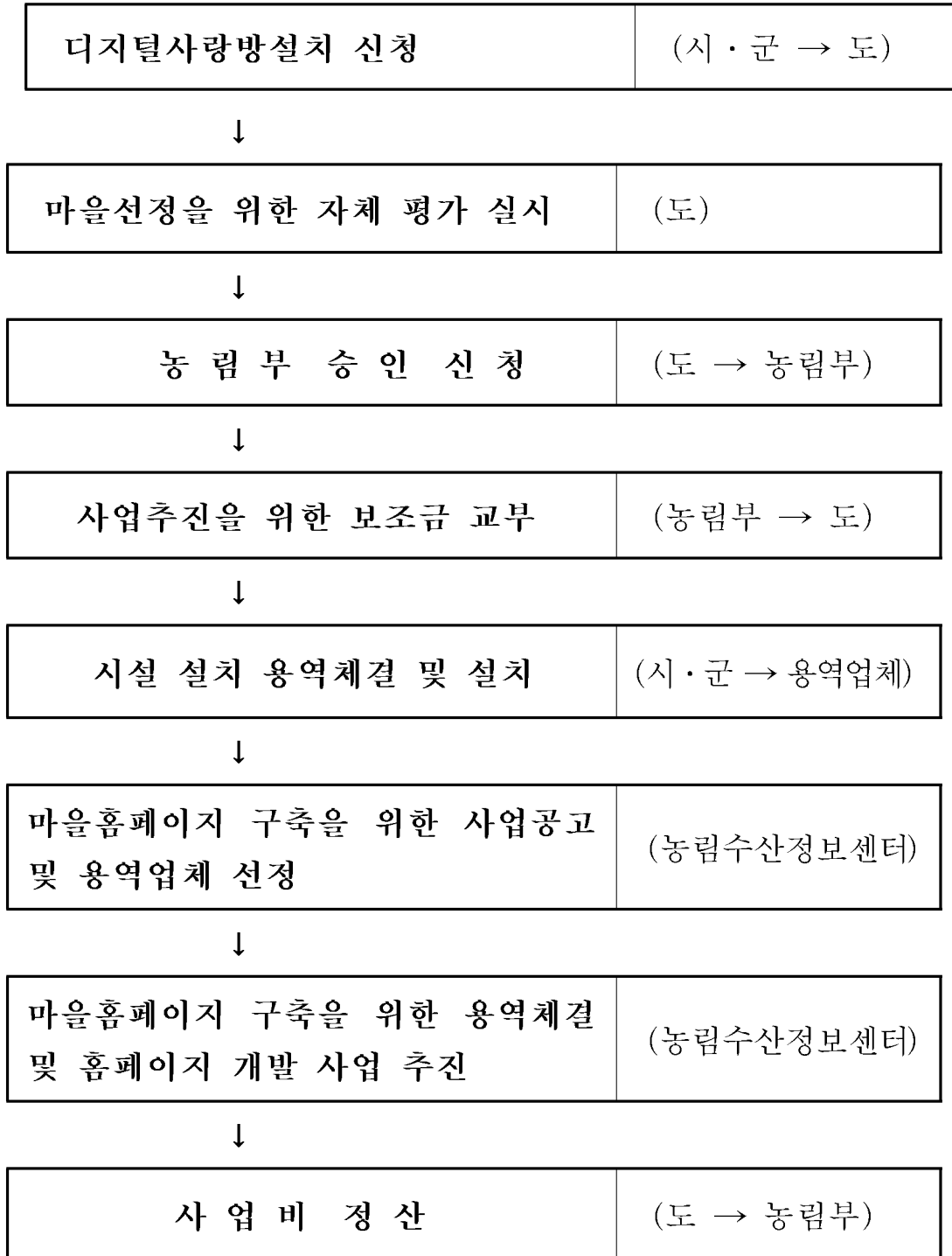
《마을단위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 내역》

□ 설치지원내역(개소당) : 30,000천원(국고 50%, 지방비 50%) >

- 인터넷 이용장비 설치 : 11,560천원
 - 컴퓨터 : 1,500천원×5대 = 7,500천원
 - 칼라프린트 : 500천원×1대 = 500천원
 - S/W(한글, MS-offis, V3 등) : 600천원×1조 = 600천원
 - 컴퓨터용 책상/의자 : 150천원×5조 = 750천원
 - 기타(LAN, 디지털카메라 등) : 1,010천원×1식 = 1,010천원
 - 통신요금(ADSL-MultiIP기준) : 30천원 ×12월 = 360천원
 - 기타시설장비 설치비용 등 : 840천원
- 디지털 방송장비 설치 : 3,440천원
 - 방송시청용 TV : 3,000천원×1대 = 3,000천원
 - 위성방송장비 : 200천원×1조 = 200천원
 - 시청료 등 : 20천원×12월 = 240천원
- 마을홈페이지구축 : 15,000천원

※ 통신요금 및 방송시청료는 설치 후 1년분에 대해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연내에 교부금을 확정하고 익년도에 세입조치하여야 함으로 연도말에 1년분을 선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조치 하여야함

<보조금 집행절차>



<보조금 교부조건>

- ①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②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③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④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⑤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 및 시·군에서는 마을단위정보이용시설 설치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담당자 지정 등 사후관리 철저

나. 보고

- 시·군에서는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파악하여 해당도에 통보
- 각 도청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농림부에 보고

6. 2005년도 대상마을 선정절차 및 사업추진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마을 → 시·군 → 시·도

나. 신청자격

○ 디지털사랑방 설치 신청자격

- 농림부가 지정운영 하는 정보화선도자가 있거나 정보화를 선도할 리더가 있어 디지털사랑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
- 품목별 작목반 등 마을 특화작목이 있어 농업부가가치가 높으며, 농가가 30호 이상인 집락 마을로 PC보급이 부진한 상태이나 마을 주민의 농업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높아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한 마을
- 마을단위 홈페이지구축 등으로 농산물판매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디지털사랑방 설치가 필요한 마을
- 초고속통신망(ADSL) 이용가능한 마을

※ 시·군에서는 대상마을 신청 시 상반기(6.30)까지 시·군(마을)의 추정 예산 확보가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도에 신청

다. 신청절차

○ 디지털사랑방 설치 신청

- 신청기관
 -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는 도에 신청
 - 각 도에서는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된(도별 2~5개) 마을에 대한 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승인 요청
- 신청기간 : 2005. 2. 29일까지

라. 구비서류

○ 디지털사랑방 설치 신청(양식 1, 2, 3)

- 디지털사랑방 설치 신청서
- 마을주민 정보화선도자 지정확인서
- 디지털사랑방시설 설치 공간 확보 내역
- 마을 작목반 운영현황 및 마을 특화작목 현황
- 디지털사랑방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마.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선정기준

-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마을회관 등)이 확보되어 있는 마을
- 마을리더 및 마을주민의 정보화 의지가 높아 디지털사랑방 설치가 필요한 마을
- 대상마을의 다수의 농업인이 정보화에 관심이 있어 본 사업에 적극적이며 ADSL사용료 등 운영비 지불의사가 높은 마을
-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기반시설(저장고 등 보관시설, 선별기 등) 및 작목반이 갖춰진 지역으로 농산물판매에 전자상거래 등을 하고자하는 마을
- 기타 타 마을과 차별화 된 특성 및 운영계획을 세워 본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 선정절차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신청 받아 현지실사 후 도에 신청
- 각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반드시 현지실사 후 마을선정 평가지표(첨부1)에 따라 도별 2~5개 마을을 순위를 정하여 선정 후 농림부에 승인 요청
- 농림부에서는 각도에서 승인 요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대상 마을 최종 확정

※ 2005년에는 도별 배정 물량을 정하지 않고 20개 마을 배정 계획임

바. 사업추진 절차

○ 정보이용시설 설치

- 디지털사랑방 시설설치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 장비 및 시설설치

※ 인터넷 이용장비 및 디지털방송장비 등을 변경하여 집행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후 추진

○ 마을홈페이지 구축

- 마을홈페이지구축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사업공고 및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지자체에서 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 마을홈페이지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서버에 탑재하여 운영·관리 및 홍보

사. 정보이용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마을리장, 새마을지도자, 정보화선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5~1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조달, 정보화선도자 농업인 교육실시 등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 ※ 설치 후 1년 간은 인터넷 사용료, TV시청료 등 운영비가 지원되나 1년 이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 지급하여야 함

아.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계획 시달(농림부→도→시·군) : 2005. 1월
- 신청서접수(마을→시·군) : 2005. 1~2월
- 보조금 교부(농림부→도청) : 상반기(2005. 4월), 하반기(2005. 7월)
- 마을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도) : 2005. 2월
- 신청서접수(시·군→도) : 2005. 2~3월
- 마을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도) : 2005. 3월
- 선정결과 승인 협의(도→농림부) : 2005. 4월
- 정보이용시설설치 용역체결(도→용역업체) : 2005. 5~6월
- 정보이용시설 설치(용역업체) : 2005. 5~7월
- 마을홈페이지구축 사업공고 및 업체선정(농림수산정보센터) : 2005. 6월
- 마을홈페이지 구축 용역체결(시·군→용역업체) : 2005. 6~8월
- 마을홈페이지 구축(용역업체) : 2005. 7~11월
- 보조금 교부확정 신청서 제출(도→농림부) : 2005. 12월
- 사업비 정산(도청) : 2006. 1월

(양식2)

정보화선도자 또는 마을정보화리더 지정확인서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상기인은 우리마을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마을리장 ○○○ (인)

연락전화 :

※ 정보화선도자 인증서는 별도첨부 할 것

(양식3)

디지털사랑방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1. 사업추진개요

<p>가. 마을기본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가구수 : 호, 농가수 : 호 ○ 총인구 : 호, 농가인구 : 호 ○ 학력별 : 중졸이하 명, 고졸 명, 대졸이상 명
<p>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 및 경위를 기술 ☞ 작목반 구성 및 마을의 주된 품목과 연계한 사업추진 필요성 기술
<p>다. 자연적·사회적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신청지역의 위치를 상세하게 묘사 ☞ 지역내의 산, 강, 관광명소, 사회적 환경 등을 포함하여 묘사
<p>라. PC보유현황 및 활용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보유대수 : 대, 인터넷가능 PC보유대수 : 대 ○ PC활용가능 인구 : 명, 인터넷 활용 가능 인구 : 명 ○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 명 ○ 초고속인터넷(ADSL) 인프라 구축 여부 :
<p>마. 지금까지 정보화 추진 현황 및 농업인 참여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마을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보화 현황 및 농업인의 정보화 참여의지 등 기술

2. 운용방안 및 확대·발전계획

가. 디지털사랑방설치 운용방안

- ☞ 디지털사랑방이 설치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 및 운용요원 등에 대한 확보대책을 명기하고,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대책 기술

나. 확대·발전계획

- ☞ 디지털사랑방 확대·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디지털사랑방 설치·운영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1】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 마을선정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 가 세 부 내 용	배 점	평가점수
○ 마을주민 참여의지	① 주민의 운영비 부담의지 및 향후관리 능력 (마을 전체 농가 중 참여농가 비율) ② 정보화선도자, 리장, 부녀회장 등 리더자 의지 (리더자 디지털사랑방 운영·관리 능력) ③ 디지털사랑방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10 5 5	
○ 지자체의 운영의지	① 시·군(읍·면)의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의지 ② 향후 수리비, 운영비 등 지원의지	10 10	
○ 사업계획의 타당성	① 디지털사랑방 설치·운영 계획의 타당성 (지역별 특성과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 ② 마을주민 정보화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③ 디지털사랑방 설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가능성 ④ 마을홈페이지 통한 소득증대 가능성 ⑤ 향후 콘텐츠 관리방안의 적절성	5 5 5 5 5	
○ 지역적 타당성	① 시설 설치 가능성(설치 장소 평가) ② 마을 가구주 연령분포 및 마을 소득작물 유무 ③ 향후 전자상거래 실시 가능여부 - 작목반, 유통기반시설 등	10 5 5	
○ 정보화선도자 활동현황평가	① 정보화선도자 및 마을리더의 사업추진 열정 ② 정보화선도자 및 마을리더 사후 운영·관리 의지 ③ 정보화선도자 및 마을리더에 대한 마을주민 지지도	5 5 5	
합 계		100	

⑥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윤기호, 사무관 이대형)입니다.

1. 목적

- 그 동안 주로 집합교육 형태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1회성에 그쳐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이 아직 미흡한 상태
- 따라서,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특히 농업인중)를 읍면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 발굴·선정(1,500명)
- 지자체장(도지사)이 발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 주기의 재 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
 - * 단, 정보화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	2004	2005
사업량		천회 2	12	18	25.5
사 업 비	계	50	246	420	600
	보 조	50	123	210	300
	용 자	-	-	-	-
	지방비	-	123	210	300
	자부담 (시행기관)	-	-	-	-

* '02, '03은 농업인정보화교육(정보화촉진기금) 사업임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정보화선도자 역할

- 인근 농가에 대해 **1:1 맞춤형교육** 실시
 - 컴퓨터·인터넷 이용, 농가경영장부 활용, 홈페이지 운영요령 등
-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운영 책임자** 역할
 - 마을 홈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정보화교육장, 초고속통신망(ADSL), 등
- 정보화 **교육 강사**, 동호회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활동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정보화 확산에 기여
-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과 촉진을 위한 **메신저** 활동
 - 정보화사업 운영실태 평가, 각종 홍보자료 배포 등

(2) 정보화선도자 선정(기본요건 : 붙임 1)

- 지자체(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보화선도자 선정에 있어 가능하면 1인 이상의 **복수 추천자**를 받아 선도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 기본요건을 갖추고 활동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경우 우선 추천**
- 정보화선도자 기본요건 중 **선도자의 정보화 열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근 농가의 교육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 정보화 능력보다는 **선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중점 검토
- 타 사업에서 활동하는 자는 선도자 **역할 수행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동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행정부 디지털 리더, 지자체 농정모니터 요원, 기타 유사사업 등
- '04년 활동이 부진한 선도자는 평가를 통해 **기본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한 후, 자질과 역량이 있는 **선도자로 교체**

(3)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05. 1월 ~ 12월(12개월)
 - 신규 선정 정보화선도자는 집합교육, 현장실습 이후에 본격 활동
- 추진방법
 - 현장실습 경험을 기초로 **정보화선도자가 단독으로** 사업 수행
 - 관내 **농업정보119대학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농가교육을 실시
 - 정보화선도자는 교육실시 후 **활동일지**를 작성(교육내용, 농가반응 등)
- 지원사항
 - 각 도(시군)는 지역 **정보화선도자를 홍보**하고 선도자 활동을 **농가에 안내**
 - 각 도(시군)별 농가교육신청 **전용 전화**를 지정·운영
 - * 각 도(시군)에서는 선도자가 농가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사랑방구축 등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윈도우 사용법, 문서작성 활용, 동영상 활용하기, 인터넷 접속, 농업정보활용 등

(4)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에 한하여 농가방문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에 **2만원** 지원
 - 농가교육은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 이용한 농업인 대상 **집합교육**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비 집행
 - **국고보조 50% 지방비 분담 50%**로 해당 시군에서 선도자 활동비 집행
 - 정보화선도자는 현장실습을 제외한 농가교육에 대해 **농가방문확인서**를 작성하며 반드시 **농가 확인**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
 - 시·군 담당자는 선도자 활동비 집행시 선도자의 **월별 활동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허위 보고**에 의한 지급을 방지
- 사업비 정산
 - 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비 집행 결과를 **국고, 지방비**로 구분하여 도에서 제출

(5)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

- 각 도(시·군)에서는 정보화선도자에게 필요한 교육 실시
- 또한,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연수부, 외부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화선도자의 훈련보조금 지원(예산범위내)
- 농업인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 활용

(6) 정보화선도자 운영 활성화

-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노하우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활성화 촉진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동호회 코너를 이용한 온라인(ON) 교류
 - 지역단위 오프(OFF) 라인 정기모임을 연 2회 이상 실시
- 정보화선도자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회 실시
- 우수 정보화선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포상 등 기회를 부여하여 활성화 유도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시행기관)
		사 업 비 합계	예 산 액					
			계	보 조	용 자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25.5천명	600	300	300	-	3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3)
- 도 : 농정국 농정과(산업과)
- 시·군(읍·면) : 농정과(산업과)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031-299-8911)
 -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 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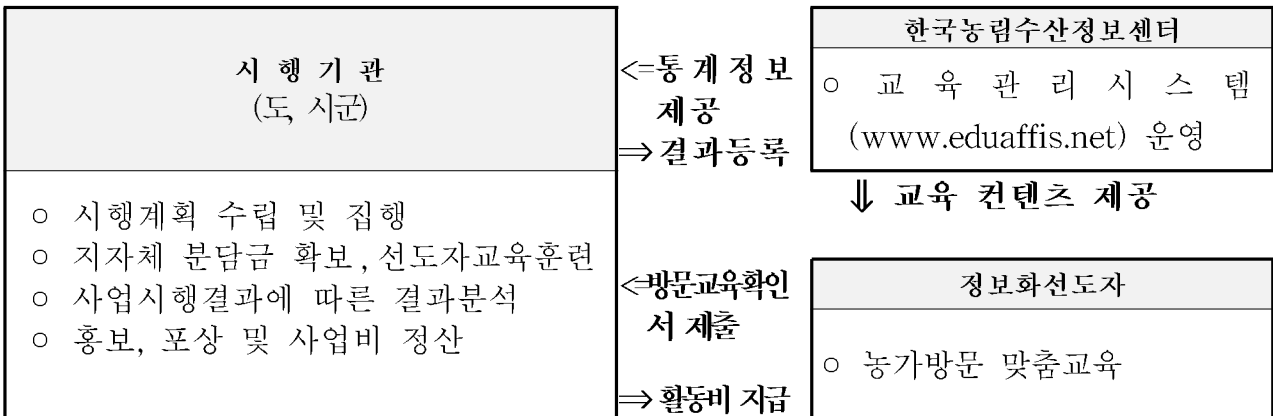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농 립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비 정산서 검토·확인 ○ 세부시행계획 심의·조정 ○ 사업시행결과 평가

⇓ 기본계획시달 및 사업지도 ⇓ 국고보조금 지급

⇑ 교육결과 및 사업정산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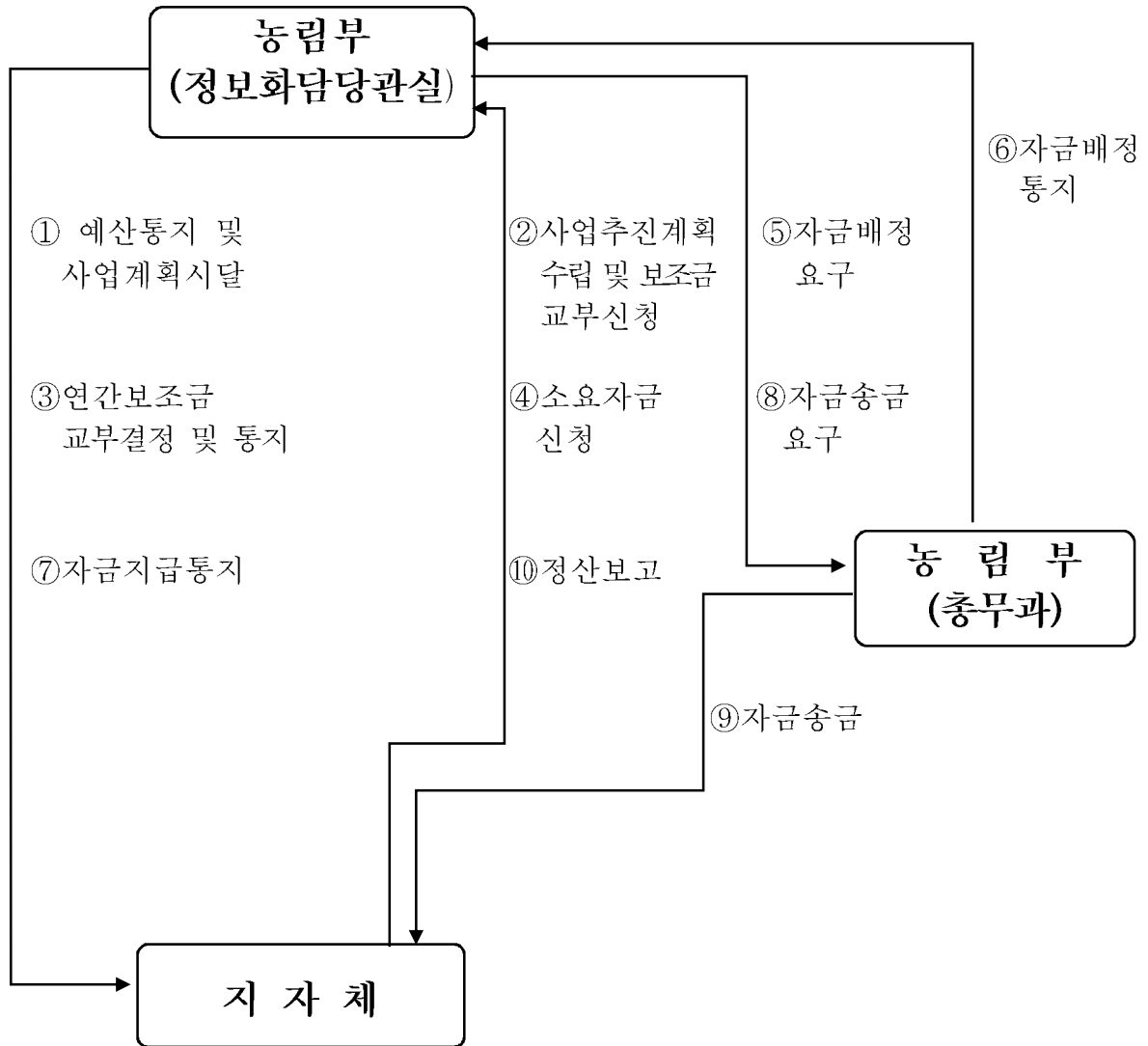
⇑ 통계정보 제공



- 농림부는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수립
- 각 시·도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의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사업량을 배정하여 지도·관리
- 각 시·군(정보화선도자)은 사업시행계획에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는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에 입력
- ※ 결과 등록은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 이용안내 참조
- 교재는 필요시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제작한 기초교육 교재를 구매하여 활용

< 보조금의 집행절차 >

가. 절차도



- ① 예산확정 즉시
- ② 사업계획 시달 후 15일 이내
- ⑩ 2004. 12. 20까지

나. 보조금 교부조건

- ①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②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③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④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⑤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1」 정보화선도자 선정 평가 기준표

구 분	항 목	평가내용	배 점	산출방법
기본요건	참여의지	정보화선도자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활동 의지가 매우 높은 자	-	
	기본자질	지역사회에서 대인관계, 사회의식 등이 원만하고 적극적 사고의 소유자	-	
평가사항 (100점)	거주 경력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기간으로 평가	30점	거주기간(년)*6 5년 이상은 만점
	정보화 능력	농업인에게 기초교육이 가능한 수준을 평가	30점	30 : 충분히 가능 20 : 어느 정도 가능 10 : 다소 부족
	정보화교육이수 경력	지자체, 농업관련기관 등의 정보화 교육 이수 경력을 평가	20점	20 : 5회 이상 또는 70시간 이상 15 : 3회 이상 또는 50시간 이상 10 : 2회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
	정보화 활동	정보화관련 강의실적 및 세미나, 회의 등의 참석 여부를 평가	20점	20 : 5회 이상 15 : 3회 이상 10 : 1-2회
가점사항 (30점)	정보화 자격증	정보화관련 기능사 이상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0점	
	입상 경력	정보화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10점	10 : 도단위 이상 5 : 시군·읍면단위
	기 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10점	

※ 정보화선도자 추천대상자는 반드시 평가 기준표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평가사항, 가점사항 평가에서 합계점수가 50점 이상인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

<서식 2> 선도자가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는 방문교육 확인서를 확인 후 집행

정보화선도자 활동 일지

시도 : 시군 : 선도자 :

지자체 담당자 :

일련 번호	일 자	국고 지원 구분	교육대상 성명(인원)	활 동 내 역			농가반응 및 애로사항
				장 소	교 육 내 용	시 간	
1	2003 2.22(토)	지원 (국고)	홍길동 외 3명	마을회관	인터넷활용기초, E-mail 주고받기	4시간 (주간)	농업 정보 검색 등 추가교육 요청
2	2003 2.23(일)	지원 (지방 비)	아무개	농가	출하지원시스템활용, 농업정보검색	3시간 (야간)	다른 정보화교 육과정 안내 요망
3	2003 2.24(월)	자체	박지성 외 20명	복지회관 전산실	성공사례 특강	2시간 (주간)	
4	2003 2.28(금)	자체	차두리 외 5명	읍사무소	마을주민 정보화교육 추 진 회의	2시간 (주간)	
5							
6							

* 국고지원구분 : 지원(지원기준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자체(타기관 교육, 세미나발표, 정보화회의 등 기타활동 또는 지원이 안되는 경우)

<서식 4> 지자체에서 사업완료 후 농림부로 보고

2004년도 정보화선도자 사업완료 보고

(도)

1. 계획대비 추진실적

전체실적

구분	계획(회)			추진실적(회)				달성도 (B/A)
	국고	지방비	계(A)	국고	지방비	자체	계(B)	
활동								
예산집행						-		

선도자별 활동현황

지역	선도자명	거주 읍·면	활동회수			비고
			국고	지방비	자체	
○○군						
○○군						

2. 정보화선도자 지원활동

정보화선도자 홍보

선도자관련 행사

기타추진사항

3. 정보화선도자 우수사례

4.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위 축 장

○○○도 ○○군 ○○읍

○ ○ ○

귀하를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5. . . ~ 200 . . .)

2005년 월 일

○○○도지사 ○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정병학, 사무관 김완수)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
- 이미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목시켜 농림축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들이 영농·영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타 산업의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합시켜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친환경농업, 가공·유통분야에서 기술도약의 계기를 마련
- 지식농업기반을 확충할 창조적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개발 지원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
- 과제별로 연구기관, 대학,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투 자 계 획				
		'94~'01	'02	'03	'04	'05예산안
계	4,790	3,077	412	421	430	450
첨 단 기 술 개 발	2,901	1,720	269	292	306	314
현 장 애 로 기 술 개 발	1,646	1,279	101	84	86	96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	243	78	42	45	38	40

* '05예산(안)은 계속과제 지원액 포함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배 경

-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농림업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
- 각국의 기술개발에 대한 역량집중과 국가간 기술이전 규제강화로 우리 농림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 기술개발이 요구됨
-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하여 '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 사업추진

나. 사업의 종류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 농정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할 과제 및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 현장적용기술개발과제 : 영농현장의 기술적애로를 해결하는 기술과제와 생명공학 등 농림업관련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 농업인개발과제 : 지역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로 농업용 기계·자재개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농림업관련 벤처형 중소기업(기타 중소기업 포함)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기술개발하기 위해 지원

다. 지원대상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업인개발과제
 - 농업인(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 구성)

라.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국고출연
-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마.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별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5년 이내 (장기적으로 연구수행이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	10억원 이내 (장기과제는 20억원 이내)
○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3년 이내	5억원 이내
- 농업인개발과제	2년 이내	3천만원 이내
○ 농산업기술개발사업	3년 이내	5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임.

바. 과제신청방법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제출
- 농업인개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사. 2005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안)

- 첨단기술개발사업 : 314억원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96억원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40억원
- * 위 지원예산(안)은 계속과제 지원금액이 포함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3~6)

- 농림기술관리센터(관리전문기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18 동화빌딩 5층 (우편번호 134-010)
 - 전화 : 02-2041-7511~5 (FAX : 02-478-1173)

다. 과제공모시기 : 2004년 12월 상순~하순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 BT 실용화기술 등 7대 핵심기술
 - * BT 실용화기술, 식품가공·안전성, 유통(수확후관리 포함), 친환경·자원재활용, 기계·자동화 등
 - 농림기술로드맵(ATRM)을 통해 도출된 첨단 유망신기술
 -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신기술
 - 특히 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산업화·실용화 방안과 특허 획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체 기술로서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등
 - 특히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은 우선적으로 지원
-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 영농·영림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 지역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
- 농업인개발과제
 -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농업인 실용기술
 - 농업용 기계·자재 개발
 -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 농업인(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실용기술
 -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술개발연구추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선정·지원되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하며, **총괄책임연구자**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어야 함.

- 진도관리(매반기별), 연차평가(매년 협약 종료시점) 및 최종평가(개발완료 시점) 등 실시 : 농림기술관리센터
 - 연구수행미진, 연구결과 불량정도에 따라 “과제수행중단”, “협약해약”, “연구비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단,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기타사항

-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농림부훈령 제1175호, '04.8.20)에 의거 추진
- ※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rp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농림기술관리센터
-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중 농업인개발과제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산·학·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중 농업인개발과제
 - 기술개발에 참여코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을 구성, 연구신청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협동연구팀에 참여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과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됨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요건>

- 1)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전담 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면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
- 2) 국·공립 연구기관 및 지도기관
-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9)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다. 신청절차

- 과제공모시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를 접수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rpc.re.kr>)에 제출·접수
- ※ 다만, 농업인개발과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라. 과제공모기간

- 공고 시기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및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2005년 11월 하순
- ※ 과제공모 : 관보,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 또는 게시
- 농업인개발과제는 농진청 홈페이지, 농림축산업 관련전문지에 게재

○ 접수 기간

-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2005년 12월 중
- 농업인개발과제 : 2003년 11월 중

마. 구비서류

- 『농업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 1부(농업인개발과제는 4부)
- 기업참여시 『농업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농업인(단체)의 참여시 『농업기술개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바.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 첨단성, 복합성 및 기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2) 우선순위

- 고부가가치, 수출촉진,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과급효과가 큰 과제
- ※ 산업체, 농업인(단체), 지도기관 참여과제는 과제 선정·평가지 우대배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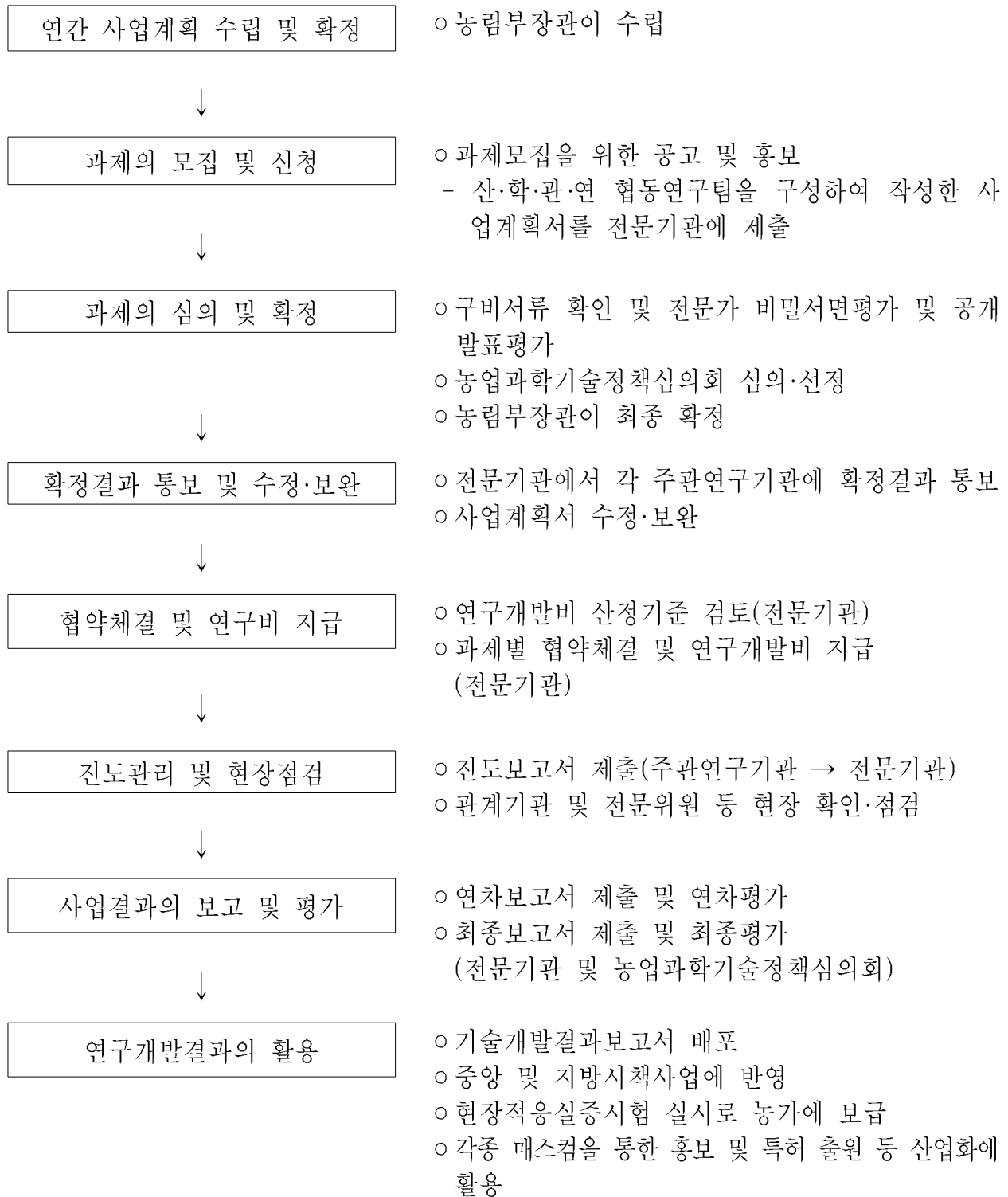
(3) 과제 평가방법 : 4단계 평가

- 1단계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 2단계 : 비밀서면평가
- 3단계 : 공개발표평가
- 4단계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최종심의

(4) 과제의 심의 및 확정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농림부장관 최종확정

(5) 사업추진체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소득개발기술과(과장 서정요, 지도관 정창도)입니다

1. 목 적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 활력화 도모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 고품질 생산기술과 협업경영 능력 향상으로 기술 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 정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 작목 입식 후 생산, 가공, 판매 등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 추진
- 에너지절약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과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시범 사업 추진 확대
- 협업경영,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특산품 생산 규모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농업 육성
- 시범사업장을 농업인 산 교육장으로 활용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89~'02년	2003년	2004년	2005	2006이후
사 업 량		4,397	348	260	234	990
사 업 비	계	340,457	35,041	32,147	27,410	166,424
	보 조	68,947	11,566	10,987	7,800	31,200
	용 자	137,987	10,370	9,213	8,133	71,500
	지방비	57,055	7,920	7,341	7,410	31,393
	자부담	68,653	5,185	4,606	4,067	32,331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89년부터 UR대응책으로 사업 시작
- (2) 지원대상자 : 해당 사업별로 재배(사육)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시범사업명	개 소 당		지 원 내 용
	규 모	사업비	
○ 기술개발 소득사업		백만원	
-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기존 하우스40a이상	30	지중난방, 보온자재 개선, 무인방제시설 관수시설 개선, 자동환기 등
- 채소주산단지 공동품질관리 시범	시설1.5ha, 노지3ha	60	채소 공동선별장, 개별 품질향상시설 개선, 농산물 예냉시설
- 화훼 벤처농업 육성	-	60	자동 꽃다발 가공 결속기, 부대장비, 저온차량 등
-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재배사 90m ² 2동	24	재배사, 균상시설, 자동송풍관수시설, 우량종균, 버섯환경조절 기자재 등
-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설개선 90m ² 3동	24	재배사의외부단열재, 균상시설, 온습도 조절 부대시설, 환경조절기 등
-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 시범	출하두수 10천두이상	30	수송차량 구입 및 개조, 체인브릭상차기, 전자저울 등
○ 지역특성화기술개발	-	-	사업내용에 따라 재배 및 사육시설 등 지원
○ 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	-	-	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234	27,410 (4,067)	15,933	7,800 (4,067)	8,133	7,410	4,067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23	557 (139)	418	(139)	279	139	139
○ 채소 주산단지 공동 품질관리 시범	8	640 (160)	480	(160)	320	160	160
○ 화훼 벤처농업 육성	10	800 (200)	600	(200)	400	200	200
○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	10	320 (80)	240	(80)	160	80	80
○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10	320 (80)	240	(80)	160	80	80
○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	10	400 (100)	300	(100)	200	100	100
○ 지역특성화기술개발	88	13,230 (3,308)	9,922	(3,308)	6,614	3,308	3,308
○ 특화작목육성촉진	75	11,143	7,800	7,800	-	3,343	-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안은 2005년도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임

<사업선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 수출농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기술과급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민원발생 가능성 사전조사 철저)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며 사업의욕이 왕성한 자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농업인 선정
 - 자부담 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신용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보조(융자)사업과 중복되는 농업인 제외

○ 선정절차

- 농업인(생산자 단체)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영농규모, 사업추진의욕 등 제반 여건을 감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범사업 선정상황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소득개발기술·친환경기술과·지원기획과
(031-299-2731, 2718, 2654)
- 도 : 농업기술원 관련사업 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역농업종합개발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 참여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
 -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및 협조를 받아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작물재배(사육), 시설물 건축, 생산자재 구입, 생산가공, 판매, 이익금 분배, 운영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 3인 이상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협의회 구성 운영
 - 시범농가 변경, 사업포기 등이 있을 때는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사업명, 사업계획 전체를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후 사업추진
- 시범농가 교육
 - 사업별 시범농가가 선정된 후에는 도 또는 시군단위 사전교육 실시
 - 사업추진 요령, 사업비 집행방법, 관련기술 등 교육

-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의 타당성 등 검토
 - 사업별 시범농가 및 생산자조직체와의 수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을 평가
 - 중앙 및 지방단위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 제4조)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
-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하여 연차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 하에 사후 기술지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 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 농업기술원장은 시·군별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업무추진에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계별로 사진첩을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 확산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부 터	까 지	
○ 시설원에에너지절약 환경관리	0 보온시설 0 지중난방시설	사업추진연도 "	사업시작후3년 3년	사후관리기간내 처분금지
○ 채소주산단지 공동 품질관리 시범	0 농산물 예냉시설 0 자동 선별기	" "	3년 3년	
○ 화훼벤처농업 육성	0 결속기 등 0 저온차량	" "	3년 3년	
○ 신품종 버섯류 안전생산	0 버섯재배사 0 균상시설 0 각종기자재	" " "	5년 3년 3년	
○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0 버섯재배사 0 생력균상시설 0 환경자동기자재	" " "	5년 3년 3년	
○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0 수송용 차량 0 상·하차시설	" "	5년 5년	

※ 시설 및 중요 장비 중 상기에 명시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을 금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단,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 중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등의 재산은 3년 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

나. 보 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보고 : 3월말까지
- 사업추진 결과보고 : 11월말까지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작물별 주산지역 및 가축 집단사육 지역으로 과급효과가 높은 지역
- 시범요인 수용의지가 높고 사업수행에 충분한 영농규모를 갖춘 농업인
- 자부담 및 융자금 담보능력 등 시범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농업인

다. 신청절차

- 시범사업 희망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8조 준용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비치서식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농가의 사업의욕, 영농규모, 신용조사 등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도 농업기술원에 사업예산 신청
-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 절차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시도별로 예산배정계획이 시달되면 시도에서는 시군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 통지
- 세부 사업추진은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추진

① 새기술보급시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친환경기술과(과장 이충현, 지도관 문현섭), 농촌생활자원과(과장 신영숙, 지도관 오승영), 소득개발기술과(과장 서정요, 지도관 박홍규)입니다.

1. 목 적

- 새로운 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소득작목의 주년생산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과 가축 분뇨 정화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재배로 농업인의 자율선택 유도
- 벼 신육성 품종의 시범증식으로 농가에 신속한 확대 보급
- 국민식량의 지속적 자급을 위한 초다수성 품종 종자를 일정량 확보
-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을 통한 효율적인 방제대책 추진
- 토양검정의 지속적 추진과 전산망을 이용한 토양관리 정보 제공
- 벼 직파, 무경운 등 생력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생산비 절감
- 보리, 콩, 참깨 등 밭작물 재배 기계화 추진을 통한 단지화 유도
- 해외유입 병해충 등 신속한 진단 및 천적을 활용한 방제기술의 농가보급
-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지역농산물 가공상품의 고품질화 지원
-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 및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확산
- 전통생활기술 및 전통지식의 발굴, 계승, 상품화 체계적 지원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93-'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이후
사업량		개소 14,248	4,528	4,800	2,214	12,004
사업비	계	백만원 96,938	26,796	28,932	27,332	72,844
	보조	48,469	13,398	14,466	13,666	36,422
	지방비	48,469	13,398	14,466	13,666	36,422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1962년부터 새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하여 추진
- (2) 지원대상자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시범농가에 지원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식량작물 시범

○ 시범내용

- 벼농사 :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신육성 벼품종 시범,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쌀 생산비 절감단지, 벼 기계이앙 동시추진시비시범, 부분경운직파시범,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
- 밭작물 :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시범, 콩 최소경운 재배, 우량참깨 기계화,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시범,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시범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5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소득작목 시범

○ 시범내용

- 채소 :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딸기 우량묘 증식, 채소 생물학적 방제,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 시스템, 단동형비닐하우스 자동측창개폐시범
- 과수 : 과수 토양감응형 관수시범,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과수성 페로몬이용 해충방제, 사과하수형 전정시범, 과수 고품질 장기저온 저장시범, 사과 초생재배, 과원 전층시비, 감귤원 타이백 피복시범, 인공수분용 꽃가루 은행설치, 감귤환경개선시범
- 화훼 : 국화 재절화 관비시범, 소형 분화 저면관수 재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양란 축성재배, 장미보광처리 시범, 백합 최소양액재배시범, 카네이션 연작재배 격리상시범,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 특작 :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시범, 마이크로파 특용작물 건조 시범,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인삼 해가림시설시범
- 축산 : 한우 인공수정시범, 한우 계획번식시범, 흑염소개량거점농가 육성, 중북부 내한성 사료작물 재배, 답리작 사료작물 증산,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5년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시설 및 장비, 재료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

○ 시범내용

- 병해충 방제 :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농작물 병해충 진단장비 보강
- 친환경 농업 : 토양환경 종합개선, 친환경 종합기술 보급단지

- 축산 환경개선 : 돼지사육 환경개선,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범, 초지사료포 액비사용시범,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 오존이용 축산폐수정화 개선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5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지원내용 : 예찰소 운영비, 시범사업 시설 및 재료비 등

□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 시범

- 시범내용 :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향토음식맥잇기, 전통식품 천연염료염색, 전통규방공예품제조, 고품질포도가공품제조, 농작업환경개선시범(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 농산물선별작업장개선, 딸기작업개선보조도구), 농촌노인전통솜씨계승활동,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은 2005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별도로 정함
- 지원조건 : 보조100%(국비 50%, 지방비 5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자		
계 (83종)	개소 2,214	백만원 27,332	13,666	13,666	-	13,666	-
○ 식량작물시범(14종)	320	4,890	2,445	2,445	-	2,445	-
○ 소득작목시범(39종)	1,050	10,778	5,389	5,389	-	5,389	-
○ 환경보전농업기술(13종)	671	8,394	4,197	4,197	-	4,197	-
○ 농촌생활과학기술(8종)	173	3,270	1,635	1,635	-	1,635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담당부서

구 분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시범	친환경기술과 (031-299-2715)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소득작목 시범	소득개발기술과 (031-299-273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환경보전 농업기술 지도	친환경기술과 (031-299-2706)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시범	농촌생활자원과 (031-299-2671)	생활개선과, 농촌지원과 등	농촌지원과 등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기술 낙후지역으로 새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시범은 2005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제시

○ 선정절차

- 대상농가 중에서 영농규모, 제반여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 조사하고 사업에 따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각도 농업기술 원장에게 제출하고,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도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기계장비,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새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기술 과급 효과 거양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을 변경 승인하고
 -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
- ※ 조정 변경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가급적 시범농가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동안 특별관리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기기는 성질에 따라 사업완료 후 2~3년까지 처분 제한 (구체적인 내용은 2005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참조)

나. 보 고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상황 보고 : 3월말까지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11월말까지
- 농촌생활과학기술시범사업 계획보고 : 3월말까지
- 농촌생활과학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 : 11월말까지
- ※ 세부사업별 보고서 양식(농촌진흥청 정기보고 서식,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함)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기준

-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 할 수 있는 지역
-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다. 선정절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업기술센터 내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자세한 사항은 2005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제시

② 품목별 전문교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 (과장 조영철, 농촌지도관 양승춘)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 능력배양
- 영농 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사회 기반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배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별 농업인 조직 중심의 소집단 대상 연중교육 실시
-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재배기술 및 경영교육을 위한 참여식 교육 강화
- 체계적인 전문 영농인력 육성으로 지역사회 농업발전에 기여
-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력 함양과 실천의지 함양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1항(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예산안)	2006이후 ~ 2010
사업량(천명)		311	429	2,145
사 업 비	계	3,858	5,644	32,746
	보 조	1,929	2,822	16,373
	지 방 비	1,929	2,822	16,373

5. 2005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2) 분야별 농업인전문교육 계획(예시) : 별표 참조

나. 2005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농특회계)			지방비
			계	보 조	용 자	
계	명 428,818	백만원 5,644	2,822	2,822	-	2,822
○ 새해영농설계교육	380,000	3,800	1,900	1,900		1,900
○ 농업인 전문교육	48,818	1,844	922	922	-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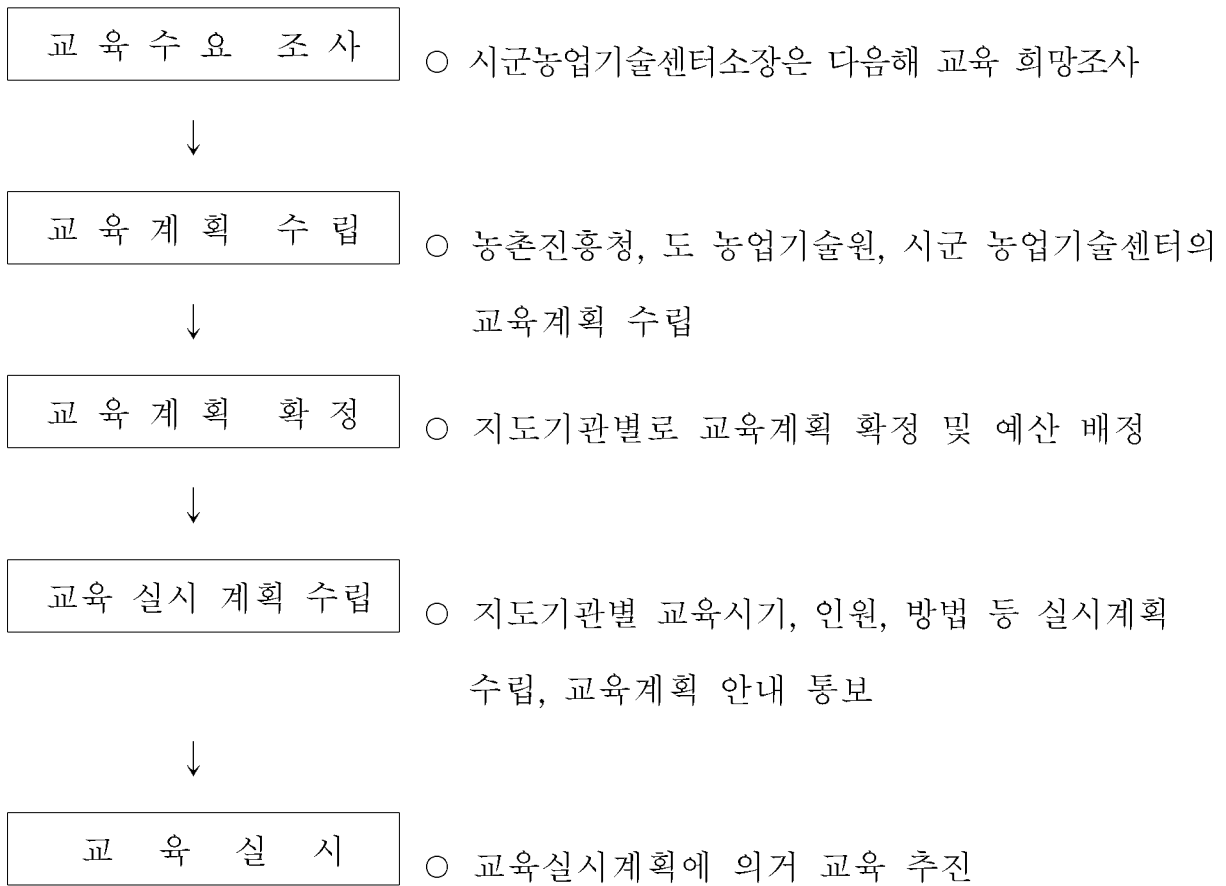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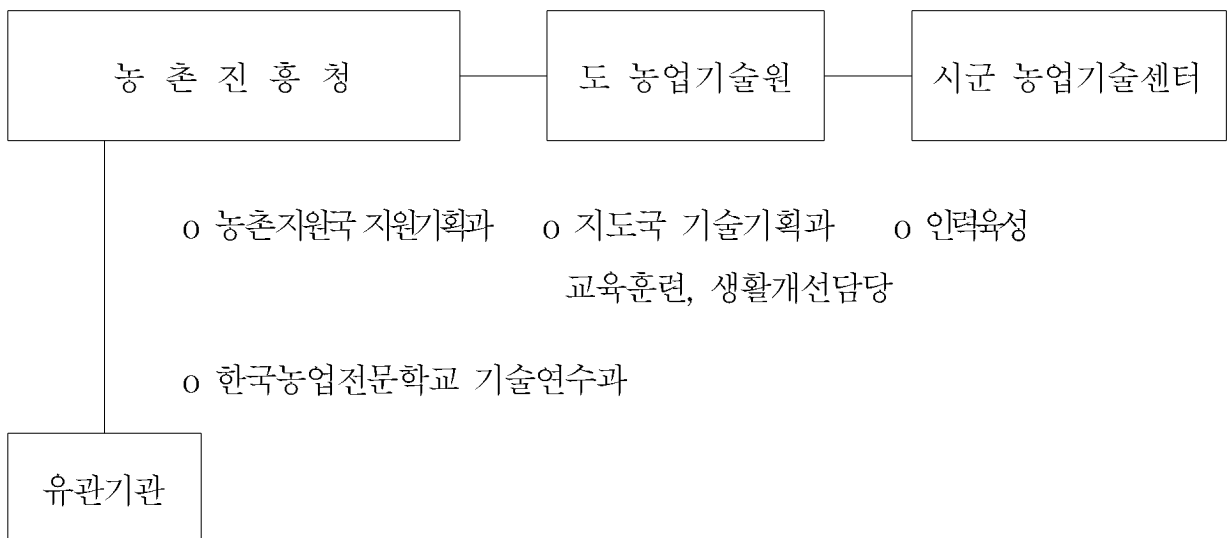
나.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 (전화 : 031-299-2668)
- 시 도 : 도농업기술원 기술기획·지원기획·농민교육과 등
- 시 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담당(자)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기관장은 사업추진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자체 사업평가회 실시로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나. 교육수요조사

- 교육실시 전년도에 경영형태, 규모, 표본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분야별 교육수요 분석
- 평소 교육 및 현장지도 등 농업인 접촉시 교육희망사항 반영

다. 보고·기타 :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의함

6. 2006년도 농업인 교육사업 추진

가. 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교육대상 : 2005년도 교육대상 참조

다. 추진계획 및 기타사항 : 2005년도 지침에 준용하여 지속적인 추진

[별표 1]

2005년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예시)

구 분	시기 (기간)	인원 (천명)	교 육 대 상	세부교육과정 (내 용)	방 법
새해영농 설계 교육	1-2월 (1일)	380	○ 품목별조직농업인 ○ 주산단지 등 참여희망농업인	○ 공통교과: 농어촌발전대책 지역농정시책 ○ 전문교과: 과정별 전문기술 및 개선과제 핵심기술	새품종, 새기술 등 핵심기술중점교육 (강의, 토의, 사례발표 등)
농업인 전문 교육	연중	49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12월 (연 3회 이상)	36	○ 품목별 조직 농업인 대상 중심	○ 품목별 생산 및 유통 단계별 핵심기술 지도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기실습, 견학 등
영농공개 강좌	3-11월 (1일)	6	○ 전문기술교육 참여 희망 농업인	○ 개방화대응 지역 주산 성장작목	강의 및 질의 응답식교육
농업정보 활용교육	연 중 (3일)	5	○ 교육희망 농업인	○ 농가경영장부 ○ 농산물출하정보 시스템 활용 ○ 정보검색 등	이론 및 실기실습
특성화농 업경영자 교육	연 중 (30회)	1	○ 체계적인 영농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영농의 기초에서 부터 전문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실시	강의, 세미나, 사례발표, 실습 등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연 중 (2회)	1	○ 수출농업 주산 단지 농업인 등	○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정보교육 ○ 핵심기술교육	강의, 토론, 사례발표, 실습

Ⅲ. 인력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과장 허태웅, 사무관 양주필)입니다.

①	창업농 지원(자율)
---	------------

1. 목 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 유도
-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3~'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06~'08
사 업 량		120,294	1,910	1,125	1,000	3,000
사 업 비	계	2,111,630	96,000	80,000	80,000	290,000
	용 자	2,111,630	96,000	80,000	80,000	290,000
	보 조	-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2)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자격요건>

- 병역필·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①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4) 지원조건

가) 융자조건

- 채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4.0%,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나) 용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경종 농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영농창업비용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 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창업비용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기타사항

-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30천원, 밭은 평당 35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농지는 지원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지방법원(등기소) 등의 동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확인인)을 필한 경우에 한함

나. 2005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명 1,000	백만원 80,000	80,000	-	80,000	-	-
창업농지원	1,000	80,000	80,000	-	80,000	-	-

* 융자조건 : 연리 4.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 : 대상자 심의·추천
 - * 다만, 특·광역시 등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등에 할 수 있다.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농·축협(이하 “농협”이라 한다) :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 시·도지사는 산하의 세부사업 주관 기관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TEL 02-500-1682,3)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 시·군 :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대상자선정

1) 추천기준

-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장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다만,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의 장)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 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 낙농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중 납유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심의·추천대상에서 제외

<평가기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p>○ 영농정착의욕 (100점)</p>	<p>○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60%) - 하 : 70점(" 20%)</p>	
<p>○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p>	<p>○ 학 력(100점)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경 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 학 및 지역농과(지역농고, 농고중 지역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 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p> <p>○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 6개월이상 : 100점 - 3개월이상 : 85점 - 2개월이상 : 7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 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p>	<p>○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 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외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 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 경영전문학교(재학중의 장 기 현장실습기간 포함)</p>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p>○ 영농사업계획 (200점)</p>	<p>○ 영농사업계획(20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점 <p>※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p>	<p>○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 분야 지도공무원, 농업계 대학 지도교수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p>○ 가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여성의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p>○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야함</p>

2) 선정시 우선순위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의·추천

- 읍·면, 농업기술센터(이하 “읍·면 등”이라 한다) 심사위원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사업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용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300점 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읍·면·동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사무장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읍·면·동 담당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 등 관련 용자취급기관 임직원
- 우수농가 3인 등 총 6인내외(후계농업경영인 대표 1인이상 포함)

나) 대상자 순위 결정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평가점수 300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자 우선 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에 있어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중)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9) : 여주자영농고, 흥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지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자와 사업시행년도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여부를 융자취급기관을 통하여 농정심의회 이전에 확인 실시

다)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부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가능(다만,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 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즉시 대체
-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정과 동시 융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신용불량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속한 대처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체를 통하여 신속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전년도 신청자를 사업대상자 및 취소에 따른 후순위자로도 우선 선발·확보하되, 사업운용 대상자가 부족시 당해 연도 신청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상으로 선발 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신고)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년도에 타 사업분야 또는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 사업시행년도 경과 후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분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타당성을 검토(기 지원된 자금을 타 사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변경을 승인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 배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시달
- 자금배정을 받은 농협중앙회장은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농협·축협)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실시 등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중 후계농업경영인공통교육 이수자가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교육을 이수할 것임을 전제로 미이수시에는 기지원된 자금을 회수 하여도 좋다는 약속서를 제출 받아 확인서 발급가능(이 경우 시장·군수는 차기 교육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불응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지원된 자금을 회수)
- 용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 지원하여야 함
-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용자금)을 당해년도내에 용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예외)

마. 교육훈련

- 시·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공통교육과 영농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교육 대상자(품목별)선발, 교육 일시·장소 등 통보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경영기술교육	2주 또는 60시간 이상	시·도지사가 지정	"

- 경영기술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자체 실습시설을 활용하거나, 선도농장·농과계학교·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경영기술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히 안배하되, 실습교육 비율이 30%이상 60% 이하가 되도록 추진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인은 경영기술 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의 최근 3년 이내 졸업자 중 사업계획서상의 작목 전공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보·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통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사실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자금지원 후 관리사항

1)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연도부터 1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 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3년 이내인 자는 매년,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선정후 5년까지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후 6년이 경과하면 후계농업경영인 관리 카드의 일부항목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생략가능 항목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 경영우수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장자로 우선 선정·지원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자금지원 당시보다 사업분야 경영규모가 축소된 자에 한함)중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형집행중인 자로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위하여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나)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 확보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다시 통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 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3)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4)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체 및 승계

가)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9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용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나) 후계농업경영인의 승계

- 사업자금 용자후 후계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여성 후계농업경영인이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후계농업경영인 승계절차에 준함)

다)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의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현지확인을 거친후 사후관리 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

5)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구매비축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6)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 및 익년도 사업신청자 현황을 계통보고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결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연도 2.1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도 선발 및 지원인원에 포함 집계)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결과 및 익	사업시행년도	별지
시·도지사	년도 대상자 신청결과	2.10까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별지
농협중앙회장	융자실적	20일까지	제7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	반기익월	제9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취소자 현황	30일까지	별지
		30일까지	제10호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연도 1월1일 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으로서,
 -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01년도 이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 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자 신청할 수 없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
 - ※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해야함
 -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다. 신청절차

- 2005년 2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 순위 결정 등은 200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잠정 결정

사. 특이사항

- 시장·군수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전의 신규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심사·추천 및 확인서 발급 등 인력육성사업에 적극 추진해야함
- ※ 2005년도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참조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 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 수)	한 우	젓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한우 입식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 구입				←————→
한우 입식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명단

추천 순위	성명	주 소	주민 등록 번호	최종 학력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2005년도 선정결과 및 2006년도 대상자 신청현황 보고

<200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원	결혼여부		연령				
		기혼	미혼	합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특수전문대			대졸이상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중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중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5년도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원	결혼여부		연령				
		기혼	미혼	합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합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특수전문대			대졸이상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전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종농업분야						축산분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200평	15,000	15,000		'05. 3월중순
한 우 입 식	10두	15,000	15,000		'05. 4월중순
농 지 구 입	1,000평	30,000	30,000		'05. 4월초순
축 사 신 축	200평	30,000	30,000		'05. 4월중순 ~ 7월중순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인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m ² , 두, 수 등)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영농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 유리온실,저온냉장고, 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경영실적 (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6년 경과자 작성 생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계	'81~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연도별로 작성하되, 용자금 회수기간(사업시행 후 15년)은 연도별로 표시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부실후계자(사업취소자) 현황

시·도 별	사업 취소 연도 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 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 년도	지원액 (용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서울시 • • • 제주도														

※ '81년부터 매년도 반기까지 누계로 집계 작성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예 :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문제점 총점은 40점임)

[별지 제13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과(과장 김미숙, 사무관 임채록)입니다.

1. 목적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농지소유면적 20,000㎡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라 함)의 농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함)의 영유아(0~5세) 또는 부모가 없는(사망)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함.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군의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농가 기준 : 농어업인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단, 5세아는 100%)하여 매월 지급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에 대한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4년(예산)	2005년
사업량(명)	49,251	31,109
사업비(백만원)	60,442	44,724
- 국비(보조)	30,221	22,362
- 지방비	30,221	22,362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20,000㎡미만 농가의 농업인의 영유아(0~5세)가 다음 시설 (이하 “보육시설 등”이라 함)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으로 함.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 ※ 아동의 부·모 모두 상시 근무 직장을 갖는 등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부·모중 1인이 실질적인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사실 확인 필요)
- 농지소유면적 2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기준 : <별표> 참조
 - ※ 농지소유규모는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가 속한 농가의 전체 면적임

(2)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 연령별 월지급액/1인
 - 만 0~1세 149,500원, 만 2세 123,500원, 만 3~4세 76,500원
 - 만 5세 : 153,000원 범위 이내의 보육료 납부액
- ※ 참고 : 법정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월별 정부보육료 단가
 - 만 0~1세 299,000원, 만 2세 247,000원, 만 3~5세 153,000원
- '05년도 영유아 연령 기준표(보육료 지급 연령 기준일 : 3월 1일)
 - 0세아 : '04. 3. 1 이후 출생
 - 만 1세아 : '03. 3. 1 ~ '04. 2. 28 출생
 - 만 2세아 : '02. 3. 1 ~ '03. 2. 28 출생
 - 만 3세아 : '01. 3. 1 ~ '02. 2. 28 출생
 - 만 4세아 : '00. 3. 1 ~ '01. 2. 28 출생
 - 만 5세아 : '99. 3. 1 ~ '00. 2. 28 출생

- 교육비 :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 하되
 - 만 5세아 : 입학금과 153,000원/월 범위내 수업료 납부액
 - 만 3~4세아 : 국공립유치원 26,500원, 사립유치원 76,500원

(3)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 ※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대상('05년신설)에 해당되는 아동도 제외

나. 2005년도 사업비 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비 고
31,109명	44,724백만원	22,362	22,362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02)500-1605~6]
- 시·도 : 농정업무담당부서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절차

- ① 농업인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 배부조치
-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농업인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 후 서명(날인)하여 읍·면·동에 제출
- ③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조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고, 그 결과가 시·군·구로부터 통보되면 이를 농업인(신청인), 보육시설 등에 통지
- ④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군 사회복지부서, 시·군 교육청 협조)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매년 12월 20일까지)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 ※ 사업시행연도 1월분부터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육실적(보육료 등 수납증명서류 사본 포함)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근거로 농업인(신청인)에게 지원금 계좌입금

⑤ 보육시설 등

- 읍·면·동으로부터 농업인(신청인) 자녀의 시설이용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 지원대상 아동의 월별 보육실적 등을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시·군·구에 제출되도록 조치

※ 연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1분기(전년 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 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전년 1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4호 서식)
 - 1분기(전년 1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배정

(2) 사업비 집행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는 양육비 지원금 청구서로 같음.
 - ※ 농업인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때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보육시설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등(보육료 수납증명서류 사본 등)을 익월 3일까지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보육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실적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연
령별 보육료 등 지원금을 익월 10일까지 입금
 - 시설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육)실적통지서상의 보육료(교육비)
수납액과 보육인정기간을 확인하여 15일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의
1/2만 지급
 - 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공휴일은 보육일수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방학중이라도 보육료(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 15일이상 보육실적이 인정되더라도 보육료(교육비)를 지원금보다 적게
수납하였을 경우 수납액 만큼만 지급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보육실적 제출이 늦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 매년 12월 지급분은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되도록 일정을 조정 시행

(3) 부당 지급 등에 대한 조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해당 농업인에 대한
보육료 등 지원을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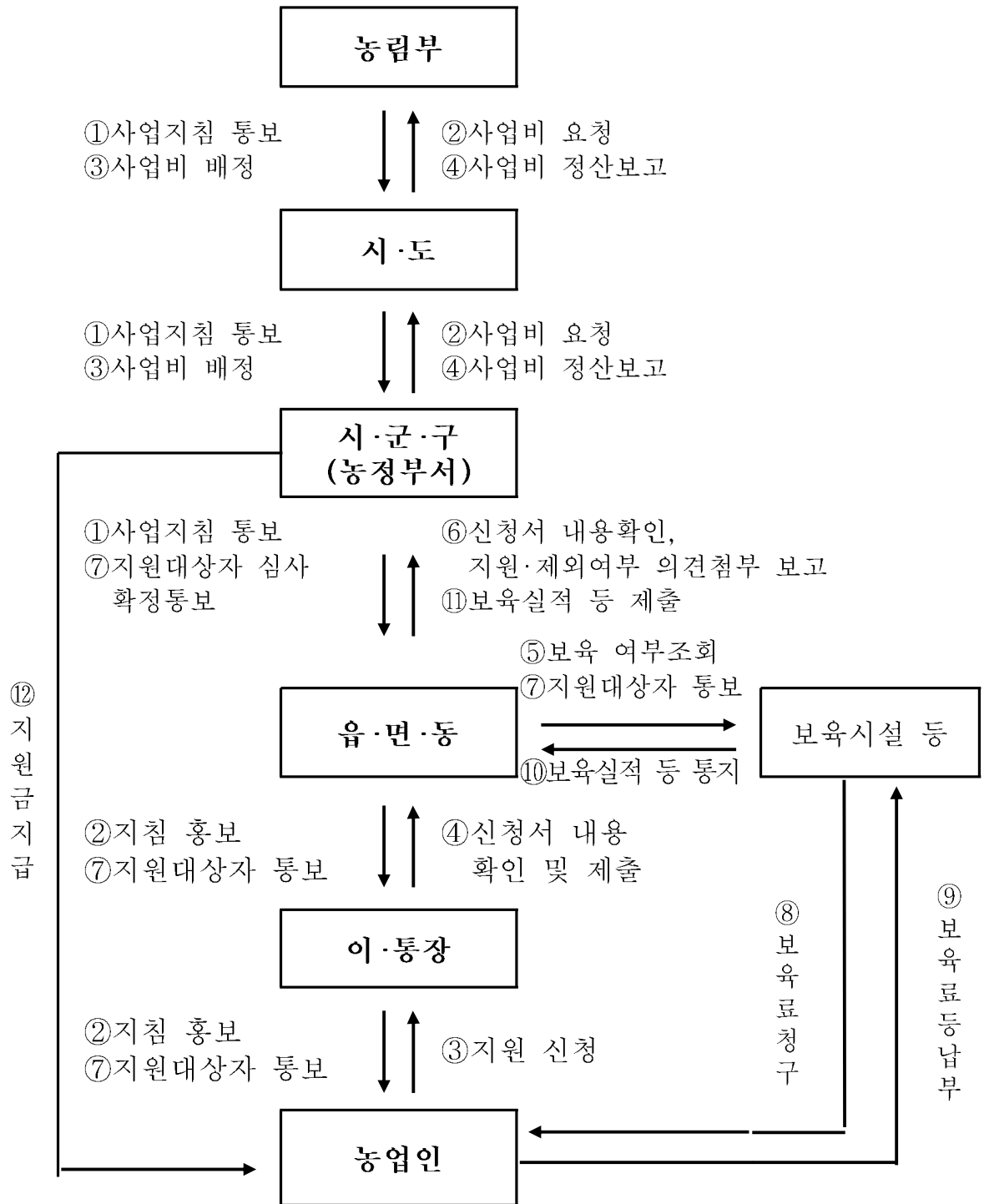
(4) 양육비 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사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보육시설 등 운영자 :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홍보

(5)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익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12-59-596, 2005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반납금)

마. 사업시행 체계도



< 별표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p>○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20,000㎡미만</p>	<p>○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젖소,사슴 : 55마리미만 - 돼지,개 : 420마리미만 - 산양,면양 : 400마리미만 - 토끼,친칠라,밍크 : 8,800마리미만 - 가금 : 21,000마리미만 - 양봉 : 280군미만 	<p>○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1,2,3호에 속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소유 규모 1,000,000㎡미만</p>	<p>○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3조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50M/T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14.0ha미만 • 가두리 1.0ha미만 • 축제식 5.0ha미만 • 육상수조식 0.1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18,000㎡ 소유, 소 45마리 및 돼지 3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200 년 월분 보육(교육)실적 통지서

(시설명 :)

일련 번호	아동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아동과의 관 계	전화번호	보육료 (교육비) 수납액	15일이상 보육·교육 실적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위와 같이 보육(교육) 실적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보육·교육시설의 장) (직인)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보육료(교육비) 수납증명서류 사본 1부.

※ 보육·교육실적란에는 15일이상이면 “이상”, 15일미만이면 “미만”으로 표시

(A4 횡으로 사용)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영유아수	금 액	영유아수	금 액	영유아수	금 액	영유아수	금 액	
	명	천원	명	원	명	원	명	원	
0~1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2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3~4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5세	국비	-		-		-		-	
	지방비	-		-		-		-	
	소계								
합계	국비	-		-		-		-	
	지방비	-		-		-		-	
	합계								

- 주) 1. 영유아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5.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영유아 양육비 국비보조 신청서(/4분기)

시·도별 :

(단위 : 명, 천원)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아동수	사업비	국비
보 육 료	0~1세									
	2세									
	3~4세									
	5세									
	소계									
교 육 비	3~4세									
	5세	입 학 금								
		수 업 료								
		소 계								
	소계									
합 계										

주) 1.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2. 유치원 교육비 지원아동 중 5세아의 수업료 지급 아동수는 입학금 지급 아동수가 포함된 수치임

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김남수, 사무관 김재광)입니다.

1. 목 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UR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게될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94년도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
- 지원체제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국고를 출연받아 학자금 융자·회수 등의 사업 추진

3. 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제1호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4~'00	'01	'02	'03	'04	'05예산
용자인원	120,474	18,017	15,911	19,927	26,428	30,000
용자규모	119,775	24,535	23,298	36,122	59,939	60,00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액 : 당해 학교의 매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

※ 지원 제외 또는 지급 중지 대상

- 국가, 보호자의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학자금의 보조, 용자 등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위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차액만 신청 가능)
- 정확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전학, 자퇴할 경우
- 용자 받은 학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 용자금 수령을 목적으로한 위장 전출·입 등 기타 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상환방법

-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날부터 용자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이자 없이 원금에 대하여 월별, 기별 또는 일시 상환 가능

나. 2005 사업비(예산내용)

(1) 지원인원 : 30,000명(학기당 15,000명 수준)

(2) 지원규모 : 60,000백만원(학기당 30,000백만원 수준)

※ 정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2005년도 출연 예산액 : 12,733백만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용자금 지원 및 회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사회과(☎02-2110-4298, FAX : 02-503-7214)
- 한국학술진흥재단 : 장학지원팀(☎02-3460-5633~4, FAX : 02-3460-5640)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우편번호 137-748)

다. 사업시행절차

- 농림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국고예산 출연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국고예산과 기 지원된 용자회수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 용자 지원 및 회수

라. 용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1) 2005년도 지원계획 공고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각 대학의 총(학)장에 대한 공문 발송

(2) 용자금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 용자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2005년도 지원계획 공고시 함께 공고

6. 행정사항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자금용자지원 실적과 계획을 매년 농림부에 보고
- 보고기일 : 지원실적은 익년도 1월말까지, 지원계획은 전년 12월말까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과장 허태웅, 행정사무관 이경천)입니다.

1. 목 적

- 농업경영의 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
- 컨설팅서비스 민간공급기반을 정비·강화하고 농가의 컨설팅 수요를 촉발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율적 시장기구에 의한 컨설팅 추진(소프트웨어적 공공투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의 컨설팅수요 및 민간컨설팅기관의 공급능력이 취약함을 감안, 컨설팅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컨설팅 내실화를 유도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 컨설팅 필요 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이하 ‘공급업체’라 함)간의 자발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기관은 계약의 알선과 적정화, 계약이행여부 감독, 정보제공 및 제도정비에 주력
- 지원대상 경영체와 공급업체 및 행정기관 사이에 정보유통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컨설팅 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컨설팅 효과를 제고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7조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제26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제11조(가공업자의 경영개선 지원)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4조(자금지원)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5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4.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999~2002	2003	2004	2005	2006이후
사 업 량	1,973	670	873	1,000	8,639
사 업 비	15,098	5,696	6,550	8,000	107,200
· 국 고	5,070	1,709	1,965	4,000	6,400
· 지방비	2,749	1,139	1,310	1,600	760
· 자부담	7,279	2,848	3,275	2,400	65,131

* 주1) 사업량은 수요·공급자간의 실제계약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주2) '06년도에는 우수컨설팅(지원 농업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 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사업이 조기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
- 민간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희망 농업 경영체(농업법인, 가공업체 및 개별농가)에 대해 컨설팅료 일부를 지원,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실행토록 함

(2) 지원대상

- 원예·특작, 축산분야 및 RPC, APC, 쌀전업 농업경영체(농업관련 친환경 분야 포함)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자)
- ※ RPC, APC, 쌀전업농은 '05년도부터 신규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농업경영체 배정 및 공급업체지정에 대한 사항은 일괄 배정·지정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컨설팅비용 지원 : 경영체당 평균 8.0백만원(예산에 반영된 총사업비 단가)
 - 지원을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30%
- 사업비한도 : 개별농가 : 15백만원 이하, 농업법인·업체 : 30백만원 이하
 - 계약금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가능

(4) 지원내역

- 지원대상에 대해 사업비 한도 내에서 컨설팅료의 70% 지원
 - 사업비한도 : 개별농가 : 15백만원, 업체 및 법인 : 30백만원
- 지원자금은 농업경영 컨설팅료의 지급 이외에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컨설팅 내용은 [별표 2]에 예시된 바에 의함

나. 2005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농업경영컨설팅 지 원 사 업	1,000	8,000	4,000	1,600	2,4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컨설팅사업 추진 관련 자문, 사업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시·군 농정담당공무원, 지도계통 전문가, 농업계 대학 교수·연구자, 선도농가, 컨설팅 전문가를 위촉,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지역농정시책이나 농업여건, 컨설팅가능 기관·업체 등을 감안, 원예·특작, 축산, 가공분야 중 세부사업분야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지침 제정 운영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02-500-1686~7, FAX : 02-503-7217)
- 시·도 : 농정 담당 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다. 컨설팅지원 농업경영체 선정 및 공급업체 지정

(1) 컨설팅지원 농업경영체 선정

1) 신청자격 : 공통 필수사항

- 원예·특작, 축산분야 농업경영체, RPC, APC, 쌀전업농 및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자)체
 - 친환경분야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자격 부여(천적활용, 토양개선 등)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신규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① 농림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인 경영체
 - ② 농업관련기관에서 컨설팅관련 교육을 3일 이상 받은 경영체
 - ③ 후계농업인, 신지식농업인 등 전문 경영체
 - ④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영체
 - ⑤ 지도계통 및 전액 자부담으로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
 - ⑥ 컨설팅 사후관리 및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효과가 있는 우수 경영체
 - ⑦ 경영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며, 수출실적(계약)이 있는 경영체
- ※ 시장·군수는 위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현지실정으로 순위와 관련 없이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을 받고 조정 시행

3) 선정절차

- 시·도별 지원대상 경영체수(예산기준)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계약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 지원대상 RPC, APC는 농림부 해당 사업과(식량정책과, 유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정하여 시·도에 통보하는 경영체를 시·군에서 선정함
- 시·군·구별 선정대상 경영체수 배정(예산기준)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분야별(시설·원예, 축산, 가공 등)로 지원대상 경영체수를 사전에 결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컨설팅 희망 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적격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시 관할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
 - 시장·군수는 신청 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순위를 정할 때 선 순위자의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 순위자를 대체선정
-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업체가 없을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결과 보고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별 선정내역을 취합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2) 컨설팅 공급업체 지정 : 공급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단,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특별·광역시는 인근도가 관할한다. 이하 같다)

1) 공급업체 지정신청자격 :

- 농업분야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 목적에 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사(분사)운영 등은 별도의 지정 없이 운영(운영시 시·도에 보고)
 - ※ 등록업체는 그 부속기관도 포함하나 독립운영 및 계약의 이행지침은 당해 공급업체에 일체 귀속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것

○ 전문인력 보유시 필수사항

- 전문인력 4인 이상 보유한 민간기관(농업관련대학 포함)·업체 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공인회계사 1명 포함)으로 구성
 - * 전문인력은 다른 공급업체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 자격기준은 법령상 공인된 해당분야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상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공급업체

- 홈페이지 게시 필수사항은 컨설팅업체의 현황(주소 ; 약도 첨부, 연락처,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 등)
- 업체의 경영상태, 농업경영체의 분석자료, 게시판 운영
-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실적 및 평가사항(신규업체는 제외)
- 전문인력 현황(전문분야는 구체적으로 제시, 정보가 도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 가능)

<평가사항> 농가현황 경영상태 등 문제점 파악, 컨설팅 실행내용,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 및 변화내용(구체적으로 예시)

2) 지정절차

- 공급업체(지정신청서 제출)→ 시·도(자료검토·심사 후 지정, 지정결과를 타 시·도 및 농림부 보고) → 농림부(지정업체 현황을 시·도에 통보, 홈페이지 게시)
 -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시·도에서는 공급업체에 대한 자료를 검토·현지실사를 거쳐 사실여부 확인 후 지정 결정
 - 공급업체지정 신청자격을 갖추고 전년도에 전국에서 5건 이상 계약한 공급업체는 변경사항만 신고 토록하여 지정하고 기타 재지정 절차는 생략
 - 단, 컨설팅공급자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은 제출
 - 컨설팅 공급업체 지정 : 시·도지사는 익년도 1월말까지 완료
 - 시·도지사는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할지역 공급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지정
- ※ RPC, APC의 공급업체는 농림부(유통정책과, 식량정책과)에서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라. 사업시행

(1) 계약체결

1) 설명회 개최 : 시·도지사

- 참가대상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및 공급업체 대표
- 개최시기 및 방법 :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및 공급업체 지정을 완료 후, 시·도지사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1회 이상 개최
- 시·도지사는 공급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소개자료, 계약서 실례 등과 지원대상 경영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경영관련기록을 서로 교환 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계약 적정화 유도

2) 계약체결 및 계약승인 요청

- 계약체결 :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지원대상 경영체 및 공급업체는 계약체결 협의를 거쳐 계약일은 6.30일 이내, 계약만료일은 익년3.31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서 작성
 - 시장·군수는 계약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계약서에는 계약분야에 대한 [별표 3]의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
- 계약승인요청
 - 공급업체는 가계약서와 함께 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계약승인 요청

- 수행계획서 : 대상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현황, 개선필요사항, 컨설팅의 주요내용 및 개선목표, 컨설팅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 3회 이상 지원 경영체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년도 또는 직전 반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첨부
- 계약체결건수 제한
 - 업체당 계약건수는 100건 이내로 하며, 지역제한 없이 컨설팅 운영 가능
 - ※ 시장·군수는 해당 공급업체의 보유인력을 감안하여 공급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사업물량 수주로 컨설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의

(2)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공급업체로부터 가계약서 및 첨부문서 등을 제출 받아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경영체의 성격, 약정된 컨설팅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계약쌍방에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금액 결정시 당해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대금 지원약정’[별표 4]을 체결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지침상의 사업취소사유 명시하여 공급업체와 경영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사업비 지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원대상 경영체의 동의하에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 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명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경영체가 공급업체의 계좌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경영체 명의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1) 계약의 무효

- 계약 무효 사항인 경우 기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

2) 계약의 해지

- 공급업체가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 경영체와 타 공급업체를 알선
 - 대체계약의 체결시 지원금액결정일 및 계약 게시일은 지원 6.30일(추가·대체계약은 9.30일)이내에 농업경영체와 공급업체간의 계약이 체결된 날로 하고, 계약 종료일은 익년도 3.31일 이내이어야 함

- 실비의 범위 기준은 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르며 그 부담은 계약금액, 지원금액 등 결정 시 책정된 사업비한도 및 지원조건을 감안, 비례적으로 자부담과 보조금(국비, 지방비) 순으로 안배함(이하 실비는 자금회수와 동일 지침 적용)
- 지원대상 경영체가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3) 계약의 변경

- 계약 변경시 계약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중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규정에 의함
 - 중요계약사항변경 : 계약금액, 컨설팅서비스 내용 및 컨설팅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컨설팅 참가인원을 늘리는 계약변경은 제외), 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공급업체는 계약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계약변경 사유서(서식자유, 계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실시
- ※ 총계약기간의 1/2을 경과하여 계약을 변경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농업경영체는 차년도 컨설팅 지원을 배제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공급업체는 차년도 공급업체 지정시 제외
- 시장·군수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시 15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4)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보조금을 지급
 - 계약금 :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자부담금이 공급업체에 입금된 사실확인 및 현장 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 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중도금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3주 이내 현장 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 불이행 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잔 금 : 계약기간 종료이후 컨설팅결과보고서(또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공급업체는 시장·군수에게 컨설팅결과 요약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현장 확인 후 컨설팅서비스수행계획서, 컨설팅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계약의 이행 촉구
 -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컨설팅지원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상세한 것은 사후관리 항목 참조)
- 보조금 교부신청
 - 공급업체는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컨설팅결과보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 계약기간 종료 후 공급업체의 잔금지급 시 컨설팅실시에 대한 평가서 및 지원대상경영체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제출 토록하고, 시·군에서는 현지실사를 거쳐 교부금 지급

(5) 추진일정

- 경영체 및 공급업체의 사업참가 신청 : 2004.12~2005.1.20
- 대상경영체 선정 :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신청 접수 후 자체심사[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를 거쳐 컨설팅대상 경영체 선정
- 대상공급업체 지정 : 1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신청접수 후 자체 심사[별지 제6-1호 서식을 활용] 또는 자문위원회(또는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공급자 지정
- 계약체결 : 6.30일까지
 -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계약만료일은 익년도 3.31일 이내로 함
- 계약체결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 달 이상 게시·광고하되,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와 농림수산정보망에도 게시·광고
 - 신청서 제출기관 : 경영체 → 시·군, 공급업체 → 시·도
 - 시장·군수는 지원 농업경영체와 공급업체간의 계약서 및 첨부문서 검토 후 현지실사를 거쳐 3주 이내에 지원금액결정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급업체	·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공급업체지정신청서 1부 등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 1부 · 홈페이지 구축 운영현황 1부 · 기타 소개자료	별지 제4, 4-1, 4-2호 서식 및 첨부서류 신청자 희망에 따라 제출
• 경 영 체	· 농업경영컨설팅신청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및 첨부서류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설명회 개최시 지원된 농업경영체에 공개

- 1) 당해 공급업체의 일반현황(전문인력, 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등 포함)
- 2)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상세히 기술)
- 3) 기존 컨설팅실적 및 효과(계약서 사본 포함)
- 4)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내역
- 5)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서비스제공계획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시 시장·군수는 계약서(변경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바. 지원 농업경영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 평가시기 : 계약기간 완료 후 4주 이내 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 지원 농업경영체에 대한 평가는 공급업체가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시·군에서 평가하되, 도에서는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0%에 해당되는 경영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익년도 사업배정시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시·도의 상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평가내용 : 컨설팅실시 전의 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문제점 해결, 소득증가, 만족도 등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사항위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 실시
 - 평가내용에 대한 사항은 시·도별로 정하여 시·군의 사업완료 이전에 통보하며,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계량적인 수치접근 양식을 취할 것
-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양식 보고서로 시·군 → 시·도를 통하여 보고<추후 보고양식은 별도 지정 통보>

사.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설팅 대상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 내용과 기대효과를 컨설팅공급업체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언어 계약 기간 중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하여야 함

(2)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공급업체와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컨설팅일지[별지 제8호 서식]를 기록
 - 시·도, 시·군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시는 이에 응해야 함
- 공급업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상황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
- 공급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와 컨설팅결과요약보고[별지 제12호 서식]를, 익년 7월말까지 컨설팅추진실적보고[별지 제11호 서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업용 자산보유 변동, 자산/부채현황 변화 등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현황기술서에 기재된 경영개선 목표의 달성 정도,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공급업체는 매보고시 해당 작목 농진청 진단표서식에 따른 진단결과를 작성·제출

(3) 사업취소

1) 개별 계약의 지원결정취소

- 시장·군수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컨설팅의 내실화 또는 지원대상 경영체의 적극 협조를 1차 촉구하고, 그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공급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 경영체와 타 공급업체를 알선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을 경우 경영체 선정을 취소하고 공급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사업신청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서 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 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컨설팅료 보조지원액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부담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은 경우 지원 자금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대상 경영체 선정자격 제한
- 계약의 무효·해지의 경우에는 본 지침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자금 회수

2) 컨설팅공급업체의 지정 취소

- 공급업체 지정후 계약기간 진행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
 - 공급업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 대상 경영체에 타 공급업체를 알선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공급업체 지정신청 또는 컨설팅관련보고서 공급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이를 되돌려준 경우, 컨설팅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공급업체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공급업체 지정 배제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의거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농림부에 보고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결과 보고 : 2005.2월말[별지 제6호 서식]
 - ※ 추가선정의 경우 해당월말 보고
 - 컨설팅공급업체지정결과 보고 : 2005.2월말[별지 제6-1호 서식]

- 컨설팅계약체결상황보고 : 매월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검정보고 : 익년도 12.31까지
- 공급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계약서 별로 컨설팅서비스수행계획서,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 '04년도 지침상의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대한 보고는 시·군에서 시·도에만 보고(농림부 보고 생략)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경영체 : 시·군 농정과, 산업과
- 공급업체 : 시·도 농(어)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나. 신청서 제출기한

- 농업경영체 : 시장·군수에게 2005.1.20까지 신청서제출
 - 시장·군수는 1.30까지 선정완료, 시·도지사에게 2.10까지 선정결과보고
- 공급업체 : 시·도지사에게 2005.1.31까지 지정신청서제출
 - 시·도지사는 지정결과를 2.15까지 농림부에 보고

※ 시·도는 운영상황에 따라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자체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의 상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이 지침에 불구하고 RPC, APC의 경우 농림부 해당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침에 따름.

[별표 1]

도별 2005년도 컨설팅지원예산 배정내역

(단위 : 개, 천원)

지역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10	80,000	40,000	16,000	24,000
경기	120	960,000	480,000	192,000	288,000
강원	40	320,000	160,000	64,000	96,000
충북	100	800,000	400,000	160,000	240,000
충남	115	920,000	460,000	184,000	276,000
전북	170	1,360,000	680,000	272,000	408,000
전남	155	1,240,000	620,000	248,000	372,000
경북	115	920,000	460,000	184,000	276,000
경남	95	760,000	380,000	152,000	228,000
제주	10	80,000	40,000	16,000	24,000
유보	70	560,000	280,000	112,000	168,000
계	1,000	8,000,000	4,000,000	1,600,000	2,400,000

(*) 위 내역은 추후 변경가능하며 시·도지사는 경영체수 등에 의거 사업량 배정을 고르게 하되, 컨설팅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량 조정 가능

[별표 2]

컨설팅서비스분야 및 세부내용 예시

분야	항 목	세 부 지 원 내 용
1) 경영 관리	사업계획	생산계획, 판매계획, 기계장비계획, 제품별 가공기술, 추정시 설투자비 산정,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타당성 분석 등
	재무회계 ※ 필수	재무제표 분석, 투자사업의 수익성 분석, 현금흐름분석, 합리적인 자금조달 및 운영방법, 보유자본의 포트폴리오, 전산기장, 재무제표 작성 등
	판매관리	시장분석, 판매전략 수립, 판매방법 개선, 판매촉진 전략, 신판로 개척의 접근방법 등
	인력관리	근로자의 숙련도, 고용형태의 적절성, 적정인력배치, 자동화 방안, 작업능률 제고 방안, 경영자 및 종업원의 의식교육 등
	정보관리	정보유형별 정보원 및 접근방법, 수집정보의 전산관리, 정보통신망 이용방법 등
2) 생산 기술	생산기술	생산관리기술, 농자제조달, 농자제이용기술, 친환경 기술 등
	사양기술 등	생산관리기술, 양축자제조달, 농축기계이용관리기술, 축산 시설·환경·위생방역기술, 친환경기술 등
3) 가공 기술	가공기술	전처리기술, 건조기술, 추출·농축기술, 여과기술, 분쇄기술, 살균기술, 제품품질 평가기술, 저장기술, 유통기한 연장기술, 식품첨가물 활용기술 등
	공정설계검토	공정자동화 방안, 생산설비의 효율적 배치, 기계장비의 효율성 평가, 공정흐름도의 분석, 생산능력 제약요소 진단 등
	저장·유통기술	원부재료의 보관, 제품의 보관 및 유통방법, 저장시설 및 운영방법의 개선 등
	제품의 다각화	신상품 제조기술, 가동율 제고기술, 부산물활용기술 등
	위생관리기술	공장위생, 개인위생 등
	포장·디자인	포장재질, 포장용기, 포장방법, 디자인, 포장의 표시사항 개선 등

※ 재무회계는 필수사항이며,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시행 가능

[별표 3]

컨설팅용역계약서 필수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료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경영현황기술서에 따른 경영개선목표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약정도 가능
○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본지침 별표2를 참고하되, 시·도지사 승인하에 지침에 없는 내용도 컨설팅내용으로 채택가능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및 비방문 컨설팅(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규정
○ 컨설팅료지급방법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인지, 행정기관인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 (기관 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 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표 4]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대금 지원약정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2005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경영체와 컨설팅공급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_____도(이하 “갑”이라 한다)는 _____공급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용역대금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용역수행내용 기재) “을”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하며, 용역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용역계약 통보) “을”이 용역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지침상 별지 제4-1호서식(컨설팅전문인력보유 현황)에 의한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대금 지원의 취소) 이미 지원된 용역의 용역수행결과가 법령 등의 목적에 위배한 경우 또는 용역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용역대금 지원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용역대금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지원대상 경영체”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정부지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005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지 제1호 서식]

컨설팅서비스수행계획서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컨설팅공급업체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재지			
전화				전화			
주재배작목				부재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자 현 산 황	자산종류	계약체결시장부가액		활 용 및 관 리			
정 책 자 금 지 원 현 황	지원자금	계약체결시지원내역		용 도			
	합 계						
컨설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계약금액	원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경영체 실태조사표

1. 지원대상경영체 개요

경영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설립일 (영농개시일)		전년도판매액 (순소득)	()
경영규모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주사업)		부재배작목 (부대사업)	

2. 컨설팅서비스 내용

--

3. 검토의견

--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이행확인서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이행확인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 _____와(과) 농업경영
컨설팅공급업체 _____와(과)간에 체결된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_____개월간의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계약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계약 쌍방간에
이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경영체명 : _____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공급업체지정신청서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공급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일	'05컨설팅계약액					
전화	F A X					
홈페이지주소	MAIL주소					
컨설팅 가능분야 (해당 항목 모두표시)	① 경영관리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무관리, <input type="checkbox"/> 판매관리, <input type="checkbox"/> 인력관리, <input type="checkbox"/> 정보관리 ② 생산기술(<input type="checkbox"/> 생산기술, <input type="checkbox"/> 사양기술) ※ 컨설팅품목 : () ③ 가공기술(<input type="checkbox"/> 가공기술, <input type="checkbox"/> 공정설계검토, <input type="checkbox"/> 저장·유통기술, <input type="checkbox"/> 제품다각화, <input type="checkbox"/> 위생관리기술, <input type="checkbox"/> 포장·디자인) ④ 기타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유자격자	유관기관· 업체 5년 이상근무자	총계
내부전문인력(명)						
외부전문인력(명)						
주요시설·장비	명칭 및 수량			용도		

이상과 같이 귀도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니 컨설팅서비스 공급업체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표자 : (인)

-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립 및 변경등기부등본 1부
 3. 컨설팅전문인력보유현황 1부
 4. 주요 컨설팅실적 1부.

[별지 제4-1호 서식]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외부인력 소속	자격및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력	전담 지역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주)1.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2. 전문인력 개인별 컨설팅실적기술서 첨부 가능, 전담 시·도를 기재
 3. 기관·업체의 경우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증빙첨부
 4. 소속 : 내부인력은 ‘내부’로, 외부인력은 ‘소속’을 기재
 5. 외부인력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참가동의서’를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컨설팅 기간	경영체명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과 (구체적)	컨설팅팀	협력기관 및 협력 컨설턴트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명		
	주소						외부(명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명		
	주소						외부(명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명		
	주소						외부(명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명		
	주소						외부(명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명		
	주소						외부(명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명		
	주소						외부(명
	전화						

- ※ 1.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
 2.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신청서
 =====
 (원예·특작, 축산 경영체, 쌀전업농 작성용)

농가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재지				
설립일		전년도판매금액		
전화		F A X		
홈페이지 주소		MAIL주소		
주재배작목		부재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종합자금지원여부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받음	종합컨설팅필요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지도계통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받음	컨설팅기관		
정책자금 지원현황	지원년도	자금종류	지원내역	금액(백만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컨설팅경험	연도	컨설팅업체	성 과	
				확인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정보통신활용능력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가입통신망(,)			

※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함

컨설팅필요분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구체적으로)	
경영상대 평가의견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20 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경영체명 : (인)
 대표자 : (인)

- 별첨 1. 최근 1년간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사본 1부
 2. 지도계통컨설팅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와 진단결과의견서(서식자유) 첨부
 3. 정보통신서비스 활용능력이 있는 경우 가입 및 최근 3개월 이상 이용실적증빙

농업경영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 선정 결과

(○○시·군)

(농업법인)

순 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개별농가)

순 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 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 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쌀전업농)

순 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 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 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가공업체)

순 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RPC, APC)

순 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 해당란에 ○ 표시

※ 코드번호부여 방법: AABBCDD 예) 0412122('04년도 전북의 법인 22순위)

(AA=년도, BB=시·도 수신처기호, C=법인, 가공업체(1), 개별농가(2), DD=순위)

컨설팅서비스공급업체 지정 결과

(○○시·도)

기업 명칭	품목	조직형태	소속 기관 업체	컨설팅 분야	전문 인력 (명)	외부 인력 (명)	최근2년간 유료계약 (건,백만원)	품목관련 주요 시설장비	정보통신 서비스 시행여부

- ※1. 품목 : 원예분야는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으로 대분류하고 ()속에 세부 품목을 기입. 축산분야는 축종을 기입
- 2.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형태, 부속기관(연구소), 학교법인, 국공립대학, 전문가팀 등
- 3. 컨설팅분야 : 별표2의 분야별 구분에 의하고, () 속에 세부컨설팅가능 항목 기입
- 4. 유료계약에는 정보화컨설팅, 경영교육, 연구용역 등 불포함
- 5. 정보통신서비스 : 해당란에 ○ 표시

[별지 제8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일지
 =====
 (경영체보관용)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명	
					농가	컨설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농업경영컨설팅일지
 =====
 (컨설팅공급업체용)

연월일	컨설팅방법	대상경영체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 컨설팅공급자가 2건 이상 컨설팅공급계약체결시 대상경영체별로 컨설팅일지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컨설팅 계약 체결 상황 보고

○○○○(시·군)

시군	품목 (경영 규모)	컨설팅 공급 업체명	컨설팅 대상 경영 체 법 인 체 명(성명)		컨설팅 분야	계약 액 (만원)	보조 액 (만원)	계약 기간	컨 설 팅 내 용	경영 개선 목표
		홈페이지 주소	주소 (전화					~		
			주민 번호							
			법인 체명							
			성명 (ID)							
		홈페이지 주소	주소 (전화					~		
			주민 번호							
			법인 체명							
			성명 (ID)							
		홈페이지 주소	주소 (전화					~		
			주민 번호							
			법인 체명							
			성명 (ID)							
		홈페이지 주소	주소 (전화					~		
			주민 번호							
			법인 체명							
			성명 (ID)							

[별지 제11호서식]

컨설팅추진실적보고

○○○○(시·군)

품목	컨설팅 공급 업체명	컨설팅대 상 경영체명	컨설팅 분야	컨 설팅 내 용	경 영 개 선 목 표	경 영 개 선 실 적	문 제 점 과 제 향 후	시 · 군 평 가 의 견
	홈페이지 주소	(ID)						
	홈페이지 주소	(ID)						
	홈페이지 주소	(ID)						
	홈페이지 주소	(ID)						
	홈페이지 주소	(ID)						
	홈페이지 주소	(ID)						

[별지 제12호 서식]

컨설팅 결과 요약 보고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공급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재지		
전화			전화		
주채배작목			부채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농업용자산 보유변경 상황	자산종류	계약체결시장부가액	자산종류	계약종료시장부가액	
정책자금 추가지원	지원자금	계약체결시지원내역	지원자금	계약종료시지원내역	
	합계		합계		
부채변동상황	부채종류	계약체결시 부채액	부채종류	계약종료시 부채액	
	정책자금		정책자금		
	제도금융		제도금융		
	사채		사채		
컨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주요컨설팅 내용	내 용		성 과	문 제 점
경영개선실적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경영개선목표	경영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 별첨 : 1. 농업경영컨설팅결과보고서 1부.
2. 보고시점 현재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 1부 작성 첨부.

IV. 소득보전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이기식, 농업서기관 조일호)입니다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시책추진방향

-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97~'03	'04	'05	'06이후	계	
사 업 량	33,311	5,254	8,278	46,200	93,043	
사 업 비	계	90,586	14,100	28,604	314,800	448,090
	보조금	89,136	13,628	27,654	305,356	435,774
	사 업 관 리 비	1,450	472	950	9,444	12,316

※ 2005년 이후 사업량 및 지급단가는 2005년 기준 적용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연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72세 이하인 자(2005년도의 경우 1933년 1월 1일 ~ 194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70~72세는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나)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전인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 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중 벼농사를 1년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벼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본다(현지조사시 확인).

(다)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55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사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소유하는 답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 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 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함.
- 2003.12.31 이전 단계별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한 자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의 처리기준
 - 지급단가 :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당해 계약연도의 임대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1회 지급

- 대상자선정 : 공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라) 지급요건의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답의 모두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자급 또는 취미경작 목적으로 1,000㎡이하의 답을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다만, 1필지 규모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허용)
 -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답이 다음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 또는 전업 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이 곤란하여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보호지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된 지역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이 있는 경우 (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답은 임차 또는 사용차 가능)
 -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민법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분가가 아닌 임의분가를 통해 부모의 답을 경영이양을 받는 경우 포함
 -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이양약정을 해지한 경우
 - 공사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자로서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융자금을 전부상환하지 않은 경우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답(휴경답)은 제외 하되, 쌀생산조정제 신청농지는 생산조정제 계약해지 및 완료후 신청가능
- 공사에 임대이양중인 당해 답을 경작하고 있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 임대이양에 의한 경영이양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재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답. 이 경우 영농경력은 최초 임대이양시를 기준으로 한다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간척농지를 분양받아 3년 이상 계속경작하고, 당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후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

-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다만, 경영규모가 1.5ha이상으로서 1회 지원으로 경영규모가 2.0ha이상으로 확대되는 농업인은 60세까지 지원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농지매도 : m²당 289.6원(ha당 2,896천원/연)
 - 농지장기임대 : m²당 297.7원(ha당 2,977천원/1회지급)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m²) × 지급단가
- ※ 필지별 지급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지급액 상한 : 2.0ha

(5)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 매매에 의한 경영이양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령에 따라 (63세 8년~69세 2년) 매월 분할지급

○ 임대에 의한 경영이양

- 약정체결 후 1회 지급

※ 70~72세는 농지매도 및 임대시 보조금을 1회지급

나. 200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보조금	사업관리비
경영이양직접지불	8,278	28,604	27,654	950

< 사업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및 대행기관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대행기관 : 농업기반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1) 중 양

○ 농림부 농산경영과(전화 : 02-500-1769, 1777)

○ 농업기반공사 농지사업처(전화 : 031-420-4141, 3145)

(2) 시·도

○ 시·도 : 농산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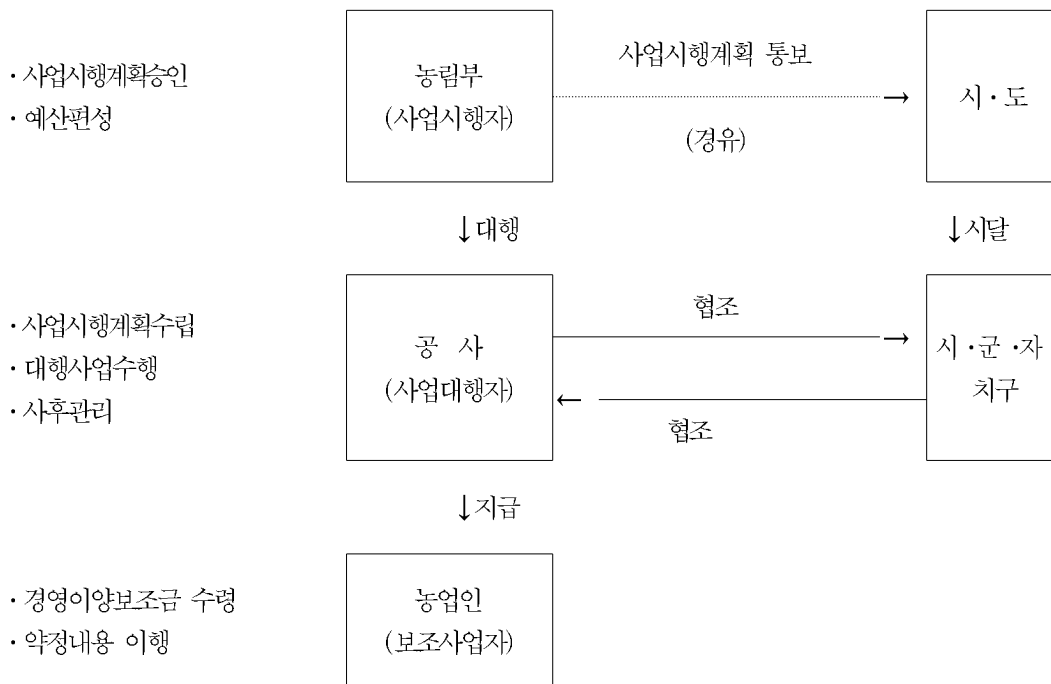
○ 농업기반공사 각도본부 농지사업부

(3)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 : 산업과(농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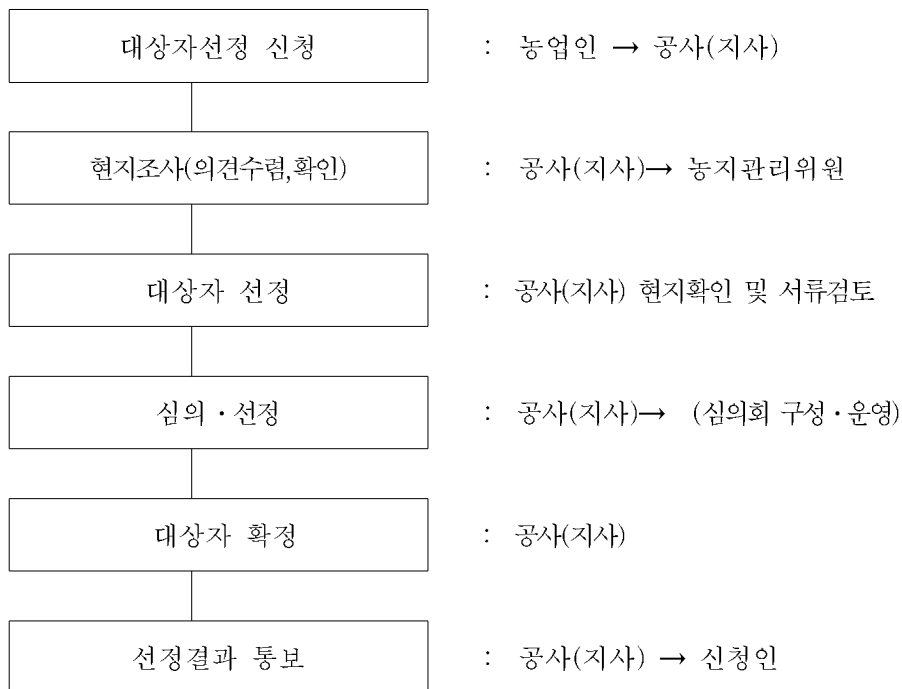
○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

다. 사업시행체계도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2)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가)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접수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

(나) 신청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신청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농지원부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출하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 농지대금(또는 임차료)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3) 신청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요건 적합 여부

(4) 현지조사

(가) 신청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 매도·임대 신청농지 현지조사와 병행 실시(별지 제3호서식)

(나) 지급대상자 조사

- 현지거주 여부
- 영농규모 : 지목별 소유·임차규모
- 영농규모 축소 사유
- 영농경력 및 벼 경작 경력
- 농업법인 재직여부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사실 여부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여부 또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수혜 여부

- 전업농업인들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사실여부
- 시행규정에 의한 영농중단사유와 기간의 일치 여부

(다) 지급대상 담의 조사

- 실제지목, 자경여부 및 재배작목
- 지적도와 대비 일치여부
- 농업진흥지역 여부 및 경지정리 여부
- 수리·교통 등 영농조건
- 지급대상외 잔여 소유·임차농지규모

(라) 농지매입·임차예정 전업농업인등 조사

- 지급약정체결 전일까지 전업농업인등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 담합·위장거래 여부

(5)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 의견수렴 및 확인

(가) 내용

- 지급대상자의 이농·탈농계획 및 대상 담 등 현지조사결과 사실여부

(나) 조사방법

- 현지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해 해당 담의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 해당 리·동에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 농지가 2개 이상의 리·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리·동의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이 확인.

(6)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지사별)에서는 자체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의결사항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인를 포함 7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공사 지사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인이내
- 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 2인이내
- ③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대표 5인이내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1인을 둔다.

○ 심의위원회 운영 및 부의내용

- 심의 위원회 운영은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기 등을 감안하여 서면부의 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 ② 영농규모화사업의 토지대금 일시불 지급건에 관한 심의
- ③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담 등 지급대상자 요건의 적격여부판단
- ④ 기타 경영이양직불사업과 관련된 사항

(7)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지급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별지 제4호서식)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신청순서를 고려하여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다만, 보조금지급예정액이 당해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8) 지급대상자 선정

(가) 지급대상자 및 농지 확인

○ 공사 지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농지원부의 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적격여부를 확인

(나) 심의회 심의 및 선정

- 공사 지사장은 확인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체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지사장은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해야함

(다) 선정결과 통보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모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5호 서식)하고 지급약정체결을 안내(탈락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명기하여 통보)

마. 지급약정 체결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1) 지급약정 체결

(가) 약정 체결전 확인사항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경영이양을 신청한 답의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전업농업인등이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약정체결일 전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 하고 있는 답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임차 또는 사용차하고 있는 답은 제외)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여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정리 여부

(나)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지급약정 체결전 확인사항을 확인한 결과 적정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을 위한 예금계좌를 공사에 신고

(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는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를 적용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지급기간

- 매도이양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부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월 분할지급
- 임대이양 : 농지임대 계약체결 후 1회지급
- ※ 70세~72세는 농지매도 및 임대시 보조금을 1회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연령별지급기간

63세	8년
64세	7년
65세	6년
66세	5년
67세	4년
68세	3년
69세	2년

- 지급시기 : 지급약정체결 후
- 지급일자 : 매월 15일(매도이양에 의한 분할지급의 경우에 한함)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5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지급.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지급전일에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급단가에 경영이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령별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경영이양보조금 총액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

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지급

-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조금을 지급,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 (2) 보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지체없이 농업기반공사 해당 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사에서는 수령자를 대체조치한 후 보조금 지급
- (3)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사망 확인 방법
 - 매월 시·군의 주민전산자료를 확인

< 행정사항 >

가. 사업시행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의 수립

- 농업기반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경영이양계획과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계획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규모확대 지원계획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농업기반공사는 수립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보조금지급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 매도 및 임대에 의한 사업추진내용
 - 시·군·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 조사·교육·홍보 계획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영농규모화사업 시행계획 공고와 함께 시·군·구·읍·면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공고
 - 당해연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사업비 규모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및 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조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승인된 사업시행 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유인물 송부
 - 홍보용 책자 및 리후렛 제작 배포
 -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공사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별, 사업내용별(매도·임대) 사업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고, 조정 결과는 농림부에 보고 및 시·도에 통보
 - 시·도간 조정 : 농림부와 협의
 - 시·군·자치구간 및 사업내용별 조정 : 공사 자체 조정

나. 사후관리

(1) 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 관리

- 조사시기 :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 및 농지
- 조사내용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약정 이행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영농규모 변화내용
 -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사망 여부(매월확인)
 - 추곡약정수매현황 또는 논농업직불 약정현황

- 조사방법
 - 농지원부 확인
 - 현지출장을 통한 본인, 농지관리위원, 이장, 주민 등에 대한 면담조사
 - 시·군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
- 조사결과 정리
 - 조사결과는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 사후관리 기간
 - 매도이양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만료일까지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 ※ 70~72세는 매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2)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의 행위제한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매입 또는 임차 (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벼를 경작
- 임대한 답의 소유권 이전
- 임대한 답에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 기타 경영이양한 답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들의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급약정의 해지

(가) 해지사유

- 지급약정의 체결원인이 되는 당해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다만, 공사 또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매도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
- 공공용지 편입등으로 인한 농지 수용시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수령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와 상속인에게 지급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조금수령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나) 지급약정의 해지 통보

-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7·8호서식)

(다) 지급약정 해지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라) 지급약정 해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시 반환금액 산정(농지임대차)

$$\text{반환금액} = \frac{\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text{관리기간}} \times \frac{\text{잔여기간}}{\text{관리기간}} \times \frac{\text{지급약정해지면적}}{\text{경영이양 총면적}}$$

- 임대기간 : 5년(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봄)
- 잔여기간 : 5년에서 이미 경과한 임대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되 년단위를 초과하는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 약정해지연도에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다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만료연도에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고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4) 지급약정의 해제

(가) 지급약정 해제의 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답 외의 농지(답)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상의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경영이양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지급약정 해제의 통보

- 약정해제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7·8호서식)

(다) 지급약정 해제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라)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담외의 담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치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

(마) 지급약정 해제에 따른 보조금 환수

- 반환금액 계산방법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부과

$$\text{반환금액} = \frac{\text{기지급경영이양보}}{\text{조금총액}} + \left(\frac{\text{기지급경영이양보}}{\text{조금총액}} \times \frac{\text{반환일까지의 일수}-1}{365} \right) \times 10\%$$

(5)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통지 : 약정해지일로부터 7일이내(별지 제9호서식)

(6)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기한 :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7)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미이행시의 조치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반환독촉장을 발부하며, 반환독촉장은 3회에 걸쳐 매 1개월마다 발부
 -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다.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보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사후관리 등 사업대행에 따른 제비용(수수료)은 2005년 예산에 계상하여 보조할 수 있음

라. 보고

구 분	보고사항	보 고 기 한			비 고
		지 사	본 사	농림부	
○ 분기보	○ 사업추진실적 보고	분기야월5일	분기야월 10일	분기야월15일	별지 제11호서식
○ 연 보	○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31일	별지 제12호 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사

나. 신청자격

○ 연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72세 이하인 자(2005년도의 경우 1933년 1월 1일 ~ 194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70~72세는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전인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 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중 벼농사를 1년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벼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본다(현지조사시 확인).

○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55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사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소유하는 답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 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 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함

※ 상세한 내용은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다. 신청절차

-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접수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

라. 구비서류

- 분할지급형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공사 시·군 관할지사에 비치)
 - 농지원부등본(읍·면장 발행)
 - 등기부등본(관할법원 발행) 및 토지대장등본(시·군발행)
- }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매도·임대신청시 제출
분으로 대체 가능
- 농지매매·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공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직접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차시)

마. 대상자 선정

- 농업기반공사가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후 지급 요건에 적합한 자를 자체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

1. 선정신청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일			선정일

2. 경영이양대상 농지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경영이양	
					방법	시기
경영이양 대상답						
금회 경영 이양						
단계별 경영 이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공사 사장 귀하

※기재방법

단계별 경영이양이란 소유하는 답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이내에 단계별로 경영이양하는 계획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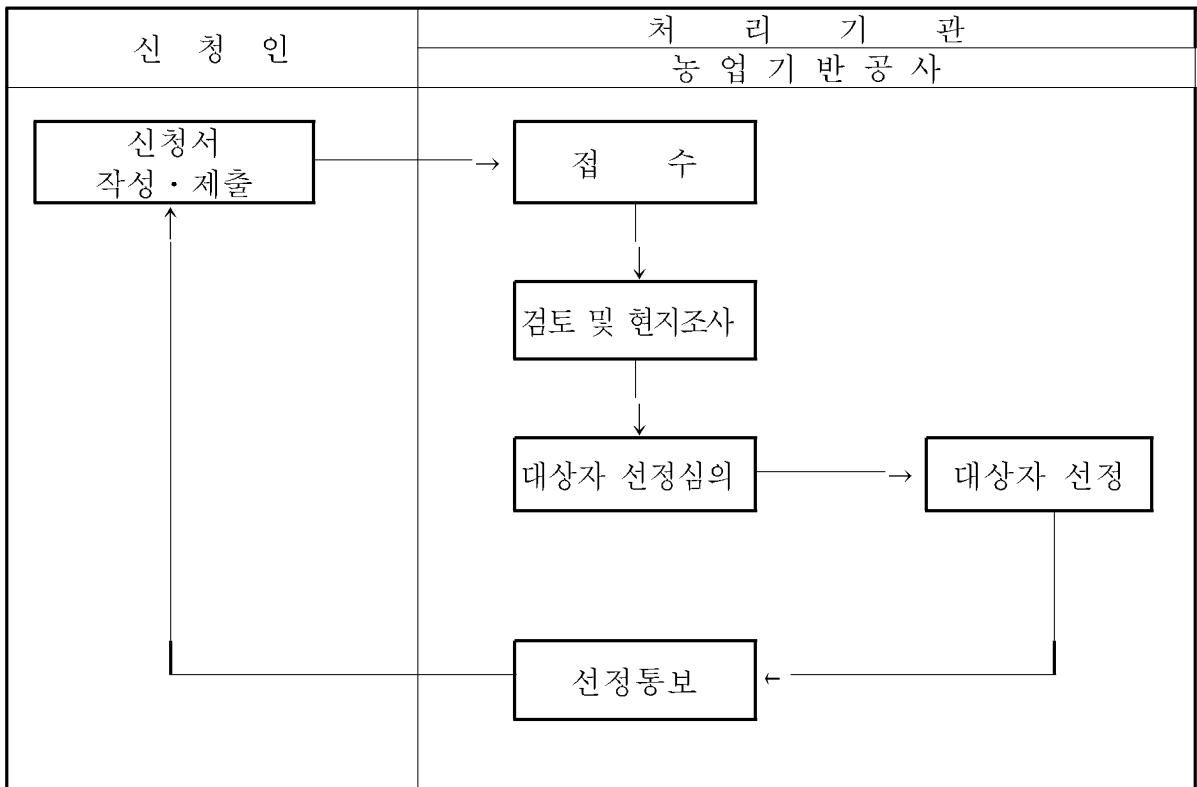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m ²)	진흥지역	소유자	경작구분	경영이양방법	지급방법
	시군	읍·면	리동								
지급대상농지											
	계										
잔여소유농지	답										
	전										
	기타										
	계										
임차경영농지	답										
	전										
	기타										
	계										
<p>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6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업기반공사사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농지원부등본 1부</p> <p>2.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각 1부</p> <p>3. 매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경영이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p>										<p>수수료</p> <p>없음</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면)

제출 및 처리기관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
근거법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농업진흥지역은 ○, 농업진흥지역밖은 ×로 표시합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로 기재합니다. ○경작구분은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및 휴경으로 구분기재합니다. ○경영이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농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공사에 임대·매도,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임대·매도·사용대, 개별 임대·매도·사용대 - 임차농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권종료, 경작권이양 및 포기를 기재합니다. ○지급방법은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으로 기재합니다. ※구분란(잔여소유농지·임차경영농지)의 지목은 실제 지목을 말합니다.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현지조사서

1.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주소				전화	
조사내용	영농경력	벼재배기간	실거주여부	경영이양후 이주여부	규모화지원여부
	년	년~년	여부	여부	여부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여부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지원여부	
				여	부		여	부

3. 본인 및 가족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진흥지역	경작구분	면적 (㎡)	이양방법	소유자성명	이양대상자
	읍·면	리		공부	실제						
지급대상농지											
		계									
잔여소유농지											
		계									
임차경영농지											
		계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확인	의견 : 리·동(마을) 농지관리위원·이장 (인)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심의조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일자	비재배 경 력

경 영 이 양 내 역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정액 (천원)			
매 도		임 대		계		일시불	월	년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선정대상자 개인별 조서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작성자 농업기반공사 ○ ○ ○ 지사장 (인)

【붙임】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선정신청자개인별조사서

1. 선정신청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주소			전화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3.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 이양받은자	
			공부	실제	경영이양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계						
임차 경영 농지							
	계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통지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지급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2.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내역(세부내역 별첨)

- 대상 면적 :
- 지급 총액 :

3. 지급약정체결

- 약정체결기한 :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장소 : 농업기반공사 ○○ 지사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방법 :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 시기 : 약정 체결후

5. 경영이양보조금 수령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

-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사항
- 주소 변경사항
- 지급약정의 해지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6. 약정체결시 준비할 사항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온라인 예금통장(농지매도 대금 또는 임차료선급금 입금통장으로 대체 가능)

7. 약정 해지·해제에 따른 분할지급형경영이양보조금 반환

약 정 해 지 · 해 제 사 유	경영이양보조금 반환기준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약정을 체결	○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가산금 10%를 가산하여 반환
2. 경영이양 당시 영농이 허용된 담외의 담을 매입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	
3.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	○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기간 해당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20 년 월 일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 1 쪽)

경 영 이 양 보 조 금 지 급 약 정 서

1. 매도(임대·사용대)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표시				지 급 액 (원)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경 영 이 양 방 법	일 시 지 급	분 할 지 급		
					총 지 급 액	연 지 급 액	월 지 급 액
계							

위 표시의 농지에 대한 매도(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농업기반공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기 한 : 년 월 일까지

3. 약 정 내 용

제1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표시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갑”은 답의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의 경우로서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

제2조(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약정기간중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당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경작하는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을”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 대로 경영이양완료 예정일까지 경영이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을”이 임대 또는 사용대한 답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통지를 받고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의 해소를 통보한 때에는 “갑”은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미 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대기간중 약정해지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잔여기간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기간중 사망시 지급기간 등) ①“갑”은 “을”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중 사망한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을”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2.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을”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②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을”의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이 지급된 때에는 초과지급된 경영이양보조금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사항) “을”은 소유농지를 “갑”에게 임대하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2. 주소의 변경
3. 약정의 해지사유
4.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의 사망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약정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인)

“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7호 서식】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해지(해제)통보서

귀하에 대한 지급약정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정 제2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 약정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약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해지(또는 해제)를 통보하오니, 만약 이의가 있거나 약정해지(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해제)예정일전까지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 해지(해제)사유 :

2. 약정 해지(해제) 대상농지

약정해지 또는 해제 대상농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내역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약정해지면적(m ²)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3. 약정 해지(해제) 예정일자 : 년 월 일

4. 경영이양보조금 의 반환 방법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경영이양 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와 약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경영이양보조금에 대하여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반환예정액 : 총 원(경영이양보조금) 원 + (가산금) 원
(해지예정일자기준)

 년 월 일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해지통보서

본인은 농업기반공사와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고자 통보하오니 약정의 해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약정해지예정일 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2. 약정일자 : 년 월 일

3. 약정해지 대상농지 및 경영이양보조금 수령내역

약정해지대상농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약정해지면적 (m ²)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4. 약정해지 사유 :

3. 약정해지 예정일자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인)

농업기반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앞 쪽)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					관리 번호	
경영이양 보조금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신청일	. . .	확 정 일	. . .	지 급 예정액	월지금액	원
					연지금액	원
약정일	. . .	지 급 일	. . .		총 액	원
경영이양 계약내역	이양받은자	주민등록번호	계약구분	계약번호	입 금 계 좌	
					은행	
					No.	
가 족 구 성 원 내 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 지원여부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조사 내역						
지급구분	지 급 내 역		사 후 관 리 조 사			
	지급 일자	금 액	조사일자	조 사 자	조 사 결 과	확 인 자

(뒷 쪽)

경 영 이 양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m ²)	소유자	보조금 지급액(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방법	일시불	분할지급
지급 대상 농지							
변경농 지 내역	종전농지소재지		지 번	종전면적	변 경 사 유	환수일자	환수액 (원)
	변경농지소재지		지 번	변경면적	변 경 일 자		
잔 여 경 영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경 작 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형태	주민등록번호	
잔여 소유 농지							
임차 경영 농지							
사 후 관 리 조 치 내 용							
시정요구 통보일	약정해지(해제) 통보일	조 치 내 역					
		조 치 내 용			환 수 금 액 (원)		
시 정 일	해지(해제)일	환 수 일		경영이양보조금	가산금	계	
※사후관리대상 제외		년 월 일		확 인	지 사장 (인)		

【 별지 제11호 서식 】

직불사업 추진실적 (/ 분기)

가. 총괄

(단위 : 호, ha, 백만원)

사업별	계 획				보조금지급			비 율	
	년 간		금 분 기		농가	면적	금액	년간 대비	분기 대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대차									
계									

나.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호, ha, 백만원)

시 도 별	계 획				보조금 지원실적									
	년 간		금분기		계				농 지 매 매			임 대 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연간 대비 (%)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직불사업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가. 총괄

(단위:㎡,천원)

시 도 별	보 조 금 지급실적			약정위반농지			보조금반환			위반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중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작성요령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실적 : 조사 전년도 12월말까지 지급한 경영이양 보조금 실적 누계 기재
2. 약정위반 농지 : 조사 전년도 12월말까지 지급농지 중 사후관리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약정위반 농지를 모두 기재
3.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 조사년도 9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 농지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 농지를 모두 기재
4.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 중 : 전년도까지 위반농지는 전년도까지 사후관리 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반환대상이 되는 농지중 미반환 농지 기재, 당해년도 위반농지는 당해년도 사후관리 조사결과 위반농지 중 경영이양보조금 미반환농지를 기재

나. 약정위반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사유	보조금지급			보조금환수대상			보조금환수		보조금미환수액	환수예정일
				일자	면적	금액	보조금	가산금	계	일자	금액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장 정황근, 사무관 윤영렬)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전환기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03년부터 논농업직불제에 통합·지원하고 있는 논부문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이하 “친환경농직불”이라 함)의 시행요령은 본 사업지침에 의함.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도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업 인증 필지를 기준으로 3년간 계속 지원
- 2005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인증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내지 제23조

4. 친환경농업직불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2001	2002	2003	2004	2005계획
사업량(ha)		31,716	5,731	5,270	7,934	11,389
보조금 (밭)	계	17,193	3,003	2,988	5,492	6,938
	농가보조	16,620	3,003	2,988	5,492	6,938
	재료비	573	-	-	-	-

* 2003년도부터 논 부문 친환경직불 예산은 논농업직불사업 예산에 별도로 편성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 농업인

-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 「전환기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로써,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2004년도에 친환경직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농지)도 2005년도에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함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임야에서 자연상태로 재배되고, 경작하는데 노동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임산물 생산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임야에서 논이나 밭의 형태로 또는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재배 임산물은 지급대상에 포함

(2) 신청시 논·밭 구분 기준

- 농가별 직불금 신청양식 작성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경우는 논 부문으로, 전(田) 또는 임야(林野)인 경우에는 밭 부문으로 신청
- 상기 이외 지목에서의 친환경농업직불대상 농지의 논, 밭 구분은
 - 논농업직불금을 받는 농지에 친환경농업을 경작하는 경우는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논 부문으로 신청
 - 논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기타 지목은 실제 논외의 형상을 하고 재배 작목이 논 작물인 경우에는 논 부문으로 신청하고, 이외 농지는 밭 부문으로 신청(시·군에서 판단)

(3)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년1회 기준으로 3회 지급)
 - 단, 최초 선정연도가 2002년인 인증농가에 한하여 2005년까지 4년간(년1회 기준으로 4회) 지급

나. 직불금 지급 : 국고 100%

(1) **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 밭 기본단가 524천원 + 인센티브(유기·전환유기 270천원, 무농약 150천원)

(2) **논** : 논직불 기본단가(진흥·비진흥 구분없이 548천원) + 친환경농업에 따른 인센티브(유기·전환유기 270천원, 무농약 150)

* 유기·전환유기 818천원/ha, 무농약 698천원/ha, 저농약 548천원/ha

다.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최소) ~ 5.0ha(최고)

라. 2005년도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용자	
합 계	15,874	7,735	7,735	-	
○ 밭	11,389	6,938	6,938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사업계정(411-2718-211-305-01)
○ 논 (인센티브)	4,485	797	797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사업계정(411-2717-211-305-01)

* 논 부문 친환경직불보조금은 기본단가를 제외한 친환경농업 인센티브 예산임.

* 밭 부문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예산에서, 논 부문 직불금은 논농업직불예산에서 집행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농림부

(2)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도(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전화 02-500-1807, 1813)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지침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전화 031-446-0127), 시·도 지원, 출장소

- 친환경농업 인증,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2) 지자체

- 시·도 농산담당과, 시·군 등의 산업·농정과(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시행지침 공고 및 홍보
 -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자 통보(인증기관) 및 보고(농림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및 보조금 지급

(3) 민간 친환경농업 인증기관

- 친환경농업 인증,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 인증기관 : (사)흙살림, (사)돌나라한농복구회,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국산콩가공업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악스(KOACS), (주)케이엔티(KNT)

<세부사업 추진>

가. 사업홍보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함) 등은 농업인 및 작목반의 대표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설명하고 시·군·구, 읍·면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기 쉽도록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지방지, 마을 단위 방송 등을 통해 홍보

나. 농업인의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05. 3. 1~ 4. 5

(2)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3)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05년부터 저농약 인증 농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다.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1) 지급대상자 선정 : 시장 · 군수 등

- 시장 · 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선정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4.20까지 보고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량 배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시·도별 사업량 배정(5.10까지)

(3)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시장 · 군수 등

- 배정된 사업량을 참고하여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5.20일까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을 통지 [별지 제3호 서식]
- 동시에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5.20까지 인증기관으로 통보하여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 [별지 제4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은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시장, 군수, 자치구에 10.20까지 통보 [별지 제5호서식]

라. 대상자 변경시 조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전출·농지의 매도·임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작목반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경작자가 바뀐 필지는 새로 경작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자격을 승계 할 수 있음
- 지급대상자가 중도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해당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은 변경된 주소 소재지 읍면에 변경사항을 통보 [별지 제6호서식]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집행은 밭 부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에서, 논 부문은 논농업직접지불 사업비에서 각각 집행
 - 인증기관에서 통보된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최종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청 농가별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비 정산 현황은 시·도를 통하여 익년도 3.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사업대상자 중 당해 사업연도내에(1년단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인증이 취소된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논·밭)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바.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2004.12월~ 2005.4.5)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
② 사업신청 (농업인)	(3.1~4.5)	직불제 신청(거주지 읍·면·동)
③ 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6~4.20)	사업대상자 선정(4.10, 시군 등) 대상자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농림부장관(4.20)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5.7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부, 5.7)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5.20) 지급대상자 선정 명단을 인증기관으로 통보(5.20)
⑤ 이행상황 점검 결과 통보	(5.20 ~10.20)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사항을 시군구로 통보(10.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⑥ 보조금 지급	(11 ~12 월)	직불금 소요예산액 신청(시도지사→농림부장관,10.30) 보조금 지급(시·군·구→농업인, 11~12월)

<행정사항>

가. 지자체(도·시·군, 읍·면·동) 조치사항

- (1)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설명, 공고 및 홍보(2월~4.5까지)
- (2) 직불금 신청명단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4.2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 (3)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을 5.20까지 통지(별지 제3호서식)
- (4) 사업대상자 명단을 해당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 5.20까지 통보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함 [별지 제4호서식]
- (5) 지자체별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소요예산액을 10.30까지 농림부로 요청(별지 제7호서식)
 - 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조건 이행여부 통보사항을 참조하여 최종 명단 확정
- (6) 농가별로 보조금 입금(11~12월중)
- (7) 사업비 정산결과를 익년도 3.10까지 농림부로 보고
- (8) 사업대상자 주소 변경시 변경된 주소지로 명단 통보(별지 제6호서식)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 (1) 사업대상자중 표시농가의 기한내 인증전환 여부와 표시중지·인증취소, 인증 및 생산조건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확인결과를 10.20일까지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_____ 】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m ²)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논									
밭									
합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m², 천원)

시·군		합계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시	소계															
	논															
	밭															
○○군	소계															
	논															
	밭															

* 자료작성 : 엑셀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m², 천원)

시·군		합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시	소계															
	논															
	밭															
○○군	소계															
	논															
	밭															

* 자료작성 : 엑셀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농지			보조금 지급액 (예상)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및 재배면적 (m ²)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 인

농업인(작목반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민간인증기관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논밭구분	지목	주요작물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여부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실천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	논밭 구분	지목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인)

민간인증기관 의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주소 변경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우리(군·구)의 '05년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아래와 같이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하니 귀(군,구)의 친환경직불대상자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변경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인증 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논밭 구분	지목	재배 작물	
1	당초									
	변경									
2	당초									
	변경									
3	당초									
	변경									

첨부: 신청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소요예산액

□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m², 천원)

시·군		합계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시	소계															
	논															
	밭															
○○군	소계															
	논															
	밭															

* 자료작성 : 엑셀

③ 논농업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과장 박철수, 서기관 신창호)입니다.

1. 목 적

-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
- 논외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논외의 형상과 공익적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논)를 대상으로 실시
 - 지급대상 농지(논)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서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논)를 선정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해서 지급요건 불이행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논농업직불제사업은 2001~2003년도에 신청, 선정된 농지(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규사업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음
-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실경작자)으로써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 논외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중 담수의무를 해제
- 논외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되 확인 및 검사결과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제재조치
- 친환경 품질인증 농지의 세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중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요건(논외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등)을 충족하는 경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가능

3.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4. 2005년도 지원계획(안)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융자	
합 계	955천ha	496,947	496,947		
○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면적955천ha	493,120	493,120		
- 진흥지역	· 649천ha	356,950	356,950	-	· 진흥지역 550천원/ha
- 비진흥지역	· 306천ha	136,170	136,170		· 비진흥지역 445천원/ha
○ 사업관리비	-	3,030	3,030	-	
○ 친환경직불제보조금(논)	-면적4,485ha	797	797	-	· 기본단가 532천원/ha
인센티브					
- 유기·전환기유기	· 1,036천ha	280	280		· 270천원/ha
- 무농약	· 3,449천ha	517	517		· 150천원/ha

가.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 ha당 532천원 (국고보조 100%)
 - 농업진흥지역밖 : ha당 432천원 (국고보조 100%)
 - 친환경직불제(논부문)
 - 기본단가 : 진흥·비진흥 구분없이(저농약 포함) ha당 532천원(국고보조 100%)
 - 인센티브 : 유기·전환기유기 ha당 270천원, 무농약 ha당 150천원
- 지급대상 : 0.1~4.0ha까지(농가당)
 - * 단, 친환경 품질인증농가는 0.1~5.0ha까지임.

나.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구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 : 리·통(마을대표)
 - 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시·군·구
- 이행여부 점검 및 농업인 교육, 영농기장조사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실시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 읍·면·동(이하 “읍·면“)
 -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의무 점검 : 농업기반공사(시·군지사)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 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친환경농업 교육실시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영농기장 조사 : 읍·면·동(협조 : 시·군 농업기술센터)

다.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홍보	(2004.12.1~ 2005.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농업직불제 시행지침”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구, 읍·면·동)
↓		
② 마을대표선정 및 사업신청	(2004.1.1~ 3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영농회별)로 마을대표 선정, “마을협약 “ 작성 · 마을대표는 지급 약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에 제출(마을대표)
↓		
③ 대상자 선정	(4.1~4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확정명단 마을별·관련기관 통보(마을협약 이행표 배포)
↓		
④ 이행상황 점검	(5~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시·군·구) ※ 전문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농업기반공사)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농기장조사(읍·면·동) -친환경농업 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		
⑤ 종합점검, 대상확정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통보 * 지원대상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실시: (시·군·구·읍·면·동)
↓		
⑥ 보조금 지급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 - 농가별로 지급(통장계좌입금)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 농지(논) 선정

(1) 대상 농지(논) 요건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논)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논)
- 3년기간(‘98~’00)중 경지정리, 천재지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 못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으로 선정 가능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2개월 담수 의무 해제)하고 있는 농지
 - 재배가능 작물 : 식량작물(콩, 옥수수) 등, 채소류, 초본성 약용작물, 담배, 사료작물, 녹비작물, 잔디, 버섯, 특용작물, 묘목(과수·관상수 등) 등
 - 다만,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관상수등 영년생 목본류를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제외대상 작물 : 과수, 관상수, 영년생 목본류 약용작물 등

(2)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하천부지 (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의 토지)
 - 다만, 지목은 하천이나 하천구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논)는 대상 농지(논)로 선정가능
- 농업기반시설 부지 (저수지의 홍수면 부지, 구거 등)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등으로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각종 개발사업예정지안의 농지로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다음의 농지. 다만, 보조금 지급 신청년도 이후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농지(논)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의 농지(논)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농지(논)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지급이 중단된 농지(향후 3년간 논농업직불제 참여 제한)
- 경영이양직불제 수혜대상 농가(경영이양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중 한가지 사업에만 참여가능)

(3) 대상 농지(논) 선정 절차

(가) 시행지침 수립·통보 및 사업 홍보

○ 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
 - * 농업기반공사,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분야별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기반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 마을 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마을대표 선정

- 읍·면·동장은 마을별로 이장(또는 구성원이 추천하는 자)을 마을대표로 선임
- 마을대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업무에 관하여 업무협조
 -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논)여부 확인 협조
 - 마을별 환경친화적인 영농 유도, 친환경농업 전달교육, 영농기장 취합제출, 마을협약 이행표 작성·관리, 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관리협약(이하 “마을협약”)체결

- 읍·면·동장은 매년초에 마을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서식을 유인하여 마을에 일괄배포하고 마을협약서 작성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마을대표는 구성원의 합의로 “마을협약”[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마을협약에 참여한 농가의 약정(변경)신청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
 - * 마을대표는 마을회관등 공공장소에 “논의 공익적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 (마을협약)”과 “마을협약이행표”를 비치하여 참여농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출입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받은 농지소재지 마을의 마을협약에 가입하고 “논농업직불제 마을협약 운영위원회”로 부터 “마을협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마을협약사항을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함.
- 마을협약은 마을단위 또는 영농회단위로 작성하고, 마을지도자 등 2~3명의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하여 “논농업직불제 마을협약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은 “마을협약” 작성 및 “농지이용·경작 확인서“ 발급 등 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을대표 및 구성원과 협의하여 처리
- 마을협약은 논의 공익기능 유지 및 환경친화적 활동에 관하여 마을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이행표에 시기·내용·참여농가 현황등을 기록하여 이행실태 확인 검사결과에 대하여 마을협약 참여농가가 책임을 질 것을 결의 실천하여야 함.
 - * 친환경적 영농실천 필수업무(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교육, 영농기장)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마을 전체 또는 개별 농가별로 책임을 짐.

○ 농지원부 자료 활용 협조

- 읍·면·동장은 농지원부를 수시 정비하여야 하며 마을대표가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사본을 출력하여 마을대표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함

(나) 사업신청(변경신청 포함)

○ 신청시기 : 2005. 1. 1 ~ 3월말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 신청자격 : 2005년부터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음

- 2003년도까지 신청되어 있는 농지(농가)는 새로이 신청할 필요가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변경포함)을 하여야 함.
 - 경작면적의 증·감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경작자 변경 포함)
 - 대상농지 요건 부적합(휴경포함)에 해당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발생
 -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로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해서 지급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함.
-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논외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지급 신청한 농가당 총 논면적규모가 1,000㎡미만인 농가
 - 시·군·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신청서류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이미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지급대상농지(농가)로서 2005년도에 경작면적, 경작자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로서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제출
 - 친환경직불제 대상농지(논)로서 2005년에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규신청서 제출
- 해당 농지(논)가 과거 3년('98~'00)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
- 신청인이 해당 농지(논)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등본(타 시·군·구, 읍·면에서 발급한 경우),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 *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가능함. 다만, 이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 중복 신청 및 초과면적 분할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 * 타지역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또는 읍·면장)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마을협약서 사본 포함 제출)
- ※ 마을대표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사용]
 -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농지원부 등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마을대표(또는 읍·면·동장)가 농지의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 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 타지역 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또는 읍·면장)가 경작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내 출입경작자 현황을 일괄 파악하여 경작자 거주지 읍·면·동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마을대표 확인서“로 인정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해당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을협약서“와 함께 읍·면·동장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필요한 경우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을대표확인서 발급 및 마을협약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다) 대상농지(논)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 읍·면·동장

○ 대상농지(논) 적격여부 확인 : 변경 신청농지(논)는 물론 이미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지(논)를 정비차원에서 일제 확인·점검 실시

- 농지(논)의 소재지, 면적 및 진흥지역·비진흥지역 여부 등 확인
 - 농가별 농지원부를 우선 대조·확인(읍·면·동장은 매년초에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조회·열람, 마을대표의 확인서 첨부, 읍·면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 실사토록 하여 재확인
-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 확인
-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논인지 여부(실제지목 일치여부) 확인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 공부상지목, 진흥지역 여부, 연결지번과의 상관성 등을 참고하여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 전년도 토지이용현황(휴경, 주재배작목 등),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여부 등을 관련서류, 마을대표 등을 통해 확인
- 계속 경작기간 및 실경작자 등을 확인
 -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 기록변경 일자, 임차기간, 실경작여부등을 우선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전·출입 일자, 약정추곡수매조서, 종합토지세 부과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재확인
 - 영농규모화 사업대상농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농업 기반공사 시·군지사 자료제공 협조)

- 신청서 접수결과 농업인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시·군·구(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 4호 서식] 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일괄 확인 (통보)조치 (4월말까지)

* 이미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외 출입경작 농가에 대해서 정비차원에서 일제 확인조치[별지 제4호 서식]

* 도시지역 읍·면·동에서는 타지역 출입경작농가에 대하여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첨부 결과를 확인하고 농지소재지의 “논농업 직접지불 마을협약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마을협약서” 사본을 제출 받아 비치하여야 함.

○ 신청자격 유무 확인

- 읍·면·동장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 확인결과 시·군·구 제출

-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에 4월 20일까지 제출

* 읍·면·동장은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군·구에 제출하고 대상농가별 필지별 내역은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별도 제출

(라)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 선정시기 : 4월말까지

○ 지급대상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명단 및 농지(논)면적을 확정

- 향후 지급상한 확대에 대비하여 지급상한면적(4ha)을 초과하는 면적도 지급 대상 농지(논)에 포함하여 관리(초과면적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선정결과 통지 (5.15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 선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마을별·영농회별 일괄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및 예비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별도 통보

· 「마을협약 이행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설명서, 친환경농업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별 지급대상 농지(지번, 면적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관내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에 일괄 통지
- *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지급대상 농지를 일괄 통지할 때 전산자료(농가별, 필지별 내역)를 첨부하여 통지

○ 이의신청 및 정정

-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이의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참고로, 대상 적격여부, 신청 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지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등 지급대상 선정절차에 준하여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변경내용을 통지

(3) 지급대상 변경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마을대표를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변경신청
- 변경신청은 매년도 10월말이전까지 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변경신청된 농지(논)가 당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 마을대표, 신청인 및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에 통지
-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농지(논)의 경영을 이양받은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보조금 변경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급함

(4) 대상자 관리(전산관리)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하여 전산 입력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 년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급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당해 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지급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진출한 경우 진출지 시·군·구에서는 전입지 시·군·구로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전입지 시·군·구에서 관리
 - 이경우 보조금 지급은 전입지 시·군·구에서 지급하여야 하되 대상자 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대상 전·출입 통보는 매년 10월말 까지 마감하여야 함.

< 관외 출입경작 농가관리 >

(1) 일반관리 원칙

- 관외 출입경작 농가라 함은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를 말함
- 관외 출입농가는 거주지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변경신청 포함)을 하여야 하며 거주지 행정기관과 농지소재지 행정기관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관리를 하여야 함

(2) 선정결과 통지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농가)중 관외출입경작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별 지급대상 농지 지번, 지적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입경작 농가 자료를 관내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에 일괄 통지

(3)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지

-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괄 통지

나. 지급요건

(1) 논의 형상과 공익적기능 유지 의무(필수 의무)

< 논의 형상 유지 및 공익기능 유지 >

- 바닥의 경사도를 일정한 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탄하게 유지
- 수자원함양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 주위에 논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2) 친환경적 영농 실천의무(필수 의무)

< 화학비료·농약의 적절한 사용 >

- 화학비료는 토양검사 및 시비처방에 의한 검정시비량을 따르며, 검정시비량이 없는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권장하는 사용량을 따라야 함
- 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살포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안전사용기준 >

- 적용대상 농작물과 당해 병해충에 알맞는 농약을 사용
- 사용시기, 사용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가능한 독성이 낮고 잔류성이 적은 농약 선택

<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 >

- 교육대상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인
- 교육종류(다음중 1개 이상 이수)
 - 새해영농설계교육(농업기술센터)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영농교육
 - 마을대표(이장 등)의 전달교육
 -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업인 특별교육(농업기술센터)
- 대상 : 마을대표, 다른 친환경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

< 영농기장 실천 >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기재하는 영농기장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관련 영농교육 및 마을대표 전달교육시 기장요령 교육 실시
 - * 고령 등으로 기장이 어려운 농업인은 화학비료, 농약구입 영수증을 부착하여 읍·면·동에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함.
- 농가별로 영농기록장 기록을 9월말까지 완료하고 마을대표에게 제출
 - 마을 대표는 10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농가별 영농기장을 인수받아 기장여부를 검토 판정하고, 영농기록장을 농업인에게 반환

(3) 친환경적 활동 실천 권장사항 (선택적 의무)

<친환경적 영농 실천 >

- 토양개량제(규산, 벚짖, 석회 등)를 시용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

<농촌환경 가꾸기 등 친환경적 활동 실천 >

- 폐비닐, 농약병 등의 수거 및 처리
- 마을주변 및 농로 등에 경관작물 재배(꽃길 조성 등)
- 마을내 어류 및 곤충 보호활동
- 동절기 조류를 위한 먹이제공 활동
- 논에 인접한 산기슭 주변 제초활동 및 봄철 산불예방 활동
- 주말농장, 시민농원 등의 개설 및 운영
- 기타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활동

< 마을협약 작성 및 성실한 이행, 이행표 작성·관리 >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협약서에 서명·날인하고,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마을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출입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마을협약에 가입하여야 함)
- 마을협약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

- 또한 마을협약서 [별지 제 1호 서식] 의 약정내용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사항과 제 2호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함
- 마을협약에 참여한 지급대상자는 이행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 마을대표 및 구성원은 이행표에 명시되어 있는 선택적 의무사항가운데에서 최소 3가지 이상을 실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년 9월말까지 읍·면장에 제출하여야 함.

다.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Monitoring)

(1)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주관기관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 점검시기 : 이양후 또는 생육관리 기간중(5~9월) 자체결정.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검시기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가능
- 점검방법 : 물관리(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와 병행하여 실시
 - * 논의 발작물 재배전환 신청농지(농가)는 논의 형상유지 여부를 점검
 - 일반관리지역, 중점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점검
 - 지급대상자 명단 및 지급대상 논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의무 불이행사례 발견시 마을대표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협조기관 : 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 : 현지조사용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제공
 - 읍·면·동 : 지급대상자 필지별 내역(전산자료 포함) 등 기초자료 제공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는 점검결과, 의무불이행 농가 및 면적 등 점검자료를 10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다만,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 기능점검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1월 10일까지 통보
 - 시·군·구청장은 농업기반공사 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중 관외 지원대상 농지(출입경작)에 대해 거주지 시·군·구에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의무불이행자가 없는 경우는 없음을 통보)
 -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1월15일까지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군농업기반공사 지사장 및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지(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를 하여야 함

(2)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

< 토양검사 >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청장은 농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장 및 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시달된 “토양검사계획”에 따라 시·군 자체 “농농업직접지불농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토양검사계획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을 토양검사에 포함
- * 2차년도·3차년도 부적합 필지는 작물과종(또는 이양)전·수확후 토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토양검사 대상농지(논)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농농업직접지불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 논외 밭작물 재배작목 전환 신청농지(농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조사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농농업직접지불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논 토양 화학성분 적정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kg)	유효인산함량 (mg/kg)	치환성칼리함량 (cmol ⁺ /kg)
일반 논	11~3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논	11~2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논	11~4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논	20~4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논토양화학성분 적정기준함량’ 범위 내(1차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3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앙)전 토양화학성분	적 합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앙)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3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앙)전 토양화학성분	적 합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앙)전 토양화학성분	적 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 부적합 및 2차·3차 부적합 농가의 명단을 10.31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 다만, 검사물량 과다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1월 10일까지 통보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 부적합 및 2차·3차 부적합 등으로 표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부적합 없음 통보)
- 시·군·구청장은 관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토양검사 결과 중 관외 지원대상농지(출입경작)의 검사결과를 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10.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1.15까지 통보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부적합 판명된 필지(또는 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3,000점)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에 의거 시행
- 엽분석 결과 기준치는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잔류농약 검사 >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논농업직불제 잔류농약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립·시달한 “잔류농약검사계획”에 따라 자체 “시·군별 잔류농약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잔류농약검사 대상농지(논) 선정

- 잔류농약검사 조사표본은 작물생산량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논의 발작물 재배작목전환 농지에 동일 적용 조사)
- 잔류농약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적용할 권역은 협약마을 단위로 설정

○ 잔류농약 검사방법(세부시행 지침에 명시)

- 잔류농약 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정밀분석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잔류농약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허용기준치 이상인 경우 “부적합” 판정

○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지

- 잔류농약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10.31일까지)에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여부를 권역별(마을단위 또는 들녘단위)로 검사한 필지의 소재지 및 농지소유자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잔류농약 검사결과중 관외 지원대상 농지(출입경작)에 대한 검사결과를 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10.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잔류농약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 및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3) 친환경 관련 교육 이수 확인

○ 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교육이수 확인방법

- 시·군·구는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별 교육 이수현황을 별도로 관리
-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농업기술센터 실시교육 이수자 명단은 센터가 자체 관리
- 마을대표 전달교육 이수자 명단은 마을협약 이행표를 확인하거나, 마을대표로부터 교육이수자 명단을 확보

- 기타 관련교육 이수자는 이수사실(교육확인서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농가 명단을 10.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농촌진흥청에서 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업인교육 시행지침” 시달

(4) 영농기록장 기록 관리 확인

○ 주관기관 :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농가별 영농기장 실천 이행여부를 10.15일까지 점검

○ 영농기록장 점검결과 통지

- 읍·면·동장은 영농기록장 점검결과를 10.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군·구청장은 관외 지원대상자(출입경작자)에 대해 영농기록장 점검결과를 10.31일까지 거주지의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영농기록장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읍·면·동장 및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영농기록장 점검결과 불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6.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이행요건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행요건		점검결과	제재기준
논의 형상과 공익 기능유지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 경고 및 감액지급 - 불이행면적 해당금액 감액 ○ 2차년도 : 보조금 지급중단
친환경적 영농실천	토양검사,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 무작위로 검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여 토양 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친환경영농의 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필지를 경작한 농가가 속한 협약마을 전체 농가에 대하여 경고 ○ 2차년도 : 1차 경고를 받은 협약마을 농가중에서 무작위로 검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여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친환경영농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필지를 경작한 당해 농가에게 대하여 보조금 50% 감액지급 ○ 3차년도 : 2차년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협약 마을 농가중에서 무작위로 검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여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친환경영농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필지를 경작한 당해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중단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미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 해당농가 경고 ○ 2차년도 : 해당농가 보조금 50%감액지급 ○ 3차년도 : 해당농가 보조금 지급중단
	영농기록장 기록	미기장	
	마을협약 가입	미가입	

7.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가.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기관별 점검결과 보고(통지)를 토대로 지급대상자별 명단·논면적·요건별 이행여부를 확정
- 지급요건별 이행여부 판정 주관기관
 -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이행, 불이행)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 토양검사(도복)·잔류농약검사(적합, 부적합) : 시·군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이행, 불이행) : 시·군농업기술센터
 - 영농기장 기록(기록, 미기록) : 읍·면·동 사무소
 - 마을협약서 가입(가입, 미가입) : 시·군·구청

나. 보조금 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산출결과 10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업진흥지역 : 550천원/ha (55.0원/m²), 농업진흥지역밖 : 445천원/ha (44.5원/m²)
- 보조금 지급방식
 - 농가별 보조금이 5만원미만인 농가는 5만원 지급(최소지급액)
 - 대상농가당 면적 4ha까지만 보조금 산정에 포함(지급상한면적)
 - * 지급상한 초과된 면적은 농가별 보조금액 산정에서 제외
 -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전액 입금 처리
 - * 농협, 우체국, 일반 금융기관에 입금처리할 수 있음.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입금처리
- 현물지급
 - 논농업보조금을 사전에 비료, 농약등 농자재로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논농업보조금 사전지급 표준절차(환경 51410-162 : ‘01. 3. 2)”따라 시·군에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농협과 협의하여 영농자재 공급

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시·군·구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 계좌에 농가별로 보조금을 전액 입금 처리
 -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입금 지급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논농업직불제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주의 보조금 수령 및 이중·중복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 회수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

라. 보 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급대상 선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사업시행 다음년도 1월말까지
 - * 시·도 지사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잔액 정산조치

8. 사업변경신청 및 사업대상자선정 안내

* 아래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나.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2004년도에 선정
확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지로서 변경신청이 필요한 농지
(신규 신청 불가)

다.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논외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의무이행 등 지급 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라.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마을대표를 통해 읍·면·동에
제출

마. 구비서류

-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 농지원부 등 경작자·논농업 이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은 별도의 새로운 사업시행으로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음**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

○ ○ 시장·군수
○ ○ ○ 마을(영농회)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외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케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영농회))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200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논농업직접지불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마을대표는 본 마을(영농회)를 대표하며,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신청, 이행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논외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논외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필수 의무)

가. 바닥의 경사도를 수심이 일정하도록 평탄하게 조성

나.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 주위에 논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다. 4~10월중 2개월이상 담수 (가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비담수 기간은 담수기간으로 간주)

라. 논 주변에 용·배수로를 설치·관리

마. 논외의 발작물 재배 작목 전환농지(논)에 대하여는 담수의무는 해제하되 논뚝, 용·배수로 설치 등 논외의 형상과 기능은 유지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인 성실한 영농 실천(필수 의무)

가. 비료는 토양검사를 통한 검정시비량에 따라 시용하며, 검정시비량이 없을 경우는 지도기관에서 권장하는 시비량에 따라 시용하도록 한다.

특히 태풍등과 같이 외부요건 없이 과다시비로 도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농약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살포한다.

다.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농가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마. 논·밭작물 재배작목 전환농지(농가)에 대하여도 상기 가목내지 라목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친환경적 영농 실천(선택적 의무)

가. 토양개량제(규산, 벗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4. 농촌환경 가꾸기(선택적 의무)

가. 폐비닐, 농약병 등의 수거 및 처리

나. 마을주변 및 농로 등에 경관작물 재배(꽃길 조성 등)

다. 마을내 어류 및 곤충 보호활동 또는 동절기 조류를 위한 먹이 제공

라. 논에 인접한 산기슭주변 제초활동

마. 봄철 산불예방 활동

바. 기타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활동

② 제①항 제2호 나목의 의무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잔류농약검사 조사표본으로 선정된 농가는 검사용 시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조사표본은 필지별 순환)

③ 마을 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1에서 4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 제1호의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①항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의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제재조치할 수 있다.

제3조(자격 상실)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을”의 대표를 경유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을”의 각 구성원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제한 사항) “을”의 각 구성원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 2조에 규정된 의무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제7조(특약사항)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본 마을협약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구성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 신청인 신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 논농사를 짓는 논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논)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지“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지는 “타”로 기재합니다.
- ⑤란은 신청농지(논)의 면적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⑥란은 “자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 ⑦란은 논·밭작물 재배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번별로 전환 여부 기재(전환○, 미전환 공란)
- ⑧란은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기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 ⑪란은 적격 농지(논)로 확인된 논·밭의 필지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논·밭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 논을 평탄하게 유지, 논둑 유지관리, 4월~10월중 2개월이상 담수, 용·배수로 설치 및 관리(논·밭작물 재배전환시 담수의무 해제)
- 친환경농업 실천 : 비료는 토양검사 및 시비처방에 의한 적정시비량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권장하는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고, 농약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 : 매년 친환경농업 관련교육을 1회이상 참석
- 영농기장 실천 : 비료·농약 사용량을 기재하는 영농기장을 하여야 함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m ²)	지역	농지소유	밭작물전환여부

- * 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은 “비진흥지역“ 표시
-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농의 경우 “타”로 표시
- *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경작자 현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신청 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며, 상기 경작자가 현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읍·면·동장)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실제지목(공부상 지목이 아님)이 “답”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농지원부에서 누락된 농지 포함)로서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 및 농업인(타지역 거주자 등)의 경우 마을대표(또는 읍·면장)가 이를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별지 제 4호 서식]

논농업보조금 신청농지 접수결과 통보

수신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우리 시·군·구 논 농업 보조금 신청접수결과 다음과 같이 귀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지가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신청농지(해당 시·군 관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m ²)		농지소유자	발작물 전환여부
				진흥	비진흥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이미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출입경작자의 경우에는 본 서식에 준하여 통보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변경) 확인결과

○ 추천자(변경자) 명단

마을 리 동	주 소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 고 (밭작물전환 유무등)
					합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소계		○ ○ 명 신청							
소계		○ ○ 명 신청							
총합계		○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며,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내역, 논의 밭작물 재배작목 전환 유무 등을 기재

○ 제외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0 년 월 일

○ ○ 읍·면·동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 1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 년도 농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마을(영농회) 현황

마을명(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	--	--------	--

나. 선정자(변경) 명단

연 번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지급대상면적(m ²)			보조금 예상액(원)	밭작물 전환여부
				합 계	진 흥 지 역	비 진 흥 지 역		
합			계					

2.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말까지 읍·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장
 리장(마을대표)

귀 하

*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통보할 때 농가별, 필지별 내역이 포함된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통지

[별지 제7호 서식]

마을협약이행표(200 년)

□ 작성 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대표 또는 마을대표가 지정한 구성원이 작성합니다.
- 필수 의무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선택적 의무사항은 추진한 사항을 서식에 맞추어 간단히 기록하며 3항목 이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마을(영농회 등) 현황

마을(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대상농지면적	m ²	참여 구성원수	명

□ 필수 의무 이행 상황

○ 논의 형상 및 공유기능 유지					
① 논 바닥의 경사도를 평탄하게 조성	예		아니오		
② 논 주위에 논둑설치 및 관리	예		아니오		
③ 4~10월중 2개월 이상 담수(밭작물 전환농지 제외)	예		아니오		
④ 논 주변 용·배수로 설치 및 관리	예		아니오		

○ 비료·농약의 적절한 사용					
① 비료의 적절한 시용 여부	예		아니오		
②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예		아니오		
③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여부	예		아니오		

○ 논농업직불제 농업인 교육					
① 마을 전달교육 대상자 전달교육 실시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장소:					
- 횟수:					
- 교육참석인원:					
- 기타사항:					
○ 영농기장 실천					
① 농가 경영 장부 기재 비치 여부	예		아니오		
- 현재 작성하고 있는 구성원수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등 친환경적 활동 실천				
① 폐비닐, 농약병 수거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② 마을주변 및 농로 경관작물 재배(꽃길조성 등)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③ 마을내 어류 및 곤충보호 활동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④ 동절기 조류를 위한 먹이 제공활동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⑤ 논에 인접한 산기슭 주변 제초작업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⑥ 봄철 산불예방 활동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⑦ 주말농장, 시민농원 등의 개설 및 운영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 친환경적 영농 실천

① 마을(영농회)단위의 시비관리 유무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비료의 공동구매 <input type="checkbox"/> 자발적인 토양검사 의뢰 <input type="checkbox"/> 완효성비료 사용 <input type="checkbox"/> 시비량 환산 교육 <input type="checkbox"/> 생육에 따른 추비조절 <input type="checkbox"/> 기타()					
② 농약의 안전사용 유무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안전사용기준 교육 <input type="checkbox"/> 농약안전사용기준 숙지 <input type="checkbox"/> 살포량, 희석배율 계산방법 숙지 <input type="checkbox"/> 살포시 안전요령 숙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 작물양분종합관리 프로그램 교육	예		아니오		
- 시기: , - 실천사항:					
④ 병해충종합관리 프로그램 교육	예		아니오		
- 시기: , - 실천사항:					
⑤ 토양개량제(규산, 벚짳 석회 등) 사용	예		아니오		
- 개량제 종류 : - 시용시기: - 실천사항:					
⑥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 참여	예		아니오		
- 재배작목: - 참여면적: - 실천사항:					
⑦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단체활동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별지 제8호 서식]

농업직접지불제 대상선정(보조금지급) 결과 보고

읍·면·별 (시·군·별)	신청현황				대상선정결과(*보조금지급결과)				지급예정금액 (*지급금액)	비고	
	농가수 (호)	논면적(ha)			농가수 (호)	논면적(ha)				임차 면적	밭작물 전환 면적
		합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합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합 계 (신규)											

※ 1ha = 10,000m²

- “*” 표시된 란은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농가수 및 농가면적
과 지급금액을 기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합계란에는 신규신청 농가 및 면적()로 기재
- 비고란에는 총 선정면적 중 임차면적 및 논의 밭작물 재배작목 전환면적 기재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④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과장 박철수, 서기관 신창호)입니다.

1. 목 적

- WTO 농업협정문상의 허용정책(Green-Box)인 “지역원조계획하의 직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적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

2. 기본방향

- 조건불리지역 내 농지 또는 초지(이하 “초지” 생략)중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적용하여 선정된 법정리 단위를 대상
 - 시행초기에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399개 오지면의 일부 법정리를 대상으로 하고 추후 전국 확대 추진
- 경작지 소재 면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농업경영자(실경작자)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
-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지원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
 -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조건 이행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공동기금을 10%가산, 마을 전체에 유인제공(추후 지침하달)
- 마을(행정리)별로 마을대표를 선정, “마을협약”을 작성하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실천,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활용
- 시범사업기간은 2년간(2004년~2005년) 실시 후 본사업 추진
 - 본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2개년 단위로 실시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5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WTO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4. 2005년도 사업계획(안)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31천ha	15,984	12,264	3,720	
○ 직불제 보조금	31천ha	12,400	8,680	3,720	· 밭 400천원/ha · 초지 200천원/ha
○ 전산관리 등 행정비	-	300	300	-	
○ 경지경사도조사	821읍면	3,284	3,2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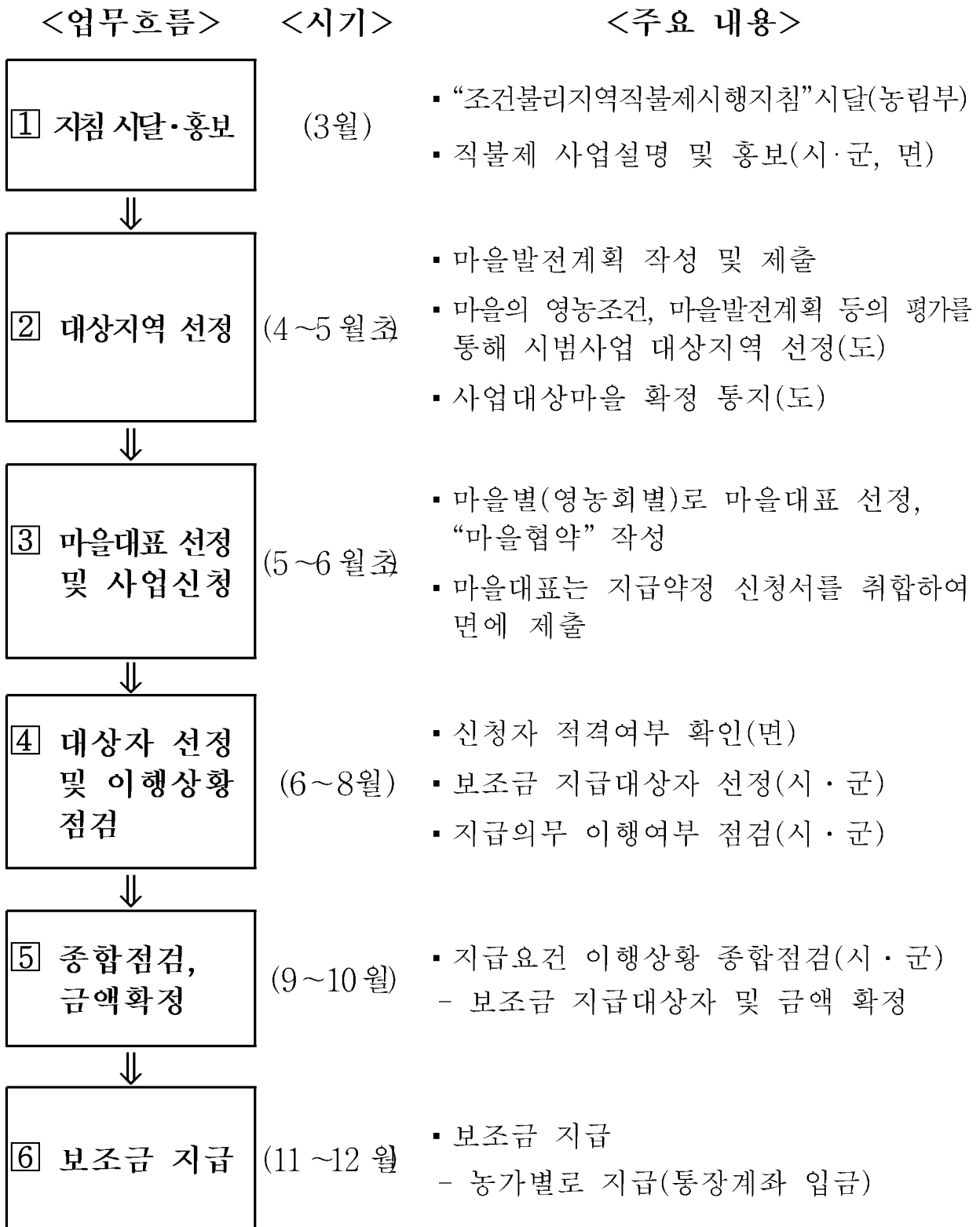
가. 지급조건

- 밭·과수 ha당 400천원, 초지 ha당 200천원(국고 70%, 지방비 30%)
 -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의 ha당 3개년 평균소득격차의 1/3 수준을 지원
- 지급하한 면적을 0.1ha로 하고 지급 상한액은 호당 200만원
 - 호당 상한액 200만원에는 마을공동기금 배정액 포함

나.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 사업대상 지역·농지 선정 기준 마련 및 지침 시달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
 - 사업대상지역 선정 : 도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 : 리(마을대표)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 면
 - 대상자 확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시·군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 농지 선정

(1) 대상 농지 요건

① 조건불리지역내의 토지로서 ②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 생략)

① **조건불리지역**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399개 오지면 중 경지율 및 경지경사율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법정리를 대상으로 사업실시

- 경지율 : 전국 평균 경지율 22%이하

- 경지 경사율 : 법정리 전체 농지 및 초지 면적 중 경사도 14%이상 농지 및 초지 면적 비율이 50%이상

※ 제주의 경우 중산간보전지역(개정법률 시행시 관리보전지역)이 50%이상 포함된 법정리를 대상으로 실시

②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또는 초지)

* 논농업직불제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초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 초지조성허가대장 및 초지조성관리카드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종묘, 인삼, 약초 및 조림용 묘목은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 제외 대상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주택법에 의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안의 농지

- 각종 개발사업예정지 안의 농지로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다음의 농지. 다만, 보조금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농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농지

(2) 대상농지 선정절차

(가) 시행지침 수립·통보 및 사업 홍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 시장·군수는 농림부 및 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기반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 마을 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나) 사업대상 지역선정

○ 마을별 사업신청서 작성

-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법정리)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법정리)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업신청서(마을발전계획 포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마을발전 계획 내에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마을 내 각종 자원, 향후 5년간의 마을 발전목표 및 계획 등을 포함

○ 대상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마을별로 작성된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자료로 활용
- 대상지역 선정시 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

○ 지역 선정기준

i)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 50점

- ㉠ 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가 상(上)인 지역 : 50점
- ㉡ 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가 중(中)인 지역 : 30점
- ㉢ 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가 하(下)인 지역 : 10점

ii) 발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 30점

- ㉠ 신청지역 중 발농업 비중이 큰 상위 10%미만에 포함되는 지역 : 30점
- ㉡ 신청지역 중 발농업 비중이 큰 상위 10%이상-30%미만에 포함되는 지역 : 20점
- ㉢ 신청지역 중 발농업 비중이 큰 상위 30%이상-50%미만에 포함되는 지역 : 10점
- ㉣ 그 외 지역 : 5점

iii)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사도·경지율 등 이외에 표고,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조건불리성 요인 : 20점

-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배점 기준을 설정

※ 총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여 총 점수가 높은 순위로 지역 선정

○ 사업대상마을 확정 통지

- 도지사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역을 확정하여 5월초까지 시·군에 통지

(다) 마을대표 선정 및 마을협약 체결

○ 마을대표 선정

- 면장은 마을별로 이장(또는 구성원이 추천하는 자)을 마을대표로 선임
· 농농업직불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있음

- 마을대표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 등을 협조함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여부 확인 협조
 - 마을별 전달교육, 마을협약 이행표 작성·관리, 마을공동기금관리,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 ※ 마을대표는 구성원의 합의로 “마을협약”을 작성,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 하며 마을별 마을협약 이행표 작성 및 관리
- ※ 마을공동기금 중 일부를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마을 대표 및 운영위원의 수당으로 지급가능

○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위한 관리협약(이하 “마을협약”)**

- 마을대표는 구성원의 합의로 “마을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마을협약에 참여한 농가의 약정 신청서와 함께 면에 제출
- 마을협약은 (행정)리단위로 작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농촌지도자 등 2~3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협약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은 “마을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및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발급 등 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을 대표 및 구성원과 협의하여 처리
- 마을협약은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을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마을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성원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

○ **농지원부 자료 활용 협조**

- 면장은 마을대표가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사본을 출력하여 마을대표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함

(라) 사업신청

○ 신청시기 : 5~6월초

○ 신청자격

- 지원대상 농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면에 거주(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경작지 소재 면에 존재)하며 농지 관리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해당 농지소재 면에 거주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지사무소 소재지를 포함)
-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인이 해당 농지 소재 면에 거주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전(월)세 계약서,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
- *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함. 다만 이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 중복 신청여부를 확인

※ 마을대표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사용)

- 주민등록 전입신고 미필,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주민등록 등본·농지원부 등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면장, 이장, 영농회장 등이 실거주사항,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 및 실경작자 여부 등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 마을대표(또는 면장)는 마을대표확인서 발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별 운영위원의 확인(또는 연서)을 받아 발급

○ 신청절차

- 해당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 신청서는 마을대표를 경유하여 농지 소재지 면에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을협약서“와 함께 면장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필요한 경우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을대표확인서 발급 및 마을협약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마)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 면장

○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 신청농지의 소재지·면적 등 확인
 - 소재지·면적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
 -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실제 토지이용 현상 확인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을 참고하여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 토지이용 현황(휴경, 주재배작목 등),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여부 등을 관련서류, 마을대표 등을 통해 확인
- 초지법에 의해 허가·조성된 초지인지 여부 확인
 - 초지조성허가대장 및 초지조성관리카드 등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

○ 신청자격 유무 확인

- 면장은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 확인결과 시·군 제출

- 면장은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군에 6월말까지 제출
- * 면장은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군에 제출하고 대상 농가별 필지별 내역은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별도 제출

(마)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 선정시기 : 7월말까지

○ 지급대상 선정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할 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선정

○ 선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선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마을별·영농회별로 일괄 통보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및 예비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로 통보
- 마을협약 이행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설명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통보

○ 이의신청 및 정정

-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면장은 이의신청내용에 따라 대상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함
- 시장·군수는 이의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내용을 정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등 지급대상 선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 시장·군수는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3) 지급대상 변경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마을대표를 경유하여 면장에게 변경을 신청함
 - 변경신청은 매년도 8월말 이전까지 하여야 함
- 면장은 변경신청된 농지가 당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마을대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하여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대상자 변경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급

(4) 대상자 관리

- 본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나. 지급요건 : (1), (2)는 필수 의무, (3)은 선택 의무

(1) 농지관리 의무

-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관리보전
 - 사업시행기간동안의 재배작목 변경(피복작물, 경관작물 포함)에는 제한 없음
- 농지 관리를 위해 페비닐·농약병 수거, 농지주변 제초작업 등을 실시
- 토양유실 방지를 위해 밭농업의 경우 등고선 재배 실시
- 경작이 어려운 경지를 농지법상 허용하는 다년성 식물 중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 보조금의 최소 30%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 등에 활용
 - 마을공동기금의 사용용도
 - 마을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
 - 기타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등을 위한 마을공동사업비 등
- 기금액 및 사용방법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마을협약에 명시하되 사업기간 동안 집행상 자율성을 부여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5년간 보관)
- * 마을 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 운영위원(최소 2인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3) 마을 활성화 실천의무 등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지원, 농촌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등), 꽃길 조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 한계농지 임지화(조경·관상수 식재) 등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기반정비, 토지개량 사업
- 지역마케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구체적 선택의무사항 추가 가능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3개이상 선택하여 자율이행

< “마을협약” 작성 및 성실한 이행, 이행표 작성·관리 >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마을협약서”에 서명·날인하고,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마을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마을협약” 이행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마을협약”에 참여한 지급대상자는 이행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 마을대표 및 구성원은 이행표에 명시되어 있는 선택적 의무사항가운데에서 최소 3가지 이상을 실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년 7월말까지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이행여부 점검

(1)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확인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시기를 조정하여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마을별 대표자를 통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

- 신청농가의 연간 50% 이상 실사(2년내에 1회 전수 조사 실시)
- 의무 불이행 사례가 발견시 마을대표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점검결과 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2) 마을공동기금 적정관리여부 확인

- 점검기관 : 시·군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마을공동기금의 운영 관리 상대 등을 전수 조사하되,
 - 회계관리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등 확인
- ※ 2004년 보조금 지급후 2005년부터 이행여부 점검 실시

(3) 마을활성화 실천 등 이행여부 확인

- 점검기관 : 시·군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마을협약이행표 접수후 자체 실정에 따라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마을에서 제출한 마을협약이행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가 발견시 마을대표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점검결과 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7.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가.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

- 시장·군수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 명단·대상 면적·요건별 이행 여부를 확정
- 지급요건별 이행여부 판정 주관기관 : 시·군
 - 농지의 관리(이행, 불이행)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이행, 불이행)

나.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 밭·과수 ha당 400천원(m²당 40원), 초지 ha당 200천원(m²당 20원)
 - * 산출결과 10원단위 미만은 절사
- 보조금 지급방식
 - 농가당 200만원까지만 지급(지급상한액)
 - * 지급상한액을 초과하는 농지 및 초지면적에 대해서는 농가별 보조금액 산정에서 제외
 -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공동기금은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시 마을협약의 공동기금 합의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직접입금 관리

다.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의 관리	불이행	○ 1차 : 경고 및 감액지급 - 불이행면적 해당금액 감액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및 중점관리 ○ 2차 : 마을기금 최소규모(전체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

<면책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자연재해의 경우
 -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농지가 토지 수용을 받는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라.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의 참여를 제한

마. 보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거 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0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사업시행 다음연도 1월말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서

1.대상 지역	도 시·군 면 리			
2.지역 현황	인 구 수	총	명(남자 : 명, 여자 : 명)	
	가 구 수	총	호(농가 : 호, 비농가 : 호)	
	농경지면적		ha(논 , 밭 , 과수)	
	초지 면적		ha	
3.지역 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 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 특산품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p>우리 마을은 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불임과 같이 마을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마을 대표 주 소 : (전화 :)</p> <p style="padding-left: 100px;">성 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리 마을 발전 계획서

1. 대상지역 : 도 시·군 면 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가구)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농경지 현황

(단위 : ha)

총면적	전			답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주요 재배작목별 면적 및 생산량 현황(재배면적이 큰 작목부터 기입)

(단위 : ha, M/T)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및 특수 작물의 재배현황 및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경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5)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 방제기	건조기	관리기	파종기		

- 농기계 보유현황과 실제 작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간략히 설명

(6) 농업기반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소형관정	도수로	
동	면적	동	면적	개	미터	

- 농업경영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실태 및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7) 생활환경 현황

구분	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도로 이용 여건(해당란에 ○표 할 것)		
	상	중	하	양호	보통	불량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도로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8)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9)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그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목표설정 이유
- 마을내 지역특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2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시행기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기금은 마을(행정리)당 2,000만원으로 가정)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 양식은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사진 등은 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리협약

마을명	도 시·군 면 마을
마을협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대상면적	총 m ² (논 , 밭 , 초지)

(마을협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리 협약

○ ○ 시장·군수
○ ○ ○ 마을(영농회)

조건불리지역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영농활동을 유지케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 마을(영농회))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마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을”의 구성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마을대표는 본 마을협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를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③ 마을대표는 본 마을(영농회)을 대표하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공동기금관리 등 마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운영위원은 마을공동기금 관리, 마을공동사업 추진 및 각종 마을 대표 확인서 등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마을 대표 및 “갑”의 업무에 협조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농지 관리,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 관리 의무(필수 의무)

가. 마을 구성원은 사업시행연도부터 향후 2년간 농지의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폐비닐·농약병 수거, 농지주변 제초활동, 등고선 재배)을 수행한다

2.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 의무)

- 가. 마을 구성원은 보조금의 최소 30%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다.
- 나.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 이행,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위한 소요 경비와 기타 마을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선택적 의무)

- 가. 마을 구성원은 마을 여건과 주민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실천한다.
- ② 마을 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제①항 1에서 3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갭”에게 제출한다.
- ③ “을”의 구성원은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한다.
- ④ “을”의 구성원은 제①항 3의 사항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최소 3가지 이상을 자율 선택하여 실천한다.
- ⑤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갭”은 “을” 또는 “을”의 구성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상실) “갭”은 “을”의 각 구성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을”의 대표를 경유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갭”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갭”은 “을” 및 “을”의 각 구성원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갭”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약을 통해 합의된 금액을 시장·군수가 공제하여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5조(제한 사항) “을”의 각 구성원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2조에 규정된 의무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시행 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본 마을협약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구성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200 년도 마을협약 합의내용

1. 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장기목표)

○

나. 장기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2. 마을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마을대표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추진 사항

구체적 사업내용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4. 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용도

가. 조성액 : 보조금 수령액의 _____%

나. 사용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작성 요령>

-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 ② 2란은 선출된 마을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 ③ 3란은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의 구체적 추진행위를 자세하게 작성(최소 3가지 이상)
- ④ 4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액(최소30%이상) 및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 가.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및 운영(그린투어리즘)
-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 다. 향토축제
- 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등
- 마.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가. 친환경농업 지원
- 나.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 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작물 식재
- 라. 마을 꽃길 조성
- 마. 토양유실을 배려한 영농 실시(초생대 및 승수로 설치, 다랑논 보전 등)
- 바. 한계농지의 조림(임지화)

3. 농용지 보전 활동

- 가.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 나. 간이기반정비
- 다. 토지개량사업

4. 지역마케팅 활동

-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 나. 전자상거래
- 다. 정보화 교육
- 라.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상기 1내지 4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에서 활용 가능

※ 기타 마을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마을공동사업실시에 마을 공동기금 사용 가능

※ 신청인 신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 논, 밭, 초지(초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③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 ④란은 신청토지의 면적을 논, 밭, 초지(초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⑤란은 금년도 재배 시기를 기재합니다.
- ⑥란은 마을대표가 최근 경작여부를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 면장 확인시 주의사항

- ⑦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기타 첨부서류, 관련 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 ⑧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 ⑨란은 적격 토지로 확인된 논, 밭(초지)의 필지 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농지의 관리 : 사업개시연도로부터 향후 2년간 대상농지의 기능유지
 - 폐비닐·농약병 수거, 농지주변 체초작업, 밭농업의 경우 등고선 재배 실시
- 마을공동기금 조성 : 보조금의 30%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 등에 활용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최소 3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이행

농지 경작 현황 및 거주 확인서

<농업에의 이용 및 실경작자 확인용>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실거주자 확인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실거주지	거주형태	주민등록 미전입 사유

* 거주형태란은 자택, 전세, 월세 등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면장)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지목(공부상 지목이 아님)과 실제 토지이용현상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 및 실경작자 사항과 경작지 소재 시·군내 실거주 여부를 마을대표(또는 면장)가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마을협약 이행표(200 년)

□ 작성 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대표 또는 마을대표가 지정한 구성원이 작성합니다.
- 선택적 의무사항은 추진한 사항을 서식에 맞추어 간단히 기록하며 3가지 이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마을(영농회 등) 현황

마을(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대상농지면적	m ²	참여 구성원수	명

□ 필수 의무 이행 상황

○ 농지 관리				
① 농지기능유지를 위한 활동의 수행여부	예		아니오	

○ 마을공동기금 적정관리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예		아니오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예		아니오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①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②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③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⑤ 친환경축산직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안호근, 사무관 김권영)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사업참여 농가를 친환경축산 정착의 핵심경영체로 육성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준수)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또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일부 지원
- '04~'05년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후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재설정
- 지속적인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보완으로 점진적 확대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4. 2005년도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보조	융자	
합 계	900호	5,773.0	5,773.0	-	
○ 친환경축산직불금	900호	5,594.0	5,594.0	-	
- 직불금	-	5,219.0	5,219.0	-	
- 인센티브	-	375.0	375.0	-	
○ 사업관리비 등	-	179.0	179.0	-	

가.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 농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
 - 대상축종 : 한육우, 젓소, 돼지, 닭(산란계·육계)
 - 지급단가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인센티브만 참여 불가)
 - 관리비 : 시장·군수의 이행점검비(151천원/호)
- * 지급단가는 시범사업평가 연구용역결과를 검토후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주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농림부
- 기본계획하에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도지사
 - 축종별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농가수 배정
 - 시·군간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장·군수
 - 사업홍보,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정산

- 이행기록 장부 기장, 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 및 축산농가 교육 등을 시장·군수 책임하에 다음 각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실시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 이행기록 장부 기장, 조사료포 확보,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 발생분뇨 퇴·액비 처리 지도 및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 작물별 시비량 및 유통경로 확인,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사업홍보, 이행기록 장부 기장 지도 및 점검, 이행기록 장부 분석, 지도 요원 교육 등 : 농협중앙회 및 지역축협
 - 자조금을 활용한 교육 및 운영 : 생산자단체

다. 지원조건 : 국비보조 100%

라. 지급요건(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는 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장 또는 시설(축사, 분뇨처리시설, 조사료포 등)에 대하여 동일한 사육밀도 유지, 분뇨처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이행의무를 다하여야 함

<축종별 기본요건> : [별표 1] “축종별 기본요건 이행기준표” 참조

① (한육우, 젓소) :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 환원

- 축산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
 - 농지의 산성화 방지 등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방지
 - 휴경으로 황폐화될 수 있는 농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보전 및 농지의 훼손방지(필요시 농지 등으로 복귀 용이)
- 확보방법 : 사료포(논, 밭)·초지를 소유 또는 임차
 - 축종별 분뇨 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 확보
 - 사료포를 2회(1회)이상 사료작물 파종·생산 등에 이용

- 참여농가 소유(임차)농지가 쌀생산조정제, 마늘작목전환사업에 참여한 경우 확보 필요면적에는 포함시키되, 직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
-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2]에 의한 하급초지(25톤/ha미만) 제외
 - * 논 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면적, 총채보리 조사료 재배면적, 찰옥수수 재배면적을 해당면적의 1/2을 확보면적으로 인정하고, 임간초지는 초지에 준하여 확보면적에 포함

○ 이행요건 : 확보된 사료포에 발생 분뇨의 60% 이상을 환원

② (돼지·닭) : 분뇨 발생량 감축, 발생분뇨 환원

- 축산분뇨 발생량 감축을 통한 환경오염 부담경감과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악취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
- 이행요건 : 사육밀도 완화로 분뇨발생량 20~30%수준 감축
 -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로 공급(축분비료업체 위탁처리 포함)하거나 자기 소유(임차) 농지 또는 경종농가와 계약을 통해 처리(해양 투기 제외)

<공통 부대요건>

①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주 1회이상)

- 발생된 축산분뇨 처리내용 및 경로
 - 처리형태(퇴·액비 등), 처리방법(농지환원, 판매 등), 처리시기 등
- 조사료 생산 및 활용(소)
- 예방접종, 전염병 검진,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항생제 사용내용 등

②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 금지

-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수과원 고시 제2003-4호, '03. 7.26) 준수

③ 축산농가의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 전문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 이수(4시간 이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관리로 환경개선

마. 사업 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농림부 → 도 → 시·군)	(2004. 1. 1 ~ 2.28)	○ “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		
② 농업인 등 신청·접수 (농업인 → 시·군)	연중수시	○ 축산업등록을 마친 희망농가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접수
↓		
③ 신청서 적격성 등 제출서류 확인·심사 및 결과 통보 (시·군 → 시·도)	매월 15일까지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격여부 등 확인 - 사업 신청내용 등 현장확인 조사
↓		
④ 시·군별 농가수 배정 및 결과 통보 (시·도 → 농림부, 시·군)	매월 20일까지	○ 시·군 신청서류 등 검토 - 축종별 사업대상 시·군 및 농가수 배정
↓		
⑤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시·군 → 농업인)	매월 말일까지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의무 부여 ○ 점검기관(기술센터, 축협 등) 통보
↓		
⑥ 프로그램 준수 및 이행 상황점검(시·군, 기술센터, 축협 등 → 농업인)	연중수시	○ 시·군 : 지급요건 이행여부 종합점검 * 전문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 소 : 조사료포 확보 및 생산, 분뇨환원 · 연간 2회(1회) 이상 파종 및 재배여부 · 쌀생산조정제, 마늘작목전환사업 참여여부 등 - 돼지·닭 : 분뇨 발생량 감축, 분뇨환원 - 공통 : 이행장부 기록,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방역교육 이수 등
↓		
⑦ 종합점검 및 보조금 지급 대상자확정 통보 (시·군 → 농업인)	(2004. 11 ~ 12.20)	○ 시·군 : 이행상황 종합점검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확정 통보 *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 실시(시·군)
↓		
⑧ 보조금 지급 (시·군 → 농업인)	(2004. 11 ~ 12월말)	○ 보조금 지급 - 농가별로 지급(통장 계좌입금)

5.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1) 사업신청(농가) 대상

◁사업신청 요령▷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마치고,
 -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신청 기간내 주사업장 소재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작성요령 참조)
 - 동일 시·군내 임차를 포함한 사업장(사육시설) 모두를 포함
 - 타 시·군에 소재한 사업장은 별도로 해당 시·군에 신청
 - 직불제 이행기준은 축산업등록을 한 적법한 사육시설을 기준으로 함
 - 참여농가는 적법하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을 제한

예) 가축사육시설 100㎡(허가 90㎡, 무허가 등 기타 10㎡)에서 100두 사육시 (등록제 기준 사육밀도가 1㎡/두인 경우)

 - 축사 90㎡ 기준 이행계획 수립(사육밀도 20% 완화시 72두 사육계획으로 작성)
 - 참여농가는 소유(임차포함) 사육시설 내에서는 이행기준 두수 이외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안됨
 -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요건 준수기한은 사업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 부터 요건 지속 준수(참여 2차년도 부터는 참여 신청시부터 요건 준수)
 - 축산업 등록 및 분뇨처리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농가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참여 제한
 - 생산, 입식, 출하 등으로 사육두수 증감시 1개월이내에 사업계획규모의 양축활동 유지
 - 단, 자연재해,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및 가축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2개월 이내에서 보완
- * 최소 양축활동 유지규모 : 등록제기준 사육두수 50% 이상

○ 가축두수 산정기준

- 성축, 육성축, 자축 구분없이 각 1두로 간주하고, 1월이내(송아지는 3월이내) 처분(판매)하는 경우 자축은 사육두수에서 제외
 - 자축 : 송아지 3개월령이내, 자돈 1개월령이내, 병아리 초생추
 - 조사료포 산정시(소) : 성축 1두=자우(14개월령 이내) 2두
- 분만 및 갱신을 위한 후보축 입식으로 직불제 요건을 일시에 초과하는 경우 1월이내 요건 준수

◀ 신청자격 ▶

- 사업신청전까지 축산법 제20조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참여 희망농가(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법인” 포함, 상법에 의한 “회사법인” 제외)

◀ 신청기간 ▶ : 연중수시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 ① 임차(시설, 사료포 등) 계약서 또는 일시사용(사료포) 계약서 사본
- ② 초지조성허가증 사본
- ③ 건축물대장 사본
- ④ 분뇨처리시설인가내용 사본
- ⑤ 가축사육시설 및 조사료포 약도[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료포(논·밭), 초지(이하 “조사료포” 등)

- 하천부지(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의 토지)
 - 다만, 지목은 하천이나 하천구역에 속하지 않는 조사료포는 선정 가능
 - 농업기반시설 부지(저수지의 홍수면 부지, 구거 등)
 - 조사료포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6조와 초지법 제23조(이하 “관련법”) 규정에 의한 조사료포 등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7조 및 제45조와 초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전용신고를 거친 논·밭, 초지 등
 - 시·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초지관리실태조사결과 농지처분 명령 또는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로 조치를 받은 조사료포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안의 조사료포로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다음의 조사료포. 다만, 보조금 지급 신청년도 이후 5년이상의 기간동안 축산업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조사료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조사료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의 조사료포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조사료포
 - 쌀생산조정제 및 마늘 작목전환사업 수혜대상 조사료포는 직불금 지급 대상면적에서 제외하되, 확보면적으로는 인정
- * 쌀생산조정제 등 각종 직불제사업중 한가지 사업만 직불금 지급 가능

(3) 대상농가 선정절차

(가) 시행지침 수립·통보 및 사업홍보

○ 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 *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는 분야별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시달하고, 도지사(시장, 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농림부 및 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는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의 협조를 얻어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방법
 -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 마을 앰프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농지원부, 초지조성허가대장(이하 “농지원부 등”) 등 자료 협조

- 시장·군수는 농지원부 등을 수시 정비하여야 하며, 사업신청농가가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등 사본을 출력하여 농가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함

(나)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추천할 수 있음
- 신청기관 : 주사업장 소재지 시·군
 - * 타 시·군에 소재한 사업장(사육시설)은 해당 시·군에 신청
- 신청자격
 -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하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으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프로그램 이행 준수 등을 희망하는 일정 규모의 농가
 - 돼지 : 축사면적 50㎡이상, 소·닭 : 축사(케이지)면적 300㎡이상
- 신청서류
 -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이 해당 농지(논·밭), 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지원부 등본(타 시·군·구, 읍·면에서 발급한 경우), 자경증명,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 * 다만, 농지원부 등의 세대주와 중복 신청 및 초과면적 분할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 * 타 지역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에는 농지 등 소재지 읍·면장으로 부터 [별지 제4호 서식] “농지 등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농지원부 등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읍·면·동장이 농지 등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 타 지역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에도 농지 등의 소재지 읍·면·동장이 경작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해당 농업인 등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

(다) 대상 가축사육시설, 조사료포, 분뇨처리시설 등(이하 “가축사육시설 등”)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 시장·군수

○ 대상 가축사육시설 등 적격여부 확인 : 일제 확인·점검실시

-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재지, 면적, 처리용량 등 확인
 - 농가별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 농지원부, 초지조성허가대장 등을 우선 대조·확인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초지조성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조회·열람하고 시·군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 실사하여 재확인
-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 확인
-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조사료포 등인지 여부(실제지목 일치 여부) 확인
 - 토지대장, 농지원부 및 초지조성허가대장 등 공부상 지목, 연결지면과의 상관성 등을 참고하여 실제 조사료포 등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 전년도 토지이용현황(휴경, 주제배작목 등), 농지·초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여부 등을 관련서류, 농지관리위원 등을 통해 확인
- 계속 경작기간 및 실경작자 등을 확인
 - 농지원부 등의 최초 작성일자, 기록변경 일자, 임차기간, 실경작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전·출입 일자, 종합토지세 부과대장 등을 통하여 재확인
- 신청서 접수결과 주사업장과 조사료포 등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군에 일괄 확인(통보) 조치 (매월 15일까지)

○ 신청자격 유무 확인

- 시장·군수는 축산업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영, 자경, 임차, 위탁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 확인결과 등 제출

- 확인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매월 15일까지 제출
- * 시장·군수는 대상농가별 축산업 등록현황을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참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육규모, 등록여부, 민원 발생여부, 행정처분 사항 등
-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내용 확인(건축물대장 등)
- 농지 및 초지 등 조사료포 확보내용(초지조성 허가대장 등)
- 참여 우선순위 농가 여부(적법축사, 조사료포 자가소유) 확인
- 신청서 내용이 이행요건 준수가 가능한지 여부
 - 이행요건 완료시점, 조사료포 확보면적, 사육밀도 준수 등

◀현장확인▶

- 추가적인 사육시설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서의 경영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산업 등록 및 분뇨처리시설이 인가내용과 같은지 여부
- 소독시설 설치 여부 및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여부 확인
- 사업장 주변, 축사내 청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 축산 참여농가로 적정한지 여부
- 생산물 출하 및 가공처, 사료 보유량 및 구입처, 검정사업 참여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파악

(라)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결과 통보(공고)

- 선정시기 : 매월 20일까지
- 사업대상 지역선정 및 통보(공고) : 도지사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대상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축종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농림부,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범사업지역 선정기준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여건(희망농가수, 사육두수, 분뇨처리시설 등), 축종별 특성,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마) 사업대상 농가선정 및 결과통지

- 선정시기 : 매월 말일까지
- 지급대상 농가선정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결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
 - 농업인, 적법축사가 많은 농가, 초지 등 자가소유(확보) 비율이 높은 농가,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지 않은 농가 등을 우선 선정
- 선정결과 통지(매월 말일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및 현장확인 결과 적합한 농가중 사업량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농가 및 시·군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농가를 선정한 후 사업참여 대상농가 선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농가별로 개별 통보하고, 시·군 게시판에 공고
 - 사업설명서, 친환경축산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통보
 -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장 입구에 입간판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임을 표시(시·군에서 일괄제작, 보급)
 - 선도농가로서의 역할 및 친환경축산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

- 안내문은 농가별 주사업장 입구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을 설치
 - 주사업장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설치
 - 안내문은 철판, 아크릴판 등으로 제작하되, 규격은 시설물 또는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해당농가는 사업 대상자 선정·통보시부터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를 주 1회이상 기장[별지 제3호서식]

안 내 문

우리 농장은 정부시책사업인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참여농가로서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항생제 등 화학물질 안전 사용 수칙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05년 1월 ~ 2005년 12월
- 농 장 명 : (축사 동)
- 연 락 처 :
- 농 장 주 :
- 확인기관 : ○ ○ 군청 축산과(T :)

80cm

← 110cm →

○ 이의신청 및 정정

-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매월말 까지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이의 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참고로 대상 적격여부, 신청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정하여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지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등 지급대상 선정절차에 준하여 처리
-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변경내용을 통지

(바) 지급대상 변경

- 가축사육시설 등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청
 - 변경신청은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
- 시장·군수는 변경 신청된 가축사육시설 등이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의무 이행사항 점검기관에 통지
-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가축사육시설 등의 경영을 인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보조금은 지급 변경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급함

(사) 대상자 관리

-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가축사육시설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별도대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시범사업 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급
 - 다음연도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변경 프로그램 준수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친환경축산지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 지급대상자가 주사업장을 타(시범사업대상) 시·군으로 진출한 경우 진출지 시·군에서는 전입지 시·군으로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전입지 시·군에서 관리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은 전입지 시·군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출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 단, 시범사업대상 시·군이 아닌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관외출입 경영농가 관리>

(1) 일반관리 원칙

- 관외 출입경영 농가라 함은 주사업장과 조사료포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함
- 관외 출입경영농가는 주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사업신청(변경 신청 포함)을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소재지 행정기관과 조사료포 소재지 행정기관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관리를 하여야 함

(2) 선정결과 통지

- 주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조사료포중 관외 출입경작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별 지급대상 조사료포 지번, 지적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조사료포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 조사료포 소재지 시장·군수는 주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출입경작 농가자료를 관내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농업기술센터)에 일괄 통지

(3)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지

- 조사료포 소재지 시장·군수는 관내 의무 이행사항 점검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주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일괄 통지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Monitoring)

(1) 요건 이행기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지속적으로 준수
 - 단, 공통 부대요건중 교육은 연중실적으로 함

(2) 요건이행 및 준수여부 확인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기관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지역축협
 -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 점검기관 역할분담
- 이행여부 확인방법
 - 시장·군수가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요건 이행여부를 확인
 -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는 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주 1회 이상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 농·축협에서 농가 이행기록 장부 기록 지도

(3) 공통 부대요건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i)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관리 확인
 - 대상농가별 이행기록 장부를 주 1회이상 기장관리하고 있는지 및 이행요건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 발생한 분뇨에 대하여 처리량, 처리형태(퇴·액비 등), 처리방법(농지 환원, 판매 등), 처리시기 등이 적절히 기록되고 처리한곳에 유선 등으로 확인
 - * 사육두수를 확인하여 “축종별 배출원 단위”등을 기준으로 연간 분뇨 생산량 및 처리량 비교
 - 예방접종, 전염병 검진,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등 확인

ii)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 금지

-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4호, '03. 7.26) 준수
- 관할 시·군 가축위생시험소에 해당농가의 검사결과 항생제 잔류 여부 확인

iii) 환경·방역관련 교육이수 여부

- 새해 영농설계 교육, 친환경축산직불제 특별교육 등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친환경축산관련 영농교육 이수 여부
 - 교육이수 확인방법
 - 시장·군수는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별 교육 이수현황을 별도로 관리
 -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센터 실시교육 이수자 명단은 센터가 자체 관리
 - 기타 관련교육 이수자는 이수사실(교육확인서 등)을 센터로 제출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 명단을 10월말 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 * 농촌진흥청에서 별도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농업인교육 시행지침” 시달

(4) 축종별 기본요건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가) 소 : 조사료포 확보, 사료작물 파종 및 생산

○ 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방법

i) 확보 필요면적(직불제 기준) : 한육우 374m²/두, 젃소 916m²/두

	처리기준면적 (A)	확보필요면적 (B=A*60%)	농가평균보유면적 (C)	추가확보예상면적 (D=B-C)
· 한육우	622 m ² / 두(188 평)	374(113)	291(88)	83(25)
· 젃 소	1,524(461)	916(277)	651(197)	265(80)

ii) 확보면적 산정방법

- 현 사육두수를 유지할 경우 현 사육두수 기준 면적확보
- 향후 사육두수를 증가시킬 경우 증가두수 기준 조사료포 확보
- 확보면적은 초지, 논, 밭 등 모두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 조사료포 확보 필요면적을 초과하여 확보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하되, 두당 처리기준면적 초과면적은 지급 제외
- 정부(지자체 포함) 직불금 사업(쌀생산조정제, 마늘작목전환 등)에 참여한 농지(사료포)는 전체 확보면적중 직불금 사업 참여면적 비율을 지급대상 면적에 곱하여 제외

iii) 확보여부 확인방법

- 자가소유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초지조성허가대장
- 임차 : 임차계약서(계약자, 계약기간 1년이상)
- 일시사용 : 일시 사용계약서(계약자, 계약기간 1년미만)

iv) 이행여부 확인방법

- 조사료포에 연 2회(1회)이상 사료작물 파종·생산 등 이용상태 및 하급 초지 해당여부 현지확인
- * 하급초지 여부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나) 돼지·닭 : 분노발생량 감축, 발생분노 적법처리

○ 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방법

i) 사육두수 확인

- 적법측사 이외 또는 타 사업장에서 가축 사육여부 확인
- 사육두수 확인은 실제확인, 표본 확인조사, 기타 사육두수 확인 및 관련자료(출하량, 사료구입량, 거래내역 등) 추정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

ii) 발생분뇨 적법처리

-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화하여 공급(축분비료업체 위탁처리 포함)하거나 자기 소유농지, 경종농가와 계약 공급을 통해 적법처리(해양투기 제외)
- 자가농지에 살포시 점검기관에 장소, 살포량 등을 통보하고 기록
- 계약농지에 환원시 반드시 분뇨 공급계약을 체결(살포시기, 살포량, 살포면적, 운송방법 등 표시)후 이행하고 점검기관은 경종농가에 확인
- 위탁처리시 공급량, 공급처, 연락처, 공급내용 등을 기록

(5) 인센티브 프로그램 준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점검 및 이행 여부 확인 방법

i) 이행요건

- 농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사후관리
- 조경수는 관내 산림조합 또는 일반 조경업체 등에서 구입(영수증 확보)

ii) 확인 방법

- 조경수 식재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경수가 원활히 착근하지 못하거나 고사한 경우 지급 불가
- 구입·식재후 점검시기까지 착근 및 고사여부 등을 관내 산림조합의 협조를 얻어 확인

6.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이행요건 점검결과 불이행 등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보조금 지급 불가”로 판명된 경우는 향후 3년간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행농가에 대하여 기본 프로그램(공통+축종별 요건) 등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정지시하고, 동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위반사항(시정지시사항)을 보완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 통보

이행요건		점검결과	제재기준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포 확보 및 조사료 생산 - 발생분뇨 환원 (60%이상)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위반 : 경고 및 기본직불금 20% 감액 지급 - 사육두수 기준 조사료포 면적확보 등 시정지시(30일내) - 분뇨해양투기 ○ 2회위반 :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발생량 감축 - 발생분뇨 적법처리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위반 : 경고 및 기본직불금 20% 감액 지급 - 등록제 사육두수 기준 적정 사육시설, 사육두수 유지 등 시정지시(30일내) - 분뇨해양투기 ○ 2회위반 :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부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장부 기장 - 소독실시 - 항생제 사용금지 - 교육이수 등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회수 기준 : 경고 및 기본직불금 10~20% 감액 지급 - 1회 : 기본직불금 10%, 2회 : 20% 감액 - 위반사항 통지 및 시정지시(10일내) ○ 3회위반 :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조경수 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고사한 경우 지급 불가

- 주 1) 축종별 기본요건, 공통 부대요건 등 위반내용에 따라 중복제재 가능
2) 축산분뇨처리(오분법), 소독시설설치 및 소독실시(가축전염병예방법), 항생제 사용(동물의약품안전기준) 및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위반사실 발생시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

7.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가.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

- 시장·군수는 각 기관별 점검결과 보고(통지)를 근거로 지급 대상자별 명단·요건별 이행여부를 확정
- 지급요건별 이행여부 판정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보조금 산정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제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 지급액 산출결과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
- 보조금 산정기준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인센티브만 참여 불가)

<기본 직불금>

- 소 : 쌀소득과 사료작물 소득차, 돼지·닭 : '02소득의 50% 수준
- 소 : 570원/평, 돼지 50천원/두, 닭 : 1.5천원/마리
- * 소 : {(처리기준면적~확보필요면적)-농가평균보유면적}×570원/평
(단, 소 : 추가비용은 사료작물 1회 50%, 2회 100% 반영하여 지급)
- * 돼지·닭 :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 완화두수(20~30%)}×두당소득×50%
(단, 돼지·닭 : 지급 두당소득은 이행기간/12개월을 반영하여 지급)
- * 지원단가는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결과를 검토후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인센티브 직불금>

- 조경수 구입비 50% 수준
- 조경수 구입비×50%(구입단가 30천원/그루 이내)
- 보조금 지급방식
 - 대상농가당 기본직불금 1,300만원, 인센티브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 산정(지급상한액 : 1,500만원)
 - * 지급상한 및 두당 처리기준면적 초과면적, 사육밀도 완화기준 초과 두수 등은 농가별 보조금 산정에서 제외
 -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전액 입금 처리
 - * 농협, 우체국, 일반 금융기관에 입금처리할 수 있음.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입금 처리

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조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농가별로 보조금을 전액 입금 처리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주의 보조금 이중·중복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 회수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
- 보조금 사업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축종별 사업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 사용하고 정산한다.

라. 사업관리비 집행

- 시장·군수는 대상농가를 기준으로 호당 151천원 범위내에서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참여농가의 이행여부 확인점검, 입간판 설치, 대상농가 대장관리, 농가교육비 등 소요비용으로 집행
 - 시장·군수는 관내 유관기관(기술센터, 농·축협 등)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동 사업관리비내에서 유관기관 점검비 집행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관리비 집행내역을 사업결과 보고서 포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라. 보 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 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급대상 선정결과 보고 : 월별(시·도), 분기별(농림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사업시행 다음연도 1월말까지
- *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잔액 정산 조치

8. 2006년도 사업(변경)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아래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농가 : 축산업등록을 마친 희망농가

다. 신청자격 : 2005년과 동일

라.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마. 구비서류

-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변경)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등 친환경축산프로그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1>

축산업등록, 축산분뇨·소독시설 설치기준

□ 축종별 등록대상 농가

구 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 등록농가규모	300㎡(30두)	300㎡(30두)	50㎡(50두)	300㎡(3천수)
○ 농가수(비율)	9,856호(5.2%)	8,022(74.3)	9,288(60.0)	3,233(80.4)
○ 사육규모	657천두(44.9%)	478(90.8)	9,237(99.5)	91,262(95.1)

* 희망시 등록대상 미만 농가도 등록 허용

□ 축산폐수처리시설

(단위 : ㎡)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 한육우	축사 900㎡이상 (수질보전지역 450㎡이상)	축사 100~900㎡미만 (수질보전지역 100~450㎡미만)
○ 젖 소	축사 900㎡이상 또는 운동장 2,700㎡이상 (수질보전지역 축사 450㎡이상 또는 운동장 1,350㎡이상)	축사 100~900㎡미만 또는 운동장 300㎡~2,700㎡미만 (수질보전지역 축사 100~450㎡미만 또는 운동장 300㎡~1,350㎡미만)
○ 돼 지	축사 1,000㎡이상 (수질보전지역 500㎡이상)	축사 50~1,000㎡미만 (수질보전지역 50~500㎡미만)
○ 닭·오리 양	-	축사 150㎡이상

□ 소독처리시설

설치대상	설치시설 및 장비	설치장소	비 고
○ 가축사육시설 (300㎡이하 제외)	출입차량(가축·사료·동물 약품·달걀·축산기자재· 가축분뇨 운송차량 및 동물 진료차량 등)의 바퀴, 사람의 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및 차량용 소독약 살포시설	차량 출입구	사육시설의 출입구가 협소하여 소독약 살포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 세척 소독장비로 대체 가능

[별표 1]

축종별 기본요건 이행기준표

□ 소 : 조사료포 확보면적(분뇨처리기준)

	처리기준면적 (A)	확보필요면적 (B=A*60%)	농가평균보유면적 (C)	추가확보예상면적 (D=B-C)
· 한육우	622m ² /두(188평)	374(113)	291(88)	83(25)
· 젓 소	1,524(461)	916(277)	651(197)	265(80)

* 분뇨처리 기준면적은 초지, 논, 밭 모두 동일기준으로 적용

□ 돼지 : 사육형태별 면적(사육밀도 20%완화 기준)

	일관경영 ¹	번식경영 ²	번식경영 ³	비육경영 ⁴	비육경영 ⁵
등록제	0.89m ² /두	2.51	0.93	0.72	0.87
직불제	1.068m ² /두	3.012	1.116	0.864	1.044

¹ 일관경영 : 번식·분만·자돈·비육, ² 번식경영 : 번식·분만,

³ 번식경영 : 번식·분만·자돈, ⁴ 비육경영 : 자돈·비육, ⁵ 비육경영 : 비육

□ 닭 : 사육용도별 면적(사육밀도 20%완화 기준)

		등록제		직불제	
		개 방	무 창	개 방	무 창
육 계	케이지	0.042m ² /수		0.0504	
	평 사	0.066m ² /수	0.046m ² /수	0.0792	0.0552
산란계	케이지	0.042m ² /수		0.0504	
	케이지(육성)	0.025m ² /수		0.030	
	평 사	0.11m ² /수		0.132	

<작성요령>

- ① 신청인 : 축사 및 가축을 소유하고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② 주 소 : 신청인 주거주지
- ③ 사업장 : 신청인이 소유(임차 포함)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 소재지로 신청인 명의시설 모두 기재(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없음)
- ④ 축산업등록 : 축종(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농장등록번호 기재
- ⑤ 사육마리수 : 신청당시 사육두수
- ⑥ 가축사육시설 :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모두 표시, 적법축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면적, 축사를 임차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⑦ 사육시설형태 : 시설형태로 구분(예 : 계류식, 깔짚 등)
- ⑧ 경영형태(농가단위) : 번식, 비육, 일관 등 사육형태 구분
- ⑨ 조사료포 확보면적 : 신청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면적
- 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첨부, 소유의 경우 토지대장 첨부
- ⑩ 축산분뇨 처리시설 : 처리방법별 처리용량 표시(허가기준)
- ⑪ 분뇨처리 : 연간 축산분뇨 처리 방법별 내역을 기재
- ⑫ 소독시설 : 소독시설 종류 및 시설장비 보유내역 기재
- ⑬ 참여형태 : 프로그램 참여형태를 ○, ×로 표시
- ⑭~⑯ 축종별 요건에 따라 이행계획 수립
- ⑰ 기타사항 : 조경수 구입계획을 표시
- ⑱ 통장계좌번호 : 사업신청자 명의의 예금통장 및 계좌번호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가축사육시설 및 조사료포 약도(예)

신청인	연락처	(H·P)	
소재지 :		소재지 :	
<사육시설>		<사료포>	
소재지 :		소재지 :	
<사육시설>		<사료포>	

1. 일반현황

	참여당시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마리수 - 성축 - 육성축 - 자축 	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식 및 출하(누계) - 입식마리 - 출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시설 - 적법축사 - 운동장 및 비가림 - 기 타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포 면적 - 자가소유 - 임차확보 - 계약이용(분뇨살포)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처리량 - 자가소비량 - 판매량 - 위탁처리량 - 기타공급량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지도기관 - 확인 : 시장·군수 - 지도 : 농·축협 					

2. 친환경축산프로그램 이행기록

2005년		월	일	요일	(날씨 :)	
①사육두수	○입식 :		○출하 :		○폐사:	
	- 입식 또는 출하처 :					
②축산분뇨 처리	○ 예) 축사바닥 및 운동장 청소, 깔짚교체					
	○					
③축산분뇨 활용	○ 반출량 : (퇴비)		(액비)			
	- 반출장소 :		- 반출처(연락처) :			
④사료작물 재배 활동	○					
	○					
⑤질병예방 활동	○소독 :					
	○예방접종 :					
	○기타 :					
⑥교육 및 양축활동 등 기타						
⑦점검확인	○ 확인(점검)일 :					
	○ 확인(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작성요령>

1. 관리방법

- 매주 1회이상 작성하여야 함
- 축사, 사무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및 점검기관의 열람요청시 제공하여야 함

2. 작성방법 : 당일 발생 기준

① 가축의 이동내용(입식, 출하, 폐사)을 기록

예) 입식 : 자돈 100두(A종돈장, 전화번호), 출하 : 100두(B도축장, C가공업체),
폐사 : 성축 3두(설사, 자체매몰)

② 축산분뇨처리 관련 경영활동

예) 톱밥깔기 (평), 축사분뇨 처리 (톤), 방류검사 결과 등

③ 퇴·액비화 된 축산분뇨의 활용내용

예) 퇴비 판매 톤(판매처, 연락처), 액비 공급 톤(공급처, 연락처)

④ 사료작물재배와 관련된 활동

예) 경운 평, 시비량 Kg, 퇴·액비 살포량 톤(평), 수확 톤 등

⑤ 질병예방활동 : 소독실시내용, 예방접종(종류, 수량, 구입처)

⑥ 교육 및 양축활동 등 기타 : 환경, 방역관련 교육 이수사항(주관, 기간, 장소 등)과 기타 양축활동에서 발생된 사항 등 기록

⑦ 확인(점검)자 : 시·군(지도기관), 축협 등 관계관의 점검일 등 기록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 농·초지 접수결과 통보

수신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우리 시·군·구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 접수결과 다음과 같이 귀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초지가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신청 농·초지(해당 시·군·구 관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초지 소재지	지번	면적(m ²)	농·초지 소유자	재배사료작물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변경) 확인결과

○ 축 종 :

농장 번호	참여 형태	주 소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사업장 소재지	가축사육시설(m ²)			사 육 마리수 (두, 송)	조사료포면적(ha)			축산분뇨시설(톤/일)				소독시설설치		비고
						합 계	직 법 축 사	무허가 축 사		합 계	초 지	사료포	합 계	퇴비화	액 비	정화조	종 류	시 설 장 비	
총합계			○○명 신청																

- 참여형태 : 기본(I), 기본+인센티브(II) 기재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서식은 B4횡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2004년도 친환경축산직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축 종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축사육시설(m ²)			사육 마리수	조사료포 (ha)	분뇨처리 시설(톤/일)	소독시설 (종류·장비명)	보조금 예상액(원)
				합계	적법축사	무허가 축사					
합 계											

2.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말까지 시·군·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리 ○○○ 귀하

*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통보할 때 농가별, 가축사육시설·조사료포 필지·분뇨처리시설·소독시설 등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이행 점검결과 통지서

1. 성명(법인명) :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주소 :
4.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사항 점검결과

축종별	주사업장 소재지(위반사업장)	* 위반사항	지적내용	시정지시사항

* 위반사항 이행요건 준수사항 위반내용에 따라 공통, 축종별 등으로 구분

5. 시정지시사항 보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

귀하는 2005년도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대상자로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준수사항(공통, 축종별) 시정을 통지 하오니 통지일부터 일 이내에 시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① 이 통지서에 따라 시정 지시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기한내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금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상실 하게 됩니다.
- ②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통지서

1. 성명(법인명) :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주소 :
4.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사항 점검결과

회 수	축종별	주사업장 소재지(위반사업장)	* 위반사항	지적내용	시정지시사항

* 위반 회차별 내용을 작성하고 위반사항은 이행요건 준수사항 위반내용에 따라 공통, 축종별 등으로 구분

5. 시정 지시사항 보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
6. 시정 지시사항 확인일 : 년 월 일

귀하는 2005년도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대상자로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대상선정(보조금지급) 결과보고

□ 축 종 : 한육우(번식우, 비육우), 젖소, 돼지(번식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참여 형태	시·군 (읍·면)	신 청 현 황(*사업대상자 현황)										대상자 선정결과(*프로그램 이행결과)							지급 예정액 (*지급 액)			
		농가수 (호)	사육 두수 (두)	사육시설(m ²)			조사료포(ha)			축분시설(용량)			농가수 (호)	사육 두수 (두)	축사 면적 (m ²)	조사료포(ha)				축분시설(톤/일)		
				합계	직 법	무허가	합계	초 지	사료포	퇴비화	액비조	정화조				합계	초 지	사료포		퇴비화	액비조	정화조
합 계																						

※ 1ha = 10,000m², 참여형태 : 기본(I), 기본+인센티브(II)으로 구분

- “*” 표시된 란은 프로그램 이행결과 보고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농가수 등 현황과 지급금액을 기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 (인)

시·도지사(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대장

축종 (참여 형태)	주 소 (번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사업장 소 재 지	가축사육시설(m ²)			사 육 마리수 (두, 수)	조사료포면적(ha)			축산분뇨시설(톤/일)				소독시설설치		비고
					합 계	적법 축사	무허가 축 사		합 계	초 지	사료포	합 계	퇴비화	액 비	정화조	종 류	시설장비	

- 축종하단에 참여형태를 ()내에 기재 : 기본(I), 기본+인센티브(II)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서식은 B4형으로 작성

⑥ 쌀생산조정제

1. 목 적

-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
- 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를 재배하던 농지에 상업적 작물재배를 중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쌀생산을 감축
- 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동일 농지에 대해 3년간 생산조정 약정을 체결

3. 근거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량		27천ha	27천ha	26천ha	-
사업비 (국고보조)	계	81,000	81,000	79,123	-
	보조금	80,190	80,190	78,303	-
	관리비	810	810	820	-

* 2003년 선정된 사업량(농지)에 대해 3년간 매년 사업비 지급

5.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 개요

-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ha당 300만원을 지급
- 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이행상황 확인

* 단, 2004~2005년도에는 사업신청 접수가 없음

나. 2005년도 사업비 내용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용자	
합 계		79,123	79,123		
○ 보조금	26천ha	78,303	78,303	-	300만원/ha
○ 관리비	-	820	820	-	이행점검 등 사업관리

다.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 시·도별 생산조정 목표면적 예시 및 조정
 - 중앙단위 사업 홍보
- 시·도
 - 시·도별 세부시행지침(계획) 수립
 - 시·군·구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 홍보
 -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자체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방식,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등 세부계획 수립
 - 시·군·구간 사업 조정 및 시·군·구 관련자 교육
 - 유관기관·단체(농업기반공사, 농협중앙회)와 업무 협조 체제 유지
- 시·군·구 : 사업시행주체
 - 사업홍보,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약정 체결, 이행 관리 및 보조금 지급
 - 읍·면·동에 사업신청 접수, 대상자 및 대상농지 적합여부 확인, 약정 체결 및 이행관리업무 등 위임 가능
 - 마을대표는 사업신청서 작성 및 약정 이행여부 등 점검 협조
- 농업기반공사(도본부, 지사) : 사업이행 현장점검
 - 비 및 상업적 작물 재배 여부, 약정농지 면적 확인
-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 사업 홍보·지도 및 업무 협조

(2) 사업담당부서 및 기관

- 농림부 : 농산경영과(02-500-1773~4)
- 시·도 : 농산담당과(농산과 등)
- 시·군·구(읍·면·동) : 농산담당과(산업과, 농정과 등)
- 농업기반공사 : 농지사업처(직접지불업무 담당 등)

(3) 사업추진절차

<u>업무흐름</u>	<u>시 기</u>	<u>주 요 내 용</u>
① 사업지침시달 및 사업홍보	(1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조정제 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사업 설명·홍보 ○ 시·도 세부시행지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		
② 사업신청 접수 및 적정여부 확인	(1.2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접수(농지소재지 읍·면·동) ○ 사업대상 적합여부 확인 (2월말까지)
↓		* 단, 2004~2005년도에는 사업신청 접수가 없음
③ 신청결과보고 및 사업량 조정	(2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결과 : 시·군·구 →시·도→ 농림부 ○ 사업량 조정 및 배정 : 농림부 →시·도 →시·군·구
↓		
④ 대상자 확정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및 약정체결
↓		
⑤ 이행상황 점검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지급조건 이행여부 점검(농업기반공사)
↓		
⑥ 종합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통보
↓		
⑦ 지 급	(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

6.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관련기관·단체에 시달
 - 사업량, 대상농지, 사업신청 자격자, 보조금 지급 조건 및 단가,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등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자체 “생산조정제 사업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
- 시장·군수는 시·도의 “생산조정제 사업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함)별 “생산조정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조하에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마을별로 이·통장(또는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마을협약대표 등)을 “생산조정제 시행을 위한 마을대표(이하 “마을대표”라 함)”로 선임
 - 마을대표는 생산조정사업 신청자 및 대상농지의 적합여부 확인, 사업 홍보, 사업이행여부 확인 등에 협조
-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의 “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의 “생산조정제 사업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이행상황 점검 확인 요령을 수립

나. 사업설명 및 홍보

- 농림부는 전국 및 시·도 단위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시·도(시·군)는 지역특성에 맞게 생산조정제에 대한 홍보 실시
 - 해당 시·군,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함)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시·군 홍보지, 지역 언론, 영농설계 교육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생산조정제 홍보시 상대적인 저위 생산농지 경영농가, 고령농가, 쌀농사 소득 의존도가 낮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홍보
-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시 홍보 실시

다. 대상 농지 및 사업신청 자격자

(1) 대상 농지

-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 농지(1998~2000년까지 3개년간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
 - 다만, 2002년도에 “논에 콩·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지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로 간주
- 다음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제외)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농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내의 농지로서 3년 연속 생산조정제 참여가 어려운 농지(다만, 사업신청 연도를 포함하여 이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제 논벼재배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 포함 가능)

(2) 사업신청 자격자

-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농업인

라. 사업신청 접수

(1) 신청 접수기간 : 1.20~2.20

- * 단, 2004~2005년도에는 신청접수를 하지 않음
-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향후 일정도 일부 조정 가능

(2) 신청 접수기관 :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 * 사업량이 적은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직접 접수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읍·면을 통해 신청 접수를 안내
- * 사업접수시 약정기간이 3년이며, 보조금도 3년간만 지급함을 신청인에게 고지

(3) 사업신청 구비서류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다음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마을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생산조정 사업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생산조정 약정서 2부 [별지 제1-2호 서식]

(4) 사업신청 방법

- 신청 농지는 필지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농지중 사업대상 적합 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 이상이어야 함
 - 단, 각각의 필지별 최소 면적 하한은 없음
- 사업신청자와 보조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로 소유 농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간 상호 협의하에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동 소유자가 합의하지 않고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필지는 약정 대상에서 제외함

(5)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동일 농지에 대해 이중 신청된 경우는 농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약정기간동안 농지 이용이 정당함을 입증할 때에는 농지소유자보다 우선 대상으로 선정
- 동일 순위내에서는 사업참여 적합농지 면적의 합이 큰 신청자를 우선 선정

마.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1) 사업신청 적합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전산 관리
 - 시장·군수는 확인 결과를 집계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계통 보고

(2) 사업량 조정·재배정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에도 조정 가능
-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은 농림부장관이 실시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사업량 재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바. 사업 대상자 선정

(1) 약정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대상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및 농지(논)를 선정
 - 시장·군수는 약정체결 통보전이라도 사업신청상황, 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등을 사업신청자에게 미리 알려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신청면적이 당초 사업예시량을 초과하여 시·군별 사업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2.20일까지 접수된 신청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2.20일 전후의 신청 접수에 대해 별도의 우선순위 순위표를 작성하여 대상자 선정

(2) 약정체결 및 통보

- 시장·군수는 약정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신청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중 1부를 사업대상농지 선정 내역([별지 제3-1호 서식])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비선정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생산조정 약정서는 첨부하지 않음)
 - 공식적인 통지서 발송전이라도 약정대상자가 확정되면, 게시관 공고와 마을대표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신속히 통지

-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기반공사 지사(관내에 농업기반공사 지사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지사) 및 마을대표에게 사업대상 선정 결과를 통지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의 사업대상 농지 현황을 일괄 통지하되 [별지 제3-2호 서식]의 전산자료 형태로 송부(5월말까지)

사. 사업대상 관리

(1) 약정체결자 변경

- 약정체결자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약정체결자의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당초 사업신청 접수 사무소에 변경 신청
 - 다만, 약정체결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읍·면장은 약정을 승계 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 * 약정체결을 승계하는 자는 사업신청자격자의 자격을 갖춰야 함
- 시장·군수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인에게 통지(약정서의 약정기간은 당초 기간대로 유지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당해 농지의 소유 및 경영을 인수한 자는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2) 약정 농지 일부 약정해지

- 약정이 체결된 대상농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약정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년도 사업신청접수기간중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당초 사업신청 접수 기관장에게 해지 신청 가능
 - 이 경우 해당 농지는 향후 생산조정 약정 대상에서 제외됨
-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자 변경 절차에 준하여 약정 농지 변경

(3) 약정농지 관리

-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자가 약정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반드시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 시장·군수는 약정후 매년말~익년 1월중에 생산조정제 관련 교육·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약정대상자에게 약정사항 재 고지 및 약정농지 관리에 대해 교육·홍보

아. 이행상황 점검

(1) 이행 점검 내용

- 약정 농지에 벼 및 상업적 작물 재배 중단
- 약정면적과 약정이행면적의 일치 여부

(2) 이행상황 점검방법

- 농업기반공사장(도본부장)은 사업시행지침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 실시
 - 생산조정 약정 이행 점검시 세부 확인요령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생산조정제 사업세부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작성
 - 시장·군수와 마을대표는 농업기반공사의 약정 이행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 농업기반공사장(지사장)은 시·군에서 통보 받은 생산조정 약정 농지에 대하여 7월~8월31일중 약정이행여부 점검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 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 문제 발생 소지 방지
- 농업기반공사장(지사장)은 9월5일까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전산자료 형태로 통보)

자.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산정 및 통지

-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통보한 보조금 지급조건 이행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와 대상농지에 대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약정채결자에게 통지[별지 제4-2호 서식]
 - 보조금 지급 단가 : 1ha당 300만원(300원/m²)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벼 또는 상업적 작물 재배시 : 해당 면적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2)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생산조정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시·도 지사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잔액 정산조치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 계좌에 해당 농지의 신청자별로 보조금을 입금 처리(12월말까지)하되, 필요시 읍·면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입금 지급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업대상자는 향후 생산조정 약정 대상에서 제외
 - 이중·중복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도 향후 약정대상에서 제외
-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3) 약정 미이행시 조치

- 벼재배시에는 해당면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익년도부터 약정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당초 잔여 약정기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자에서도 제외함

- 벼를 제외한 상업적 작물 재배시에는 해당 면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잔여 약정기간 동안 재차 상업적 작물 재배시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약정 대상 농지에서 제외

차. 보 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시장·군수로부터 보고 받아 취합한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신청 접수 결과 :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수시 (월·수·금) 및 최종 보고(2.25일까지)
 - 사업대상자 약정체결 결과 :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3월말까지 보고
 - * 사업대상자 약정체결 결과에는 약정체결 변경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약정체결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3월말까지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결과 : [별지 제6-1호 서식] 및 [별지 제6-2호 서식]으로 9.30일까지(결과보고는 익년도 1월말까지)

※ 생산조정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3년이므로 약정이행시 3년간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 흑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농업인인 경우는 “농업인”,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비농업인”으로 표기
- ④란은 신청인이 생산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m² 단위로 기입합니다.
- ⑥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 ⑦란은 신청농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농지소유자의 주소지 시·도와 시·군·구명을 기입합니다(예시 : 경기 이천).
- ⑧란은 신청농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농지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⑨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 ⑭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⑮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 ③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농업인 여부의 진위를 확인하여 사실과 같은 경우는 “확인”, 사실과 다른 경우는 “수정”이라고 표시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수정내용에 담당자 날인)하여 신청자 자격 및 우선순위 선정시 이용합니다.
- ⑩란은 신청농지가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지이며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정부 시책에 의한 “논에 콩·사료작물재배” 포함)하였고, 농지소유자의 동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예시 : 논직불대상아님, 논벼재배없음)을 기입합니다.
- ⑪란은 신청자의 면적 기입 내용을 공부, 농지원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기입합니다.
- ⑫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⑬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하며, 신청농지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 ⑰란은 신청인 확인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여부를 “농업인”, “비농업인”으로 표기하며,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시 활용합니다.

(뒷면)

생산조정 약정서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자

“생산조정제”를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03년 월 일부터 3년간

2. 약정내용

제1조(생산조정 약정 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생산조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생산조정 약정 대상농지에 3년간 벼 및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를 중단한다
2. 생산조정 약정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생산조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기간의 매년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미지급, 보조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생산조정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보조금 미지급 및 별도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보조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 “갑”은 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산조정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앞면)

[별지 제2-1호 서식]

신 청 인									입금계좌			신 청 농 지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번 지	전화 번호	농업인 여부 확인	은행 명	예금 주	계좌 번호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지 번	신청 시 면적 (㎡)	농지 소유 자	소유 자 주소 (시· 도)	소유자 주소 (시· 군· 구)	소유 자 연락 처	출 입 경 작	농지 적합 여부	① 확인 면적 (㎡)	② 적합 여부	

※ 작성 방법

1.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성 방법에 준하여 통계표 프로그램으로 작성.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신청농지의 필지마다 반복하여 기입
2. 통계표 프로그램에서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등의 지명 입력시에는 행정단위는 생략 (예 : 경기도 이천시 ... 00리 →경기 이천 ... 00)
3. ①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신청인이 기입한 면적을 업무 담당자가 확인한 면적을 기입
4. ②란은 대상농지 적합여부를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

생산조정 약정 체결(변경) 통지서

1. 생산조정제 사업(세부)시행지침에 의거 200 년도 생산조정제 사업 대상자 및 농지선정 (변경)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선정 농지에 대해서는 향후 생산조정제 사업(세부)시행지침과 “생산조정 약정서”에 의거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농업인 여부				③읍·면 확인란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	④농지 소재지					⑤	⑥	⑦	⑧	⑨	읍·면 확인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	농지 소유자	소유자 주소	소유자 연락처	출입 경작	⑩농지 적합여부	⑪약정 면적(㎡)	⑫ 약정여부		
	신청 농지		(필지수)		(면적)		㎡		⑬약정 농지		(필지수)		(면적)		㎡
	입금계좌		은행, (⑭예금주)				계좌번호								

2. 약정이행시 보조금 지급 예상액 : ()원

붙 임 : 생산조정 약정서 1부.

20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3-2호 서식]

약정 체결자									약정 체결 농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전화번호	농업인 여부 확인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신청지 면적 (㎡)	농지 소유자 (시·도)	농지 소유자 (시·군·구)	소유자 연락처	약정 면적 (㎡)

※ 작성 방법 :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성방법에 준하여 통계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되, 약정을 체결한 사업대상 (신청인, 대상 농지)만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4-1호 서식]

약정 체결자							약정 체결 농지						현장 점검 결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시·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신청시 면적 (㎡)	약정 면적 (㎡)	① 실 제 농 지 면 적 (㎡)	② 지급조건 이행여부	③ 벼재배 (㎡)	④ 상업적 대체작물 (㎡)	⑤ 작물 종류	⑥ 비고

※ 작성 방법

1.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성 방법에 준하여 통계표 프로그램으로 작성
2. ①란은 실제 농지면적(㎡)을 기입, ②란은 생산조정 보조금 지급 요건 이행 여부를 “이행”, “불이행”으로 구분하여 표기, ③란은 “불이행” 면적중 “벼재배면적”을 ㎡단위로 표기, ④란은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 면적을 ㎡단위로 표기, ⑤란은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시의 대상 작물을 표기, ⑥란은 기타 특이 사항을 기록

[별지 제4-2호 서식]

생산조정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산정 통지서

1. 생산조정제 사업(세부)시행지침 및 “생산조정 약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00년도 생산조정 보조금 지급 대상자 및 농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향후 아래의 입금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가. 대 상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보조금 지급예상액 : 원

다. 입 금 계 좌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라. 약정농지별 보조금 지급 대상 면적

번호	농지소재지	①지급대상 및 면적		②미지급사유
		약정면적	지급대상면적	
1				
2				
3				
	약정 체결 면적(m ²)		필지수	
	보조금 지급 면적(m ²)		필지수	

2. 위의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11월 10일까지 ()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작성방법

- ①란은 면적을 m² 단위로 표시하되, 지급 대상면적이 없을 경우는 “미지급”으로 표기
- ②란은 보조금 미지급 사유를 명시(예 : 벼재배, 상업적 작물 재배, 면적 수정)

생산조정 약정체결 결과 보고

시·도명 :

일 현재

시·군명	약정 체결									보조금 지급 소요 예상 (천원)
	계			농업인			비농업인			
	면적 (ha)	필지수	약정 체결수	면적 (ha)	필지수	약정 체결수	면적 (ha)	필지수	약정 체결수	
계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6-2호 서식]

신 청 인								신 청 농 지 현 황											①점검 결과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번 지	전화 번호	농 업 인 여 부 확 인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지 번	신 청 면 적	농지 소유 자	소유 자 주소	출 입 경 작	농지 적 합 여 부	확 인 면 적 (m ²)	약 정 여 부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실 제 농 지 면 적 (m ²)	이 행 점 검 결 과	벼 재 배 면 적 (m ²)	상 업 적 작 물 재 배 (m ²)	작 물 종 류	비 고	보 조 금 (원)		

※ 작성 방법

1.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4-1호 서식]의 작성 방법에 준하여 통계표 프로그램으로 작성
2. ①란은 농업기반공사의 점검 결과와 자체 종합점검의 결과를 기재, ②란은 실제 농지면적을 기입, ③란은 생산조정 보조금 지급 요건 이행 여부를 “이행”, “불이행”으로 구분하여 표기, ④란은 “불이행” 면적중 “벼재배면적”을 m²단위로 표시, ⑤란은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 면적을 m²단위로 표시, ⑥란은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시의 대상 작물을 표시, ⑦란은 기타 특이 사항을 기록, ⑧란은 보조금 지급 예상금액을 기록(보조금 지급결과 보고시에는 실제 보조금 지급결과를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생산조정 약정체결 변경 내용 보고

시·도명 :

일 현재

시·군명	약정 체결 변경 및 조정 내용											
	①총 계			약정 체결자 변경			약정 불이행으로 제외			②약정 면적 조정		
	면적 (ha)	필지수	약정 체결수	면적 (㎡)	필지수	약정 체결수	면적 (㎡)	필지수	약정 체결수	면적 (㎡)	필지수	약정 체결수
계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농림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①란은 전체 약정면적이 증가하면 (+) 형태로, 면적이 감소하면 (-) 형태로 ha 단위로 표시
 ②란은 약정면적이 증가하면 (+) 형태로, 면적이 감소하면 (-) 형태로 m² 단위로 표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김남수, 사무관 김동권)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기계의 각종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2. 시책 및 추진 방향

-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96년 부터 정부의 보조 사업으로 시행
- 농작업 재해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농가의 공제료 부담 경감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2005년 보장내용(상품안 확정후 세부내용 게재)
 - 농작업재해 사망공제금 확대 : ('04) 1,000만원 → ('05) 1,500만원

3. 근거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0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해, 수해, 풍해·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 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 공제제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년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국고, 백만원)

구 분	'02까지	'03예산	'04예산	'05년 (예산안)
계	49,103	7,963	9,778	11,368
○ 농업인안전공제	44,163	7,385	9,200	10,790
○ 농기계종합공제	4,940	578	578	578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 개요

1) 사업 대상자

- 농업인안전공제 : 만 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공제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등

※ 2003년 기준 대상 농업인 수 : 1,877천명

(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농림업 취업인구)

2) 지원기준 : 국고 50%, 가입자 50%

3) 사업 대상지역 : 전국

4) 사업시행 주체 : 농협중앙회

5) 보장 내용 : 상품안 확정후 세부내용 게재

나. 재해공제 사업추진

1) 사업기간 : 2005. 1. 1 ~ 2005.12.31

2) 가입자격

- 농업인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 비 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중 영농종사자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3) 보장내용 : 가입자의 주계약·특약내용

4) 공제가입 단위

- 농업인안전공제
 - 정부지원은 가입자당 1구좌(사망시 1,500만원)를 원칙으로 지원하되, 기존가입자는 2구좌까지 가능하나 전년도 수준(사망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은 지양
- 농기계종합공제
 - 정부지원은 주계약 및 자기신체 손해담보특약 각각 1구좌, 총 2구좌까지 지원 가능

5) 공제가입 절차

- 농협에서 공제상품 판매
- 공제 가입 안내 (지역농협 등) → 가입 신청 (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6)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다.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

- 공제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제 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공제사업자는 농협에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라. 공제금 지급절차

- 지급시기
 - 공제금 청구 서류가 농협에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 (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청구 → 현지 조사 (필요시) → 공제금 지급 (농협)

※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운영에 의한 분쟁 조정 제도 운영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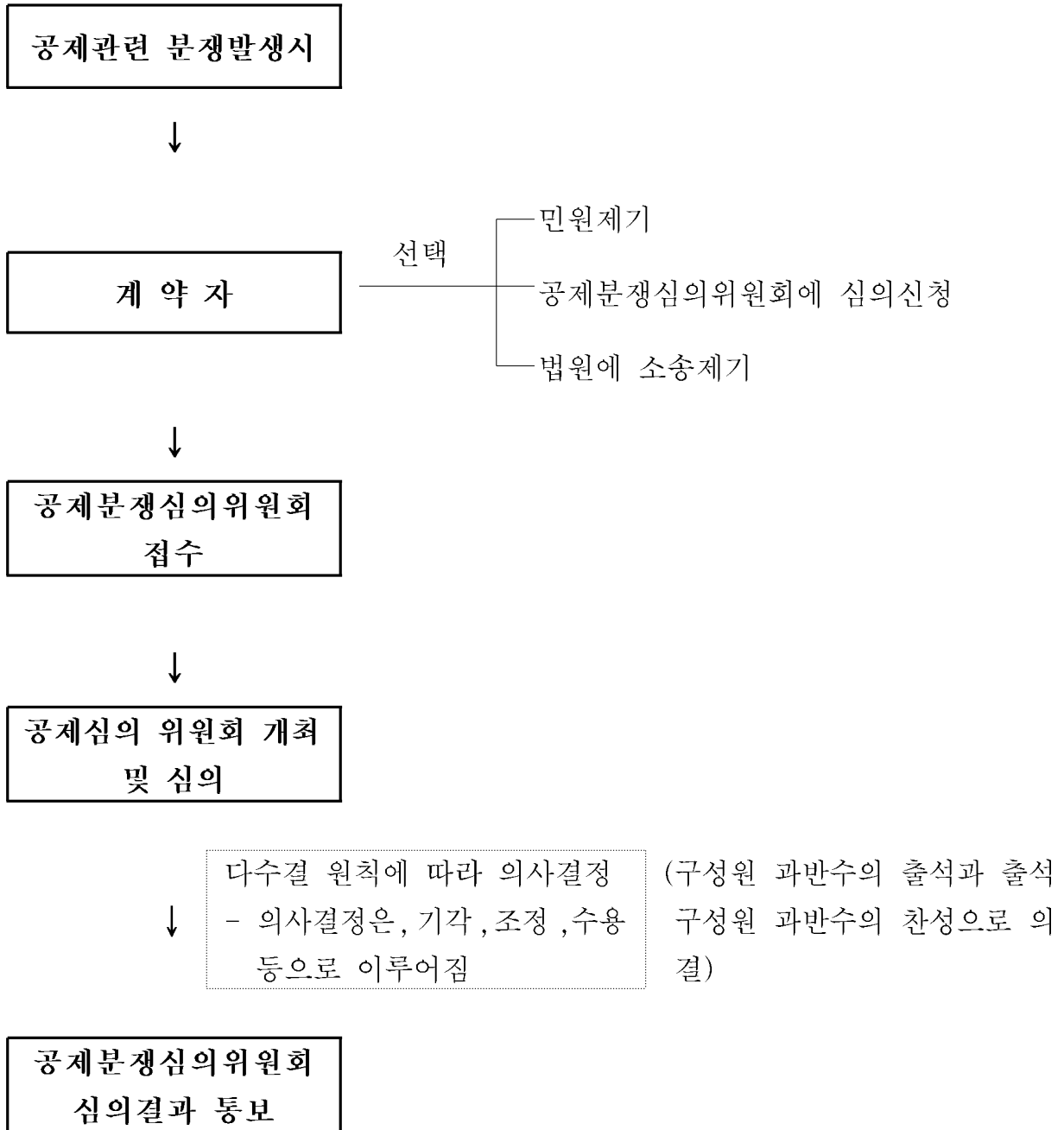
- (예 : 공제금 지급거절시) 공제가입자 측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 및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농협중앙회 “공제보험기획부”에 설치

(담당팀 : 리스크 관리팀 ☎ 02-2127-7606)

○ 위원회의 구성

- 객관성, 전문성을 감안하여 법학자,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학계교수 등 8명의 외부인사와,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대표 (조합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업무처리 절차



* 재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기각된 것으로 봄

〈 사업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농촌사회과 (500-2082)
농 협 손해공제팀 (2127-7669)

다. 사업시행

- 농협중앙회장은 당해년도 대상 지역별 세부 시행계획을 사업시행 전년 15일전(12.15)까지 농림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지역조합에 대한 세부 실시방안 교육 실시
- 농협은 공제요율 및 공제약관 변경 시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지역(품목)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업인으로부터 공제가입 신청을 접수하고 농협중앙회장은 공제증권을 발급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 계획에 따라 농림부에 자금 배정 신청
- 공제사업자(농협)은 공제가입 대상자에게 공제가입기간, 공제내용 등을 공제가입 기간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언론 매체,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입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15까지 농림부에 제출

마.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 약관에 의함

재해공제 추진절차 (지역·품목농협 ↔ 가입자)

청약시

가입 안내



가입 신청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증권 발급

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청구



지급공제금 결정 및 통지



공제금 지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김남수, 사무관 김동권)입니다.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 기준) 농업·축산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18%를 추가 경감
 - '04년 기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2%를 경감(보건복지부 시행)해 주던 것을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한하여 40%(농림부 18% 추가지원)로 확대 경감 지원
- 향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3.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43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7조, 제33조

4.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04	2005예산(안)
○ 사업량 (추정치)	1,317천세대	609천세대
○ 건강보험료 경감률	30%	40%
- 농림부	8%	18%
- 보건복지부	22%	22%
○ 사업비(농림부지원)	53,687,027	66,614,000
- 국 비	53,687,027	66,614,000

주) '04년도 신규 추진사업임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 대상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중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 읍·면·동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농어업 종사자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3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33조에 의한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 : 별첨 1 참조

(2) 지원금액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30%에서 '05년부터 40%로 확대 지원(18% 추가 경감)

(3)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에 의거 50%를 경감받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나. 2005년도 사업비 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비 고
609천세대	66,614,000천원	66,614,000천원	-	국고100%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예산 및 자금교부, 홍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 농어업인 대상자 파악,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고지, 홍보

나. 사업담당부서

- (1) 농림부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업무 총괄
 -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TEL (02)500-2082, FAX (02)503-7214]
- (2)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 (3) 협조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503-7570~1]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업무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3148-6810] : 어업인 파악 지원
 - 산림청 경영지원과 [(042)481-4191] : 임업인 파악 지원

다. 사업시행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대상자를 파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18% 추가 경감(총 40% 경감)

(1)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 농어업인 파악

< '05년 농어업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제 조사 >

① 읍·면·동장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명단 기초자료를 작성

- 「시·군·구 농촌행정시스템」에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주 명단을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농어업인 명단'(별지 제1호서식) 형태로 출력한 후, 이(통)장을 경유하여 농어업인 여부 확인
- 어업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대장, 임업인은 영림계획대장, 축산인은 가축통계조사대장 등 농어업인 현황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군·구 농촌행정시스템」 전산망에서 출력한 명단을 보완한 후 이(통)장에게 인계(시·군·구 협조)

- 찾아가는 법(농촌행정시스템) : ①농지원부관리 → ②농지원부 통계관리 → ③건강보험료지원 관련 농어업인 명단
- ◆ 읍·면·동장은 지역·직장보험가입자 구분없이 대상자 명단 작성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에 지역·직장보험가입자 구분 가능
- 농지원부 등 대장확인시 누락된 농어업인은 읍·면·동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이(통)장을 통하여 대상자 신고를 받아 확인후 명단 확정
- 읍·면·동장은 최종 명단을 취합한 후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농어업인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로 제출
- ② 이(통)장 : 읍·면·동에서 농지원부 등을 기초로 작성한 농어업인 명단에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체크한 후 읍·면·동에 제출
 - 명단에서 누락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이(통)장이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개별적으로 또는 이(통)장이 모아서 읍·면·동으로 제출하고, 대상자의 농어업인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농어업인 여부 확인
- ③ 시·군·구 :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농어업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확인·취합하여 시·도로 제출
- ④ 시·도지사 : 관할 시·군·구별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농어업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첨2 참조)로 송부하고, 경감대상자 인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농림부로 송부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농어업인 명단을 토대로 직장보험대상자 배제 등 지원대상자 선별 등을 통하여 추가 경감 지원 대상자 확정·농림부 제출
 -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에 한해 제외사실 통보
 - * 농림부는 확정된 경감대상자 인원현황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 농어업인 추가 발생 신고 >

- ① '05년 농어업인 일제조사후 농어업인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이(통)장의 확인(1차) 후 읍·면·동(2차 확인)에 제출⇒읍·면·동에서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해당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 공단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대상자가 미해당시 즉시 본인에게 미해당사항 통보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업인 이(통)장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경감

< 농어업인 경감대상 해제 신고 >

- ① 농어업인 일제조사후 농어업인이 비농어업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고(별지 제3호서식)
 - ※ 지역보험가입자와 직장보험가입자간 이동, 가입자의 주소지 이전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로 파악되어 조치 가능

(2)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별첨 1)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시(별지 제1호 서식) 농업·어업·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3) 농어업인 대상자 파악 추진일정

기관별	업 무 별	제출일자	제출기관
읍·면·동	농어업인 명단 작성	'05.2.15	시·군·구
시·군·구	농어업인 명단 확인·취합	'05.2.25	시·도
시·도	농어업인 명단 확인·취합	'05.3.10	지역건강보험공단, 농림부
건강보험공단	농어업인 경감대상자 선별·통보	'05.3.20	농림부
농림부	농어업인 경감대상자 인원 확정·통보	'05.3.30	보건복지부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및 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농림부로 사업비 예산 신청
(별지 제 5호 서식)
- 농림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 및 자금배정

(2) 사업비 집행

- 추가 경감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대상 농어업인 명단」은 지원금 청구서로 같음.
- 읍·면지역의 '05년 지원대상자로서 당초 조사('05. 1-2월)에서 누락자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액(18%)을 지원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소급 경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 제2항)

(3) 보험료 경감 적용기간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며 각 세부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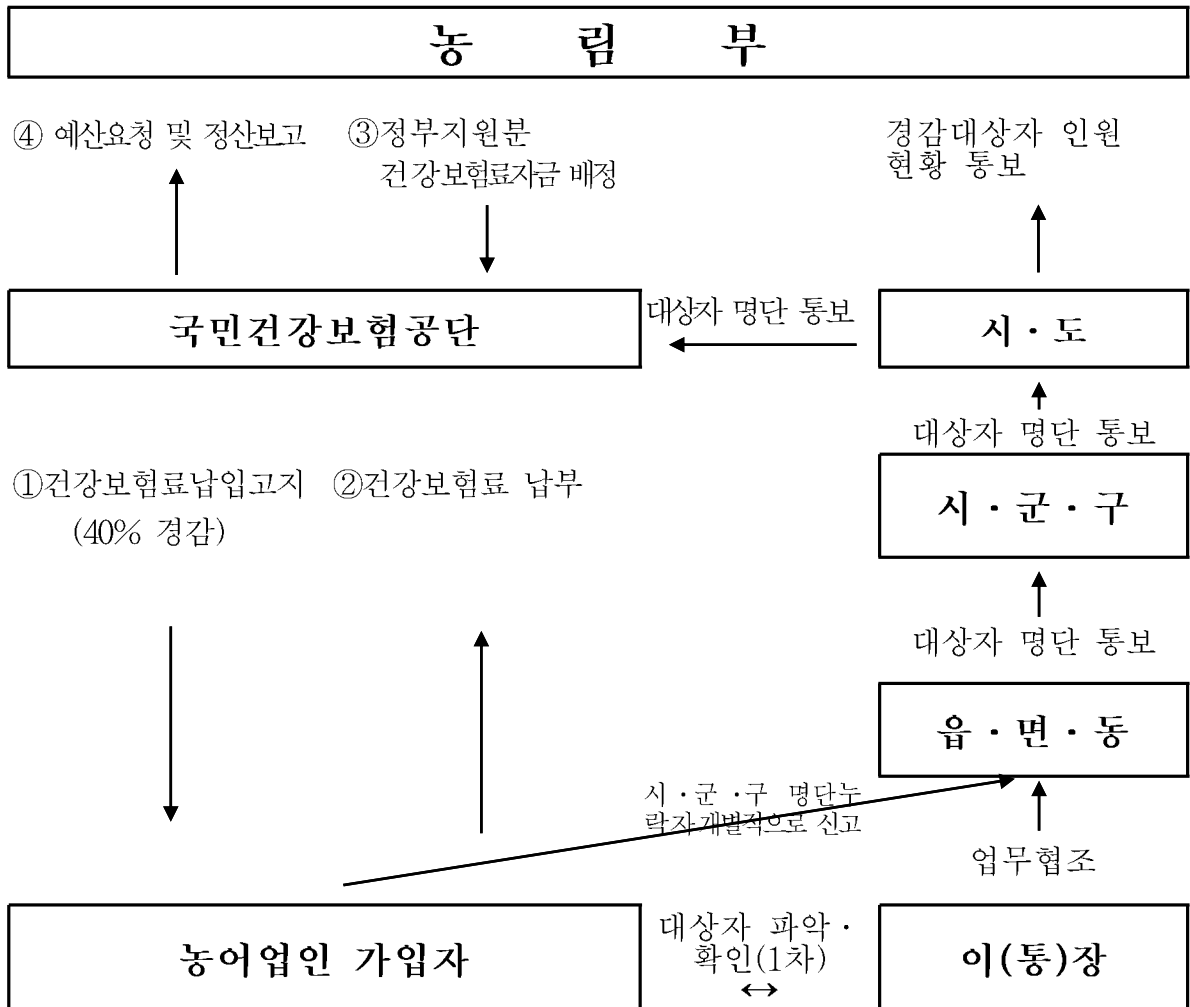
(4) 국민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홍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계획을 수립 홍보하고, 보험료 고지시 농어업인에게 추가 경감하는 내용을 반드시 통보

(5) 사업비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익년도 1.15일까지 농림부(농촌사회과)에 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부로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부족금에 대해서는 전용 지원 등 조치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05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반납금)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지원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특세전입금계정
 - 2700(농가소득안정 및 부담경감) - 223(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 301-01(보상금)

마. 사업시행 체계도



* 경감대상자중 조사시 누락자, 신규발생자는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 가능

<별첨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 업	1.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 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 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 조수사육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 2조 제2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제3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 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호 수산업법 제 2조 제8호

<별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구 분	관할 지역	주 소	전화번호	담 당	
				소속	성 명
본 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02)3270-9163	부과부	최해춘
서울지역 본 부	서울 강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2 CCMM빌딩 6층	02)2126-8856	자 격 징수부	송현주
부산지역 본 부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874-14 국민건강보험빌딩	051)801-0571	자 격 징수부	백천숙
대구지역 본 부	대구 경북 울릉도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48-3	053)650-8841	자 격 징수부	윤종대
대전지역 본 부	대전 충남 충북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32-3 국민건강보험빌딩 5층	042)605-7144	자 격 징수부	김필중
광주지역 본 부	광주 전남 전북	광주시 북구 두암동 882-25	062)250-5562	자 격 징수부	민유순
경인지역 본 부	인천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8-6 국민건강보험 빌딩	031)230-7889	자 격 징수부	서재만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 어 업 인 확 인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시 도	구 시(군)	읍 면 동 리 마을 번지	
	종사직종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영농(어)규모 -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임야 어선 양식
	농수산물 연간판매액	원	영농(어) 종사일수	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농 어 업 인 확 인	1 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리) 통(이)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차 확인	확 인 내 용		확 인 자(성명)	
		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② 주소 및 녹지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③ 주소 및 준농산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거주(일치, 불일치)				
	④ 주소 및 농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⑤ 농어업 종사여부(일치, 불일치)				
상기와 같이 농어업인으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210mm × 297mm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에 관련된 서식임

기 재 요 령

1. 농어업인 신고는 본인이 이(통)장에게 사실확인(1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에 신고(2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농어업인이 아니면서 추가경감을 받은 경우는 추가경감분을 소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읍·면·동)에 거주(주민 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

◇ 농업인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비농업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 임업인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어업인

-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해제 신고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시 도	구 시(군)	읍 면 동	리 마을 번지
	종사직종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농어업인변동확인	경감대상 해제일	년 월 일			
	해제사유(간략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 × 297mm

<뒷 면>

유 의 사 항
1.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농어업인이 아니면서 추가경감을 받은 경우는 추가경감분을 소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기 재 요 령
1. 해제사유란은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탈농...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읍·면·동)에 거주(주민 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축산 포함)
◇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비농업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210mm × 297mm

[별지 제5호 서식]

작성기관명(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 】

농업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비 보조 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A)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총 계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210mm × 297mm)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보고

1. 총괄

(단위 : 명, 원)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 * 주) 1.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2. 교부결정액은 년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3. 집행(정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에게 실제 지출된 금액임
 4.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를 기재

2. 세부내역별 지출 내역

(단위 : 명, 원)

구 분		집행(정산)액		비 고
		인 원 수	금 액	
농업인별	농 업 인			
	임 업 인			
	어 업 인			
	합 계			
시·도별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합 계			

* 주) 축산업은 농업인에 포함

V. 소득원개발

① 농촌관광휴양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전영미)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함으로써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유형의 다양화
 - 관광농원 : 농원으로서의 특성을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을 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될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농어촌민박 : 지역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숙박시설 조성·운영
 - 주말농원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이용객에게 농지을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67조의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및 농어촌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

4. 연도별 지원계획

-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03까지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 사업량	741	-	-	-
- 관광농원	446			
- 휴양단지	9			
- 민박마을	286			
○ 사업비	167,266	-	-	-
- 관광농원	123,380			
- 휴양단지	16,600			
- 민박마을	27,286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사업대상자

-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2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제한 없음
- 농촌민박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의2제라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중 기존의 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여 민박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주말농원사업 : 제한 없음

(3)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관광농원 · 농어촌민박
지원자금	○ 관광농원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용자 ○ 농촌민박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개보수자금 용자
용자지원 대상자	○ “농업종합자금지원” 편 참조
용자한도	상 동
용자조건	상 동
대상시설	상 동

(4)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농업종합자금지원” 편 참조)

(5) 세부사업내용

(가) 관광농원사업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 별지 표1의 예시(유형 및 시설)내용 참조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66,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 이상으로서 농원 면적의 20%이상 조성
 -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의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개발방법 및 유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등과 연계·조화되게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등
 - ※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수 있도록 개발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0,000m² ~ 100,000m²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m²이상), 학습관(60m²이상)
- 자유타입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편익시설 :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 체육·휴양시설 : 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 연습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등
 - 교양시설 : 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등

(다) 농어촌민박사업

○ 개발방법

- 기존 주택을 민박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개축

○ 시설기준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
- 이용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취사시설과 이용객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화장실, 욕실(샤워장 포함)등 구비

(라)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 구비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 02-500-1966~7)
- 시·도 : 농정(농정산림, 농림수산)국 농업정책(농정유통, 농업특작)과
- 시·군 자치구 : 산업(농정)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추진절차 (붙임 표2 사업추진체계도 참조)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 사업자 : 사업유형에 따라 개발·경영·양수자가 다름
 - 관광농원사업 :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제한없음
 - ※ 사업시행예정자는 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 : 관광농원개발계획 승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 (농정심의회 심의·고시) 및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
-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개정법률안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야 함

라. 사업시행

(1) 농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승인

(가) 공통사항

-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등의 “농어촌관광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 관광농원사업의 경우는 일정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구역을 분산 계획한 경우 시장·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보정하게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나) 개별사항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 검토시 환경부서와 협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토지적성평가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
 -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 지역에 준하여 개발

(2) 사업계획변경

(가)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역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또는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여부등 검토
 -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나) 개별사항

○ 관광농원사업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농원 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비해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및 시설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시행자·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3) 사업추진

(가) 공통사항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 준공검사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나) 개별사항

- 관광농원사업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건축분야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 실시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에 준하여 추진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가능한한 전액보상하고,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 시행가능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를 적용
 - 지적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40. 농업종합자금 지원(자율)”편에 의하여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할 수 있음

(2) 자금의 운용관리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함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자는 농촌관광휴양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호화시설등에 과도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2) 개별사항

-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등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2 내지 제7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나. 사후관리

(1) 공통사항

(가)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관리주체 : 시장·군수
- 점검자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 공정계획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
- 점검결과 조치
 -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관련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시행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관광농원에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개별사항

(가) 관광농원사업

-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개별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적격 자격자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농원이 휴양농원, 체험농원등으로 잘 운영되도록 측면 지원
 - 청소년 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등 지원
 -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원인근지역의 농산물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타품목판매, 전시장등 타용도로 활용 가능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함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다) 농어촌민박사업

- 시장·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시설과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강화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정부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않고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 추진실적(운영실적 포함)보고서(별지 제8-1, -2, -3, -4, -5, -6)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 본사업시행지침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의 사업대상자”의 사업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자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사업별 신청자격을 갖춘자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은 융자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제출

마.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시행 지침시달	농림부→도	12월	
2.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추진 실적(운영실적) 보고	시·군→도 도→농림부	1.15 1.25	별지 제8-1, -2, -3, -4, -5, -6호 서식

○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1-1호 서식
1-2.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1-2호 서식
2.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2호 서식
3. 농어촌관광휴양지 (관광농원 휴양 단지) 관리·운영 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3호 서식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 의견서	시·군	시·군 농정심의회	별지 제4호 서식
5.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제5호 서식
6.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6호, 제 7호 서식
7.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변경) 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8.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표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 기본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초지, 특수작물재배지 등)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형	운영형태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장소 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 가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 설 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판매장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이용객을 위한 숙소, 민박, 야영장등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 (일반목욕탕에 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단란주점, 유흥주점업은 영업불가)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표2] 사업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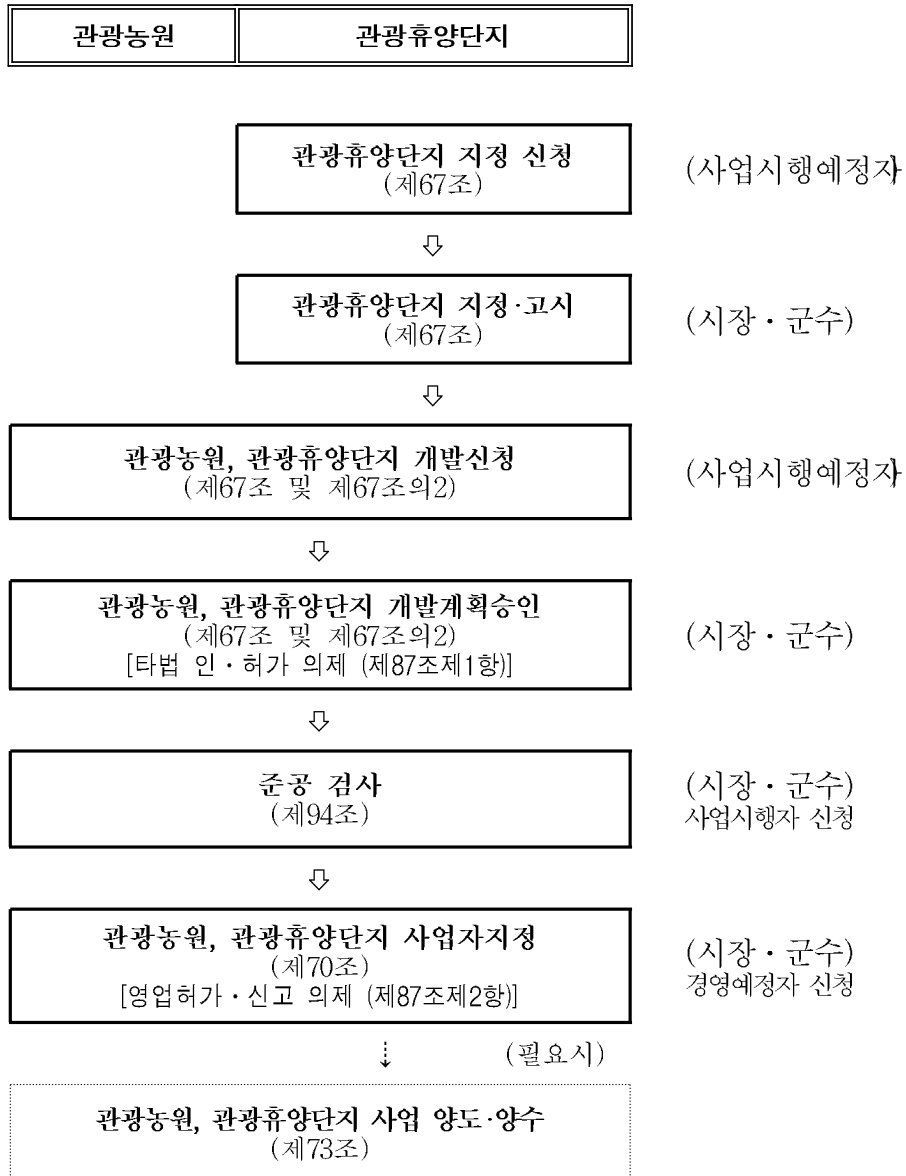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추진체계

[농어촌정비법]

□ 대상사업 : 관광농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시행자

- 관광농원 : 농림어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지 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용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농촌관광휴양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
 7. 기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사업 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농어촌관광 휴양지 명칭						
위치						
사업규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업비		백만원 (용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6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농촌관광휴양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
7.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9. 법 제87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사업계획서

□ 지 구 명 : (사업 규모 : ha)

□ 소 재 지 :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m², 백만원)

사업내용		총계획				2004계획				2004 분기별 용자소요액				주 변 관 광 지	개 발 유 형	비 고
		사업 물 량	사업비			사업 물 량	사업비			계	1 / 4	2 / 4	3 / 4			
합 계	용 자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용 자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작 목 입 식	합 계															
	유 실 수	m ² 마리														
	축사(가축) 특용작물															
농 수 산 부 대 시 설	농업전시관 학 습 관 농업창고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편 의 시 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운동 체육 시설 휴양시설 주 차 장 기타시설 ·															
기 반 시 설	상 수 도 하수시설 전기·통신 시설 ·	식														

※ 비고란에는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특이사항 기재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휴양단지) 관리·운영계획서

1. 농어촌관광휴양지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 고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 (예)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 3/4분기 : 과수따기 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를 유치, 농원특
 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
 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결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여부
7. 기타의견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승인번호)	()	위 치		전화	
대 표 자	한글	규 모	m ² (ha)		
	한문				
사업기간	. . . 부터 . . . 까지		완료일자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p>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지구내에 작목입식등 관련 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_____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시장·군수 귀하</p>					

사업별 추진실적

지구소제지 :

대 표 자 :

구 분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예시”				
○작목입식				
-과수	1,000평	1,100평	1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축산	500평	500평	-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농업부대시설			-	
-축사	100평/1동	100평/1동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편의시설				
-식당및휴게소	50평/1동	40평/1동	△10평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10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진실적

1. 관광농원사업 추진(운영)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지정(승인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정(승인 면적	ha (평)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종사자수)	○○호 (○○명)	사업추진현황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총 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연간이용자수	명	기능에의한유형			
사 업 내 용					
구 분	세부사업명	단 위	사 업 량		운영현황
			계 획	실 적	
농장조성 (작목입식)	과 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양 어 장	평/주 평/두 평 평			
농업부대시설	창 고 집 하 저 장 직 판 고 장				
편의시설	숙 박 - 여 관 - 민 박 - 방 갈 로 등 식 휴 게 소 낙 시 터 운 동 시 설 화 장 실	평/동/방수			
		평/동 평 평			
용 자 금 현 황 (백만원)					
용 자		상 환		용자금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일자	지적 및 지도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			조치결과
	○○.○○.○○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업계획 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3. 사업단위는 주/평, 두/평 ...으로 구분하여 표기
 4. 숙박시설은 여관, 민박 등의 유형별로 구분표기(단위는 방수/건평)
 5. 부진사유 및 대책은 부진농원에 한하여 작성하되 상세하게 작성토록 할 것

[별지 제8-2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실태

시·군	농원명	구정적지지면적(A)	작목입식(평)							숙박시설(건평)				음식점시설(건평)			지역특산물판매시설(건평)	교양시설(개소)	운동시설(개소)	편의시설(개소)	농업부대시설(개소)	정화시설(개소)	
			계(B)	B/A(%)	작물, 임산물	양어장	사육장·초지등	하우스·분재원	...	계	여관	민박	방갈로등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예시)계	00	10,000	5,000	50	4,000	500	200	300	·	100	1동/100(10실)			50	1동/50(50인)		30	2	3	3	2	1	
00시																							
00시																							
00군																							
00군																							
00군																							

※ 숙박시설 : ()는 방(실)수, 음식점시설 : ()는 수용가능인원

[별지 제8-2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실태는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보고

[별지 제8-3호 서식]

3.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운영)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단 지 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구지정 면적	ha (평)	
소 재 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사업추진현황	개발·분양방법			추진현황			
	기반조성후 부지분양, 부지와 시설물분양, 시설물분양						
사 업 내 용							
구 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추진실적		분양실적		운영현황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기반시설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보상비및 용역비							
용 자 금 현 황							
지방비 보조		용 자		상 환		용자금 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
 2. 작성자는 시·군담당자
 3.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세부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단위는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과 동일
 5. 「추진현황」은 기반조성진도(%), 분양율(%), 준공·일부준공여부, 사업중단여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운영현황」은 분양후 운영여부, 운영자(업체)수 등을 기재
 7.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분양계획 및 분양현황을 첨부할 것

4. 농촌관광휴양사업 소득효과(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단지명 (농원마을명)	지구지정면적 (ha)	지정년도	사업시행자 (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수 (방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용 (B)	순소득 (A-B)
								계	융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계 (A)		
계																			

※ I. 관광농원사업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자금투자내역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일부 준공농원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II.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1. 자금투자내역은 투자액 누계를 기재
2. 참여자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수
3. 총종사자수는 관광휴양단지내에서 취업·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4. 개장(일부 개장포함)된 관광휴양단지와 미개장된 관광휴양단지로 구분하여 작성

III. 농촌민박사업

1. 지구지정면적은 기재하지 말고, 종사자수(방수)란에는 방수만을 기재

[별지 제8-5호 서식]

5. 지정(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단지명 (농원명)	지정 년도	사업 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 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 소 사 유	비고
					계	용 자	자 부 담	기 타			
계											

※ 당해연도에 지정취소 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8-6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 지도·점검결과

소재지	농원명	지정 년도	지적 일자	지 적 사 항	조치결과(시정내역)		비고
					완 료	미 완 료	

※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원별로 작성보고, 미완료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 추진일정을 기재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원량 시설서기관 이봉훈)입니다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2. 시책 및 추진방향

- 한계농지의 위치 등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활용토록함
- 지역여건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개발로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
- 지역의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
-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과 조화를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비예산사업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따라 '96부터 시행
- 정비유형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시설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식물원,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휴게소, 관망탑, 야외극장,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등), 촬영소)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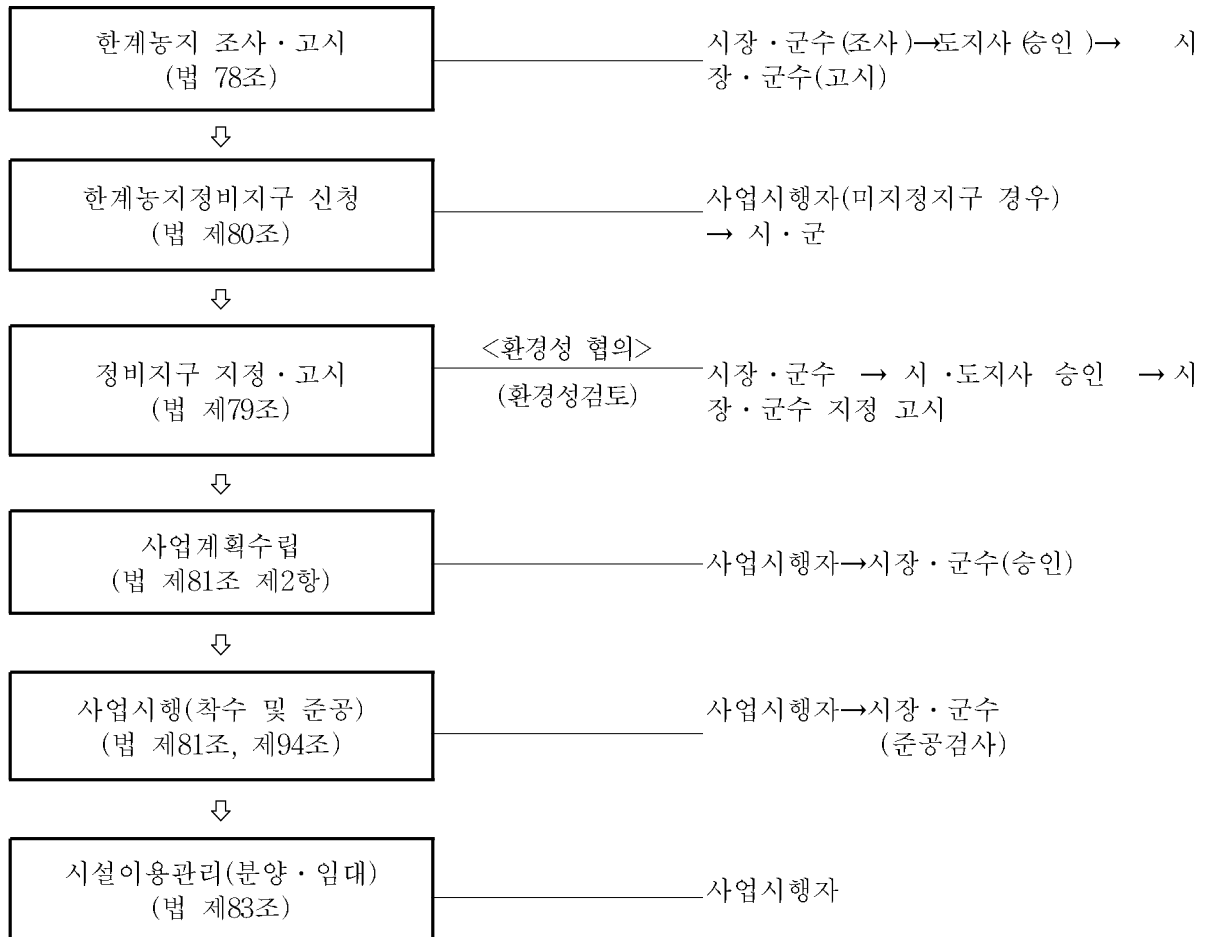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전화 : 02-500-1971~2)
- 시·도 : 농정국 농산지원과
- 시·군 : 건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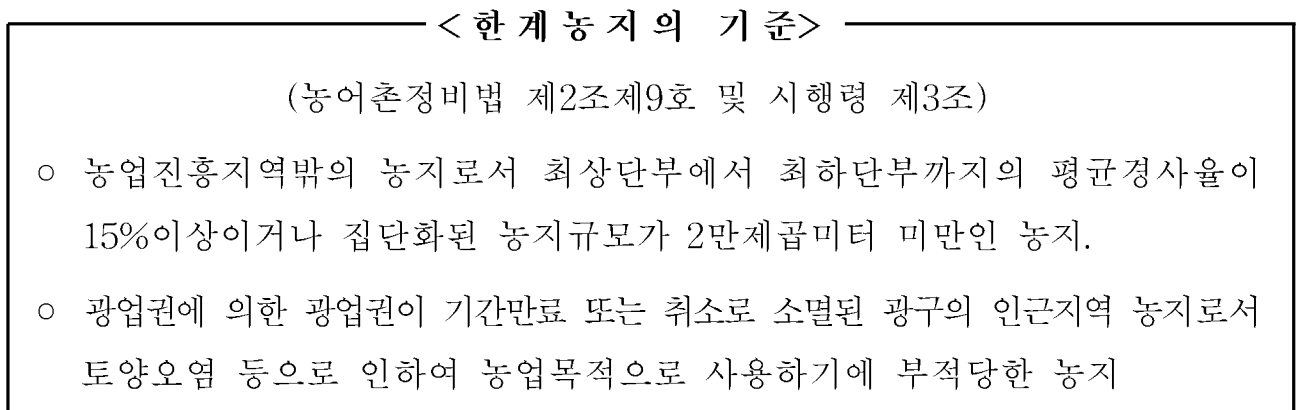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자

라. 사업추진절차



《한계농지조사·고시》

가. 한계농지의 기준



나. 한계농지조사 및 고시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한계농지를 조사한다. 우선적으로 조사할 지역은 개발수요가 있거나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조사한다.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할 항목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현재의 토지이용상태와 위치도(축척 1/5,000, 축척 1/5,000이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 또는 축척 1/3,000)를 포함한다.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하고, 이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고시할 사항은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으로 한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

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제곱미터이하로 하고
 -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함.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 1/5,000, 축척 1/5,000이 없는 지역은 1/1,200 또는 1/3,000)와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구의 명칭
 -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
 - 지구 지정의 필요성
 - 사업의 종류 및 대상면적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 예방대책
 - 관련법상 제약요건에 대한 대책 등 기타 지구지정에 필요한 사항

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검토사항

- 한계농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정비지구지정구역내 및 인접지 토지소유자 등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가능성과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사용 동의, 사업추진의 용이성, 효율성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 및 수도권정비법, 건축법 등의 제한여부를 검토
 -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할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의 환경부서와 사전협의
- 생산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부문 개발계획유무 및 연계성
- 정비지역주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획(구상 포함)
 - 주변경관의 훼손과 경사지의 산사태 등 발생가능성, 환경보전과의 조화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함

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1) 공통사항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검토시 환경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
- '04.11.12일 경제장관간담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가용토지공급원활화방안”(재정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교부·기획예산처·산림청)에 의해 토지적성평가지 한계농지정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
-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준하여 개발
 - ※ 가용토지공급원활화방안 발췌 : 별첨 참조

(2) 시장·군수의 필요성에 의한 지정 및 고시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가 개발의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시설종류 규모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다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 정비지구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정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음.

(3)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함.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및 지역개발 계획과의 관계, 정비지구 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당 지구내 토지소유자와 인접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구지정 신청자에게 통보함

《사업계획수립》

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내의 개발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인은 시장·군수가 고시한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지역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사업계획수립에 포함할 사항(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 사업의 종류
-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 시설계획(규모, 배치)
- 도로, 상·하수도 등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다. 주요법령과의 관련사항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및 토지이용계획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이나 다목적이용으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규모 이상은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원칙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정비사업 사업계획수립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사지 붕괴 등 산사태 방지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등 보상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다.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량·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을 적용

라.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시행자와 시·군에서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정비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를 한 후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마. 정비한 토지의 분양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 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바.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거나 시·군 또는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하여 관리·운영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과 그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관리

나. 보 고

- 한계농지조사·고시현황 보고(별지 1호 서식)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고시현황 보고(별지 2호 서식)
- 사업계획(변경) 및 준공결과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년 6월·12월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6. 2006년도 한계농지정비지구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공기관과 사업하기 위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다.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격자가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을 우선 수립
- 지구지정 승인요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 도지사(승인)
- 지구지정 지정승인 : 도지사 → 시장·군수
- 지구지정 및 고시 : 시장·군수

라.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별지 3호서식)
- 위치도(축척 : 1/5,000, 1/5,000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 또는 1/3,000)
- 사업목적, 사업종류,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지구와 연접한 토지소유자의 지정에 대한 의견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한계농지고시 현황

(면적단위: m²)

위 치			고시		대표 지번	필지 수	면적					한계농지 형태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기타	

※ 작성기준

- 집단단위로 작성하고
- 한계농지형태란에는 경사도 15%이상은 「경사지」 로, 2ha미만은 「소단지」 로 표기

[별지 제2호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현황

(면적단위: m²)

위 치			고시		지구명	대표 지번	필지 수	면 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임	기타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_____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 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공 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200 . . .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①

[별지 제5호서식]

심사제외

○○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구명	사업목적	사업 기간	총계획	전년까지	'05년		누계진도 (%)	이 후
시군	읍면	리동						계획	실적		
					○○년~ ○○년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권제한, 사무관 최이규)입니다.

1. 목 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황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일반축산경영자금 지원
- 재해 농·축산농가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축산법 제3조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농림부 훈령 제1080호)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안)
총 지원규모	44,700	44,700	44,700	38,310	37,600	35,000	34,000
재특회계예산	640	990	1,307	2,133	2,702	2,849	3,187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자금별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5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연리 3.0%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 >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의 농업경영비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500만원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원이내(일반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까지
- ※ 전문농업경영자금중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연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하되,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이내 지원
-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연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젓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이내(대출잔액 기준)

구 분	5백만원이내	10백만원이내
한(육)우·말	10두미만	10두이상
젓 소	20두미만	20두이상
돼 지	100두미만	100두이상
닭	7,000수미만	7,000수이상
기타가축	상기 사육두수를 감안 운용	

- 지원조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 우수농가 우선지원 : 용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축산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구제역 일제소독등 공동방역 참여, 예방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소독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및 검진협조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볏짚이용, 남은음식물 사료화
 - 기 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④ 재해대책경영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o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 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축산계)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 농협 지역본부장은 중앙회장에 자금지원 요청
 -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나. 2005사업비(예산안)지원계획

자금명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농축산경영자금	34,000억원	34,000	34,000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

나.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다. 대상자 선정

-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은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하고 조합용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을 원칙
-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하고 조합용자협의회에서 대상자 협의조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
 -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조합실정에 맞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용자협의회를 선택하여 운영

- 용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용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품목)조합까지 시달
 - 지역(품목)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 또는 조합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품목)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지도·감독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나. 보고사항(농협중앙회 → 농림부)

- 농축산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지침 보고
 - ※ 사업종류별 세부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축산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월별)

자체가 26-15

(단위: 억원)

시도별	계			사 업 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 농축산경영자금 용자실적 보고(월별)

자체가 26-14

(단위: 억원)

	지원 규모	○년 ○월○일 현재			전년동기(○월○일)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계							
일반농업경영자금등							

6. 사업신청 안내

- 농림부 협동조합과(농축산경영자금, 02-500-1698)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88)
- 농협지역본부 농업금융팀
- 농협시·군지부,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
- 신청방법 : 일반·전문경영자금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 신청하고,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에 신청

7.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제한대상
 -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다만, 단순 보증채무 연체거래자는 대출가능하며, 특수채권보증채무자로 등록된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중단자로 확인된 자(비농업인·법인과 비양축가·법인)
 -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 상근임직원(조합장, 계약직 직원포함)
 -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개인의 경영자금
 - 농업종합자금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자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② 농업경영회생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권제한, 사무관 홍만의)입니다.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회생가능여부를 심사·평가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설치
- 심사·평가결과 유형에 따라 자금 지원
 - 회생가능 : 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희망자에게 인수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유도
-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3. 근거법령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및 동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03년	'04년	'05년(예산안)	2006년이후
사업량						
사업비	계	—	22,075	200,000	300,000	500,000 ¹⁾
	보 조	—	—	—	—	—
	용 자	—	22,075	200,000	300,000	500,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 —	— —

* '05년 3000억원, '06년 2,000억원, '07~'10까지는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 초래 원인(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중 자금지원 희망자는 거래조합 및 시군지부(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신청

나.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또는 조합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전심사후 지원신청 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또는 조합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첨부 2

다. 지원 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한도 : 회생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인수자금의 경우, 인수에 소요되는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지원비율

-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규모 : 3,000억원(2005년)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 지원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 지원대상자금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1년 1.8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이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농업경영회생지원 사업지침 시달 : 농림부
-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세부지침 시달 : 농협중앙회
- 지원신청자는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해당 농업인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서 평가, 자금지원 규모 결정 등 : 경영평가위원회
-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
- 인수자금의 경우 정책사업대상자 변경승인 : 사업주관기관

〈사업 세부추진계획〉

가.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조합에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역본부,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조합 5천만원이하, 시·군지부 5천만원초과~2억원이하, 지역본부 2억원초과~5억원이하, 중앙본부 5억원초과 단, 시·군지부에서 신청받은 경우 5천만원 이하도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내외 위촉(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심사한 기본자격심사, 경영현황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가액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평가 내용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경영능력, 기술수준, 성실성 등 경영상태파악에 필요한 요소
- 자구계획의 현실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나. 유형별 자금지원

<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자구계획서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조합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역본부,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심사결과 회생 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심의

- 조합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결과와 현장실사자료를 기초로 정밀경영평가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정밀경영평가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지원

- 조합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 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지원
 -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지원 >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심사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 및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지원

- 조합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 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 자금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출기관에서는 반기당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 「농업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 실시

나. 제재조치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다. 보 고

- 농협중앙회는 매분기말 기준 자금지원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 협동조합과로 보고

라.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90%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9)

- 기본 시행지침 시달, 지침보완 등 총괄업무

나.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91, 6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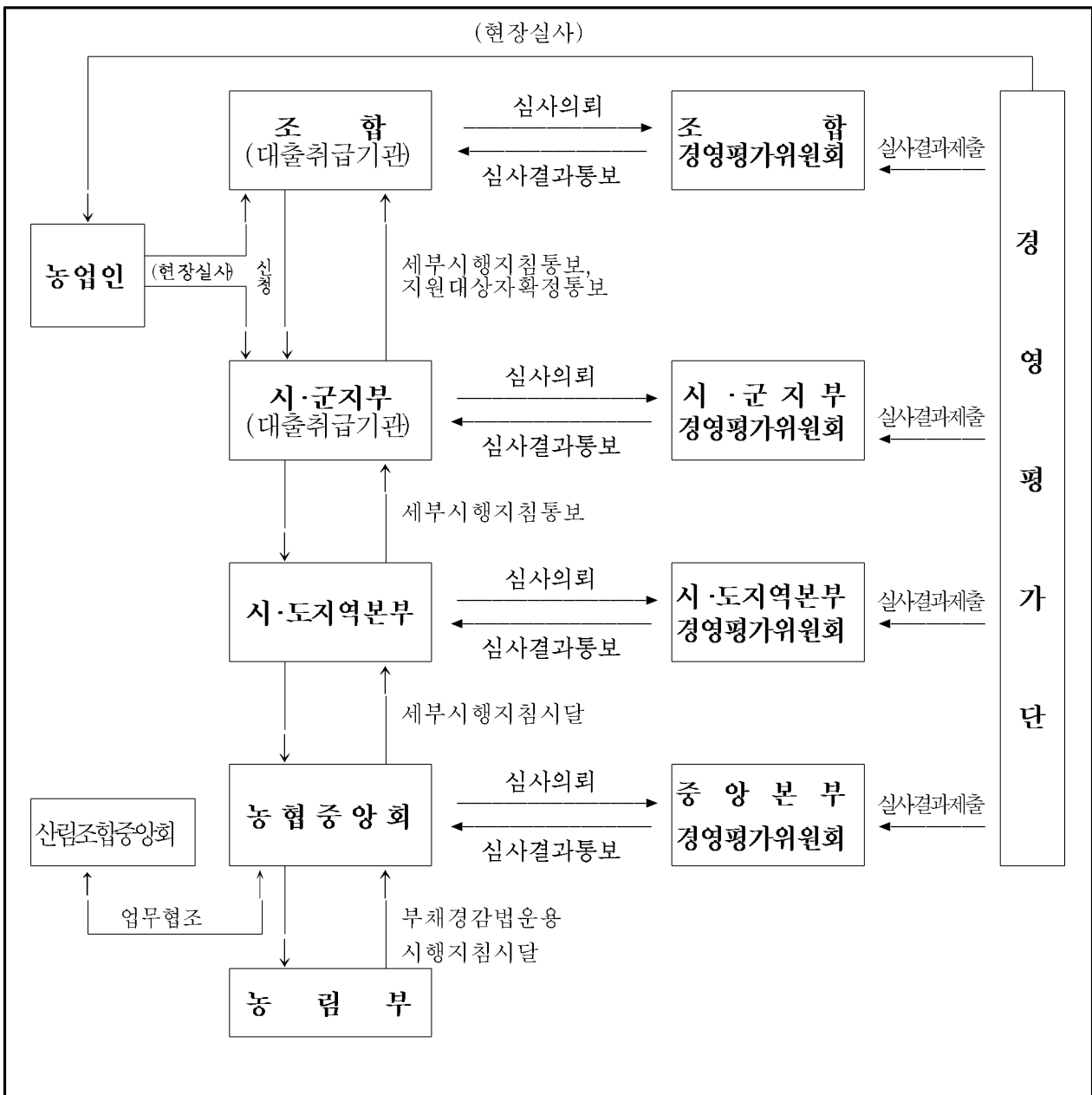
- 경영평가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지원 방안 세부시행지침 마련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지원여부 및 금액결정 등

다. 대출기관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사전심사
- 대출실행 및 실적보고, 사후점검 등

지 원 체 계 도

농업인 신청 → 대출기관 (현장실사) 사전심사·경영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 경영평가위원회(현장실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대출기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 대출기관은 지원대상 자금규모에 따라 각급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 각급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밀경영평가결과를 신청 농업인 및 대출기관 통보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는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영회생 여부 판단

○ 경영평가표 등은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부와 사전협의

< 중점 평가항목 >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 경영능력, 성실성, 세평 등

□ 중점 평가항목별 세부점검 내용

○ 재무구조의 건전성

- 농업인 소유 재산과 부채를 비교
 - * 재산내역 조사항목 : 부동산, 기계장비, 재고품, 예·적금 등
 - * 부채내역 조사항목 : 은행대출금, 사채, 외상구입잔액 등

○ 사업의 수익성 비교

- 농업인의 연간 순소득으로 금차 회생자금 지원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총 소득대비 부채비율 조사

○ 경영능력, 주변 세평 등 평가

- 경영장부 기장여부, 출하방법, 해당작물 재배경험, 농업관련 지식수준, 교육훈련 실적, 품목인지도 등
- 성품, 영농의욕, 해당 농업인에 대한 주변세평 등

○ 기타, 특이 경력이 있는 농가에 대한 가점

- 신지식 농업인, 선도농, 후계자, 농업관련 전국단위 표창수여자, 시장·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재배자,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실적 등

농업경영위기 초래원인(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 수해 · 풍해 · 우박 · 서리 · 조해 · 설해 · 동해 ·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 농경지 ·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 농업용 시설 · 임업용 시설, 농작물 · 산림작물, 가축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 제4호의2, 제5호 · 제5호의2, 제6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외부 충격에 따른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농업용 원자재(비료 · 농약 · 사료 · 유류 · 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농축산물 수출중단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기타 농가부채및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위기 초래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삼	1.5ha이상	
축 산		
- 한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VI. 생활환경개선

53	폐비닐 수거비 지원 (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정황근, 사무관 장영국)입니다.

1. 목적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
- 지자체의 자체지원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이후
사업량		천톤 -	-	85	103	1,200
사업비	계	백만원 -	-	2,550	3,090	36,000
	보조	-	-	2,550	3,090	36,000
	융자	-	-	-	-	-
	지방비 자부담	-	-	-	-	-

5. 2005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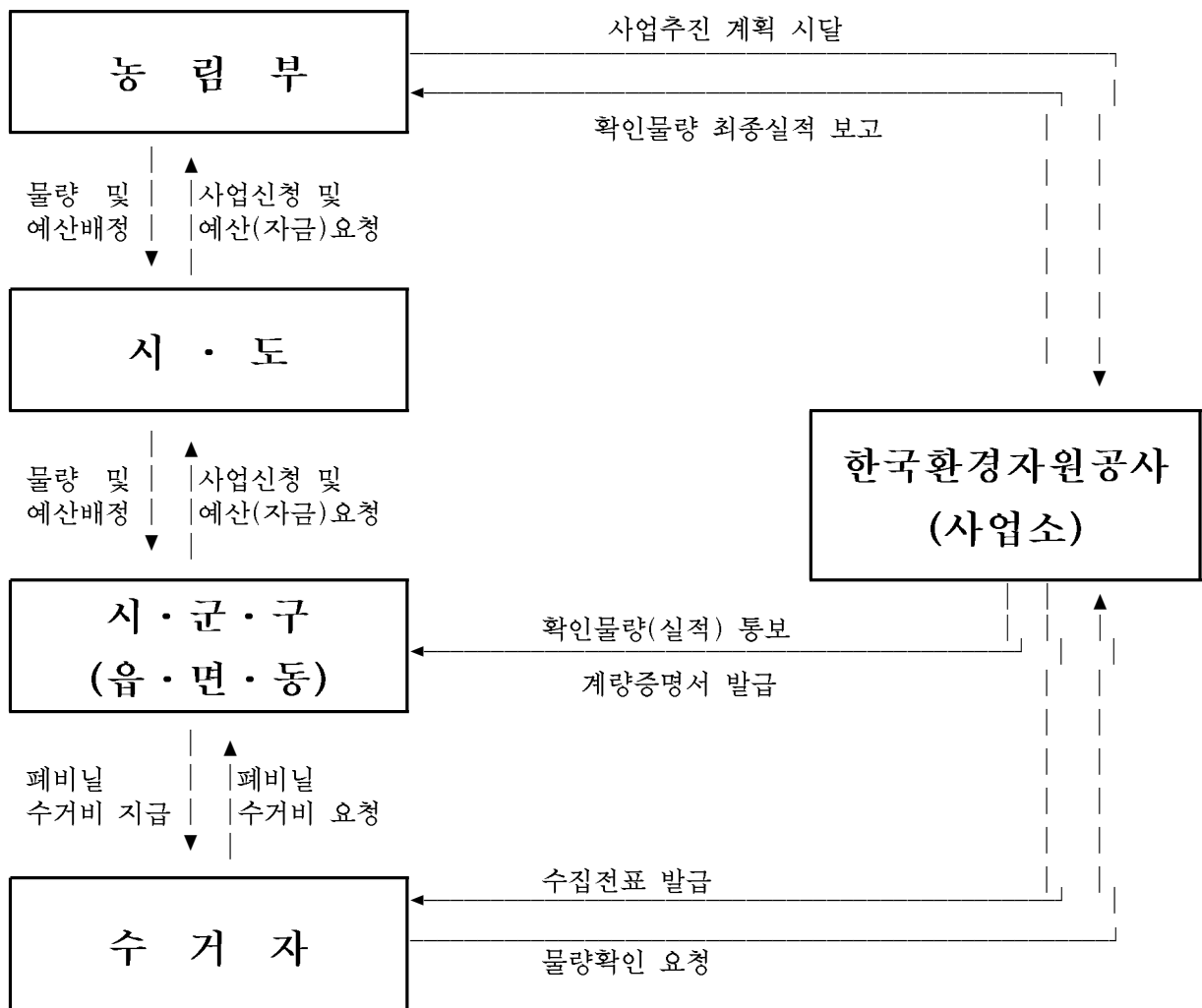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수거비 지원

(2)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 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3) 지원조건 : 30원/kg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4) 사업시행체계



나. 2005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농특)	지방비
○폐비닐 수거비 지원	천톤 103	백만원 3,090	3,09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협조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농산·유통과, 농정과(보건환경국 환경과)
- 시·군·구 : 산업과, 농정과(환경·자원과, 청소과)
- 한국환경자원공사 : 본사, 지사 및 사업소

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05년도 『폐비닐 수거 보상비』 자체 확보 예산액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별 폐비닐 발생량, 지자체의 자체 예산 확보액, 추진 계획량 등을 기준으로 “2005년도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
-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05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사업량 배정은 사업목적 달성, 예산 집행 잔액 발생방지 등을 위하여 시·도 여건에 따라 자체 조정 가능
-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수립된 폐비닐 수거 계획량이 농림부의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초과물량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라. 보조금 신청 지급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현행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폐비닐 수거보상비』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르되 보조금 신청·지급기준이 되는 수거량은 한국자원재생공사(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수집전표와 계량증명서에 의함

- 시·군·구의 농산·유통과, 농정과 등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소관 주무과는 환경·자원과, 청소과 등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 소관 주무과로부터 폐비닐 수거자(폐비닐 수거비 신청자)의 성명, 수거량, 수거비 입금 계좌번호,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등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점검 후 폐비닐 수거비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보조금 집행
 -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 소관 주무과에서도 보조금 집행 가능하나, 동 사업의 추진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함

<폐비닐 수거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대표, 또는 개인 수거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 수거물량 확인요청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는 수거자의 수거물량을 확인한 후, 수집전표를 수거자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발급하고, 계량증명서를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시·군·구(읍·면·동사무소)는 수거자 성명, 수집량,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수거자 통장사본 등을 작성 및 첨부한 후 폐비닐 수거비를 지급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체 확보한 『폐비닐 수거 보상비』와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를 수거자에게 지급(통장 입금)

*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는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임

< 지원 예 시 >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자체 자체 추진)	폐비닐 수거비 (농림부 추진)	지원대상자(수거자)의 총 수령액
A 시·군	30원/kg	30원/kg	60원/kg
B 시·군	50원/kg	30원/kg	80원/kg
C 시·군	100원/kg	30원/kg	130원/kg

< 행정사항 >

가.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 행정기관
 -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배정, 집행 및 정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집행 확인 및 지도감독
-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업무협조(시·군·구의 농정관련부서 및 환경관련 부서)
- 한국환경자원공사
 - 폐비닐수거물량 확인(수집전표, 계량증명서 발급) 및 실적통보(사업소 → 읍·면·동, 시·군·구)

나. 보고사항

-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 확보 예산액 현황 보고[별지 제1호서식]
 - 보고기관 : 시·도지사
 - 보고내용 : 자체확보예산액, 물량, 지원단가 등
 - 보고기한 : 2005. 1. 10
- 시·군·구별 폐비닐 수거비 지원계획 수립(배정내역) 보고[별지 제2호서식]
 - 보고기관 : 시·도지사
 - 보고내용 : 폐비닐 수거비 배정내역(사업량, 사업비)
 - 보고기한 : 2005. 2.월 말한
- 사업추진실적보고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시·도지사) : 매분기 익월 10일한[별지 제3호서식]
 - 2005년도 폐비닐 수거비 사업정산보고(시·도지사) : '06년 1월 말한[별지 제4호서식]
 - 폐비닐 수거 확인물량 최종실적(한국 환경자원공사) : '06년 1월 말한
 - 시·도, 시·군·구별 전체 수거물량

6. 2006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나. 신청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예산 확보현황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량 신청

다. 지원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 지침 5. <추진체계> 다, 라항에 의함

라. 구비서류 : 2006년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 확보 예산액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05년도 폐비닐 수거보상비 자체확보 예산액 현황

구분	‘04 폐비닐 수거 계획량(톤)	‘04 자체확보 예산액		
		사업물량(톤)	단가(원/kg)	예산액(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2호 서식 >

‘05년도 폐비닐 수거비 시·군·구별 사업배정 내역 보고

	자체 확보 예산액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량 (톤)	예산액(천원)			지원단가 (원/kg)	사업량 (톤)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군·구비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3호 서식 >

‘05년도 폐비닐 수거비 추진실적 보고서식(분기)

(단위 : 톤, 천원)

시·도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비율 (B/A)
	사업량	사업비 (A)	당분기		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B)	
시·도명							
시·군·구명							

< 별지 제4호 서식 >

‘05년도 폐비닐 수거비 사업정산 보고

	사업량(톤)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실적 (B/A)
	계획	실적	%				
시·도명							%
시·군·구명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 경 영 기 반 확 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과장 류광수, 임업사무관 황육성)입니다.

1. 목 적

영세한 산주에게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거나, 산림 사업을 대행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산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및 임업 기계화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인력의존에서 기계화로 전환하여 생산효율 증대
- 고가의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대여 및 기술보급 전초기지로 육성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06년~'07년	
사업량	1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4개소	
사 업 비	계	435	533	1,106	653	500	2,000
	보 조	435	533	1,106	653	500	2,000
	용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5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일시적 사용을 위해 가격이 비싼 임업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세한 산주 등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를 대여·기술지도해 줄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산주의 경제부담 경감 및 임업기계화를 촉진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보조 100%
-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

나.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개소	500	500	500	-	-	-
기계지원센터	1개소	500	500	500	-	-	-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대상자 : 청주청원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경영지원과(042-481-4195~6)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경영부(02-3434-7184~5)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산림조합중앙회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는 세부 사업계획(부지위치, 면적, 구입기계·장비 등)과 시설공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림청에 변경 승인후 추진
- 사업비 집행방법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조합중앙회는 보조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비치
-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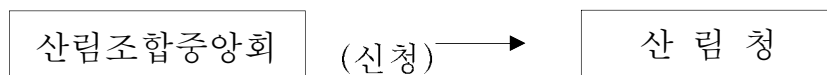
-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조합중앙회장
- 사후관리절차
 - 산림조합중앙회장 책임하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장비구입 활용여부 및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점검

6. 2006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5. 3. 30까지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나.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중앙회

다. 신청절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정책과(과장 최대순, 행정사무관 이문원)입니다.

1. 목 적

-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영림계획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소유자의 자율적 영림계획 작성·운영을 통한 합리적 산림경영 유도
- 산림경영의 의지가 있는 자 또는 경영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집중지원 함으로써 임업경영의 경쟁력 강화 및 산림사업 추진 체계화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 산림법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 등)
- 산림법 제10조(임업기술지도 등)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06~'07
사업량 (천ha)	2,542	100	100	100	200
사 업 비	계	14,374	810	810	1,620
	보 조	6,380	405	405	810
	용 자	-	-	-	-
	지방비	5,326	405	405	810
자부담	2,668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영림계획 작성대상 기간 : 10년
- 영림계획 작성내용
 -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에 관한 사항
 -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자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지원단가 : 8,102원/ha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00천ha	810	405	405	-	405	-
영림계획작성	100천ha	810	405	405	-	405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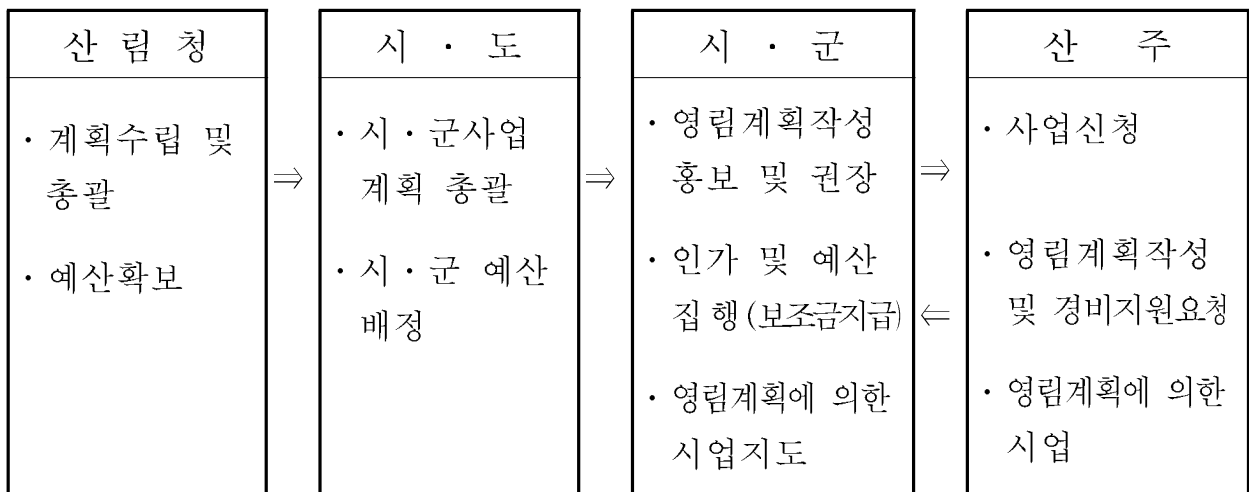
- 산림청 : 산림정책국 산림정책과 (042-481-4131~2)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2005년도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자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영림계획작성 대상산림현황 파악 및 예산확보
 - 영림계획작성 홍보 및 권장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시 작성경비 보조 안내
 - 영림계획인가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방법



- 영림계획작성
 - 영림기술자
 - 독립가·임업후계자는 자기 소유산림에 한하여 작성가능
- 추진일정
 - 작성경비지급 : 1월 - 12월
 - 영림계획작성 : 1월 - 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영림계획인가 전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영림계획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영림계획인가와 동시에 8,102원/ha(국고 50%, 지방비 50%) 작성경비 지원
- 영림계획인가 지역에서는 영림계획대로 산림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
- 영림계획대로 시업하는 자에게는 국고보조 사업일 경우 우선지원
- 영림계획대로 시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림계획 인가 취소

나. 보고·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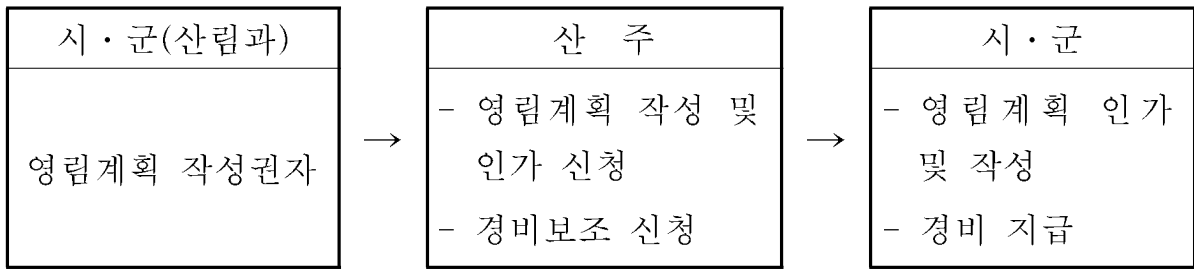
- 영림계획 작성현황 및 실행상황 보고(총49-31)
- 국고보조금정산보고서(총공통-9)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자격 : 2006년도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체 가입산림, 대리경영산림
-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권역
- ③ 임업용 산지
- ④ 기타 산림
- ※ 규모화·집단화된 임지에 최우선 배정

○ 선정절차

-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영림계획 작성 권장(시·군)
- 영림계획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소유자)
- 보조금 교부(시·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과(과장 김현수, 임업사무관 최정인)입니다.

1. 목 적

황폐지(산지·해안·계천)를 복구 녹화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과 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 실시(산정 → 산복 → 댐 → 야계)
- 적지적공법에 의한 합리적 설계와 견실한 시공
- 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어 시공

3.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5조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국가에서 선정 실행
- 사방사업법 제26조(사업의 위탁)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	2004	2005년 (예산안)	2006년
사업량	산 지 사 방(ha)	1,898	64	103	100	100
	예 방 사 방(ha)	325	37	25	30	100
	야 계 사 방(km)	981	90	70	50	300
	사 방 댐(개소)	827	200	175	179	400
	사방댐준설(개소)	92	500	350	250	350
	해안침식지복구(km)	21	7	5	9	5
	산림유역관리(개소)	-	-	3	12	7
	산불취수용저수댐(개소)	-	1	1	1	1
사업비	계	251,824	56,264	82,933	83,797	217,372
	보 조	178,579	41,053	61,014	61,296	140,470
	지 방 비	73,245	15,211	21,919	22,501	76,902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산사태발생지 등에 토사유출 또는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 지피식생 조성을 위해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

○ 예방사방

- 주택가·산업시설주변 등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야계사방

- 산간·마을주변 황폐계곡의 산기슭 침식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를 정비하는 사업

○ 사 방 댐

- 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곡에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횡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방댐 준설

- 기설치한 사방댐중 토사가 가득찬 곳을 대상으로 준설하는 사업

○ 해안침식지 복구

- 해안의 모래언덕 또는 해안산림이 과도에 침식되어 유실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과도막이 및 침식방지 시설을 하는 사업

(2)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국유림은 국고 10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83,797	61,296	61,296	-	22,501	-
산 지 사 방	100ha	5,400	4,104	4,104	-	1,296	-
예 방 사 방	30ha	2,430	1,701	1,701	-	729	-
야 계 사 방	50km	9,550	6,685	6,685	-	2,865	-
사 방 댐	179개소	44,750	33,575	33,575	-	11,175	-
사 방 댐 준 설	250개소	1,750	1,278	1,278	-	472	-
해 안 침 식 지	9km	2,864	2,005	2,005	-	859	-
산 림 유 역 관 리	11개소	12,966	9,077	9,077	-	3,889	-
산 불 취 수 용 댐 등	1개소	4,087	2,871	2,871	-	1,216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치산과(042-481-4271)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토목 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선정기준

- 각 사업종류별 적정대상지로서 토사유출·산사태·침식·붕괴 등으로 인한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또는 국토·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곳에 시공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자기소유 토지안에서 자기부담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2) 우선순위

- ① 인명·가옥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② 공공시설·산업시설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③ 농경지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3) 선정절차

- 도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에서 사방사업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실행함.
- 지역주민이 각급 행정기관을 통하여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실행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1)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
 - 11~12월중순 : 익년도 사업예정지 선정
 - 1~2월 : 사업실행설계서 작성
 - 3~6월 : 춘기사업 실행
 - 9~12월 : 추기사업 실행
- 선정된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실행 중 설계내용이 불합리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실행

(2) 재해방지 및 국토보전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공경력과 전문인력·기술·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우선 시공

(3) 다만, 저수용 사방댐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댐 설계·시공경력이 있는 업체에서 시행원칙

- ※ 저수용 사방댐은 구매가 급한 계류에 설치할 경우 댐 자체의 전도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을 위하여 콘크리트댐으로 시공

(4) 사업비 집행방법(사업실행 체계)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 국고소요 예산 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시달

- 시·도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산림환경 연구소에 사업 지시

- 도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사업실행 예정지선정 및 사업설계·실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방사업을 실행한 주체(도 산림환경연구소 등)가 사후관리함이 원칙
 - 필요할 경우 산주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되, 이 경우 사후관리비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담

나. 보고·기타

- 사업설계 및 실행상황(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Ⅱ. 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이용과 (과장 배정호, 사무관 이명수)입니다.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밤·표고·송이 등)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생산기반 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여 전업임업으로의 육성 및 생산성·품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밤·표고·송이 등 주요 단기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 임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친환경임산물 생산 지원
-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고소득품목의 개발 및 지원
- 집약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2003	2004	2005 (예산안)	2006~2007년	
사 업 량	-	-	-	-	-	
사 업 비	계	330,941	55,381	34,041	38,061	76,122
	보 조	46,152	7,882	8,312	9,412	18,824
	융 자	138,518	23,718	(19,360)	(13,056)	(26,112)
	지방비	38,224	6,017	7,338	7,792	15,584
	자부담	108,047	17,764	18,391	20,857	41,714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되며, ()내 융자금은 산림종합자금으로 별도 계상

나.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 업 량		9단지	5단지	6단지	6단지	14단지
사 업 비	계	22,500	12,500	15,000	16,000	35,000
	보 조	9,000	5,000	6,000	6,400	14,000
	용 자	-	-	-	-	-
	지방비	4,500	2,500	3,000	3,200	7,000
	자부담	9,000	5,000	6,000	6,400	14,000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산림작물생산기반 지원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1) 표고생산자금 : 산림소득종합자금으로 지원

2) 표고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①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등 지원

② 표고재배단지 사업 : 표고재배(원목, 톱밥)의 규모화를 위한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

③ 표고톱밥배지센터 :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의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배지생산(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및 보일러),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재배사 등
배지센터 시설비 지원

※ 표고자목 및 배지구입비는 용자사업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원목, 톱밥)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재배단지는 법인
경영체에 한함)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표고재배단지 사업의 경우 선별·포장기 및 표고자목구입비는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한도액 : 5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
 - ① 표고재배 시설비
 - 비닐하우스 시설 : m²당 8,800원(국고보조 4,400원, 국고융자 4,4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② 표고재배(원목, 톱밥)단지 사업(1개단지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100,000	205,200	257,000	205,200	432,600
○ 재배시설	1단지	726,000	145,200	145,200	145,200	290,400
○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 선별·포장기	1조	74,000	-	51,800	-	22,200

※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재배시설과 저장시설은 표고재배 시설비 사업」으로 「선별·포장기 사업은 표고생산자금지원 사업」으로 분할·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표고(원목, 톱밥)재배단지사업으로 표고재배사(원목, 톱밥) 지원가능(단, 이 경우 저장, 선별·포장기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표고톱밥배지센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표고톱밥 배지센터	1개소	1,000	200	200	200	400

3) 표고종균생산시설

- 사업내용 : 표고종균 시험·연구·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한도액·단가 : 600백만원 이내

(나) 밤생산기반 지원

1) 밤나무 작업로·방제장비 지원

-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내 가능.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밤작업로 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방제장비 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방제장비 탑재용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
- 지원조건
 - 밤작업로 시설 : 연리 4.0%, 5년거치 5년상환
 - 방제장비 지원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km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예시) 경사도 10°미만 2백만원, 10~20°미만 3백만원, 20°이상 4백만원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2)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지원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사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밤 생산기반 조성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사업내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실행)

4) 밤나무 묘목대 지원

- 사업내용 : 노령목 갱신을 위한 묘목대 지원
※ 수종갱신 등을 통한 신규조림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573천원

5) 밤생산장비

- 사업내용 : 밤생산성 향상을 위한 밤 생산장비 지원(굴삭기, 퇴비발효기 등)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퇴비발효기 190백만원/대당, 굴삭기 0.17m³기준 48백만원/대당

6) 친환경밤생산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10백만원/ha당

(다) 대추·호도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생산기반 지원 : 대추·호도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대추·호도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생산 기반시설비(묘목대 제외),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묘목대 제외), 산과실(산머루 등)재배단지 기반시설비, 오갈피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대상자 :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함.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생산 기반시설 : 평당 800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
 - 송이산가꾸기 기반시설: 3,295천원/ha
 -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실행 가능함
 - 산과실(산머루 등)·산약초·산채류·오갈피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작업로시설 : km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예시) 경사도 10°미만 2백만원, 10-20°미만 3백만원, 20°이상 4백만원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계		34,071	9,412	9,412	(10,747)	7,792	16,867
○ 표고 생산기반 지원		22,807	5,781	5,781	(8,642)	5,181	11,845
- 표고재배시설비	300개소	15,840	3,960	3,960	(3,960)	3,960	7,920
- 표고재배단지	4단지	3,284	821	821	(821)	821	1,642
- 표고톱밥배지센터	2개소	1,600	400	400	(400)	400	800
- 표고생산자금		1,483		-	(3,461)	-	1,483
- 표고종균생산시설		600	600	600	-	-	-
○ 밤 생산기반 지원		9,984	3,311	3,311	(1,785)	2,291	4,382
- 밤작업로 시설	1,300km	2,730	780	780	(1,170)	780	1,170
- 방제장비	50대	300	120	120	(615)	120	60
- 밤나무 토양개량	6,032ha	1,701	1,361	1,361	-	340	-
- 밤나무 노령목관리	2,500ha	3,230	646	646	-	646	1,938
- 묘목대 지원	1,000ha	573	114	114	-	115	344
- 밤생산장비	5개소	950	190	190		190	570
- 친환경밤생산지원	50ha	500	100	100		100	300
○ 대추·호도 생산기반 지원	40개소	1,280	320	320	(320)	320	640

※ ()내 용자금은 산림소득종합자금으로 별도 계상

※ 위사업비 중(임산물생산단지포함) 20%범위내에서 지원비율·사업단비를 준수하여 사업간 변경지원 가능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하며,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6개소	16,000	6,400	6,400	-	3,200	6,4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산림조합

※ 다만, 표고종균생산시설사업은 산조중앙회가 사업주관 기관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경영부(02-3434-7181~6), 신용사업부(02-3434-7221~5)

※ 국고보조가 있는 용자사업은 현행대로 시·군·구가 담당부서이고
순수 용자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담당부서가 됨.

다. 사업시행

☞ 국고보조가 있는 용자사업은 현행대로 해당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고 순수용자 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됨.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표고종균 생산시설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①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청장

② 밤작업로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및 관할 산림조합에 동시 통보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융자 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표고중균생산시설 : 산림청장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 교부, 집행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산림조합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1회 이상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융자금 사후관리(산림조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표고·대추·호도 재배시설	2005년도	2009년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대추검사장비	"	"	"	
밤방제장비	"	"	"	
밤생산장비	"	"	"	
저 장 · 건 조 시 설	"	"	"	
유 통 시 설	"	"	"	
표고종균생산시설	"	"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청장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에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31일 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 표고생산자금지원 등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

나. 신청자격

(1)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1) 표고생산기반조성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신청 당시 법인설립후 2년이 경과된 생산자 조직

2)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조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나) 밤생산기반 지원

1) 밤작업로시설

-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밤 생산·관리의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시설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자
- 지방도, 농로, 임도 등 기존도로를 기점으로 작업로 시설이 가능한 밤나무 집단재배지

2) 밤방제장비·밤나무토양개량·밤나무 묘목대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3) 밤생산장비 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4) 친환경밤생산 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다) 대추·호도생산기반 지원 :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생산 유리온실 시설 : 1개단지 규모가 온실 500평 이상(부대시설 별도)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머루·산약초·산채·오갈피 재배 : 개인 또는 법인경영체

(3)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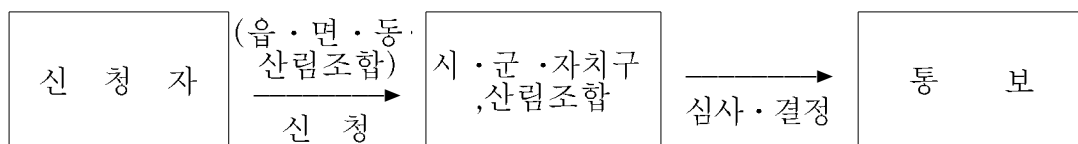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4)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표고생산자금 등 순수 용자사업은 산림조합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공통사항)>

- 사업신청자 다음 각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2002~2004)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가장 후순위 적용

<사업별 우선순위>

(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가) 표고 생산기반 지원

※ 법인경영체의 경우 다음의 ①~⑤순위의 재배자가 다수로 구성된 법인 순으로 선정

- ①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지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지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③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지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④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지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⑤ 기타 표고재배자(주산단지이외지역의 표고재배자에 대한 우선순위도 상기 ①~④ 순위적용)

(나) 밤 생산기반 지원

1) 밤작업로 시설 :

- 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재배자
- ② 3ha이상 밤나무 재배자
- ③ 밤나무 재배자

2) 밤 방제장비지원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묘목대 지원

- 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단지내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주산단지 이외 지역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④ 기타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3) 밤나무 토양개량

- ① 주산단지내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
경영체중에서 토양산성도의 피해가 심한 임지
- ② 주산단지 이외 지역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중에서 토양산성도의 피해가 심한 임지

4) 밤 생산장비 지원

- 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밤주산단지내 법인경영체 또는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 ③ 기타 밤재배지 법인경영체 또는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5) 친환경밤생산 지원

- 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단지내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주산단지 이외 지역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④ 기타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다) 대추·호도생산기반 지원

- ① 친환경인증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대추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① 2005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인증 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② 기타 임산물의 집약경영이 가능한 생산단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바. 기타 사항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② 조경수·분재생산

1. 목 적

- 조경수·분재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경수·분재 전업농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 조경수·분재 생산에 필요한 우량한 소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계	-	-	608	888	1,776
관상수토양개량	-	-	380	380	760
관상수생산장비	-	-	228	228	456
조경수관정시설	-	-	-	280	560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조경수, 분재생산지원은 산림종합자금으로 지원

나. 관상수 토양개량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조정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2)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0	475	380	380	-	95	-
○ 관상수토양개량	100	475	380	380	-	95	-

다. 관상수 생산장비 지원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관상수재배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트랙터, 굴삭기 등 생산장비지원
- 지원대상자 : 조정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 지원대상자 선정 : 한국조정수협회, 한국분재조합
 -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45,616천원

(2)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56	228	228	-	-	228
○ 관상수생산 장비	10	456	228	228	-	-	228

라. 조정수 관정시설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제 유지 및 우량조정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조정수 생산자
 -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한국조정수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40,000천원

(2)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	400	280	280	-	120	-
○ 조정수관정시설	10	400	280	280	-	12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 한국조정수협회·한국분재조합 : 사무국
 - ※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고보조가 있는 융자사업은 현행대로 시·군·구가 담당부서이고 순수 융자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담당부서가 됨.

다.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조정수협회장·분제조합이사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또는 협회장(이사장)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 또는 협회장(이사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신청자에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라.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농림사업 시설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시설도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조정수협회, 분제조합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투자 또는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집행현황 점검 및 사업실적 유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관상수 생산장비	2005년도	2009년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조경수 관정시설	2005년도	2009년도	5년간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총공통-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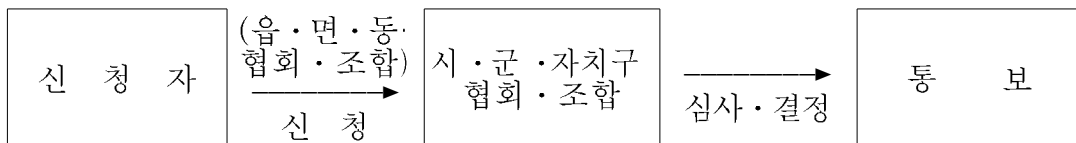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 (1) 조경수·분재생산자금 : 산림종합자금제도 참조
- (2) 관상수 토양개량·생산장비·관정시설 지원
 - 조경수 및 분재생산자 등 관상수 생산자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등 순수 용자사업은 산림조합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 산림종합자금제도 참조
- 관상수 토양개량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관상수 생산장비, 조정수 관정시설 지원
 - 협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후 승인 신청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조정수·분재 생산자금 : 산림종합자금제도 참조

(2) 관상수 토양개량, 생산장비, 관정시설 지원

- ①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
- ② 기타 조정수 및 분재 생산자

③ 산림복합경영

1. 목 적

-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개발과 보전,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있게 추진
- 임업인 및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림내의 복합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업량(개소)		58	30	30	30	60
사 업 비	계	7,418	3,270	3,270	3,270	6,540
	보 조	1,483	654	654	654	1,308
	용 자	2,226	981	(981)	(981)	(1,962)
	지방비	1,483	654	654	654	1,308
	자부담	2,226	981	981	981	1,962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되며, ()내 용자금은 산림종합자금으로 별도 계상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표고자목 구입비는 용자로 지원) 등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 지원대상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 임업인의 범위(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모델유형 및 지원기준
 - 단기소득사업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50%이상
 - 목재생산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70%이상
 - 복합산지관리형 :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90%이상
 - ※ 개별을 실시한 후 밤나무 등 단일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용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총사업비 : 109백만원/개소당(국고보조 21.8백만원)
 - ※ 사업비지원은 사업계획 및 모델유형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대상지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복합경영	30개소	3,270	1,635	654	(981)	654	981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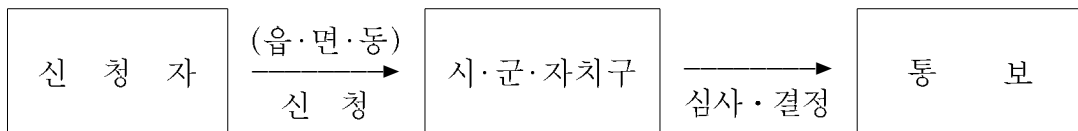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나. 신청자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친환경임산물 인증 생산자
- ②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 ③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 ④ 임산물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 자
- ⑤ 기타 임업을 전념하며 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4207~9)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입지여건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추진일정 포함)
 - 자부담분 등 사업비(부대비용) 조달계획
 - 세부사업대상 품목 명시(단기·중기·장기 사업 등을 균형 있게 선정)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추후 이를 분석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하고 산물의 시장성·판로 등 지속적인 경영정보를 제공

○ 산림조합 : 대출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부대 시설	2005	2009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최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자 선정시 가장 후순위 적용)
- 기타 사항
 - 산림복합경영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④ 산림소득종합자금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임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임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괄 담당함으로써 임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하여 자금지원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 용자사업에 필요한 대출금은 산림소득종합자금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자금지원) 및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계	-	-	33,000	24,376	48,752
시설장비자금	-	-	10,000	7,000	14,000
운 영 자 금	-	-	23,000	17,376	34,752

-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품목별 사업내용

- 표고생산자금 지원

- 사업내용 : 표고자목· 톱밥배지· 종균 등 표고생산 재료구입비,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액 : 10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자목 1m³ 당 : 154천원(기준단가 220천원의 70%)
※ 톱밥배지·종균 등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밤방제탑재용차량

- 사업내용 : 밤방제장비의 탑재에 필요한 차량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90%, 자부담10%
- 융자조건 : 연리4%,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 : 대당 11,000천원

- 야생화·산채류 등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 사업내용 : 야생화, 허브식물(국산허브만지원), 산나물, 장뇌, 산약초, 산과실 잔디, 유실수 등의 재배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야생화 등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2년상환(단, 장뇌재배비는 연리4.0% 10년거치 5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 사업내용 : 밤수집기(밤재배지 관수시설 포함), 예초기, 약제살포기, 간벌 목분쇄기, 표고자동천공기, 침수통 등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대당 10백만원 이내(밤재배지 관수시설은 50백만원 이내)

- 조경수·분재생산지원

- 사업내용
 - ① 생산자금지원 : 조경수 및 분재 생산을 위한 포지(온실)조성 등 재배비 지원
 - ② 운영자금지원 : 분재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지원
-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생산자
-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 : 1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 ① 생산자금 : 조경수 - ha당 68,600천원(기준단가 98,000천원의 70%)
분 재 - ha당 75,600천원(기준단가 108,000천원의 70%)
 - ② 분재운영자금 : 개소당 100백만원이내 융자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가공시설

-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가공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이내

- 단기임산물수집자금

- 사업내용 : 밤,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집중 출하기에 수집·저장 한후 비출하기에 공급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융자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임산물 생산자직판장

- 사업내용 : 대량소비지 대도시(광역시 이상)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산지 임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가공법인(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하는 자본금 3억원 미만의 법인)
- 지원비율 : 직판장 임차비(국고융자 100%)
※ 건물 또는 토지임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실비용자 지원
- 원료구입비 및 운영비 : 융자 80%, 자부담 20%
※ 매장설치비, 쇼케이스(저온판매대) 등 인테리어 비용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 수액자원 생산자금

- 사업내용
 - ① 수액자원조성 산지구입자금 : 수액자원(고로쇠, 자작 등)식재를 위한 산지구입자금 지원
 - ② 수액생산 기자재구입자금 : 수액생산 기구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 ① 수액자원조성 산지구입자금 : 100백만원이내 지원
 - ② 수액생산 기자재구입자금 : 50백만원이내 지원
- 융자단가
 - ① 수액자원조성 산지구입자금 : 7백만원/ha(10백만원의 70%)
 - ② 수액생산 기자재구입자금 : 0.7백만원/ha(1백만원의 7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가 포함된 융자

- 표고재배시설, 단지조성 : 융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표고톱밥배지센터 : 융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밤 : 직업로(융자30%; 5년거치 5년상환), 방제장비(융자50% : 3년거치 7년상환)
- 퇴비발효기 : 융자40%, 3년거치 7년상환
- 대추·호도 : 융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포장디자인 개선 : 용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저장· 건조시설 : 용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산림복합경영 : 용자 30%, 3년거치 7년상환
- 임산물가공지원 : 용자 20%, 2년거치 3년상환

○ 용자금리 : 연리 4%

○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는 임업인(신규포함),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제외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법인·유통가공업자·금융기관 총부채(금차대출신청액 포함)가 3억원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등록(제재) 중인 경우
- 임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수산업, 농업종사자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고
산림소득 종합자금	계	24,376	
	○ 시설장비자금	7,000	
	○ 운영자금	17,376	

- 시설장비자금 :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 표고툽밥배지센터, 밤작업로, 밤방제장비, 밤방제탑제용차량, 대추·호도생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임산물가공지원

- 운영자금 : 표고생산, 단기임산물생산, 장뇌삼재배, 조정수·분재생산·운영, 산림복합경영, 단기임산물수집자금, 생산자직판장운영, 단기임산물가공시설, 수액자원 생산자금
- ※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내의 변경지원은 가능함. 다만,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상호간의 변경지원은 사전 산림청과 협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및 산림조합 자금담당부서

다. 자금지원결정

-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에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지자체 산림관련부서 및 산림조합에 비치·안내하여 임업인의 편의 도모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조정수·분재생산자의 신청자격

- 한국조정수협회 회원과 한국분재조합 조합원은 협회장 및 이사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자
- 비회원 및 비조합원은 산림조합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자
- 조정수·분재생산자금 신청시 제출서류(읍자신청서) 1부.(별지 1호)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자금지원결정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단, 보조에 포함된 융자금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 산림조합에 통보)
- 산림조합에서는 사전에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하여 시·군과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조경수·분재 등 생산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 생산시설 330m²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
-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 생산시설 330m²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조경수 및 분재 생산자

※ 분재 사업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분재 생산시설 330m² 이상을 소유 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 분재 생산시설 330m² 이상을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분재 생산자

-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군에 통지(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산림조합에 통지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 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자금대출
 - 정책여신 관련규정과 각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 대출
 - 대상자가 소요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업외의 용도로 사용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산림조합에서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조합 및 시·군청 산림담당부서에 통지·송부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산림조합의 산림종합자금지원 추진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
 - 산림조합에서는 임업기술지도원을 활용하여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임업인의 사업준비에 조언
 - ※ 산림조합 및 시·군청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1호와 서식 1-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산림조합자금 5천만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지원대상 임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3월20일까지
-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지원사업 행정사항
 -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지원사업 대상자는 <서식2호>에 의한 경영장부를 비치하고 운영토록 지도
 - 사업신청시 <서식3호>에 의한 직거래판매장 사업지원 신청서 구비하여 산림조합에 제출
 - 사업완료시 <서식4호>에 의한 사업 완료보고후 사업비를 정산
- 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름
- 정부시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조경수(분재)생산자금·분재운영자금 용자신청서

신청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사업명				
생산·운영 자금 (천원)	내역			
	계	용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별첨		
생산기반시설	내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m ²	동, m ²	대	
영농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년 월)			
최종학력	년 월 학교 (졸업, 중퇴, 수료)			
영농교육 이수사항	기간	교육분야	실시기관명	
	년 월 일 ~ 년 월 일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조경수(분재) 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3.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 생산·분재자금 용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산림조합장 귀하

<붙임1>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 면	리	지번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분재 운영자금)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할 내용>

1. 사업장 현황(사업장 위치, 시설 규모, 보유 수종 및 수량, 연간 생산·판매규모 등)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분재소재구입	본 종					
○ 분재생산자재구입						
○ 시설보수자금						
: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참고자료

<붙임2>

조경수(분재)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생산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포지(생산시설)소재지				생 산 상 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수종	수고 (cm)	수량 (본)	수령 (년)	실제면적 (m ²)
용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지원				제출처 : 산림조합				

위 생산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조경수협회장 인

한국분재조합장 인

○ ○ 군 산림조합장 인

<서식1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4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 방문 전화 , 서면		
주 소			전 화			
종 분 사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경 영 력 년	경 영 모		
경 영 기 록 방 법	부 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 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희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장 자	설 비 금
		기타융자			운 자	영 금
		자 부 담				
		합 계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서식1-1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용 자	종 합 자 금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2004									
-									
소계		명							

(주)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서식2호>

임산물직판장 경영장부

년월일	임 산 물 구 입				임 산 물 판 매		
	품명	구입처	수량	금액	품명	수량	금액

<서식3호>

임산물생산·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사업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회 원 수	명	법인등록기관	

※ 법인등록 사본 첨부

2. 지원신청내용

○ 설치계획

구 분	단위	규모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고용자	자부담	
계						
○ 임산물직판장	m ²					
○ 원료구입	톤					
·						
·						
○ 매장설치비						
·						
·						

○ 임산물직판장 설치 예정지 :

- 직판장 임차건물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소유자 주소 :

<서식4호>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설치 실적보고

1. 임산물직판장 개설조합 현황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회 원 수	명	법인등록기관	

2. 임산물직판장 설치 계획 대 실적

○ 설치장소

구 분	단위	시설규모		사업비 투자액(천원)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 임산물직판장										
○ 원료구입										
·										
·										
○ 매장설치비										
·										
·										

※ 직판장 건물 또는 토지 임차계약서 사본 첨부

위와 같이 임산물직판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군 산림조합장 귀하

3. 연간 판매계획

(단위 : kg, 천원)

품 목	1일평균		연간(일)운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위와 같이 임산물직판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군 산림조합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이용과(과장 배정호, 임업사무관 박정서)입니다.

1. 목 적

- 제재시설, 목탄·목초액시설 등 목재이용가공시설과 보드류 시설의 신설·교체·증설을 지원하여 관련산업 육성
- 국산재 및 폐목재 구입 지원을 통해 국산재 이용과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목재 이용·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 지원
- 국산재 및 폐목재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목재가공업체의 운영 활성화
- 정책자금의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교체 및 사업간 지원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 산림법 제109조 제1항(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목가공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461개소	8개소	5개소	4개소	125개소
사 업 비	계	133,147	3,072	1,295	1,036	32,375
	보 조	1,860	-	-	-	-
	용 자	92,017	2,458	1,036	829	25,900
	지방비	1,860	-	-	-	-
	자부담	37,410	614	259	207	6,475

나. 보드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34개소	5개소	5개소	4개소	58개소
사 업 비	계	92,529	7,500	4,375	3,500	50,750
	용 자	66,270	6,000	3,500	2,800	40,600
	자부담	27,509	1,500	875	700	10,150

다.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1,775천m ³	94천m ³	49천m ³	32천m ³	708천m ³
사 업 비	계	105,492	7,840	4,083	2,673	58,764
	보 조	-	-	-	-	-
	용 자	73,844	5,488	2,858	1,871	41,135
	지방비	-	-	-	-	-
	자부담	31,648	2,352	1,225	802	17,629

라.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80천m ³	204천톤	204천톤	94천톤	1,737천톤
사 업 비	계	3,040	7,748	7,748	3,572	66,021
	보 조	-	-	-	-	-
	용 자	2,128	5,424	5,424	2,500	46,215
	지방비	-	-	-	-	-
	자부담	912	2,324	2,324	1,072	19,806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목가공시설 지원

(1) 사업내용

-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의 신설·교체·증설 지원

(2) 지원대상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공장등록을 하려는 자로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공장설립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목재이용관련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하려는 자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융자(국고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연리 4%
- 융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4)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 목가공시설 지원	4개소	1,036	829	-	829	-	207

※ 융자조건 : 연리 4%, 3년거치후 7년상환

나. 보드류시설 지원

(1) 사업내용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의 신설·교체·증설 지원

(2) 지원대상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설·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용자(국고 용자 80%, 자부담 20%)
- 용자금리 : 연리 5.5%
- 용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4)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보드류시설 지원	4개소	3,500	2,800	-	2,800	-	700

※ 용자조건 : 연리 5.5%, 3년거치후 7년상환

다. 국산원자재 구입 지원

(1) 사업내용

- 국산 원목, 제재목 등의 구입자금 지원

(2) 지원대상자

- 목재 이용·가공시설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예 : 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제용 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결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용자(국고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한도액 : 사업자당 연간 3억원 이내, 다만, 목재가공업체의 경우 국산 원목을 연간 8,000m³이상 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용자금리 : 연리 5.5%
- 용자기간 : 5년(3년 거치 2년 상환)

(4)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32천m ³	2,673	1,871	-	1,871	-	802

※ 용자조건 : 연리 5.5%, 3년거치후 2년상환

라. 폐목재 구입 지원

(1) 사업내용

-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2) 지원대상자

- 임산물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용자(국고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금리 : 연리 5.5%
- 용자기간 : 5년(3년 거치 2년 상환)

(4)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폐목재 구입자금	94천톤	3,572	2,500	-	2,500	-	1,072

※ 용자조건 : 연리 5.5%, 3년거치후 2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 (042-481-4201~2)
- 산림조합(중앙회) : 관련부서
- 한국합판보드협회 (02-780-3631)

다. 자금지원 예정자

- 목재 이용가공시설을 신설·교체·증설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을 경유하여 보드류 시설을 신설·교체·증설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 국산원자재를 구입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 폐목재를 구입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목재이용가공지원 취지에 맞는 사업 (예: 산지목재비축제도)을 신청한 자

라. 사업시행

(1)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보드류시설지원은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이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산림청장에게 추천하고, 산림청장이 사업대상자를 선정
- 정책자금이 불용되지 않고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사업계획 및 일정을 우선 고려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시행 시기
 - 사업경영 종사여부 및 사업실적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등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관할 산림조합에 제출
 - 보드류시설지원은 한국합판보드협회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보드류시설지원은 산림청장)

(다)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조합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조합도지회장을 경유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보드류시설지원은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이 추천한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선정하고, 산림청장은 선정결과를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한국합판보드협회장에게 통보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보드류시설지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중앙회)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라) 사업대상자 교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로 교체 (산림조합, 도지회, 중앙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일정에 맞춰 산림조합에서 소요액 파악 등 사업 추진실태 수시 점검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회·중앙회와 협의하여 차순위자로 교체
- ※ 정책자금 집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2005년도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위 사항을 적극 홍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용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 적정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용자금 사후관리

○ 한국합판보드협회

- 보드류시설 용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나. 보고 및 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용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사업별 신청내역 및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1월 31일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

세부사업명	사업신청 내역				선정결과		비 고
	업체명	대표자	관할 산림조합	신청 사업비	순위	사업비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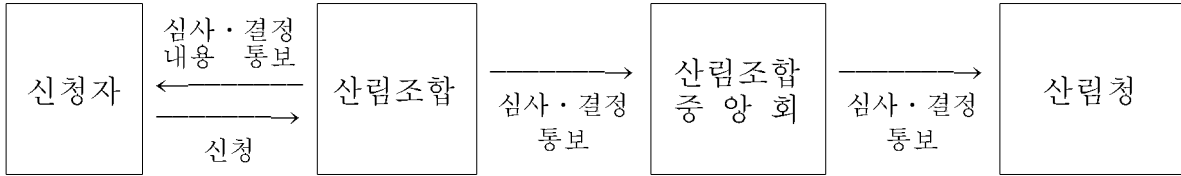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목가공시설 지원,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폐목재 구입지원 : 지역 산림조합
- 보드류시설 지원 : 한국합판보드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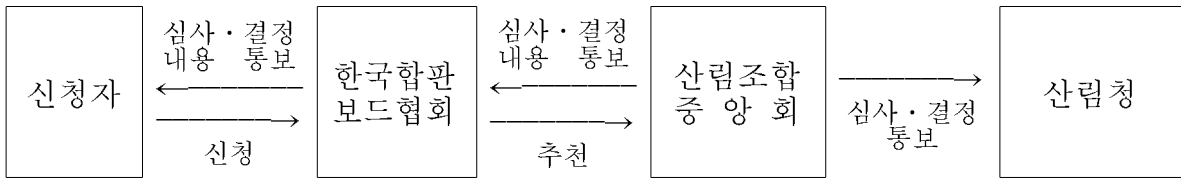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목가공시설 지원,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폐목재 구입지원



- 보드류시설 지원



※ 2005년도까지는 지원대상자를 산림청장이 선정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정하고 대출 실행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기타 사항

-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붙임1】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 인				
		사업장				
	법인형태			종업원수	명(남, 여)	
신청 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사 업 량 (개소, 톤, m)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	사업완료	대출신청	
○○월			○○월	○○월		
<p>농림사업 실시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또는날인)</p> <p>○ ○ ○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별지제4호서식 : 제9조 제4항 관련)1부</p>						

【붙임2】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할 내용> - - - - - 관련자료는 첨부

1. 사업장 현황(위치, 시설규모, 1일 및 연간생산능력, 원자재별 사용량, 생산·판매규모 등)

2. 사업운영 실적

- 연도별 생산실적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3. 원자재 구입계획

구 분	사용 용도	구입처	단가	수량	금 액			비 고
					계	용 자	자부담	

※ ‘구분’칸에 국산재, 폐목재 여부를 기재

4. 시설 설치계획(지원희망 시설만 기재)

생산공정명	기계명 (시설명)	규격	제조회사	수량 (면적)	금 액			비 고
					계	용 자	자부담	

※ ‘비고’칸에 교체, 신설, 증설 여부를 기재

5. 월별 자금투자 계획

6.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7. 시설설치시 투자효과 분석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정책과(과장 최대순, 임업사무관 이상익)입니다.

1. 목 적

- 산림조합의 사업운영체계를 확립하여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안정과 임산소득을 보장하는 건전한 생산자단체로 육성
- 임업기술지도 및 대리경영사업을 내실화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고 산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조합운영비 : 산림조합의 자립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보조 지원(일몰제)
- 산림조합육성자금 :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위주 지원
- 산림조합경영진단자금 :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사업에 대한 부실규모를 파악하여 경영개선대책 마련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2(산림사업의 시행자)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 이후	
사업량	146조합	146조합	146조합	146조합	146조합	
사업비	계	119,797	30,602	21,608	20,322	73,322
	보 조	9,701	701	584	1,462	745
	용 자	98,377	29,200	20,440	17,958	71,832
	지방비	7,608	701	584	482	745
	자부담	4,111	-	-	420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시행체계
보조	○ 조합운영비 보조	146개조합	○ 조합당 : 6,600천원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청 →시·도 →시·군→조합
	○ 조합경영진단	146개조합	○ 국고 70%, 자부담 30%	산림청→산조중앙회
융자	○ 조합육성자금 (조합운영자금, 자체 특화사업, 시설자금, 경영개선자금 등)	146개조합	○ 17,958백만원, 연리3% - 단기 : 3년거치 2년상환 - 장기 : 3년거치 7년상환	산림청→산조중앙회 →조합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보조:농특회계, 융자: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46조합	20,322	19,420	1,462	17,958	482	420
- 조합운영비	146조합	964	482	482	-	482	-
- 조합육성자금	146조합	17,958	17,958	-	17,958	-	-
- 조합경영진단	146조합	1,400	980	980	-	-	4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조합운영비 보조 : 시장·군수
- 조합육성자금 융자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 조합경영진단 보조 : 산림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정책국 산림정책과 (042-481-4135~6)
- 시·도 : 산림관련 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사업부(02-3434-7221~3), 회원지원부(02-3434-7201~6)
-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 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조합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가) 장기사업

-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비에 우선지원
 - 조합별 신규 사업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1조합 1특화사업 육성
- 청사, 유통시설, 금융점포 설치비 등 지원
 -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자금(직매장, 집하장시설 등)중 자부담분에 대한 적정규모 융자지원
- 조합의 건전한 경영 및 자립촉진을 위한 경영자금 융자지원
 - 조합경영평가결과 경영이 우수한 조합에 우선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도 지원 가능하며, 자구노력이 미흡한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
 - 조합경영평가결과 경영개선대상(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으로 판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지원
 - 장기사업투자나 청사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어 상환도래자금의 대환자금 지원

(나) 단기사업

- 임산물공판·수매·수집사업비 지원
- 각종 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사업 운영자금 지원
 - 일시적인 사업회전자금으로 사용가능하게 하되 육성자금을 융자 받아 사용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상환하거나, 계속 사용시에는 별도로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2) 조합육성자금 대출선정 절차

(가) 사업계획심사

- 산림조합장은 2005년 1월까지 조합육성자금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청
 - 조합육성자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정하는 서류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직영사업은 산림조합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의 승인 후 용자 확정
- 경영자금 용자신청조합은 조합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
 - 경영계획서에는 경영개선을 위한 손실액 감축목표, 자체자금 확대 방안, 경영계획 추진일정 등 경영정상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경영이 우수한 조합의 경우 자체 경영계획 수립으로 대체)

(나) 지원대상조합의 결정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업자 선정 신청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조합을 확정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2005년 2월까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 산림조합중앙회 : 대출금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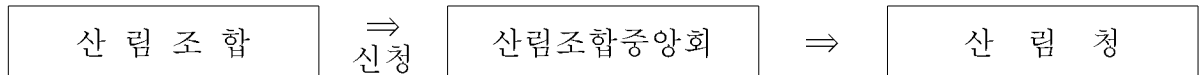
나. 보고·기타

- 시·도는 산림청에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 중앙회는 용자금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 보조·용자사업은 대상자 및 대상사업을 신중 검토 실행
-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대리경영확대계획을 수립 산주가 직접경영하지 않는 모든 산림으로 확대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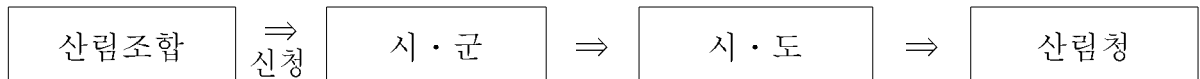
가. 산림조합육성자금 용자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나. 조합운영비 보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이용과(과장 배정호, 행정사무관 이명수)입니다.
단, 임산물 수출촉진은 국제협력담당관실(담당관 000, 행정사무관 강혜영)입니다.

① 임산물유통구조개선

1. 목 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 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
-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로 외화획득 및 농산촌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위한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지원
- 임산물의 생산·가격 등 정보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지원
- 물류비,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 및 수출원자재 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한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재정지원), 제8조(유통구조개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1)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 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업량(개소)	-	-	1	1	2
사			800	800	1,600
업			560	560	1,120
비			240	240	480
계					
보 조					
자부담					

(2) 종묘 전시·판매장 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업량(개소)		-	-	-	1	-
사 업 비	계				1,000	
	보 조				700	
	자부담				300	

(3) 임산물가공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업량(대)		-	-	-	250	500
사 업 비	계				1,250	2,500
	보 조				250	500
	용 자				(250)	500
	지방비				250	500
자부담					500	1,000

(4) 임산물 유통정보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업량(개소)		-	-	-	-	-
사 업 비	계	1,492	458	487	487	974
	보 조	1,492	458	487	487	974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 포장자재비·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2007년
사업량(개소)		589개소	250개소	250개소	250개소	500개소
사 업 비	계	8,103	2,580	2,580	2,580	5,160
	보 조	1,897	516	516	516	1,032
	용 자	290	20	20	(20)	40
	지방비	1,510	516	516	516	1,032
	자부담	4,406	1,528	1,528	1,528	3,056

(6) 임산물수출촉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이후
사업량(톤)						
사 업 비	계	41,229	13,467	11,346	9,772	37,506
	보 조	11,846	3,293	3,793	3,589	8,425
	용 자	13,440	5,040	3,040	2,100	15,020
	지방비	-	-	-	-	-
	자부담	15,943	5,134	4,513	4,083	14,061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 조성

- 사업내용 : 조경수 관상자원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부지 및 전 시포지조성비,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
- 지원대상자 : 한국조경수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국고지원한도액 : 560백만원

(2) 종묘 전시·판매장 조성

- 사업내용 : 우량 종묘의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안정적 직거래 판매를 통한 생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묘 전시·판매장 조성비 (전시·판매장 부지조성비, 시설비 및 설계비 등)지원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대상자 : 한국양묘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국고지원한도액 : 700백만원

(3) 임산물 가공지원

- 사업내용 : 기계화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임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감 박피기, 냉동탑차, 표고가공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박피기 5백만원/대당, 냉동탑차 20백만원/대당, 표고가공시설은 설계금액에 의함

(4) 임산물 유통정보화

- 사업내용
 - 유통정보시스템 : 임산물에 관한 생산·가격 정보를 DB화하여 전국의 임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임업인들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정보획득 및 임산물 판로확보 등 직거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자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운영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5)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사업내용
 - ① 임산물표준출하
 - 임산물포장자재비 지원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 지원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임산물의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② 포장디자인개선 : 단기소득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산지생산·유통전문조직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제1항, 제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등
- ※ '05년도의 경우 생취나물, 더덕, 생도라지, 두릅에 한정하여 표준출하 사업 예산으로 신규 지원

○ 지원우선순위

- 친환경인증을 받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규격출하를 하는 기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① 임산물표준출하

-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② 포장디자인개선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 20%, 자부담 40%

(6) 임산물 수출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수출업체, 지원단체
- 지원시설의 종류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개발비, 수출 운송차량 구입비, 수출촉진 검역비 지원, 분재표찰 제작비, 안전성 확보지원
 -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수출홍보물제작, 시장개척단 파견, 한·일 밤간담회 지원, 해외시장정보조사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수출 목제품 원자재 구매 지원

○ 지원조건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국고지원			자부담
	소계	지원유형	지원비율	
계	5,689			4,083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3,289			3,183
- 임산물 판매촉진비	2,271	보조	50%	2,271
- 포장디자인 개발	28	보조	70%	12
- 수출촉진 검역비	60	보조	100%	-
- 수출 기계장비 구입	800	보조	50%	800
- 수출 운송차량 구입	100	보조	50%	100
- 분재포찰 제작비	10	보조	100%	-
- 수출 임산물 안전성 확보	20	보조	100%	-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300			
- 수출홍보물 제작	100	보조	100%	-
- 시장개척단 파견	150	보조	100%	-
- 한·일 밤 간담회	20	보조	100%	-
- 해외시장정보조사	30	직접수행	-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2,100	용자	70%	80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일반,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5,619	8,202	6,102	2,100 (270)	766	6,651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	1개소	800	560	560	-	-	240
○종묘 전시·판매장 조성	1개소	1,000	700	700	-	-	300
○임산물 가공지원	250대	1,000	250	250	(250)	250	500
○유통정보시스템	1식	352	352	352	-	-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90명	135	135	135	-	-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2,480	496	496	-	496	1,488
- 임산물 포장자재비지원	198개소	1,980	396	396	-	396	1,188
- 임산물 공동선별비지원	500톤	500	100	100	-	100	300
○포장디자인개선	2개소	80	20	20	(20)	20	40
○임산물 수출촉진		9,772	5,689	3,589	2,100	-	4,083
-우수임산물수출활성화		6,472	3,289	3,289	-	-	3,183
-우수임산물시장개척		300	300	300	-	-	-
-수출원자재구매지원		3,000	2,100	-	2,100	-	900

※ 위사업비(임산물수출촉진제외) 중 20%범위내에서 지원비율·사업단비를 준수하여 사업간 변경지원 가능하고 그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하며,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용자금은 산림소득종합자금에서 지원)

<추진체계>

가.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조성

(1) 사업주관기관 : 한국조경수협회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한국조경수협회 : 사무국(02-961-2707)

(3)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조경수협회

(4)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절차

- 관상수생산 유통단지조성 사업계획수립 제출(한국조경수협회)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관상수생산 유통단지조성 국고보조사업비 신청(한국조경수협회)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한국조경수협회)

(5)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사전 부지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한국조경수협회장은 사전 부지 및 자부담분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다)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공사추진실적에 따라 단계별 자금 배정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6)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나. 종료 전시·판매장 조성

(1) 사업주관기관 : 한국양묘협회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한국양묘협회 : 사무국(042-585-4677)

(3)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양묘협회

(4)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절차

- 종묘 전시·판매장조성 사업계획수립 제출(한국양묘협회)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종묘 전시·판매장조성 국고 보조사업비 신청(한국양묘협회)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 시행(한국양묘협회)

(5)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사전 부지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한국양묘협회장은 사전 부지 및 자부담분 사업비를 확보하고 종묘 전시·판매장조성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다)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공사추진실적에 따라 단계별 자금 배정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6)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다. 임산물 가공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195~6)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라. 임산물유통정보화

(1) 사업주관기관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산림청, 시·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전자상거래팀(031-299-8989)

(3) 자금지원예정자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시·도지사가 선정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사업희망자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제출

(다) 사업비 지원방법

- 집행절차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함.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마.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후 시장·군수가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용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사업비 지원시 포장자재의 표준규격 적정여부 및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산지유통전문조직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 실시규정 제9조 제1항관련 별지 3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나) 사업비 지원방법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지원단가 : kg당 100원(국고보조 20원, 지방비 20원, 자부담 60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시·군은 산지유통조직에서 작성 제출한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 확인후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 공동선별조직이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별지 제3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물량)(별지 제4호서식)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별지 제5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6호 서식"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공동선별조직은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집행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바. 포장디자인 개선

-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후 시장·군수가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용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사업비 지원시 포장자재의 표준규격 적정여부 및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
- 용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용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바. 임산물 수출촉진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2-481-4085~7)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경영부(02-3434-7182)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개발처 농산부(02-6300-1351~9)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산물 수출업체, 지원단체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방법
 - 자금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사업시행자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행정사항>

가. 관상수생산단지유통센터 조성

(1) 사후관리

- 한국조경수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2) 보고·기타

- 한국조경수협회장은 사업계획서를 2005.1.20까지 산림청(임산물이용과)에 제출
- 한국조경수협회장은 단지조성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공사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한국조경수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보조금 정산실적)를 사업 실행연도 12월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한국조경수협회는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후 시행

나. 종료 전시·판매장 조성

(1) 사후관리

- 한국양묘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2) 보고·기타

- 한국양묘협회장은 사업계획서를 2005.1.20까지 산림청(임산물이용과)에 제출
- 한국양묘협회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공사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한국양묘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보조금 정산실적)를 사업 실행연도 12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한국양묘협회는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후 시행

다. 임산물 유통정보화

(1) 사후관리

- 유통정보의 신속제공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관리

(2)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을 정산보고

라.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 자재비·공동선별지원) 및 포장 디자인 개선

(1)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임산물 공동선별지원시 시·군 사업담당부서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 공동계산 정산서 및 공동선별 작업일지 등 기록·관리 상황

(2)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마. 임산물 수출촉진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현장점검 포함)
- 수출실적 점검 및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지원 등 조치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구입 및 운송차량 구입사업은 사업비 지원 후 기계장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시정 조치(사업비 회수조치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 대상자는 지원받은 연도의 수출실적을 연도 종료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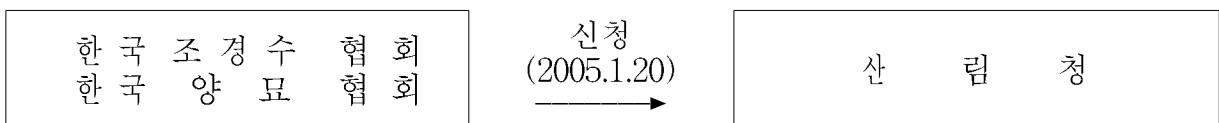
(2) 보고·기타

- 연간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관상수생산단지 유통센터 및 종묘 전시·판매장 조성

- (1)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 (2) 신청자격 :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양묘협회
-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나. 임산물 유통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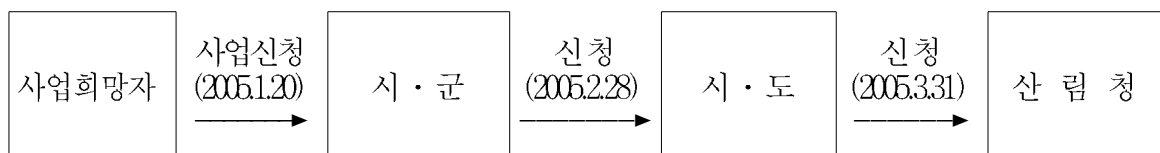
(1) 신청서 제출기관

-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시·군

(2) 신청자격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운영자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임업인홈페이지구축)



(4) 구비서류(임업인홈페이지구축)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우선순위 : 친환경임산물생산자,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임산물생산자(단체 포함),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중 PC보유자, 인터넷 사용가능자 및 홈페이지 운영능력이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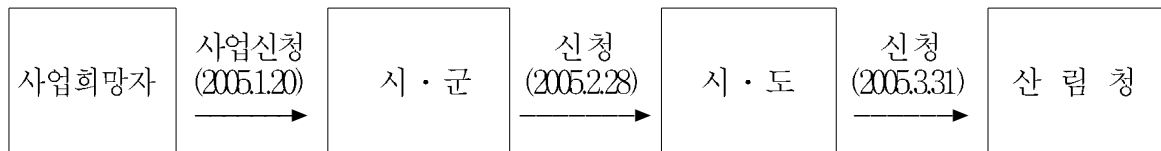
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 자재비·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신청자격 : 산지유통전문조직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관련 별지 3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라. 임산물 수출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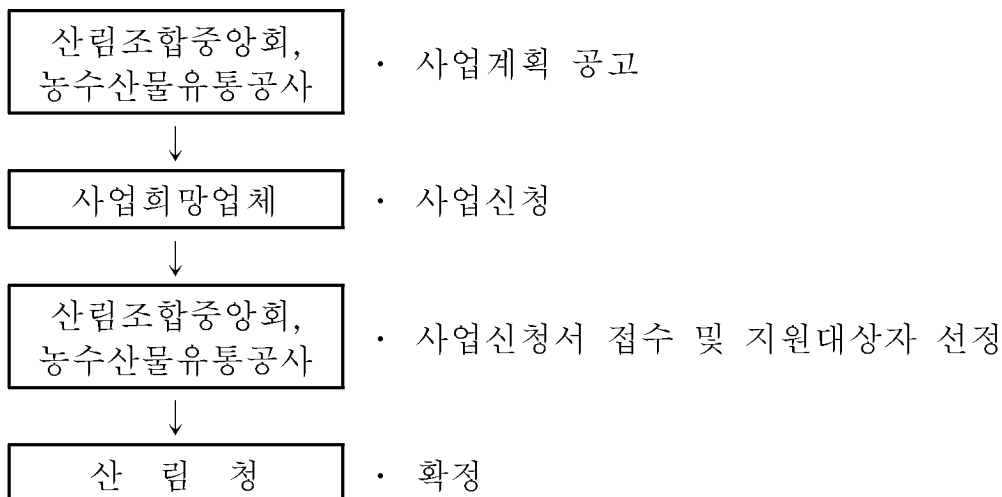
(1) 신청서 제출기관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신청자격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3) 신청절차



(4) 구비서류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제8호 서식)
- 우수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 우선순위(자금배정)
 - 과거 2개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신용장 수취업체
 -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신청절차
 - 일반공고→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지원대상자 선정 및 연간 지원금 배정

【별지 제1호서식】

공동선별 · 공동계산 출하계획서

○ 품목 :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조직명)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조 직 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공동유통시 설 보유현황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시설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조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주요출하처
		m ²	톤			
공동선별 출하계획 및 사업신청 내역	사업방식 (매취,수탁)	공동선별 계획물량	사업단가 (지원단가)	사업비 소요액	공동선별·계산 참여	
		톤	원	천원	조직수	인원
	상표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 번호	(출원시 출원번호)	
품질관리사 또는 자체검사원	성 명			직 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교 육 이수과정					
보조금 입금의뢰처	예금주 성명	예금주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위와 같이 공동선별 · 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 대표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 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매입장부상 매입금액 및 물량 : 원, kg
- 공동계산기간 :

일자	매입실적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농가수(호)	매입량(kg)			
계					

- 주1) 출하수량(A) : 종합유통센터,공영도매시장,공관장,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 2) 매입장부의 물량 및 금액에 대하여 출하자별 정산 영수(입금)증 보관 철저
- 3)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5호서식】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조직명(사무소) :
- 품 목 :
- 공동계산기간 : 200 . 월 일 ~ 월 일

순번	출하처	판매일자	원표번호	상표(성명)	품목	규격/등급	출하수량(kg)	단가(원)	판매금액(원)	상장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용기대여료	쓰레기유발금	출하처기타	손실보전금	현금지급액	계좌입금 (판매금액-통 입체금+통 장장려금)	거래구분	기산일
1	00유통																			
계																				

주 1) 출하수량 :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kg당 금액으로 등급별 가격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 제6호서식】

() 공동 작업일지

(200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	--	-------	--	-----	--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생산자조직 선별장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레	성명	출근 여부	차레	성명	출근 여부	차레	성명	출근 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kg(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00,000원(총0,000,000원)						

- 주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2005. /4분기)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전화 :	FAX :		
주소					
대표자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직위	성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기간	포장운송비(원/kg)		
	물량(kg)	금액(\$)		포장재	운송비	계

위와 같이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5. . .

신청인 : (인)

- 붙임 : 1. 일자별(수출신고건별)수출내역 1부
2. 포장재 제작사양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 신청서

-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개발품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포장표기언어	소요액(원)

※ 개발유형 : 캐릭터 개발, 용기형태 개발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5. . .

신청인 : (인)

-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3.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수출증빙서류포함)1부 (붙임).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 신청서

- 분재표찰 제작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생산)계획		소요액(원)
	물량(분)	금액(\$)	물량(분)	금액(\$)	

위와 같이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5. .

신청인 : (인)

-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생산)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1).
3. 분재수출 양묘장 등록증(국립식물검역소)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 신청서

- 수출 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비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 수출 기계장비						
- 수출 운송차량						

위와 같이 수출임산물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5. . .

신청인 : (인)

- 붙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 임산물 식품안전성 확보 -

1. 신청인 현황

업체(단체명)		전화 :	FAX :	
주소				
대표자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직위	성명

2. 지원 신청내역

세부사업	품목	국가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액(원)

위와 같이 수출 임산물 식품안전성 확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5. . .

신청인 : (인)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우수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일본(), 미국(), 기타()	
참가품목	(국문)	(영문)
	(한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05. .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불필요()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박람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5. . . .

신청인 : (인)

-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 m³, 백만원)

사업량	단가(원/m ³)	구입비 재원			사업장 소재지
		계	용자	자부담	

위와 같이 수출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5. . .

신청인 : (인)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m³,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03								
2004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m³,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m³, 천\$)

품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출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②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

1. 목 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의 근대화 촉진
- 임산물 생산자의 조직화·내실화 유도 및 우수조직 집중지원으로 생산자 조직을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업량(개소)	-	-	-	-	-
사 업 비	계	371,141	63,087	63,087	126,174
	용 자	296,913	50,470	50,470	100,940
	자부담	74,228	12,617	12,617	25,234

※ '92~'99년은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 출하조절사업 및 임산물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임.

5. 2005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98까지는 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생산자 유통지원사업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육성지원 실시를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
- '99년부터는 각종 산지유통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주산지 중심의 전략 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금 리 : 연리 4%
- 기 간 : 1년이내

○ 융자한도액 : 2,000백만원이내

○ 융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원종류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출하조절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임산물생산자단체 육성사업	-	63,087	50,470	-	50,470	-	12,617

※ 융자조건 : 연리 4%, 1년이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산림조합
 - 중앙회 : 임업경영부(02-3434-7184~6), 신용사업부(02-3434-7221~3)
 - 도지회 : 관리과
 - 시·군 산림조합 : 금융과
- 농업협동조합
 - 중앙회 : 과수화훼과(02-397-6555)
 - 도지회 : 유통가공과 (지도검사과)
 -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지도판매과 및 농업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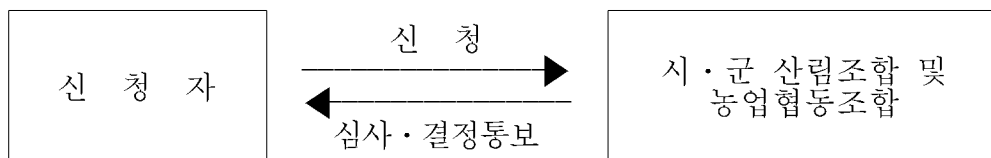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물 생산자조직(법인경영체)
- (3)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는 법인
- (4)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5) 신청시기 : 2005. 1. 1 ~ 1. 20

(6)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7) 구비서류 : 임산물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8)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 최상위 조직으로 평가된 법인경영체
- ② 친환경인증 임산물 생산·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③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른 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④ 주산단지내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⑤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경영체
- ⑥ 기타 법인경영체

(9) 사업시행요령

- 법인경영체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1.20까지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에 제출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법인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2005.2.10까지 산조중앙회(도지회) 및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제출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사업종류별·지원예정 법인경영체별·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2005.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 산림청 :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및 융자금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담보물이 부족한 법인경영체에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법인경영체의 회원명의로 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금은 법인경영체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산조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인센티브 부여 및 감액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신청시기는 2005.1.1~1.20까지임
- 기타 사항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 목 적

- 밤, 표고, 송이,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 지원규모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극대화 되도록 조절 시설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재정지원) 및 제8조(유통구조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1)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업량(개소)		242	66	66	66	132
사 업 비	계	67,951	18,025	18,025	18,025	36,050
	보 조	12,837	3,605	3,605	3,605	7,210
	용 자	16,732	3,605	3,605	(3,605)	(7,210)
	지방비	11,765	3,605	3,605	3,605	7,210
	자부담	26,617	7,210	7,210	7,210	14,420

※ ()내 용자금은 산림소득종합자금으로 지원

(2) 밤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2007년
사업량(개소)		-	-	-	1	2
사 업 비	계	-	-	-	1,200	2,400
	보 조				600	1,200
	용 자				-	-
	지방비				240	480
	자부담				360	720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배 경
 - 단기소득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93년부터 저장시설비 지원
 - 꽃감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건조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250㎡)을 기준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지원
 -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4%(3년거치 7년상환)

(2) 밤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 사업내용
 - 밤 주산지의 밤 공동출하 및 수출확대를 위해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농협
- 지원단가 : 개소당 1,200백만원(국고보조 600백만원)
- 지원내용 : 선별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밤 세척기 등 시설비, 기계설비 및 장비 등 지원(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6개소	18,025	7,210	3,605	3,605	3,605	7,210
○ 저장시설	56	16,800	6,720	3,360	3,360	3,360	6,720
○ 건조시설	10	1,225	490	245	245	245	490

(2) 밤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개소	1,200	600	600	-	240	360
○ 밤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1	1,200	600	600	-	240	36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7~9)

- 밤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 " (042-481-4207~9)

○ 시·도 : 산림관련 부서

○ 시·군 : 산림관련 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군에서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집행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서 융자 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방문 및 감독 실시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산림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 공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나. 보 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 49-1)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나. 신청자격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1)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임산물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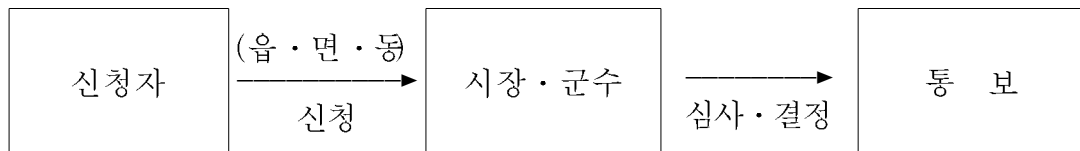
(2)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 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④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바. 기타 사항

-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Ⅲ. 인 력 육 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과장 류광수, 임업서기관 고기연)입니다.

1. 목 적

- 독립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의 지속적인 선발
- 소유산림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동법시행령 제10조(독립가에 대한 지원)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06년~'07년
사 업 량	1,419명	152명	120명	80명	212명
	99,400	15,200	12,000	8,000	21,20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임업경영기반을 갖추고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독립가와 젊고 유능한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에게 임업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2) 지원대상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제9조,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독립가로 선발된 자
-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3) 지원조건

- 융자한도액 : 독립가 3억원, 임업후계자 2억원, 신지식임업인 1억원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3%
 - 융자기간 : ①경제수 조림·육림사업 20년거치 15년 상환, ②임도시설 10년거치 10년 상환, ③자연휴양림조성 10년거치 10년 상환, ④기타사업 5년거치 10년 상환,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4)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산림사업비, 산림용기자재구입비, 임야매입자금, 임도시설 및 보수, 자연휴양림 조성 등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독립가· 임업후계자등	80	8,000	8,000	-	8,0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릫 청 : 산림자원국 경영지원과 (042-481-4191~2)
- 시 · 도 : 산림관련부서, 산림조합중앙회 및 각 도지회
-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부서,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촉진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 및관리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6조 규정에 따라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각 협회의 추천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작성하여 산림조합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장에게 변경승인 요청
- 사업비 집행방법
 - 각 협회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조합에 통보
 - 대출금은 지원 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산림조합장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 산림조합장은 대출과 동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대출상황을 통보
- 추진일정
 - 자금신청 : 1월~12월
 - 자금대출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조합장은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융자금이 부당사용 등 사유가 발생시는 당해 융자금 회수

- 임야매입가격이 평당(3.3058㎡) 10,000원 이상인 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용자를 받은 자는 용자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물자 등을 보관
- 임야매입은 관인매매 계약서상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액 대출

바. 기타사항

- 경제수 조립·육림사업의 범위
 - 장기수 조립·육림사업에 소요된 인건비
 - 장기수 조립·육림 용으로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
- 임야매입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필지별 지적의 90% 이상면적이 임업용산지일 경우)에 한함.
 -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임야 매입은 관인매매 계약서상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의한 매입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액대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장은 대출사항 등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사항등을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대출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산림조합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이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관리 : 해당사항 없음.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장)은 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총민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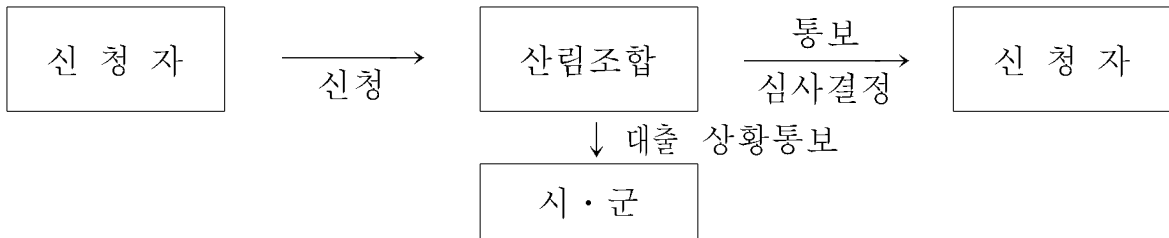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

나. 신청자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 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및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로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산림사업용 기자재구입비, 임야매입자금, 임대시설 또는 보수,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

다.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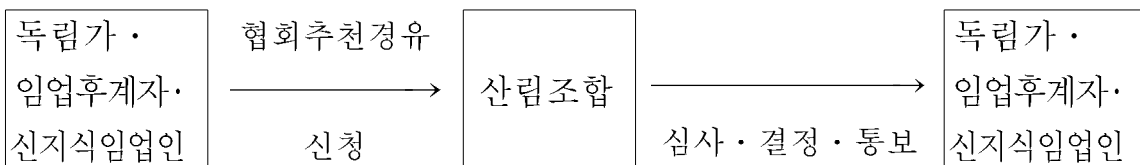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제9조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제9조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독립가로 선발된 자 및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신청절차 (자금용자)
 -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후 종합 심사하여 선정



① 임업전문인력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과장 류광수, 임업사무관 황육성)입니다.

1. 목 적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
- 임업기능인영립단 운영으로 임업의 산업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기능인 및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영립단 장비지원
 - 임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 및 현장 산림사업기술 교육훈련
 -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의 조작·정비훈련
 - 목구조기술훈련 및 산림내 소득작물재배 기술교육으로 농외소득증대
 - 임업기계훈련원 교육장비 보강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 내실화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 전문인력 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03까지	2004년	2005년 (예산안)	'06~'07년
사 업 량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사업비	계	17,492	1,918	1,771	3,542
	보 조	17,492	1,918	1,771	3,542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백만원)

구 분		'03까지	2004년	2005년 (예산안)	'06~'07년
사 업 량		377단 (4,274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181단 (2,263명)
사업비	계	7,033	581	566	3,396
	보 조	7,033	581	566	3,396

5. 2005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전문인력양성 지원

○ 추진 배경

- 농산촌 인력난이 심해짐에 따라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 산림작업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훈련사업 실시
- 산림경영계획,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산림경영관리자의 육성

○ 지원내용

-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임업기능인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훈련비 지원
- 교육훈련에 필요한 임업기계 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임업기능인 양성 임업훈련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훈련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임업훈련기관 :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 임업기능인영립단 장비지원

- 배경 :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 확보
- 사업시행주체 :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 지원대상자 : 임업기능인영립단
- 사업내용
 -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립단에게 사업실행시 필요한 장비구입비 지원
 - 사업량 : ('03까지) 377단 4,274명 → (2007) 618단 7,257명
 - 장비지원내용 : 1단당 12명 기준

기계톱	예불기	고지절단기	천공기	소형윈치	차량	무육냥세트	안전장비
4대	2대	6대	2대	1대	1대	6세트	12조

(3) 교육대상자 선정

-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 대상자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및 정규대학 3년이상 수료자중 임업관련학과 출신자
 - 숲가꾸기 교육 2주이상 및 영립단 교육 이수중인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임업관련 자격증 소지자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선정방법 : 관련기관 또는 학과장 추천자 및 임업관련학과 출신자 우선 선발
- 임업기능인양성
 - 대상자
 - 18세 이상으로 각종 산림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
 - 관할지역 산촌거주자로서 산림작업에 종사할 의욕이 강한 자
 - 산림작업에 경험이 있는 자

- 선정방법

-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에서 기능인영림단 양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일반인이라도 지역임협 및 임업훈련원에 기능인교육을 희망하면 훈련원의 교육인원, 교육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 전문인력 양성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계		3개소	1,771	1,771	1,771	-	-	-
임업 훈련원	인건비		897	897	897	-	-	-
	경상비및훈련사업비		874	874	874	-	-	-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	보조		
계	30단	566	566	-	566	-	
민유림영림단 증설	30단	566	566	-	566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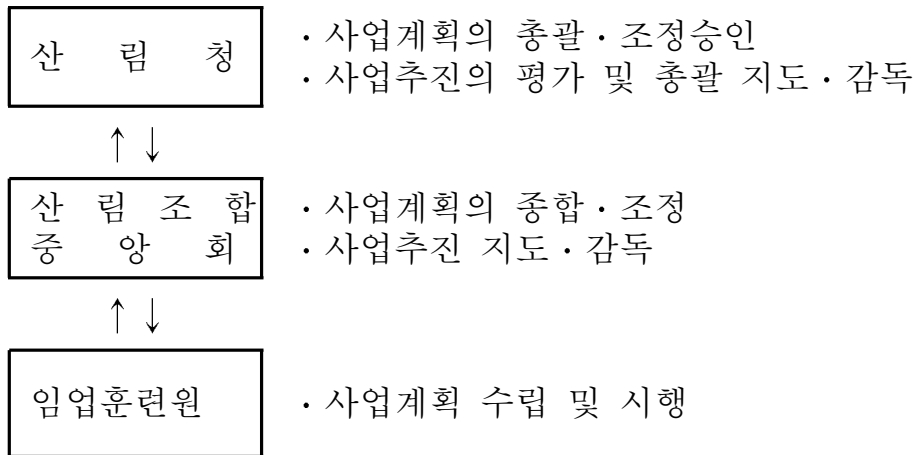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경영지원과 (042-481-4195~6)
-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지원부(02-3434-7209~10)

다. 사업시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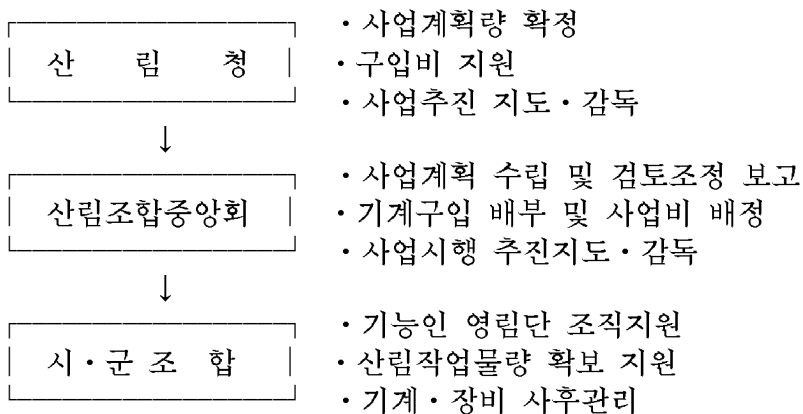
(1) 전문인력양성



(2) 영림단 장비지원

o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시·군 산림조합
- 사업 추진



-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기 준 : 국고 100%

라. 사업시행

o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훈련원의 200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11.30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사업비 지원방법
 - 훈련사업비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훈련원의 훈련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각 임업훈련원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영림단 교육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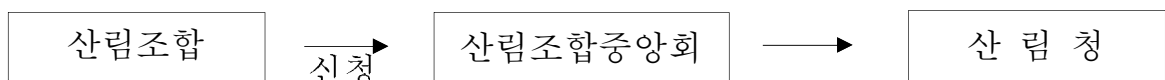
나. 보 고

- 보조금 정산보고(총공통-9)

6. 2006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5. 3.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나. 신청절차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3호서식)

② 임업기술지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 (과장 류광수, 임업서기관 고기연) 입니다.

1. 목 적

- 선진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현장위주 실질적인 임업기술지도 실시로 사유림의 자원화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78년부터 임업기술지도원 배치·국고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기술지도원 인건비의 단계적 현실화
- 산림지발간·보급, 현장위주의 임업기술지도로 대국민 홍보 및 산주의 경영의식 고취
- 기술지도실적이 우수한 산림조합에 장비 및 기자재를 인센티브 지원하여 임업기술지도의 활성화
- 사유림의 경영을 위한 대리경영 지속 추진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조(임업기술지도등), 동법시행령 제13조(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년~'07년
사업량	기술지도원(명)	787	803	880	880	1,277
	지도장비(대)	453 (짚차)	207 (노트북)	2종	2종	5종
사업비	계	101,708	13,256	11,630	12,103	70,069
	보 조	56,634	7,910	9,261	9,861	55,690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44,333	5,346	2,369	2,242	14,379

5. 2005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국내외 선진 임업기술·지식·정보를 보급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산주가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산림에 대한 대리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임업기술지도원의 지도능력 향상

○ 지원대상

- 임업기술지도원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
* 지원대상(880명) : 임업기술지도원(803명), 협업경영지도원을(77명)
- 지도실적 인센티브 : 지역 산림조합
- 임업기술정보지(산림지) : 산림조합중앙회
- 지도원특화품목교육(품목별 지도원 육성) : 지역 산림조합
- 산림경영정보화시스템구축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임업기술지도원 인건비 : 국고 80%, 자부담 20%
- 지도실적 인센티브 : 국고 100%
- 지도원특화품목 교육 : 국고 100%
- 산림지 : 국고 50%, 자부담 50%
- 산림경영정보화시스템구축 : 국고 10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2,386	9,861	9,861	-	-	2,242
기술지도원	880명	10,520	8,416	8,416	-	-	2,104
지도실적 인센티브		957	957	957	-	-	-
산림지	276천부	276	138	138	-	-	138
지도원 특화품목교육	100명	50	50	50	-	-	-
산림경영정보시스템구축	1건	300	300	3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경영지원과(042-481-4191~2)
-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지원부(02-3434-7209~10)
- 시·군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조합은 대리경영 계약목표, 산주 기술지도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지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
 - 중앙회는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조합별 지원 계획을 수립,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산림청은 중앙회장이 제출한 기술지도사업 지원계획을 검토하여 자금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자금지원 요청시 교부결정
- 사업비 집행방법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행
- 추진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조중앙회는 보조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되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 회수조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산조중앙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 기술지도원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 1월전에 대리경영계약 실적, 산주 기술지도활동 등 실질적인 임업기술 지도실적을 종합하여 지원하고, 정산시 이를 보고함
- 산조중앙회는 인센티브제 실시를 위한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한 후 하반기에 점검 및 평가실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장 : 임업기술지도원을 지도·감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지도원의 채용·임용 및 임업기술지도원 교육
- 산림청장 : 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기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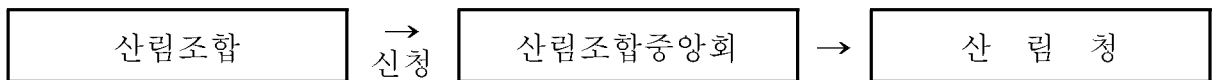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5.12.31까지 보조사업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총공통-9)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

나. 신청절차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③ 사유림협업경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과장 류광수, 임업서기관 고기연)입니다.

1. 목 적

- 영세 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의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협업체의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기존 협업체의 경영 내실화 추진
- 협업체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임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7조(경영구조개선), 동법시행령 제4조(협업경영)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06년 ~ '07년
사업량	조 직 (운 영)	247개	(247개)	(239개)	(239개)	(239개)
	공동소득지원	374	19	-	-	-
사 업 비	계	26,876	2,151	300	200	1,000
	보 조	15,365	1,333	300	200	1,000
	용 자	-	-	-	-	-
	지방비	2,337	269	-	-	-
	자부담	9,174	549	-	-	-

※ () 내는 협업체 조직 누계임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경

- 사유림 총면적은 4,548천ha 산주수는 약 2,169천명으로 산주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1ha에 불과하고 10ha미만 산주가 96%를 차지하여 개별 산주의 독자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협업경영을 통하여 임지를 규모화함으로써 소규모 임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유도

○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구 분	지원대상자	지 원 단 가	지원조건
○ 협업체운영비	우수협업체	1개협업체×5,000천원=5,000천원 ※20개협업체×5,000천원=100백만원	국고 100%
○ 기자재 및 장비	우수협업체	1개협업체×5종×1,000천원=5,000천원 ※20개협업체×5종×1,000천원=100백만원	국고 10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00	200	200			
- 일반회계		200	200	200			
· 협업체운영비	20개소	100	100	100			
· 기자재·장비	20개소	100	100	1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릫 청 : 산림자원국 경영지원과 (042-481-4191~2)
- 산 릫 조 합 :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운영비 : 협업경영사업이 우수한 협업체
- 기자재·장비 : 협업경영사업이 우수한 협업체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작성 : 산림조합 및 협업체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승인권자 : 산림청장(운영비, 기자재·장비)
- 사업비 집행 :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조합에서 집행
- 추진일정
 - 보조금 신청 : 1월~12월
 - 보조금 교부결정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바. 기타사항

- 중앙회는 자금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장은 협업경영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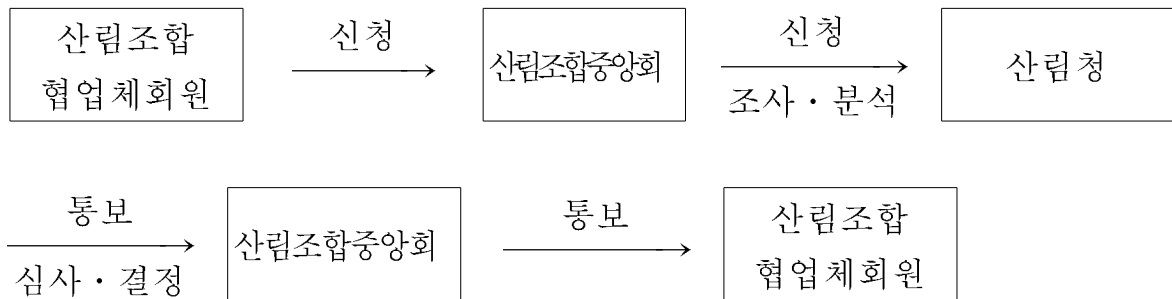
- 농특회계 : 산림조합

나. 신청자격

- 협업체가 조직된 산림조합

다. 신청절차

- 농특회계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4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모범적인 협업체 운영지역

- 우선순위

- 협업체회원의 참여도가 좋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협업체

- 선정절차

- 산조중앙회는 우수협업체 선발을 위한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한 후 하반기에 점검 및 평가 실시 후 선정

IV. 산림복지기능 증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과장 전범권, 임업사무관 김영환)입니다.

1. 목 적

- 우리꽃 재배기술 보급과 사립수목원 지원으로 국토경관 조성 및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가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증식으로 자원화 및 산업화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요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으로 국민정서함양을 고취하고 자생식물의 이용·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산업화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성·등록된 사립수목원의 지원으로 국가식물유전자원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에 기여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제22조
- 산림법 제109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2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 자생식물식재(km)		198	55	55	55	300
○ 사립수목원지원(개소)		3	5	6	6	40
사 업 비	계	8,671	4,728	4,828	5,128	43,428
	- 보 조	7,871	2,364	2,414	2,564	21,714
	- 용 자	-	-	-	-	-
	- 지 방 비	7,071	1,964	1,964	1,964	10,714
	- 자 부 담	800	400	450	600	11,000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전과 더불어 '92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식물자원의 보전·이용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산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요사업으로 선정 추진

○ 지원대상

- 자생식물식재사업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립수목원지원 : 민간 (등록수목원)

○ 지원조건(일반회계)

- 국고보조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내용

- 자생식물식재사업 : 주요국도·지방도·고속도로변·문화관광지 주변 등에 지방 고유의 향토자생식물로 꽃길 조성
- 사립수목원지원 : 증식·재배시설, 전시시설, 연구·교육시설 등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	5,128	2,564	2,564		1,964	600
○ 자생식물식재	55km	3,928	1,964	1,964		1,964	
○ 사립수목원지원	6개소	1,200	600	600			6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립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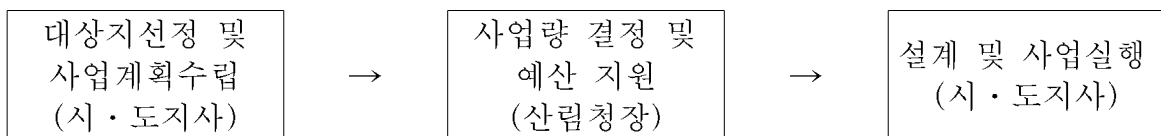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산림보호과(042-481-4248~9)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 사립수목원 : 등록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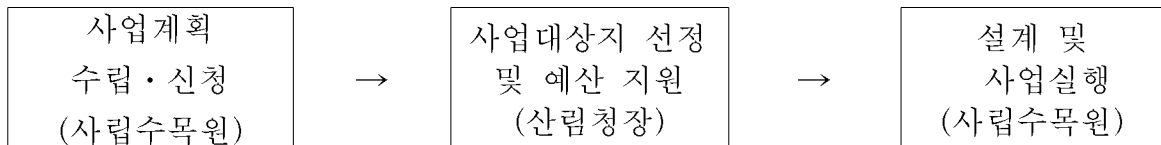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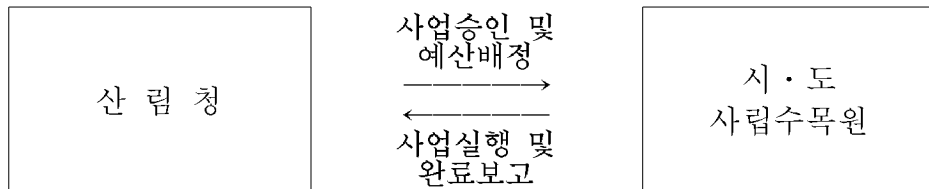
<자생식물식재사업>



<사립수목원지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립수목원
- 보조사업으로 취득 또는 설치한 사립수목원의 장비·시설물에 대하여는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임을 명시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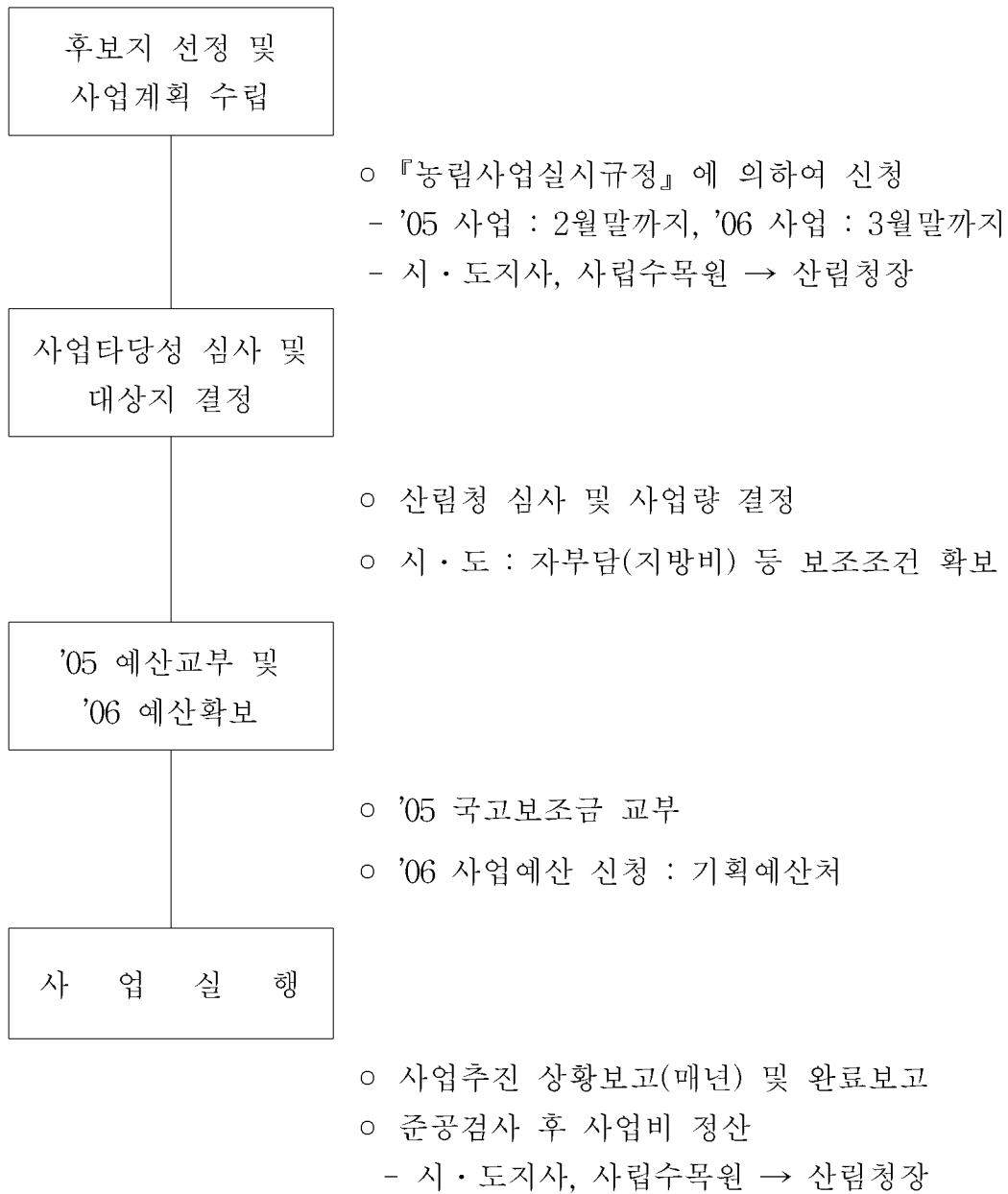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총공통-9)
- 외국의 수목원·관련기관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신고(사립수목원 → 국립수목원)
-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및 교류상황 보고(사립수목원→시·도→산림청)

6. 2005년도 및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

가. 사업대상지 선정

- 자생식물식재사업 : 국제적 행사,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지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도·지방도 문화관광지 주변 선정
- 사립수목원지원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수목원으로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대상지를 선정
-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함

나. 신청절차



V . 산 립 자 원 조 성

64	해 외 산 립 투 자 지 원 (자 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담당관 ○○○, 행정사무관 김세현)입니다.

1. 목 적

-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로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육성
- 해외조림 확대로 기후변화협약 시행에 대비한 탄소배출권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 투자유망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임업 투자환경조사 지원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및 제11조(사업신고 및 용자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3-'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조 립	44,782	3,116	7,515	8,746	28,000
	육 립	16,401	7,681	3,744	4,000	8,000
계		47,679	7,772	9,539	9,539	30,800
사 업 비	보 조	-	-	-	-	1,000
	용 자	40,959	7,772	9,539	9,539	29,800
	지방비	-	-	-	-	-
	자부담	6,720	-	-	-	-

※ 2006년 이후 사업량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간의 조림사업 계획 물량임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목재수요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원자재의 공급원 조성 필요성에 의거 해외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 도모

○ 지원대상자

- 해외조림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용자 신청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내용 : 해외조림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기존 해외조림지에 대한 육림비
- 지원비율 : 해외조림 및 육림 사업비의 100% 이내
- 반입조건 : 용자금을 지원받아 식재한 해외 조림목은 수확 후 전량 국내 반입
- 용자조건

사업별	금리	용 자 기 간					용자 한도	비고
		구분	용도	계	거치	상환		
해 외 조 립 (육림)	연3%	숙성수	칩	동남아 10년	7년	3년	제한 없음	
			칩	대양주, 남미13년	10년	3년		
			용재	대양주, 남미 20년	17년	3년		
		장기수	용재	28년	25년	3년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9,539	9,539	-	9,539	-	-
해외조림	8,746	8,431	8,431	-	8,431	-	-
육림	4,000	1,108	1,108	-	1,108	-	-

* 용자조건 : 연리 3%, 7~25년 거치 후 3년 상환

* '05년 예산편성 단비는 조림 964천원/ha, 육림 277천원/ha이나 업체별 용자 사업 신청시 진출국 공공기관의 사업단비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진출국의 사업별 단비를 적용하여 용자 지원함(수종별, 국가별 차등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대상자선정 및 사업비지원 결정 : 산림청
-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042-481-4088)
 - 해외조림 등 해외산림개발실적, 사업계획신고서의 타당성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한 융자금액 결정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사업부(02-3434-7221~5)
 - 해외조림 사업비 융자 대출을 위한 담보설정·대출과 융자금 사후관리

다. 자금지원 예정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조림)신고 업체 및 신규 해외조림 참여 예정자

라. 사업시행

- 익년도 해외조림사업 융자지침(안) 작성 : 12월
- 해외조림 시책 설명회 : 12~1월
- 해외조림비 융자 소요액 파악 : 2~3월
- 융자신청 및 융자지원액 결정 : 연중
- 융자실행
업체 융자신청(산림청) → 산림청 융자결정 통보(업체, 산림조합중앙회) →
대출 구비서류 제출(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융자금 대출

마.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매년 1~2개소 현지 지도점검으로 조림면적 확인
- 조림이 완료된 후 사업비 소요내역, 조림면적 실측 도면(공인측량사 실측 또는 위성사진 도면) 등 정산서류를 산림청에 제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청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 공인측량사가 실측한 도면 또는 위성사진, 결산내역서, 대사관 또는 공공기관 조립실적확인서 제출
- 해외송금(융자금 수령 후 1개월 이내 송금) 의뢰서 사본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

- 융자지원 대출금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사업추진실적 보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나. 신청자격

-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당해 연도 조립대상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다.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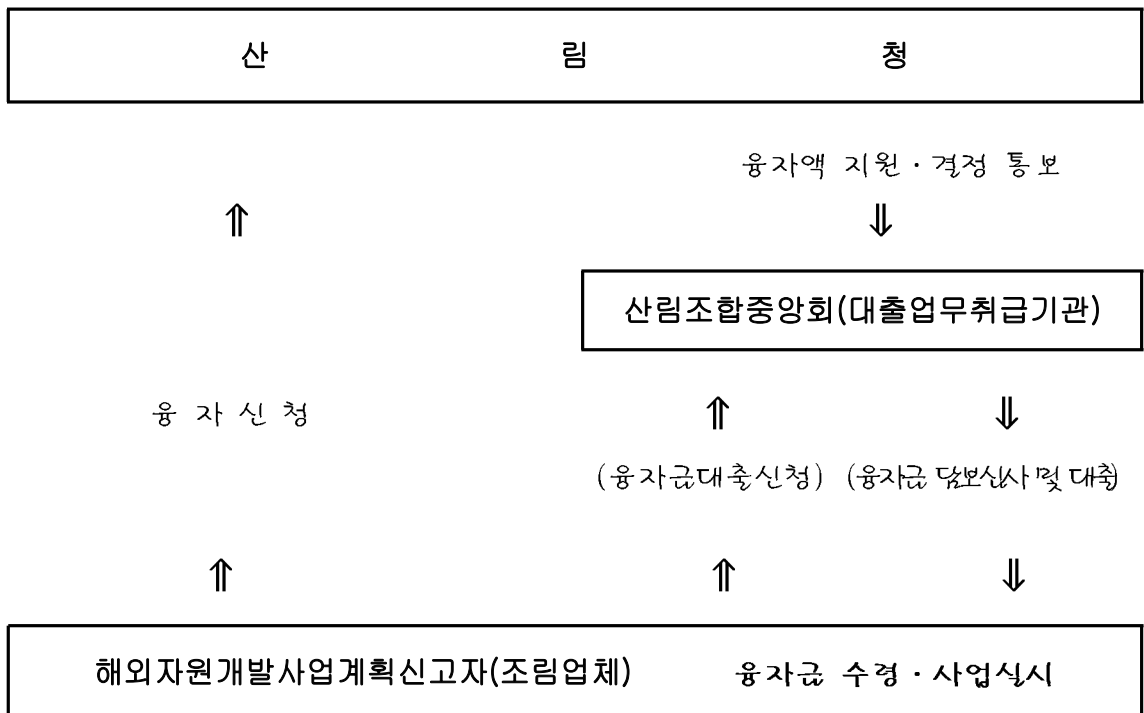
- 선정권자 : 산림청장
- 선정절차 : 해외조립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 → 검토 및 심사 → 통보 및 예산반영 추진
- ※ 사업계획 심사 : 조립예정지 정리, 양묘, 식재, 사후관리 등 작업단계별 타당성 및 적정비용 검토

라. 구비서류

- 해외조림사업 용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당해년도 사업계획 확인서(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 확인)
- ※ 서식 : 붙임

마. 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한 자(허가를 받았던 자 포함)로서 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또는 해외조림사업계획신고를 준비 중인 신규 참여 예정자
- 우선순위 :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중인 자, 신규참여자, 기타 용자금 우선 신청자
- 선정절차



해외조림사업 용자신청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량(ha)			
	사업소재지	국가			단비(\$/ha)			
		지역			조림수종			
	사업비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용자		
		천\$						
천원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 1.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 (진출국주재 야국 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2. 소요자금 산출내역서(붙임1 서식)								

<붙임>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 사업개요

수 종	면 적	본 수	총 조립비	사업기간	비 고
	ha	본	US\$		

2.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현지통화	US\$	원화(천원)		
계					
(1) 예정지정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비 사용시 구체적으로 명시
(2) 식 재 -인건비 -기 타					장비 사용시 장비사용료 계상
(3) 조립지관리 -인건비 -기 타					
(4) 자재대 -묘 목 -기 타					
(5) 기타비용 -측량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적용환율 : US\$ = 원

*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비용이나 특수장비사용료, 현지사정에 따른 기타 비용등은 산출내역과 구체적
소요 이유를 첨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과장 김상균, 임업사무관 이상린, 임업사무관 손봉영, 임업서기관 류주열)입니다.

1. 목 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산림의 공익적 편익증대 및 재해 예방 기능 강화
-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태적으로 건전한 용재, 소득수종 조림과 수원함양림 조림 생활권 공익조림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 기능별 산림관리 특성에 맞는 숲가꾸기 실행으로 경제림 촉진 및 공익·재해 예방 기반 조성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집중투자 및 기술지도
- 우량한 묘목을 책임 생산하여 조림성과 거양
-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생활안정도모 및 청년실업 해소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산림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 이후	
합 계	사업량(ha) (백만본)	1,893,340 (449)	154,027 (13)	140,754 (11)	151,416 (10)	647,878 (48)	
	사 업 비	계	1,543,680	279,206	258,838	301,864	1,299,662
		보 조	636,842	128,899	139,727	165,336	712,407
		용 자	121,527	5,020	2,301	2,128	13,971
		지방비	475,164	105,405	96,738	113,047	517,863
		자부담	310,147	39,883	20,072	21,353	55,421
조 립	사업량(ha)	215,573	15,127	15,754	18,931	66,363	
	사 업 비	계	626,538	93,128	91,157	99,705	555,414
		보 조	344,709	55,842	57,015	60,040	351,986
		용 자	23,398	1,773	501	501	6,591
		지방비	188,601	32,947	31,007	36,058	182,359
		자부담	69,830	2,566	2,634	3,106	14,478
숲가 꾸기	사업량(ha)	1,677,767	138,900	125,000	132,485	581,515	
	사 업 비	계	824,808	182,022	162,764	198,417	729,507
		보 조	291,643	72,200	81,252	104,439	359,151
		용 자	43,110	1,522	300	300	900
		지방비	286,416	72,200	65,046	76,544	333,833
		자부담	203,639	36,100	16,166	17,134	35,623
묘목 생산	사업량(백만본)	449	13	11	10	48	
	사 업 비	계	92,334	4,056	4,917	3,742	14,741
		보 조	490	857	1,460	857	1,270
		용 자	55,019	1,725	1,500	1,327	6,480
		지방비	147	257	685	445	1,671
		자부담	36,678	1,217	1,272	1,113	5,32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장기조림계획에 따라 우량건전 묘목을 생산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림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림관리를 통하여 우량용재 생산 기반조성
- 도시·마을주변, 도로변, 관광지, 주요댐·호수주변,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대상지 등에 큰나무공익조림으로 쾌적한 생활경관 조성
- 산불 피해지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 추진으로 국토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 5대강유역, 도로변, 병해충, 산사태 및 재해우려지역 등 산림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숲가꾸기 실행 등 적정 관리를 통하여 공익적 효과 극대화 및 재해 예방 기반 조성
-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 공공(公共)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추진으로 공익가치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2) 지원대상자

- 보조사업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정부계획 조림용 시설양묘 및 묘목기반조성(관정, 토양개량) 양묘사업자
- 융자사업 : 조림, 숲가꾸기 사업 및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신청자
(산주,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

(3) 지원비율

○ 조 립

- 정부보조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수원함양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큰나무공익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금강소나무림 육성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지속가능한 특화숲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아름다운마을숲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산불 피해복구조립
(동해안 지역)
송이복원조립, 경제수조립, 풀베기사업 : 100%(국비 90%, 지방비 10%)
(일반 지역)
경제수조립 :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경관림조성 :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용 자

- 자력사업 : 소요 사업비의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 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o 숲가꾸기

- 정부보조 : 사업비의 9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용 자
 - 자력사업 : 소요사업비의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 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 공공산림정비 : 사업비의 100%(국고 70%, 지방비 30%)

o 묘목생산

- 정부보조
 - 시설(비닐하우스)양묘 : 시설비의 60%(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 관정시설 : 시설비의 100%(국비70%, 지방비30%)
 - 묘포지 토양개량 : 시설비의 100%(국비70%, 지방비30%)
- 용 자 : 묘목생산비의 60% - 용자한도액 100백만원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ha 10백만본	301,864	167,464	165,336	2,128	113,407	21,353
조 립	18,931ha	99,705	60,541	60,040	501	36,058	3,106
숲가꾸기	132,485ha	198,417	104,739	104,439	300	76,544	17,134
묘목생산	10백만본	3,742	2,184	857	1,327	445	1,113

※ 용자사업 : 2005년도 임업정책자금 용자 지침에 의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조림·숲가꾸기, 시설양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 시·군·구
- 묘목생산 : 시·도(산림조합 : 융자금 취급업무)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042-481-4185, 4186, 4189)
- 시·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다. 사업시행

<조림>

○ 조림예정지 선정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벌채지, 형질이 불량한 임지 등 위주로 선정

※ 맹아·치수발생 등으로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인공조림 대상지에서 제외

○ 조림예정지 정리

- 불량목은 완전정리하되 우량목과 산벚나무, 단풍나무등 밀원·경관수종은 존치
- 제거된 지장물은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수종갱신조림의 경우 모두베기를 지양하고 대상 및 조상베기나 하층 불량목만 제거 후 수하식재

※ 계곡부, 인가 주변, 도로변, 임도변, 농경지 주변 등의 벌채산물 중 통나무는 최대한 수집·제거하여 수해피해 방지

○ 수종선정 : 적지적수, 산주 희망수종, 향토수종, 소득수종(밀원수종) 위주로 선정

○ 조림

- 수하식재, 혼효조림, 맹아갱신 등에 의한 생태적 조림(갱신) 실시
- 식재본수는 수종, 임지여건, 목적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내에서 조정실행
 - 경제수 : 1,100~5,000본/ha
 - 맹아갱신 : 인공식재조림을 하지 않고 활엽수벌채임지 그루터기, 잔존목 등을 정리 맹아발생이 잘되도록 함
 - 큰나무공익조림 : 500본~1,500본/ha
 - 금강소나무림 육성 : 천연림보육, 슈아베기, 조림, 비료주기 등 종합관리

·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조림지 풀베기사업 : 조림 후 3~5년간 6~8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 수원함양조림지 관리 : '03 ~ '05년 수원함양조림지에 대하여 풀베기 1회 실행

○ 묘목 수급 : 조림설계(계획)에 따라 수급

○ 식재작업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 큰나무공익조림 사업은 여론을 수렴 설계에 의거 추진 (사업비 부족분은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 실행)

<숲가꾸기>

○ 풀베기 : 조림 후 3~5년간 5~7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 풀베기작업시 조림된 묘목이 제거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목의 수관이 맞닿아 임분이 형성된(수고 3~6m) 임지에
실행하되 조림목 및 우량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피해목 등을 제거

○ 덩굴제거 :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2~9월 사이에 약제(근사미, 디카바)
주입 또는 인력 등으로 제거 (인력수급 등을 감안 년중 실시)

○ 천연림 보육

- 용재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활엽수림, 소나무림, 혼효림)에 대하여,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방해목을 제거

· 유령림 보육단계 : 평균수고가 2m 내외 또는 4~8m일 때 실시

· 간벌단계 : 평균수고가 10~12m 정도의 임분에서 1차간벌을 실시하고
이후 2~3회에 걸쳐 실시

○ 간 벌(숙아베기)

- 임목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뺨뺨한 임분에 대하여 미래목(최종수확목)을
선정하고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되는 경쟁목, 병해충피해목 등을 제거

- 식재 후 10~20년부터 2~3회에 걸쳐 실시

※ 천연림보육·간벌의 경우 계곡부, 인가주변, 도로변, 임도변, 농경지주변 등의
P벌채산물 중 통나무는 최대한 수집·제거하여 수해피해 방지

<묘목생산>

- 산림법 제45조에 의거 등록을 한 종묘생산업자 중 정부 계획 조립용으로 필요한 묘목을 시·도지사로부터 대행 생산 지정받은 수량 책임생산

라.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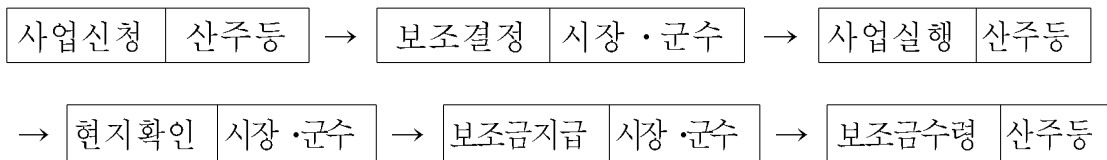
- 산주가 직접 조립·숲가꾸기 사업 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립·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산림조합, 법인 등)에게 대행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대행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 산림법 제14조 및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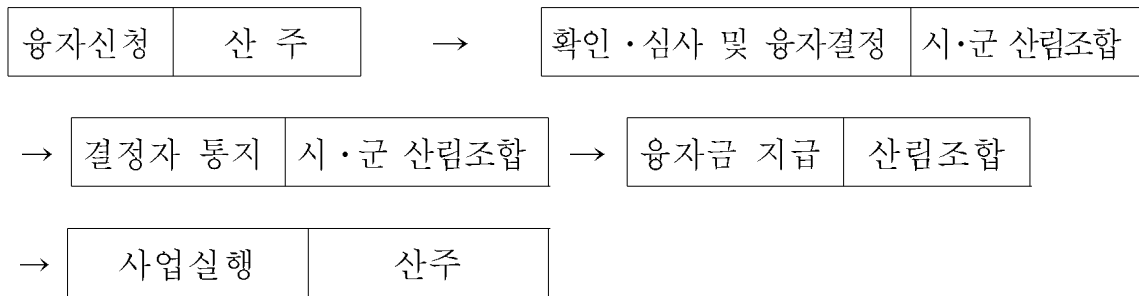
마. 사업비 지원방법

<조립 및 숲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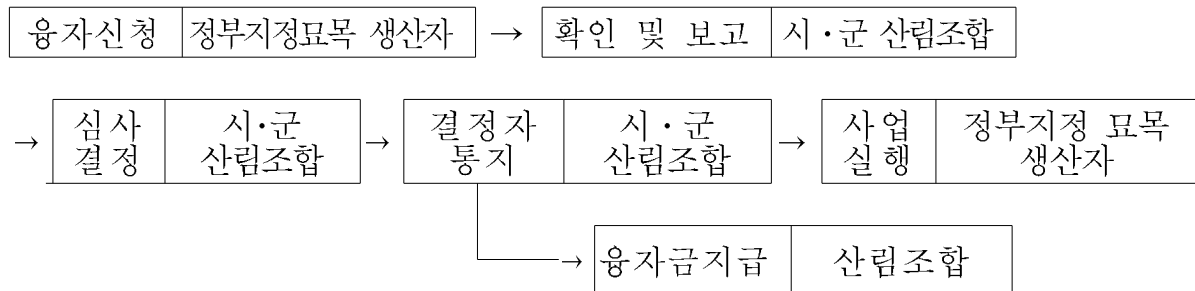
- 보조사업



- 용자사업



<묘목생산 : 용자사업>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주 체

- 조림 및 숲가꾸기 : 산림소유자, 시·군·구(시·도) 및 산림청
- 묘목생산 : 묘목생산자, 시·군·구(시·도) 및 산림청

(2) 사후관리 방법

- 조림목에 대한 활착조사 : 활착상황, 생육상황, 사후관리상황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상황을 사후관리 대장에 기록 유지
- 현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양묘 포지 육묘관리와 양묘사업상황, 생산실태조사(년2회) 실시
- 시설양묘 및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현황 기록유지 및 실태조사 실시

나. 보고 등 기타

<조림 및 숲가꾸기, 시설양묘, 관정시설 등>

- 조림실적보고 : 춘기조림 완료후(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조림·활착상황 보고 : 8. 31 (일반통계승인번호 13612)
- 보조사업 실적 보고 : 회계년도 종료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묘목생산>

- 양묘사업 상황 및 실태 조사결과 : 매년 5월말, 10월말까지
(일반통계승인번호 13609)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조림 및 숲가꾸기>

- 보조사업 : 시·군·구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융자사업 : 시·군·구 산림조합
- 산림사업 시행자 사업 : 시·군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신청자 : 산림조합)

<묘목생산, 시설양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 보조사업 : 시·군·구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용자사업 : 시·군·구 산림조합

나. 신청자격

<조림 및 숲가꾸기>

- 보조사업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등 사업실행 주체
- 산림사업 시행자 사업 : 시·군 산림조합
- 용자사업
 - 영림계획상 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자력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묘목생산 및 시설양묘, 관정시설 등>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 한 자 중 시·도지사로부터 묘목대행생산자로 지정 받은 자

다. 신청절차

<조림 및 숲가꾸기>

-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산주가 임야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산림사업 대행자 사업 : 시·군 산림조합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용자사업 : 사업 희망자가 시·군 산림조합장에게 신청

<묘목생산>

-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묘목 생산자가 포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용자사업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가 시·군 산림조합에 신청

라. 구비서류

- 보조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용자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신청서(별지 2호 서식)

마. 대상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조 립>

o 산주 또는 경영주체별

- ① 독립가, 임업후계자
- ② 협업체·대리경영 산림경영자
- ③ 기타 산주

※ 경제림단지 등 집단화된 산림에 우선적으로 지원

o 대상지별

- ① 미입목지
- ② 산불·병해충 등 피해임지
- ③ 수확벌채지
- ④ 복층림 조성을 위하여 벌채된 임지
- ⑤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가꾸어도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임지
- ⑥ 기타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대상사업별로 지방비 확보를 감안한 사업량이 요구되도록 조치하되 경제림
단지내 산림을 우선 선정

<숲가꾸기>

o 산주 또는 경영주체별

- ① 독립가, 임업후계자
- ② 협업체·대리경영 산림경영자
- ③ 기타 산주

※ 경제림단지 등 집단화된 산림에 우선적으로 지원

o 대상지별

- ① 영림계획상 숲가꾸기 계획이 책정된 임지
- ②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보육 대상지
- ③ 생산임지, 임업진흥권역, 협업경영구역 안의 산림
- ④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국고보조 제외임지>

- ① 국유림
- ②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 ③ 타용도로 전용할 임지

<묘목생산>

- ① 정부지정묘목 생산자중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자
- ② 전년도 예산부족 등으로 탈락된 적격자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숲가꾸기사업, 시설양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small>(묘목생산자명)</small>	
	면 적	필지 ha (m ²)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 획 면적	조림 수종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ha)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묘목생산자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용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담	보조	

2004. . .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 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 가. 소유권확인서 1부.
- 나. 사업계획서(시설공사에 한함) 1부.
- 다. 기타 필요한 서류

○ ○ 산림조합장 귀하